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정치·사법편 (Ⅳ) —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정치·사법편 (Ⅳ) —

정치

IV

사법

1. 서론
2. 정치인 사찰
3. 선거개입
4. 정당·국회활동 개입
5. 정치자금 통제
6. 결론

1. 서론
2. 재판에 대한 개입
3.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4.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
5.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6. 결론

언론

V

노동

1. 총론
2. 조사내용
3. 중정·안기부에 의한 언론통제 및 탄압실태
4. 결론

1. 서론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과 평가
4. 결론

학원

VI

간첩

1. 개요
2. 조사결과
3. 결론

1. 총론
2.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검토
3.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4. 결론

IV

1. 서론
2. 정치인 사찰
3. 선거개입
4. 정당·국회활동 개입
5. 정치자금 통제
6. 결론

정치

1. 서론
2. 재판에 대한 개입
3.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4.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
5.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6. 결론

사법



-
1. 서론
 2. 정치인 사찰
 3. 선거개입
 4. 정당 · 국회활동 개입
 5. 정치자금 통제
 6. 결론
-

I. 서론 · 8

II. 정치인 사찰

- 1. 서론 · 18
 - 2. 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 유형과 사례 · 21
 - 가.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 22
 - 나.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 31
 - 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 / 41
 - 3. 소결 · 48
-

III. 선거 개입

- 1. 서론 · 52
 - 2.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유형과 사례 · 55
 - 가. 선거의 총괄적 주도 및 관리 / 56
 - 나. 선거 시기 야당 정치인 사찰과 총선 판세 분석 / 64
 - 다.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 공작 / 66
 - 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후 공작 의혹 / 70
 - 마. 타 국가기관과의 공조 / 72
 - 바. 출마포기 및 사퇴압력과 낙선 공작 / 76
 - 사. 선거 시기와 제도의 변경 및 유지 / 79
 - 3. 소결 · 86
-

IV. 정당·국회 활동 개입

1. 서 론 · 89
 2. 정보기관의 정당·국회 활동 개입의 유형과 사례 · 92
-

- 가. 야당 창당 개입 / 92
 - 나. 야당 활동 개입 / 98
 - 다.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 107
 - 라. 최고 권력자 집단을 위한 대야당 정치개입 / 112
 - 마. 국회활동 개입 의혹 / 117
-

3. 소 결 · 120
-

V. 정치자금 통제

1. 서 론 · 124
 2. 정보기관의 정치자금 통제의 유형과 사례 · 127
-

- 가.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창구 / 127
 - 나. 여당 및 여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 133
 - 다. 야당 및 야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 134
 - 라. 정치후원금의 전달루트 차단 / 142
-

3. 소 결 · 144
-

VI. 결 론 · 145

I 序 論*

세계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모든 나라에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현대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정보기관은 필수라는 경험칙이 성립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칙과는 별개로 국가정보기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의 현존에 대한 하나의 입장은 국가이익의 보장과 안보를 위해 반드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의 입장은 자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이익추구와 국가안보라는 제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중간적·절충적 입장까지 최소한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존재를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은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익의 보호라는 보편적 측면과 남북한 분단체제의 지속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와 같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최고 권력자(정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의 업무수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남북한 분단과 오랜 독재의 지속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특정 정보활동의 과잉과 비대화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정치·역사적 상황이었다. 서로 다른 체제가 대립하는 분단상황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체제(국가)의 유지와 지속을 최우선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냉전이라는

* 본 정치편 보고서 집필에는 외부 전문가로 오승용, 방인혁, 엄관용, 강명세님이 참여하였다.

세계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대의 과제로 취급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그 범위가 광범위했던 것은 그만큼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런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과 통제의 기제로 활용했던 오랜 독재의 기간은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조건이 되었다. 분단상황이라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활동과 권한이 그만큼의 부작용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이에 대한 제도화가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에 비해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다.

국가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가정보기관이 본래의 제한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와 같이 본연의 활동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국가정보기관의 현존에 대한 공적 지지와 활동의 정당성 확보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이는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결국 문제는 국가정보기관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혹은 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전자의 경우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출범 이후 세간의 슬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했다.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은 국가정보기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과거 중정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들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정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창출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 국정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중정이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같이 억압과 공포감 조성을 통해 군림하는 국민 위의 조직이 아니라,¹⁾ 폭넓은 대중적 지지와 무한한 신뢰에 기초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최종적인 소비자이자 수혜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받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정치분야다. 국가정보기관의 본질적 지위와 역할에서 일탈하여 당대의 최고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의 권력 유지와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것은 국가 권력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력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영역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오용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1961년 중정의 창설 자체가 5·16 쿠데타 핵심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중정의 임무수행 중 상당 부분이 정치영역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중정의 정보수집 및 공작활동 역시 외국이나 외국인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야당을 비롯한 정권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가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정치분야에 대한 과거청산은 중정,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서 가장 민감한

1) 공포(fear)는 억압의 주요 수단으로 오랫동안 악용되어 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미국, 유럽연합 등의 나라에서 테러와의 전쟁,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과 소수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 단체 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신성불가침(sacrosanct)의 권리도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한 사람도 없다”고 설파했다. 왜냐하면 주요 사회주의 국가가 사라진 세계에서도 (여전히)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Gunnell, 2007, p16).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또한 가장 큰 분야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이는 그 동안의 뼈를 깎는 국정원의 과거청산 노력까지 평가 절하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이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출범 당시 중정법에는 중정 직원의 정치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²⁾ 현재의 국정원법에도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개인(직원)적 의지의 차원을 넘어 이미 한국정치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중정이 창설된 이래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위상과 지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여당의 실질적 권력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될 개연성을 내포한다.

반면, 1994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 의한 국가정보기관의 통제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반대정파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가권력의 한 축인 의회에 의한 국가정보기관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1994년 이전에도 의회가 국가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2) 중앙정보부법(1963.12.14, 법률 제1510호) 제8조와 중앙정보부직원법(1963.05.31, 법률 제1355호) 제22조에서는 중정 직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참조).

3) 국가정보원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는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1월 5일 국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과 행정 각부의 업무에 개입하는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보조정협의회는 1994년 6월 국회 상임위원회로 정보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통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이후 1996년 12월 26일 다시 부활되었다.

이처럼 1994년 이전에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에 비해 의회의 권한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차도 의회 내의 정파분포에 따라 권한 행사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합리적 통제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통제의 범위와 방식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 활동의 비밀성을 보장하면서 정보의 독점과 악용을 막기 위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국가정보기관들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매우 드물게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의회의 이런 제한적인 통제가 통치권자의 실질적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는 1994년에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 통치권자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활용 의지’가 권위주의 시절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절·통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과 제도적인 방식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조건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의 목적과 대상, 방법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국가정보기관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조절·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되었으며 이와 같이 정보의 수집과 가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정보기관의 은밀한 정치공작의 메커니즘은 한편으로 대통령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자체의 재생산 메커니즘도 갖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산된 최종 결과물의 수혜자는 일차적으로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국가정보기관은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의 존립근거를 확인시켜주고 이를 통해 조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스스로 수혜자가 되었다.

국가정보기관은 그 동안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른 불가피한 역기능이었을 뿐이라고 역설해왔지만, 국가정보기관 내부의 조직팽창욕구와 오랜 활동관성에 따른 ‘집단사고’가 정치개입을 관행화해온 측면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⁴⁾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가 CIA 낙성식(落成式)에서 “여러분의 성공은 공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는 선전된다”고 한 것처럼 약 반세기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이 행한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 측면은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적 실수나 실패가 아닌 최고 권력자와 정보기관 스스로의 잘못된 의지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 맞닿아 있다. 1961년 이후 중정·안기부 그리고 현재의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반성과 정정의 과정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주체의 당연한 역사적 책무이지만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미림사건’으로 알려진 국가정보기관의 도청관행이야말로 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이 종식된 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질화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다원화·다층화 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국가적 위협은 북한과 국내의 위협요인을 뛰어 넘는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짐과 체제를 새로이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커다란 직무유기이자 국가적 손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조사의 궁극적 목적이자 기대하는 바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를 크게 4가지 하위분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정치분야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조사인력과 시간 자료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제약요건도 작용했다. 4개 분야는 정치인 사찰 분야·선거개입 분야·정당·국회활동 개입 분야·정치자금 통제 분야이다.⁵⁾

정치인 사찰분야는 반정부인사는 물론 정치권 인사들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동향 파악 및 밀착감시를 통해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억압·통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했다.

선거분야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정권수호 및 재창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했다.

정당·국회분야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조종을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했다.

정치자금분야는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야당 통제 및 선거개입에 악용했다는 의혹을 일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⁶⁾

5)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공작’을 독립된 하나의 조사 분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공작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찰과 관련되면 사찰공작(예, 박현채를 비롯한 재야 혁신계 인사들을 숙청하려 했던 ‘○○ 공작’), 선거와 관련되면 선거공작(예, 1987년 대선 당시 상륙사업) 등의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6) 원래는 정치자금 분야와 함께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본연의 정보제공 역할을 넘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붕괴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들 예컨대 한일회담·유신사업·평화의 댐 건설 등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자료의 부재 등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사건을 연대기별로 나열하기 보다는 각 하위분야별로 유형화를 통해 관련 사건들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국정원의 과거사건 조사와 같이 개별사건에 대한 심층조사보다는 각 분야별로 사건들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유형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보다 유형화에 치중한 이유는 한국현대정치사는 곧 중정을 비롯해 안기부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사례 역시 방대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들을 모두 망라하여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에 비해 보다 큰 흐름과 맥락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는 점, 예컨대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현대 한국정치사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 유형화를 통한 조사방식을 택한 결과 동일한 사건이 각각 다른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며, 각각의 유형에서 전개하는 논리 및 취지의 해석 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독립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건이 무우 자르듯이 특정한 영역이나 유형에만 고유하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조사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중정과 안기부 시절 정치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자료와 각종 정치인 회고록을 비롯한 단행본을 통해 관련 사례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존안자료를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존안자료와 각종 의혹사건 관련 공판조서 및 판결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前국회의원 김상현·신상우·유성환·이만섭과 前연기군수 한준수를 면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공개자료, 국정원 자료, 기타 국가기관 자료를 확인하고

면담 조사를 통해 가급적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은 공개자료와 국정원 자료가 상호보완적인 경우도 있고 공개 자료에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국정원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이 된 사건이 있고, 아쉽게도 어떤 사건은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비공개 자료를 다 확인한 것이 아닌 만큼 이 글은 실제적 진실의 일단만을 보여주는 미완의 보고서라 할 것이다.⁷⁾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큰 한계로 국정원 존안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정원에는 과거 의혹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자료들은 상당 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데다 자료보존에 대한 국가 정보기관의 인식부족·정권교체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국면이 닥칠 때마다 해당 자료가 상당 부분 폐기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자료의 부재는 조사결과의 완결성을 상당 부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이를 전직 직원들과 사건 당사자들의 회고록, 기타 공개자료 및 면담 등을 통해 최대한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로는 국정원이 존안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열람의 한계다. 정치분야와 관련된 국정원 존안 문서에 대한 열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분야의 경우 정보공개법 등 법적 한계가 있는데다가 관련된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현존하고, 조사와 무관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미치게 될 정치적 과장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위원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충분히 열람하지는 못했다. 특히 기술적 이유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추가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셋째로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7) 본문에서는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 보강된 사례만을 다루지 않고,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도 상당수 다루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실제적 진실을 완전히 밝혀 내지 못한 사건들도 일부 있다.

각 분야별로 자료의 양과 질이 불균등했고, 이로 인해 보고서 구성과 진술방식의 통일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예컨대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는 사례별 유형화가 용이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도 풍부한 반면 자료가 많지 않거나 산발적인 자료만 확인된 경우에는 유형화를 통한 접근이 힘들었다. 그렇다고 몇 개의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기술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각 분야별로 기술이 가능한 최선의 형태로 보고서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이 존안하고 있는 자료의 불균등에서 오는 구성과 기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혜량(惠諒)을 청한다.

II 政治人 査察

1 서론

국가, 헌법,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정보기관의 공통된 임무에 속한다. 더구나 분단 이후 단독정부 수립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한반도가 처했던 정치·역사적 조건은 정보기관의 존재와 역할을 필요로 했다. 동시에 이런 조건은 남북한 모두에서 특수한 정치구조를 만들어 냈으며,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는 과대성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기도 했다.

과거 정보기관의 활동은 최고 권력의 비호와 비밀유지라는 법적 보호막 속에 있었다. 또한 비밀유지라는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을 이유로 민주적 통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런 점이 정치상황과 최고 정치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정보기관이 부당하게 정치활동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요소이자 동시에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없이 정보기관과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다.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헌법, 체제를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이 ‘국가안보의 위해요소 또는 국가의 적(敵)’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위해요소 또는 국가의 적(敵)’으로 규정된 대상 또는 잠재적 대상에게는 사찰·감시·통제가 따른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권력집단에 의해 왜곡되고 무력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현대정치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최고 권력집단의 정치적 반대자 또는 세력을 사찰하고

통제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권안보와 유지를 위한 활동이었지만 이를 합리화했던 근거는 언제나 ‘국가안보’였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비밀유지라는 법적 보호막에 가려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헌법, 체제의 수호보다 정권수호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위험성이 제고되었다.⁸⁾ 첫째는 정권 반대 세력을 국가, 헌법, 체제에 대한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탄압할 위험이다. 둘째는 현존하던 적이 사라진 이후에는 새로운 적 혹은 가상의 적을 만들고 새로운 공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위험성은 국가정보기관의 임무와 활동 목적 이전에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그 자체에서 연유한 것임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가상의 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비밀 정보수집 권한을 정권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정치권력을 매개로 이뤄지는 최고 권력집단과 정보기관간의 기득권 연대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의 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괴스너, 1997, pp158-159).

따라서 민주적 정치체제와 민주정부 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국민대표기관의 감시와 통제 요구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된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수록 정보기관의 위험성은 약화되지만 최고 권력이 정보기관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선호함으로써 공적 통제가 약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의 위험성은 제고된다.

한국사회에서 과거 국가정보기관이 특권적이고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대표기관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다.⁹⁾

8) 권위주의정권 하에서는 정권수호를 국가, 헌법, 체제의 수호와 동일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9) 여기서 우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요인을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과 정당을 국가정보기관이 감시하고 통제했던 경험이 더 많다.

우리에게는 한국 정보기관의 역사 특히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와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권위주의정권 시기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성찰과 반성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정정 및 재발방지 약속, 이에 대한 국민적 승인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으며 의혹이 집중된 분야가 바로 정치인에 대한 부당한 사찰과 탄압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감시·사찰하고 때론 물리적 탄압(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여러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그러한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자 한다.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사찰의 사례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자기정정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칠게 요약하면 그 요인은 분단체제·권위주의정권·법적 승인·공포의 내면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반공의 일상화를 통해 분단체제가 안착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했다. 민주적으로 집권한 장면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킨 박정희 정권의 등장 이래 무려 30년 가까이 지속된 권위주의정권은 특권적 정보기관이 탄생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 든든한 배경이었다. 권위주의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보기관의 전형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자신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권과 공동운명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기득권공동체의 유지·강화를 위해 과거 정보기관은 사찰과 협박·테러 등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의 적 혹은 가상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집단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억압적 통제 메커니즘의 일상화는 국민들 사이에 정보기관에 대한 공포를 내면화시킨다. 이러한 공포의 내면화는 정보기관에 대한 신성불가침 혹은 통제 불가능의 신화를 낳았다. 여기에 정보기관을 ‘예외적 존재’로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정보기관을 자기 영속적 권력기관으로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로 남겨놓는 승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2 정보기관의 정치인 사찰 및 탄압의 유형과 사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유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치공작을 비롯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의원들의 비위사실 수집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이다. 이 유형의 세부 내용은 첫째 유형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사찰의 범위와 정도는 보다 넓고 깊게 이루어졌다.

셋째는 반정부 정치인(재야인사 등)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 유형이다. 과거 중정은 장준하·백기완·계훈제·김철 등과 같은 재야인사들은 일일별·주간별·월간별로 감시·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反)정부 움직임을 보인 사회단체(집단)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찰을 했다.

이 장에 소개된 사례들은 주로 중정 시절에 일어난 것들이다. 안기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거론된 정치인 사찰 및 탄압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은 중정 시절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었고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사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는 중정 시절에 비해 정치인에 대한 사찰과 탄압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5년 터져 나온 ‘미림팀’과 불법도청 사건이 보여 주듯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도 정치인에 대한 불법도청과 사찰이 지속되었음이 밝혀졌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도청 등 ‘불법적’ 방식을 통한 정치사찰과는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TF활동과 관련해 이것이 정당한 국정원의 업무수행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야당이 정치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등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별 자료 양의 불균형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본 조사의 의미를 제한하기도 한다.

가 |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중정의 정치인 사찰·탄압은 야당정치인이나 반체제 인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¹⁰⁾ 대통령 직속기관의 성격상¹¹⁾ 중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혹은 대통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신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직무범위에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과 사찰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일은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정보기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려는 욕구의 자기증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도록 하는 추진요인(push factor)으로 볼 수 있다.

열람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음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이 장에서 중정은 중정·안기부를 포괄하는 편의적 용어로 사용한다. 정치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상당수가 중정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과 시기를 지칭할 때는 당시의 명칭을 사용한다.

11) 1961년 6월 10일 중정이 출범할 당시부터 중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 기관이었으며(중앙정보부법 제1조), 현재의 국정원 역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첫째,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견해를 가진 의원들에 대한 동향과약이다. 예컨대 4·8 항명파동, 삼선개헌, 10·2 항명파동, 유신헌법 제정 등 정권과 체제의 전환적 국면일수록 중정의 정치개입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유인요인(pull factor)이다.

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다. 권위주의 시절의 국회는 현재의 국회처럼 자율적이지 못했다.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중정·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정활동을 통제 하던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²⁾

셋째,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과약이다. 중정 등 정보기관은 집권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¹³⁾ 그러한 동향과약을 했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넷째,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수집이다. 사실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비위사실의 수집이다. 물론 중정은 공화당 항명파동사건과 국민복지회사건의 경우 반체제 인사나 야당의원들의 경우처럼 의원들을 중정으로 끌고 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했다.¹⁴⁾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국회의원

12) 물론 중정의 감시는 정부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김형욱 중정 부장 시절 ○○실장을 역임한 방○○의 증언에 따르면 김형욱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여자관계를 캐기 위해 전화도청을 실시한 것은 물론 장○○ 장관의 캐비닛 안을 촬영하고 캐비닛 안에 있던 수표와 귀중품 등을 훔쳐오기도 했다고 한다(문일석 1996a, p104-110).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증언한 방○○이 이를 “장관급 이상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안겨 주었(던)…암행어사와 같은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문일석 1996a, p116).

13) 야당에 대해서는 직원의 직접 감시·전화 도청·내부의 정보원 활용·정당 출입자의 제보·경찰 등 타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의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야당의 내부 사정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경우 야당과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유사한 수단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정당·국회 활동 개입’ 부분 중 ‘최고 권력자를 위한 대여당 정치개입’ 부분 참조.

들의 비위사실(돈 문제·여자 문제·이권 개입 등)을 조사하여 이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제 각각의 하위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하위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혹은 정치적 전환국면에서 집중된 흔적이 엿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 중정부장이었으며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김종필에 대한 동향파악 기록이다.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공화당 의장에서 물러난 김종필과 김용태의 동향은 중정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특히 삼선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김종필 계열의 의원들과 이른바 4·8 항명파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의원들이 중요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우선 김종필(계) 동향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서들을 살펴보면 「전공화당의장 김종필 동향첩보 통보」(1969.03.21), 「김종필 동향 첩보 입수」(1969.03.18), 「국회의원 김용태 동향첩보 통보」(1969.04.09), 「김용태에 대한 첩보」(1969.04.04), 「개헌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1969.04.04), 「개헌논의를 위시한 정계동향보고」(1969.07.31) 등이 대표적 문서들이다.

특히 「전공화당 의장 김종필 동향첩보 통보」 문건에서는 김종필이 박종태·김용태와 만나 “개헌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 앞으로 만약 개헌의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자신은 표면에 나서 범국민적인 개헌반대투쟁을 벌일 결심”을 밝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5) 이렇게 수집된 비위조사 내용들은 삼선개헌·유신헌법 개정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반대의원들을 설득·협박하는 근거가 되었다(김충식, 1992a, pp400-406).

16) 1969년 2월 3일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김종필 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반대론과 민주적 후계자 선출론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김종필 계는 소위 ‘4·8항명파동’을 통해 권오병 문교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박정희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박정희는 단호히 대응하였고 4·8항명파동 직후 양순직·예춘호·박종태·정태성·김달수 등이 공화당에서 제명되었다.

1969년 8월 8일 작성된 「무소속 의원 동향」에서는 1969년 8월 8일 18시 서울시내 청진동 소재 모 식당에서 예춘호·박종태·정태성·양순직·김달수 등 이른바 4·8항명과동으로 공화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이 김종필 계열의 김용태를 만나 공화당에 복당하는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소속 의원들이 공화당 복당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동향」(1969.08.09)에서는 김종필과 청와대 이후락 비서실장이 김종필의 자택에서 30분 동안 요담한 사실과 삼선개헌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공화당의 윤천주·이영근·김우영·이승춘·신윤창·오학진·김종위 의원 등이 모 골프장에서 개헌문제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삼선개헌 표결이 이루어진 1969년 9월 14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당의원들에 대한 동향과악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한데 「공화당 일부의원 동향」(1969.08.28) 문건에서는 1969년 8월 27일 15시 청진동 소재 유명 한정식집에서 공화당 소속 중에서 개헌반대의견 소지자인 신윤창·오학진·윤천주·김성희 등이 모여 오는 30일에 있을 전당대회 및 국회에서의 개헌안 통과과정에서 취할 행동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1969년 8월 26일에는 무소속 김용태 의원 집에서 윤천주·현정주·신윤창 등이 조반을 같이하면서 김용태 의원의 개헌찬성권유가 있었고, 1969년 8월 25일 20시에는 윤천주 의원 집에서 현정주·이승춘이 모여 요직개편의 요구관철과 행동통일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기록들을 중정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삼선개헌 반대파들은 더 이상의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공화당 복당 등을 위해 개헌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동향」(1969.08.09) 문건에 기록된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락과 김종필과의 만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선개헌 국면에서 중정이 집권당 의원을 사찰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압박을 가한 사례는 끝까지 삼선개헌을 반대했던 정구영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이 담당했다. 정구영에 따르면, “김형욱은 협박이 주된 무기였고 이후락 실장은 타산적인 논리였다고 했다. 더러는 둘 또는 4인체제의 김성곤까지 합동해 셋이 함께 설득”했는데(이영석 편 1987, p262) 정구영은 협박을 주 무기로 했던 김형욱에게 고초를 당했다. 당시 정구영의 부인이 6월 중순경 재북(在北) 가족(정구영의 아들들) 문제와 관련하여 중정에 소환되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7월 초순에는 정구영 본인이 4시간 동안 중정 수사관들에게 심문을 당했다고 한다(이영석 편, 1987, p301). 이러한 사실은 이만섭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이만섭 면담기록 2007.06.20). 그러나 정구영은 끝까지 삼선개헌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중정의 협박을 받은 후 정계를 은퇴하고 1974년 1월 공화당을 탈당하게 된다.

삼선개헌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1969.10.17)된 이후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주요 동향을 파악했는데 「국민투표 후의 공화당내 구주류·주류계 동정」(1969.10.29)문서에는 국민투표 이후 공화당 내 구주류와 신주류의 동향과 함께 전 중정부장 김형욱과 10·2 항명파동의 주역인 김성곤이 야합을 기도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내 동정 첩보 통보」(1969.10.31)에는 국민투표 후의 공화당내 동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공화당내 구주류계 기용전망에 대한 첩보 보고」(1969.11.12)에서는 삼선개헌 국면 이후 공화당 당직개편의 전망에 대한 오치성 사무총장의 발언(신주류와 구주류의 안배문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1978년에는 삼선개헌을 찬성했다가 야당인 신민당에서 출당 조치되어 여당으로 온 성○○ 공화당 의원의 추문사건이 터지자 중정이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 근거 문서로는 「성○○ 의원 연고기업체에 대한 내사결과 보고」와 「성○○ 의원 추문사건에 대한 본부 지시」 등의 문서가 있다.

「무소속 및 공화당 일부 의원 동향」(1969.08.21)에서는 무소속 국회 의원 박종태·김달수·노학진·신윤창 의원이 김용태 의원과 벌인 다툼 등 4·8항명파동 이후 공화당 복당을 위해 절치부심하던 김종필 계열 무소속 의원들 내부의 알력과 다툼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하위유형은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다.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이나 주장 까지도 문제 삼아 이를 탄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이만섭 의원의 경우이다.¹⁷⁾ 1964년 10월 27일 공화당 이만섭 의원이 동료의원 45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남북 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자¹⁸⁾ 중정은 「이만섭 남북면회소 설치제안에 대한 배후조종내용」(1964.12.02) 문건에서 이를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내사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남북면회소 설치제안 부의에 대한 배후관계 내사보고」(1964.12.03)에서도 관련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만섭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은 공화당 당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방해했고 결국 결의안은 폐기 되었다고 한다. 당시 중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공화당을 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만섭 면담기록, 2007.06.20).

당시 중정 문서들의 존안형태를 보면 이 두 문서는 “수사기록존안원본” 서류철에 편철되어 있는데 문서구분이 “용공”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이만섭 의원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한 조사를 용공 여부 확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정이 이만섭 의원의 결의안 제기행위 자체를 용공행위로 단정한 것은

17) 공화당 이만섭 의원은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 파동, 삼선개헌 추진 당시 김형욱 퇴진과 4·8 항명파동으로 제명된 공화당의원 복당 등을 요구했다가 김형욱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등 중정과 악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정원 존안자료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확인된 사례만을 언급했다.

18) 남북가족면회소 설치를 제안한 배경과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만섭(2004)을 참조하고,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

아닐지라도 “좌경세력의 배후조종으로 친공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외압을 통해 결의안을 폐기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이만섭 공화당 의원에 대한 중정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공화당 의원 이만섭에 대한 동향보고」(1968.06.20)인데 이 문건을 보면 “(이만섭은) 신민당 국회의원 중 특히 조운형·서범석·정상구 등과 수시로 비밀회합을 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비밀정책 등을 누설하는 한편 중정에 대해서도 정치에 관여하여 제반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 부정적 평가 내용이 담겨있다.

세 번째 하위유형은 집권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파악이다. 즉 중정의 감시·사찰은 여당 국회의원 개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경우도 당의 운영 및 당직자들의 언동과 당내 역학관계 등 공화당 내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다.

단적인 사례가 「국회의장 개선설 첩보보고」(1969.03.22)인데 이효상의 불출마로 길00의 국회의장 피선이 유력하다는 내용의 첩보보고이며, 「공화당 총재 비서실장 신설에 대한 첩보 보고」(1969.10.25)와 「공화당 총재 비서실장 신설에 대한 첩보 통보」(1969.10.28)에서는 “공화당에서는 총재의 비서실장제 신설을 극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바 동 비서실장 제도가 실현되면 총재의 시책구현에는 큰 역할을 할 것이나 당의장은 사실상 우상화되는 폐단이 있을 우려가 농후하며 … 초대 비서실장에는 길00 의원이 유력”하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화당내 구주류계 기용전망에 대한 첩보보고」(1969.11.12) 역시 여당에 대한 중정의 감시활동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네 번째 하위유형으로는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수집이다. 이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여당의원만 수집한 것이 아니며 야당의원은 물론 반정부 인사들과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여당의원의 비위사실을 수집한 대표적인 사례는 위의 문건에서 총재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었던 길○○의 외국계 고급승용차 밀수사건 의혹을 내사했던 「민원서 처리결과 보고(일자미상)」라는 문서가 있다. 물론 이것은 중정이 먼저 길○○의 비위의혹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중정에 길○○에 대한 비위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내사한 것이다.

최근 정치사찰 중 주목할 것은 ‘미림’ 사건이다.¹⁹⁾ 2005년 7월 21일자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2년부터 안기부의 비밀도청팀 ‘미림’팀의 존재를 보도하면서 세간에 처음 공개된 이 사건은 1992년 안기부 ○○실 정보관에서 미림팀장으로 발탁되었다가 1992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림팀장에서 물러난 공○○이 해직 불복 소송을 통해 복직해 다시 미림팀장에 배치된 후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장래의 신변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도청 테이프 274개와 13권 정도의 녹취록인 이른바 ‘X파일’을 빼돌림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140여 일간의 수사 끝에 2005년 12월 14일 발표한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결과」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재건된 미림팀이 3년 동안 연인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한정식집과 골프장 등에서 주요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첨단 장비로 1,170여 차례 도감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안기부장의 주례 보고서 내용에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된 사실과 김현철의 측근이었던 김○○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과 오○○ 국내담당 차장이 김현철에게 미림팀의 도청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 사실 및 오○○ 전 차장이 당시 청와대 수석이었던 이원중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2월 7일 ‘미림팀’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1991.7경부터 1993.4경까지, 1994.7경부터 1998.2경까지 안기부 내 정보수집 조직인 일명 ‘미림팀’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흥업소·식당 등지를 근거로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19) 미림사건은 여당에 대한 사찰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여당에 대한 사찰로 분류했다.

대화를 도청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 하여 왔다고 밝혔다.²⁰⁾

이 같은 불법감청 활동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임동원과 신건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006년 7월 14일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안기부 시절인 1996년말 보고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개발계획에 따라 1998년 5월경 개발된 1세트의 감청장비를 사용하다가 R2 5세트를 추가 제작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12월경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CDMA Analysis System) 20세트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당시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는데 여기에는 야당 정치인은 물론 여당 정치인을 비롯한 정부 내 고위직 공무원과 대통령 친인척들도 포함돼 있다. 임동원과 신건은 이와 같은 불법감청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²¹⁾

물론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불법감청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청와대의 지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의 발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집권 정부의 조직적인 불법 도·감청 지휘 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2005년 8월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20)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05년 12월 1일 1심 판결(선고 2005고단4570, 4628 판결)과 2006년 2월 7일 2심 판결(선고 2005노4045 판결)이 진행된 후 2006년 6월 1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선고2006도1368 판결)되었다.

21) 이 판결문(2005고합1132)에 따르면 R2 6대에 입력된 여야정치인·언론인·경제인·언론인·고위공직자·대통령 친인척·시민사회단체 간부·노조간부 등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2001년 경까지 1,800여개였다고 한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0조의2 제2항)이 신설되자 2002년 3월 28일 신건 전 국정원장의 폐기결재를 받아 R2 및 CAS 감청장비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 국정원장인 임동원과 신건이 불법도청과 관련한 국정원의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의 문제로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앙정보부 시절 이래 40여년간 관행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에 대하여 불법감청을 행하였고, 이러한 관행을 끊지 못한 채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R2 및 CAS 감청장비로 불법감청이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감청 대상자가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내 고위 공무원·언론사 주요 간부와 법조인 등으로 광범위했던 점,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안기부장의 청와대 주례보고 내용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세였던 김현철과 청와대 수석에게 보고된 점 등은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최고 권력집단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나아가 이 같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최고 권력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나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1961년 6월 10일 중정 창설 이후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의 효시는 아마도 1962년 3월 22일 부정부패, 경제파탄, 정국불안의 책임을 지고 하야한 윤보선에 대한 자택감시에서부터일 것이다. 윤보선은 대통령직을 하야하고 안국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집 주위를 수십여 명의 정보원들이 둘러싸고 밤낮없이 감시를 계속했다...인근 높은 곳에서 집안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드나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받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청기로 집안의 대화가 새나가고 일거일동이 촬영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윤보선, 1966, p323).

전직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정치인들도 정치사찰의 대상이었다.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야당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은 다음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요 지도급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중 감시·사찰이다. 유진산을 필두로 김대중·김영삼·이철승·김상현 등의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졌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라 일컬어지는 김대중에 대해서는 확인된 자료의 양과 질 모두에서 야당 정치인 중 가장 집중적으로 정보가 수집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971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했다.²²⁾

둘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는 여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강도가 훨씬 강력했다. 국회에서의 발언은 물론 지역구에서의 발언도 문제 삼았고 그에 따른 제재와 보복조치가 뒤따랐다.

셋째, 기획 정치공작을 들 수 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 공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과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된 사건으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공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사건들인데 중정 문서를 통해 일부 그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여당의원과 마찬가지로 특히 야당의원들 및 야당 간부들에 대한 비위사실(돈·여자·이권개입 등) 수집이다.

먼저 첫 번째 하위유형을 살펴보자.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개헌·대통령선거 등 정권의 중요 변동 국면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 김대중·김영삼·양일동·유진산 등 대표적인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가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러한 사실은 중정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가장 먼저 확인된 사실은 야당 정치인 개인의 사찰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이다. 흔히 ‘○○○파일’로 세간에 알려진 정보기관의 개인사찰기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김대중·

22) 1973년 8월 8일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중정 정치개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김종필·윤보선은 말할 것도 없고 「김상현 관계철」, 「양일동 관계철」, 「장준하 관계철」, 「조봉암 관계철」, 「이철승 자료철」, 「유치송 관계철」, 「국내보안기본정보(인물편 예춘호)」 등이 대표적인 문건들이다.

「김대중 공화당 개헌기도 주장」(1969.04.22), 「김대중 측근에 “사꾸라” 경계론 대두(일자미상)」, 「김대중, 김홍일에게 중정법 개정 투쟁 촉구(일자미상)」, 「김대중, 김상현 對CIA 공세에 강경태도 고수(일자미상)」 등의 문서에서는 중정이 신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있던 김대중에 대한 동향파악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김대중 중정의 엄○○ 매수설 유포」(1971. 일자미상), 「김대중 선거 전략차질에 따른 대책수립에 부심」(1971. 일자미상) 등의 문서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 진영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인데 김대중 후보 진영의 선거전략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의 핵심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중정의 엄○○ 매수설 유포」 문건에는 “중정이 김포·강화사건으로 나(김대중)와 엄○○의 관계가 노정되자 엄을 신민당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바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²³⁾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은 유진산과 이철승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대표적 사례들로는 「신민당 유진산 의원 동향」(1968.01.18), 「전당대회를 위시한 유진산 동향」(1968.04.06), 「신민당 유진산 동향」(1968.05.03, 1968.05.09, 1968.05.10, 1968.05.20, 1968.05.22, 1968.05.23, 1968.05.28), 「유진산, 양일동과 회동」(1968.07.05), 「신민당 유진산 등 동향」(1968.07.26), 「신민당 부총재 유진산 동향」(1968.07.29) 등이다. 특히 1968년 5월 22일자 문건 「신민당 유진산 동향」에서는 유진산과 이철승의 내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1969년 10월 30일부터 1969년 11월 6일까지의 「수사공작 존안원본」 문서철에는 “사건명칭: 김영삼 의원 외 26명에 대한 기록”이

23) 중정은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엄○○을 활용한 후에도 엄○○에 대한 감시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선거참모 엄○○ 동향(일자미상)」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문건이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조총련 국회침투기도사건”과 관련하여 양일동·유진산 등에 대한 배후 조사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하위유형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를 살펴보자. 국회의원 특히 야당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과 통제는 중정은 물론 안기부 시절에도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 발언을 빌미로 한○○ 의원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하고 1982년 국회에서의 군인독재 발언 이후 간통현장을 덮쳐 구속한 사건이다.

1978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증거보강」(1978.01.12), 「한○○의 지역구 신년하례회에서 긴급조치 9호 관련 발언」(1978.01.18) 등에서 당시 중정이 언론을 통해 차세대 야당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던 한○○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⁴⁾

또한 한○○ 의원은 1982년 “월남이 망한 것은 경험 없는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해 독재를 했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럴 위험이 다분히 있다”고 발언해 당시 집권층의 노여움을 샀다. 발언 직후 1982년 6월 29일 1년 동안 남몰래 교제해왔던 현직 감사의 부인과 호텔방에 투숙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현장을 덮치고 비디오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한 이들은 안기부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복역한 뒤에야 출소했다(한겨레, 2005.05.24).

새로 드러난 사실은 안기부가 당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주저하던 피해남편(현직 감사)에게 한의원에 대한 고소를 종용했으며 이후 한○○ 의원을 간통으로 고소한 피해 남편에 대해 국비 해외유학을 알선하고 체재비 명목으로 안기부 자금 2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24) 前민한당 사무총장 신상우는 「고독한 증언」에서 정보부(안기부)가 민한당 창당 과정에서도 조직책과 공천자들의 선정 작업에 개입, 마음에 들지 않는 10여명의 조직책 예정자를 연행·조사를 하는가 하면 민한당이 유치송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할 당시 한○○ 의원이 후보 경선에 나서려고 했으나 “관계당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의원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할 태세로 나와 좌절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신상우, 1986).

확인되었다(「간통사건 관련자 한○○ 등 석방 동향 보고」(1983.05.21)). 더욱이 안기부는 피해 남편을 ‘강제로’ 해외 유학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도미계획 철회 경고 조치」(일자미상)).

1986년 10월 유성환 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통일국시 발언에 대한 안기부의 탄압도 대표적인 사례다.²⁵⁾ 안기부에서 1986년 10월 15일자로 작성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질의원고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보고」와 「유성환 용공발언 원고작성 관련혐의자 수사 상황보고」(1986.10.16)에는 유성환의 원고 압수 상황 및 배후색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하위유형은 기획 정치공작을 통한 탄압인데 대표적인 사건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칭 명동사건과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이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는 700여명의 가톨릭 신자들과 수십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사가 거행되었고 미사 도중 이우정(전 서울여대교수)이 ‘민주구국선언서’를 낭독했다. 함석헌·김대중·문익환 등 각계 인사들이 서명한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와 학생 석방, 집회·출판의 자유 보장, 의회정치 회복, 사법부의 독립 등 민주주의 구현과 파탄에 이른 국민경제와 부조리·부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희 정권은 퇴진하고 민족통일을 추구할 것 등을 담고 있었다.

이 날 기도회의 선언문 발표에 대해 정부가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자 20명이 긴급 조치 9호 위반혐의로 입건되었다.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전·현직 정치인과 종교인 등 지식인들을 투옥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977년 12월에 이르러 강력한 정적이었던 김대중을 제외한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사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25) 상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선거개입’ 과 ‘정당·국회 활동 개입’ 부분 참조.

이와 관련 1976년 3월 작성된 「수사기체 사건철(명동사건)」 문서에는 윤보선·김대중·정일형·함석헌·문익환·공덕귀 등에 대한 조사결과 요지와 담당관 처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명동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구속기소 혹은 입건구속 의견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동사건은 유신헌법에 의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긴급조치에 의거하여 중정이 관련자들을 수사 및 조사한 사건이다. 긴급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이므로 기획된 정치공작이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인 중정의 적법행위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²⁶⁾ 그러나 중정 등이 수사했던 사건들 중에는 완전한 무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을 빌미로 하여 이를 과장하여 확대 적용한 경우가 많다. 동일한 사건을 ‘단순한 시국선언’으로 보는 것과 ‘정부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 자체는 적법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인물들만이 관련된 사건을 주변 관련자에게 까지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한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은 1966년 1월 9일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이 박후양 등과 함께 정부 전복을 위한 5단계 혁명계획을 수립하고 학원방위군 배후조종과 폭발물 제작비 지원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1월 29일 국회가 김두한 의원 석방안을 가결시키자 상황은 역전됐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반국가단체구성에서 구성예비음모로 변경했다.

1966년 5월 10일 관련자 전원이 무죄 석방됐고 이 사건은 국보법을 이용한 정치공작 사례 중의 하나로 기록됐다. 「한독당내란음모사건 피의자 박후양 신원에 관한 첩보」(1966.08.31), 「한독당 내란음모사건 판결요지(수사)」(1966.10.11), 「(한독당 관련자) 감시결과보고」(1966.12.20) 등의 문건을 통해 확인되듯 이들이 무죄 석방된 이후에도 중정은 이들이

26) 적법행위가 곧 정당한 행위와 등치되지는 않는다. 긴급조치가 헌법적 권능에 의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 자체는 대표적인 악법이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란음모사건을 획책하였고 5단계 혁명 이론을 실천하여 정부를 좌경 전복코자 획책한 자(들)”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찰과 내사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독당 사건도 명동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정치 공작은 아닐지라도 조사과정에서 사건을 증폭하여 무리한 수사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독당 내란음모 사건으로 1966년 1월 9일 구속되었다 풀려난 한국 독립당 김두한 의원은 국회오물투척사건의 당사자가 된다.²⁷⁾ 당시 중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김종필 계를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두한 오물사건 배후수사보고」(1966.10.17)에는 “김두한은 71년도 대통령 후계자로 김종필을 옹립하기 위해서 67년도 국회의원 선거시에 김종필계 인사를 과반수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현 내각이 존속하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단정하고, 한비밀수사건 등으로 현 내각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악화된 시기를 이용하여 현 내각을 후퇴시키고 김종필계 내각을 수립할 것을 기도하는 작태와 김택상·오학진 등의 배후조종 하에 1966년 9월 22일 12시 45분 국회본회의 한비밀수사건 대정부 질의시에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살포하였다”고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김두한을 계속 심문, 김두한 면회자 언동 내사, 알리바이 조사(접촉인물 조사), 국회 내 발언 내용 검토, 전화 도청 등으로 가족 및 비서 등 친근자의 동태 파악”을 건의하고 있다. 이 문건 내용으로 볼 때 중정은 김두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김종필계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7) 1966년 9월 22일 삼성그룹 계열사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를 가장해 2,880만원 어치의 사카린 원료 ‘오스타(OSTA)’ 60톤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벌밀수사건에 대한 對정부질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때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정일권 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등 다수의 각료들을 향해 “이건 국민들이 주는 사카린이니 골고루 나눠먹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상자 안에 든 물통(파고다공원에서 퍼온 인분)을 들어 그 내용물을 국무위원석에 퍼부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으로는 야당의원의 비리 내지 약점을 조사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²⁸⁾

정보기관의 야당의원 비위조사의 경우 가장 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정치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정치자금의 조달경로를 파악하면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체로서 야당의원의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야당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 두 야당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한 중정의 정보수집과 대책 관련 문서들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중정은 이들의 정치자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내사와 세무조사 등 견제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야당총재의 정치활동을 통제하고 대통령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다.²⁹⁾

이밖에 야당정치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수집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J대상자 관계철」³⁰⁾에는 야당의원으로 김OO 의원과 신OO 의원, 여당의원으로는 삼선개헌 찬성론자였던 정OO 의원의 비위 관련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비위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정화 대상자에 대한 사찰 기록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J대상자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J대상자 조사계획 상신」(1972.11.10) 문건에 따르면 J대상자 조사는 “모집된 범죄사실 확인 수사, 자금 제공선 규명, 국정감사시 금품수수

28) 김상현 前의원은 “중정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정당의 당직자들 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한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사생활문제·정치자금 관계·여성관계 등 주변관계를 조사해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로 그걸 가지고 협박했다” 고 진술했다(김상현 면담 기록, 2007.05.22).

29)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정치자금 통제’ 부분 중 ‘야당 및 야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30) 관련문서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J대상자’ 는 ‘정화대상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적, 대정부 공격자료 제공선 규명(특히 공무원), KT(김대중) 비리 및 취약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계획문건에 따르면 J대상자에 여당 의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시 금품수수나 대정부 공격자료 제공선과 김대중의 비리 및 취약점을 강조했던 점으로 보아 주로 야당의원 그 중에서도 김대중 및 김대중 측근들에 대한 비위 조사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김OO 의원에 대한 비위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본명은 약 20년간의 야당정치활동을 계속하여온 극렬 야당골수분자로서 국회의원으로 재직 기간 중 동직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 또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음으로 입건 조치함이 타당하나 정치적인 보복이란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금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엄중경고하고 계속 감시 조치함이 가하겠습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비위첩보」(1972.07.28)에는 공화당 현OO 의원 등 3명과 신민당 김OO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의 비위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¹⁾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이들 의원들이 용자알선·알선수수·청탁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고 조사기간은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의 비위 기록이 담겨있다.

주목할 만한 문서는 「김형일 불순발언에 대한 조사와 본인 반성 각서」 관계철이다.³²⁾ 이 관계철에는 「김형일 비위사건 관련자」(일자미상), 「김형일 정치자금」(일자미상) 등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 이 문서는 여당의원은 물론 다수의 야당의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조사대상 기간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이고 작성시점이 1972년 7월인 점으로 볼 때 『J대상자 관계철』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32) 김형일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참모차장이었는데 당시 미군 매그루더에게 “박정희는 레프트다”고 발언함으로써 박정희와 정치적으로 줄곧 대립했다. 5·16 이후 군정에 반대하다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 자리에서 예편(중장)했다. 그 후 2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귀국하여 야당에 투신한 김형일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 때 민중당 전국선거구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6대 국회 때 원충연 정부전복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신민당후보로 고향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8대와 제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7년 신민당 정무위원, 1970년 신민당 당기위원장, 1971년 사무총장, 1974년에는 신민당 원내총무가 되었다. 9대까지 내리 4선을 하면서 신민당 원내 총무를 지냈고, 1978년 사망했다.

신민당 김형일 의원의 유신반대 발언을 대통령 모독발언으로 간주하여 즉각 김형일 의원의 개인 비위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김형일 의원을 협박한 후 반성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들어있다. 당시 중정은 김형일 의원 발언과동과 관련하여 정주영을 포함해 21명의 기업인과 공무원 그리고 김형일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을 조사하여 정치자금 조달 기업인들의 금품제공·청탁 등의 비위사실을 조사했고 김형일 의원의 비서였던 차진모 등 21명을 참고인 조사하여 김형일 의원의 대통령 모독발언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중정이 야당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모독발언으로 규정하여 21명의 기업인과 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김형일 의원의 비서 등 21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한 후 반성각서를 징구하고 발언과동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야당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함에도 이를 빌미로 수십 명을 조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정작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성각서를 징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서는 당시 정보기관의 부당한 정치개입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

김형일 의원 외에도 「불순발언」, 「불순발언 법적 검토」, 「국회의원 문제발언 수사상황 보고」(1979.06.23), 「민한당 의원 불순발언 검토보고」 등의 문건을 통해 정보기관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수사하고 법적 문제까지 검토하는 등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다수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적인 비위조사 문건으로는 「신민당 유진산 동향」(1968.05.03)이 있다. 이 문건에서는 유진산이 광업진흥공사에 유동열 명의로 용자를 신청, 사장을 2회에 걸쳐 방문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2차에 걸쳐 확인한 사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김상현 외상금 내사보고」(1975.05.01)에는 김상현 의원이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식당(주간 식당, 야간 요정)의 외상값을 갚지 않아 지배인이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택돈 비위혐의 내사 결과보고」(1976.01.29)에는 이택돈에 대한 범죄혐의를 내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기타 신민당의 동향과 신민당 간부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한 문건들로 「신민당 총재 동향첩보」(일자미상), 「신민당 동향보고」(일자미상), 「○○당 신○○ 의원 접촉녀 신원내사 보고」(일자미상), 「신민당 간부 비위」(일자미상) 등 4건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김상현 전의원이 면담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중정이 정치인들의 비위사실 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정치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악용했다는 사실이다. 여당위원의 경우 삼선개헌·유신헌법 반대 등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을 경우 이러한 ‘비위조사철’이 악용되었고, 야당위원의 경우 정권반대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혹은 야당의 내부정보를 얻기 위한 협조자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비위사실이 악용되었다.

또한 안기부가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회유와 협박의 수단으로 공직자로 복무하는 야당의원들의 친인척까지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당의원 공직자 친인척 확인보고」(1985.02.22)라는 문건에서는 야당 의원과 이들의 공직자 친인척을 연계관리하고 유사시 이들을 야당의원에 대한 순화건제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 |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³³⁾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중정은 반체제·반정부·반유신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가 올라올 경우 리스트에 올려 특별 관리했는데 장준하·윤보선·김대중·김영삼·함석헌

33) 반정부 인사 중 일부는 야당 정치인으로 ‘야당의원 사찰’ 과 중복될 수 있으나 반정부 인사가 야당의원 중 일부만을 의미하며 비정치인도 포함돼 별도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별도로 분류했다.

등이 제1의 관찰대상자였고, 문익환·백기완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p91).

중정에서는 당시 장준하가 백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이끌자 ‘위해분자’로 선정 감시했고 별도의 관리 파일이 중정 내에 존안 되어 있었다.³⁴⁾ ‘위해분자’ 선정과 감시활동 지시는 차장보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며 장준하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모○○ 국장이었고 실무책임자는 박○○ 계장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장준하의 “불순기도를 탐지하여 사전에 저지·와해·봉쇄함으로써 조직 확장과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 범법 자료를 수집하여 依法 처리코저 함”에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찰기간을 “1975.3.31~ 계획 종료 시까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준하와 관련 중점 수집 사항으로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개헌 청원 등의 행위, 국가원수 모독행위,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조작 운운 허위사실 유포행위, (장준하의) 형사입건 자료, 스캔들·약점, 긴급 조치 사범 중 석방자 선동자극 행위, 민주회복 국민회의 등 반체제를 위한 단체가입 및 권유행위, 유언비어 날조 유포 행위, 반체제 성명발표 행위, 기타 반국가적 불순특이 동향”이었다.

장준하에 대한 감시방법으로는 “관할 경찰서인 청량리 경찰서 정보과장을 조장으로 同名의 일일동향파악, 정보원을 통해 정치활동 및 불순기도 사전 입수, 우검(우편검열) 및 ‘감청’첩보를 분석하여 불순기도 탐지, 공개첩보(신문·방송·간행물 등)를 통한 동정 확인, 형사입건시의 자료 수집, 불순 용의점 파악시 미행 감찰하여 내사, 각급 첩보 보고서를 비교 검토·분석하여 동명의 기도를 파악”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정의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는 장준하를 비롯한 위해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위해 “관찰일지를 비치하고 동향의 기록

34) 이하의 내용은 장준하를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및 입건자료 구비, 특이동향 발생 시 즉보(即報), 공작필요시 보고 후 실시, 매주 토요일 특이동향 종합 보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장준하 사망에 의문을 제기했던 성낙오 기자(동아일보 1975.08.19)가 체포되었고 야당 지도자의 의문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1975.09.12) 파이스턴 이코노믹스 리뷰지(FEER)의 로이 황 기자에 대해 “경고조치토록 하고 검찰에 통보하여 입건여부를 검토케” 하는 「중요보고: 화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장준하 사망기사 게재 예정보고」(1968.09.06) 등 장준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통제했다.

당시 중정의 실무담당자였던 박○○에 따르면 위 문건 내용 중 “공작 필요시 보고 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의 의미는 “내부에 누군가를 침투시켜서 무슨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공작”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중정 박○○의 의문사위 진술).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위기상황과 장준하에 대한 국민적 신망, 박정희정권에 정면 도전한 1975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결 시까지 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건 시 필요한 범법 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장준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활동을 정지시킬 것을 목표로 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 수사를 전담하는 ○국에서 정보입수나 동향과악을 뛰어넘어 계획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무언가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이러한 감시활동을 통해 수집한 ‘장준하 관계철’에는 개인신상정보, 가족사항, 학·경력, 해외여행관계, 재산관계, 측근인물(김준엽 등 사상계 경영진, 윤보선 등 정계, 함석헌·천관우 등 재야인사), 정계진출경위, 배후인물, 전과사실, 특이사항, 그리고 1966년 1월경부터 1975년 2월 21일까지의 “특이동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중정이 작성한 장준하·계훈제·백기완 등 위협분자 미행감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해분자 미행감시 보고, 1973.12.29>

장 준 하		계 훈 제		백 기 완	
시간	동향	시간	동향	시간	동향
08:35	자가에서 백기완의 방문을 접함	09:40	자가 출발	08:15	장충동 자가 출발 서울1사6728편으로 시내 동대문구 면목2동 장준하가 도착
11:05	서울1나5927편으로 백기완 동승하고 자가 출발	10:40	버스 편으로 용산구 원효로 소재 함석헌가 도착	13:50	서울1나5927편으로 장준하와 동승 시내 충무로 1가 24-30 소재 진영빌딩 앞에서 하차 하여 백범사상연구소 도착하여 근무
11:29	백범사상연구소 앞에서 백기완 하차	14:05	버스 편으로 동가출발	14:35	미상남 약 40대 2명과 명동 소재 “○○” 다방에서 교담
11:38	통일당 중앙당사 도착	16:55	종로 소재 “○” 다방에 도착 40대 미상남 1명과 교담	14:50	미상남 1명과 접촉
14:45	당사 출발	18:00	도보로 YMCA 612호실 도착 백낙준·이인· 천관우·함석헌 등과 청원서명운동에 대한 대책 협의	17:05	37세가량 미상남과 명동 “○○” 다방 에서 교담 귀소
15:00	YMCA 612호실 도착 하여 백낙준·유진오, 이인·천관우·계훈 제 등과 청원 서명 운동에 대한 협의	18:35	동소출발 서울1나5927(장준하 소유) 편으로 원효로 함석헌가에 함석헌 하차 시킴	17:30	40대 미상남 2명과 명동 칼국수집에서 소수 2명 놓고 교담
16:55	함석헌·계훈제 동승고 자가용 편으로 YMCA출발	18:57	불광동 천관우가에 장준하와 같이 방문	20:30	충무로 1가에서 시내 좌석 버스 편으로 귀가
17:30	원효로 4가 소재 함 석헌가 앞에서 함석 헌을 하차시킴	19:05	동가출발 종암동 고대 앞에서 하차 귀가함		



18:00	불광동221-24 천관 우가에 계훈제와 함께 방문				
18:35	동가 출발				
18:57	종암동 고대 앞에서 계훈제 하차시킴				
19:10	자가 도착				
19:32	서울 1나 5927 공차로 자가 출발(운전수 장준하 장남 호권)				
20:00	명동소재 ○○주점 도착 24세가량 미상남 4명(호권 친우로 추정)접촉				

또한 중정은 1975년 8월 18일 07:00~23:00까지 장준하의 상가를 다녀간 인사들의 명단을 「중요보고」(1975.08.19)의 형태로 보고했는데 동 보고서에는 시간대별로 장준하 상가를 방문한 인사들 120명의 직업과 이름 조의금 액수(420,000원, 미상 50명 제외)까지 파악하고 있다.

중정은 장준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동향을 감시했는데 주로 전화감청기록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장준하의 부인과 장남의 동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1976년 작성 「장준하 관계철」 문건 참조).

이외에도 장준하·계훈제·백기완·김철 등 소위 위해분자로 분류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개인별·일자별·시간대별로 감시보고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해분자 주간동향 보고” 등을 통해 한 주간의 동향을 요약·정리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한독당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정은 한독당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자들을 내사했는데 「감시결과보고」(1966.12.20) 문서에는 한독당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되었던 황용주·김경송·김철·박상원·박후양·송원도·김두한·김재호·박치덕·전평배 등에 대한 감시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일중요보고」(1965.06.29)에는 장택상의 동향(한일회담 반대 범투위 성토대회 준비), 김재만의 동향(한일회담 비준반대 청년 서클 결성), 이길영의 동향(민사당 창당 발기인 참여), 정화암의 동향(민사당 창당발기 대책회의 개최), 황성모 교수의 동향(한일협정관련 언동)은 물론 당시 수감되어 있던 윤길중·고정훈·김달호·이재훈·유근일·권대복 등 범혁신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야단체에 대한 정치사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1964년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쫓겨했던 ‘6·3시위’ 참가자들이 결성한 단체인 ‘6·3동지회’에 대한 사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당시 중정이 생산한 「6·3동지회 관계철」(1965.03.03-1965.12.11)을 보면 중정이 6·3동지회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3동지회 관계철」(1965.03.03-1965.12.11)에는 6·3동지회의 활동은 물론 회장 이재우와 이원범을 비롯해 이세환·박동인·김경남 등 모임을 이끌던 주요 활동가들의 동향을 사찰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특히 「6·3동지회 동향」(1965.03.15) 문건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동국대·성균관대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6·3동지회 회원 150여명이 민주통일국민협의회에 가입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내용 등 6·3동지회 결성 초기부터 모임의 주요 활동과 참여자들의 활동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3동지회 관계철」보다 체계적이고 방대한 사찰자료는 「교수관계철」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3공화국 시절에도 교수 및 교사들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 집단이었다. 일부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적 정치기획을 통해 정치예비군집단으로서 기능하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35) 6·3 시위의 배경과 전개, 6·3동지회의 결성과 활동약사에 대해서는 『6·3동지회(2001)』를 참조.

이러한 이유로 당시 중정은 지식인 사회의 동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수관계철」(1965.03.08-1965.12.31)에는 다양한 성향의 교수들에 대한 동향 파악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중정의 사찰 자료에는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교수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상당수의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중정은 정권에 대한 지지·반대 차원을 넘어 지식인 사회 전반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교수관계철」에는 48건의 동향 및 사찰기록이 남아 있는데 주요 내용은 교수들(일부 고교 교사 포함)의 언동(박정희 등 정치인·현안 문제·정세 관련 언동 포함),³⁶⁾ 문제 학생 접촉 및 방학 중 문제 학생 선도활동 동향,³⁷⁾ 교수협의회(서울대 등) 운영 동향은 물론 심지어 교수들 간의 교우관계, 교수들의 출신성향³⁸⁾ 분석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중정의 사찰대상이 되었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재야 단체는 종교단체였다. 안기부는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단체에서 1987년 내각제 개헌저지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들의 동향파악은 물론 서명운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사찰했다.

「개헌저지서명운동 관련 개신교 문제단체 확산대처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1987.일자미상), 「개신교 문제권 소위 내각제 개헌저지 서명운동

36) 예컨대 김○○ 교수가 “이승만은 민족적 영웅이다” 고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인 「서울문리대 김○○(1965.07.21, 1965.07.23)」을 비롯해서 중앙대학교 김○○는 “남로당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고 농촌연구소 사무실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같이 교도소 생활을 한 이재문 등 동료분자들과 안병덕(김포에서 남로당) 등 좌익계 인사와 비밀리 연락을 유지하면서 현재 두각을 나타낸 혁신계는 전부가 금력에 이끌리는 ‘사꾸라’ 라고 지적하고…우리가 제기할 때는 내년(66년) 4월을 전후한 것임을 밝히면서 일체의 표면적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김○○(1965.10.17)」).

37) 예컨대 서울대 황○○ 교수에 대한 사찰기록(1965.07.19, 1965.07.20, 1965.07.21, 1965.11.25)은 물론 박○○·황○○·김○○·서○○·양○○·양○○ 등 동향(1965.10.21, 1965.10.26, 1965.12.03) 그리고 방학 중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도여행 활동 동향 문건으로 「서울문리대 김○○ 교수 지도여행 출발」(1965.07.28), 「연세대 이○○ 교수」(1965.07.27) 등의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38) 예컨대 「전남대 교수동향」(1965.07.20)에는 “정○○는 6·25 당시 북한의용군에 입대하여 포로가 된 후 제주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자” 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자 분담관리계획」(1987.일자미상), 「개신교 문제단체 활동 확산 견제 대책」(1987.일자미상), 「개신교 문제권 내각제 개헌저지 서명운동 관련 대책회의 결과」(1987.일자미상), 「개신교 문제권 내각제 개헌저지 서명운동 확산관련 집회저지 대책」(1987.일자미상)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개신교 단체의 내각제 개헌저지 서명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안기부의 의견과 대책을 담은 다수의 문건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정치개입의 사례임을 부언할 필요가 없다.³⁹⁾

우리는 「6·3 동지회 관계철」과 「교수관계철」, 「개신교 단체」 문서를 통해 그 동안 존재했던 수많은 정치단체들과 집단에 대한 중정과 안기부의 사찰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3 동지회 관계철」과 「교수관계철」, 「개신교 단체」 문건의 내용을 통해 추론컨대 다른 정치단체와 사회집단들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활용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수집하는 정보 또한 없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특히 그렇다. 일상적 정보수집 영역과 정치개입 영역과의 경계란 매우 모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사례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업무라기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개입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 결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반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사찰과 탄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집권당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은 다시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눌

39) 종교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한 사례는 국정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정 ○○실장 출신 방○○의 증언에서 드러난다. 방○○은 그의 회고록에서 “윤보선 당락의 결정적인 요인인 5백만 기독교 신자를 정치중립화시키고, ‘염광회’ 를 분쇄시키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고 증언했다.(문일석, 1993, pp301-320)

수 있는데 중요한 정치적 국면 예컨대 삼선개헌이나 유신 등의 시기에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권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정치공작을 수행하는 경우, 집권당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통제, 집권당 내부 동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집권당 의원들에 대한 비위사실 수집 등이 그것이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역시 네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주요 지도급 야당의원들에 대한 집중 감시,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 야당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획 정치공작, 야당의원들의 비위사실 수집을 통한 정치적 악용이 그것이다.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은 물론 반정부인사 즉 재야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도 이뤄졌다. 대표적인 재야인사인 장준하의 경우 당시 중정이 장준하를 ‘위해분자’로 분류하여 백기완·계훈제·김철 등과 함께 특별사찰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재야인사들의 경우 일일사찰결과보고에서 주간·월간사찰결과보고 등을 통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사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미 마무리된 사건 관련자들과 심지어 수감 중인 재야인사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기타 ‘6·3 동지회’, ‘개신교 단체’, ‘교수집단’ 등 정치인 및 정당과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집단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동향파악과 감시가 이루어졌다.

재차 강조하지만 중정·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기관은 정보수집권한을 갖고 있다. 관련법상 정보수집은 국외정보가 주를 이루어야 하고 국내정보의 경우도 보안정보 즉 반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배포의 권한만을 갖는다.

다만 국내 보안정보 업무가 불가피하게 정치 분야에서의 정보활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록 정치인들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중요한 정보가 정치권으로부터 생성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치분야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것은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할 정보기관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일상적 정보수집과 보안정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정보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인 및 정당·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은 비밀스러운 사찰의 방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통로와 공개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정보 업무를 위해 집권당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권 야당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적인 정보역량 강화 기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정보 활동을 명분으로 일상적 정보 수집 활동을 정당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국정원은 대북 보안정보 활동만으로도 국내 정치권에 대한 북한의 침투공작을 차단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국 정보기관이나 외국공관의 대정치권 정보활동이 국내 보안업무와 연동되는 경우도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은 타국 정보기관이나 외국공관에 대한 정치정보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보안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정치정보 활동은 보안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엄밀하게 국한되어야 하고 국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정보 활동은 공식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을 통해야 하며 대북 및 타국에 대한 정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이 무차별적이고 무소불위의 것이었다면 오늘날 국정원의 정보활동은 목적과 수단

에서 정당해야 하며 관련법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외에는 어떠한 불법적 정보활동도 행해서는 안 된다.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잘못된 활동이 사용자의 의지와 밀접히 관련이 있지만 모두 ‘사용자의 의지’에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매일 매일 수집하는 정보들이 모두 사용자가 수집을 지시한 정보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러한 조직내부의 문제들은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특히 의회를 통한 통제의 강화가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실제 감시가 이루어질 때보다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공포심이 배가된다. 감시에 대한 공포는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것이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존재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다. 이 경우 국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는 병립할 수 없는 제로섬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실천을 드러내는 이유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국가정보기관과 국민이 감시와 통제가 아닌 신뢰와 성원에 기초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번 조사가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Ⅲ 選舉 介 入

1 서 론

이 장은 과거 정보기관의 부당한 정치 분야 활동 중에서 선거 개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이 공존하고 있지만 공정한 선거 절차의 확립이 해당 국가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제 1의 척도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선거란 어떠한 정치세력이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정을 담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제도이므로 다른 어떠한 제도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구성되므로 선거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는 곧 헌법적 가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 준하는 나아가 헌법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근본 제도이다.

헌법적 가치를 지닌 선거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본다면 한국의 선거 정치는 중정에서 안기부 시절까지 공정한 선거 절차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결손을 내장하고 있었다.⁴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과 중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이다.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최고 권력집단의 의지를 국민의 의사에 반해 관철하기 위해 선거를 수단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정보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40) 중정과 안기부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정원으로 탈바꿈한 이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최소한 현재까지 없다. 다만 최근에 야당으로부터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는 하다.

규범인 헌법의 기능 정지에 해당하는 반(反)민주적·초헌법적 부당 행위라 할 것이다.⁴¹⁾

1961년 6월 창설된 중정과 동 조직이 1980년 12월 확대·개편된 안기부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아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않은 (초기 민주화)시절에서 정보기관의 존립 이유와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에서도 ‘선거개입’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그동안 정보기관 관련법 어디에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처음부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유도하고자 기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권력집단이 정해지는 과정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이다. 이 과정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권력의 행위에 의해 왜곡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정된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통치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불이익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다른 여러 활동이 주로 권한의 오용과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된다고 한다면 선거에 대한 개입은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원천적으로

41) 이 글에서 말하는 선거 개입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투·개표가 이루어져 당선자가 확정되는 선거 운동 기간에의 개입을 의미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다.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선거 개입이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국회·정당·정치인·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통제, 부당한 정치자금 사용 등도 선거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다. 정치 분야 조사에는 정치인, 정당·국회, 정치자금 등에 대한 정보기관의 부당한 활동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말하는 선거 개입은 협소한 의미에서 이해되는 선거 운동 기간의 선거 개입과 선거 운동 이전에 선거의 규칙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보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 그리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기획 등에 그 범위를 한정한다.

허용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즉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언어의 낭비다.

이 글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가 정권의 부당한 지시 내지는 과거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에 의해 행한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환기시키거나 새로이 밝히고자 한다.⁴²⁾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정권의 안보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능하는 정보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관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는 권력자의 의지에 종속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보 활동에 주력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부터 1987년 13대 대선 전까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의 정당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관철되었고, 총선의 경우에도 주기적인 선거가 행해졌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특성상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조사는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간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사례를 연대기적 방식이 아니라 유형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다소 혼란스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의 동향을 조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42) 혹자는 과거 정보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최고통치권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많은 경우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생성된 제도적 기관은 자신의 존립 기반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관행'에 기초하여 집권자에 대한 과잉충성 내지는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한 자기 활동 강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중정이나 안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유형과 사례

정보기관의 부당한 선거 개입 유형은 과잉 단순화와 중첩의 위험성이 있지만 대략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기관이 선거 업무를 총괄하여 주도하거나 관리한 유형이다. 박정희 정권이 중정을 설치한 이후부터 안기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사례(주로 대선)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1960년 제 4대 대선(3·15 부정선거)까지의 선거는 주로 내무부 혹은 여당에서 직접 주관했다고 한다면 1963년 제 5대 대선(1963.10.15) 부터는 정보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총괄하거나 관리했다고 할 수 있다.⁴³⁾

둘째, 선거 시기에 이루어진 정보기관의 판세 분석과 정치인 사찰 유형이다. 선거 기간 동안 자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판세 분석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 정보기관은 특히 총선 시기에 여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거 기간 중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지속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 공작 유형이다. 과거 정보기관은 경쟁력 없는 야당 정치인을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분열된 야당 후보들의 단일화를 막기 위한 공작도 펼쳤다. 또한 총선에서 야당의 결집을 막기 위해 여당에 협조적인 관제 야당 지원 공작을 펼쳤다.

넷째,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후 공작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단순한 선거 개입과 달리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이미 결정된 선거 결과를 뒤집는 헌정 파괴 행위를 정보기관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섯째, 타 국가기관과의 공조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로 알려진 안기부 주도의 선거 개입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43) 연기군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하여 한준수는 2007.5.29 실시한 면담에서 자유당 때에는 선거 부정을 내무부하고 경찰이 주도한 반면, 5·16 이후에는 중정과 안기부에서 주관했다고 진술했다.

여섯째, 후보자에 대한 압력 행사와 낙선 공작 유형이다. 여기에는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 공작이 해당된다.

일곱째, 선거 시기와 제도의 변경 및 유지 유형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있어 선거 시기나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권력구조(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의 변경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과거 정보기관이 선거 시기를 조정(12대 총선, 지방선거)하거나 권력구조를 변경(내각제 개헌)하거나 독재 정권의 제도를 유지(4·13호헌 조치)하는데 깊이 개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7가지 선거 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서술한다.

가 선거의 총괄적 주도 및 관리

정보기관의 선거 주도 및 관리 유형은 나머지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유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유형들도 결국은 정보기관이 주도한 선거 관리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 포함된 사례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총체적 부정선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는 1963년 제 5대 대선(1963.10.15), 1967년 제 7대 총선(1967.06.08), 1971년 제 7대 대선(1971.04.27), 1987년 제 13대 대선(1987.12.16), 1995년 제 1대 지방선거(1995.06.27)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1) 1963년 제 5대 대선과 1967년 제 7대 총선

1963년 제 5대 대선과 1967년 제 7대 총선의 경우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여러 공개 자료는 이들 선거에서 중정이 선거를 주관했음을 밝히고 있다.

양성재(1987)와 김정재(1991a)는 1963년 제 5대 대선에서 박정희측 선거 운동을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이 주관했음을 밝히고 있다.⁴⁴⁾ 김정재(1991a)의 글은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의 회고록이다. 이 시기 김형욱의 대선 공작은 야당 후보의 분열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선거 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1967년 실시된 제 7대 총선은 많은 연구와 공개 자료들에 의해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을 위한 국회 내 개헌선 확보를 목표로 부정이 획책된 선거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공공연한 관권 개입과 금품수수, 각종 선심공세와 향응 제공,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대리투표·공개투표·무더기표·폭력행위 등 온갖 부정과 타락이 공화당 측에 의해 자행되었다(노가원, 1994a, p332). 당시 중정의 위상으로 보아 이 선거에서 중정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 정구영(鄭求瑛, 1899~1978)과 양순직(楊淳植) 등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의 회고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한다.⁴⁵⁾ 두 사람의 회고록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당시 김형욱 중정부장이 6.8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증언하고 있다.⁴⁶⁾

또한 6·8 부정선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김영삼 등이 출마한

44) “김형욱은 부임하자마자 정보부를 선거체제로 개편하기 시작했고 내무·법무 등 선거유관 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 입후보자 등록이 끝난 직후 김형욱은 선거 관계대책회의를 소집 박후보 당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과 묘안들을 강구했다”(양성재, 1987, pp123-124); “혁명정부 측의 대통령 선거를 사실상 중정이 주관하였고, 충격과를 몰고 온 동아일보 호외의 지방배포를 방해하였고, 말썽의 주인공 김사만을 남한산성으로 연행했던 사실들에 대하여 한 가닥 꺼림직한 기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김정재, 1991, p75).

45) 정구영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963년 5·16 쿠데타 주도세력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초대 총재로 추대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인물로 제 6대, 7대 국회의원(전국구)을 지냈으며, 양순직은 제 6대, 7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공화당 재경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은 당시 억압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야당 인사들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46) 정구영의 회고록 “6·8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무장관·정보부장이 관리를 선거에 동원하고 중앙관서 관리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출장 보내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부정을 하고 무리를 했어. 그 결과 공화당은 압승을 했어. 아니 압승을 만들어 낸 거야 … 공화당이 3분의 2선을 넘긴 거야”(이영석, 1987, pp171~172) 및 양순직의 회고록 “정보부장·내무장관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가 선거운동에 동원되었다”(양순직, 2002, p144).

지역구 7곳을 ‘정책지구’로 선정하고 김형욱 부장과 엄민영 내무장관에게 반드시 떨어뜨릴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김충식 1992a, p139). 이 내용은 김대중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김옥두의 회고록에서도 확인된다(김옥두, 1999, p31).

공화당의 불법선거로 인해 선거에서 대패⁴⁷⁾한 신민당은 선거 직후 제 7대 총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이전 음모, 부정불법 선거 운동 사례, 투개표 조작, 언론 탄압,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부정 사례를 폭로하는 「6·8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한다. 이 백서에서 신민당은 경기 제 6지구⁴⁸⁾와 강원 제 5지구⁴⁹⁾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중정의 선거 개입 사례로 규정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본다면 1963년 제 5대 대선과 1967년 제 7대 총선에서의 중정의 선거 주관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1963년 제 5대 대선과 1967년 제 7대 총선과 관련된 국정원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2) 1971년 제 7대 대선(1971.04.27)

10월 유신으로 가는 마지막 대통령 직선제 선거였던 1971년 제 7대 대선은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 간의 대결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 중정부장은 이후락이었는데 미(美)국무부 정보조사국(BIR)이 1970년 12월 28일 작성한 비밀보고서 ‘정보노트’에는 이후락의 정치적 역할을 “박 대통령이

47) 공화당은 개헌선(117명)을 훨씬 초과하는 130석(전국구 27석, 지역구 103석)을 차지했으며, 신민당이 44석(전국구 17석, 지역구 27석), 대중당이 1석을 차지했을 뿐 나머지 군소정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하였다.

48) 경기 제 6지구(연천·가평·포천) 중정 오모 중령(근무과장으로 인지함)은 공화당 후보 오치성의 친족이라는 명목 하에 선거기간 동안 포천을 중심으로 연천·가평 등지에서 정체 불명(추측컨대 모기관원으로 보임)의 사람들과 주재 선거운동을 하였다(신민당, 1967, p43).

49) 강원 제 5지구(영월·정선) 중정 영월 정선 파견관 황모 외 1명은 영월읍 영흥 1리 소재 동림여관에 투숙공작반을 조직하고 치안국에 근무한 바 있는 조재용을 앞세워 신민당 간부 김진억·홍순원·조종호 등을 매수 탈당케 하고 신민당 선거위원 등을 매수하여 조직 활동을 마비시켰다(신민당, 1967, p43).

내년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책임자로 이후락을 지목해 중정부장에 임명한 것”(이홍환, 2003, p140에서 재인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⁵⁰⁾

이후락의 대선 임무 중 하나를 소개하면 중정은 김대중 연설 청중 숫자에 대한 보도통제를 실시했는데 중정 차장보 등이 직접 <동아일보>를 드나들며 김대중의 선거 유세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도에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때문에 4·27 선거를 열흘 앞두고 기자들의 불만이 폭발 ‘정보요원의 신문사 출입금지’, ‘정보부의 언론간섭 중지’를 결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김충식, 1992a, p301).

김옥두는 중정이 영남지역에서 행한 흑색선전에 대해 회고하고 있는데 영호남 간의 지역 대결 양상이 나타났던 1971년 대선에서 중정 요원들이 공화당 당원들과 함께 경상도 지역에 선거 1주일 전에 흑색유인물을 살포 하면서 영호남의 지역대결을 인위적으로 조장했다고 한다(김옥두, 1999, p86).

이상의 공개 자료를 뒷받침하는 「풍년사업」(1971.04.20)이라는 중정 문건에 따르면 중정 요원이 동경에 거주하는 조○○이라는 인물을 접촉 하여 당시 김대중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던 “남북교류·4대 강국에 의한 불침 언약·예비군 폐지·학원 교련 중지 선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후 “71년 4월 21일 야간을 이용하여 전화로 자기 가문에는 김대중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971년 4월 27일 제 7대 대선을 앞두고 4월 20일에 이루어진 공작 보고 문건은 당시 중정이 김대중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공작을 선거 운동 기간에 진행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주며 이러한 공작이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건은 ‘풍년사업’이 ‘이후락 중정부장이 평양에 다녀온 직후인 1972년 5월 경부터 준비한 유신공작’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자료다.⁵¹⁾ 이 문건에 근거한다면 풍년사업은 1972년 5월이 아니라 이미

50) 김형욱도 박정희가 “71년 선거의 총사령탑으로 이후락을 선택한 것” 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김경재, 1991b, p73-74).

51) 기존 문헌들은 공히 풍년사업이 1972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 ‘풍년사업’

1971년 대선 이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된 중정의 공작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 하 중정의 유신공작 구상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보다 앞당겨 져야 할 것이며 1971년 대선 개입은 보다 넓은 시지평을 가진 ‘풍년사업’의 다양한 공작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3) 1987년 제 13대 대선(1987.12.16)

1971년 대선이 10월 유신으로 명맥이 끊긴 마지막 대통령 직선제 선거였다면 1987년 대선은 10월 유신에 의해 도입된 반민주적 대통령 간선제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압력에 의해 폐지된 후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다. 동시에 민주화 이후 첫 번째 대선은 중정에서 안기부로 명칭을 변경한 정보기관이 다시 대통령 선거를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한 첫 번째 선거로 기록된다.⁵³⁾

13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평화민주당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백서는 13대 대선을 선거라기 보다는 내무부·지자체 등 행정조직과 정보기관·軍·선관위·농협 등 정부산하 기관까지 동원된 공작이요 위조된 작품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이라 명명된 유신공작은 72년 5월경부터 이후락 중정부장 주도 하에 이뤄졌다.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 직전이었다”(동아일보, 2002.10.15); “박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미 72년 5월부터 풍년사업이란 암호명 아래 유신 헌법 작성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한국일보, 1999.09.14); “많은 증언과 자료 등에 따르면 ‘풍년사업’은 이후락이 평양을 다녀온 뒤인 72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노가원, 1994, p147); “72년 5월 HR[이후락 : 인용자]이 평양을 갔다 온 뒤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암호명은 풍년사업이었죠”(김진, 1992, p204).

52) 혹은 1971년 대선 공작 명이었던 풍년사업이 대선에서의 위기감을 느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유신공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53) 당시 안무혁 안기부장이 선거운동 전반을 컨트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병상 1995, p210).

54) 그것은 선거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작이요 위조된 작품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 선거에 참여했고 또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당락 폭의 차등까지 이 공룡조직의 수중에 달려 있었다는 바를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직과 권력기구로서는 내무부 산하 20만 직원과 경찰요원 15만을 비롯하여 안기부·국방부·보안사령부·선거관리위원회·지방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인 농협·농조·산림조합·보건소 등등 도합 50만 명으로 추정된다(평화민주당, 1988, p13).

이 백서는 안기부를 다른 권력기관들과 함께 거명하면서 가시적 부정 선거의 실태를 선거운동과정·선거인 명부 작성·부재자투표·투표·개표·무효표 조작 등으로 구분하여 수많은 선거부정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직접적인 개입 사례를 적시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공개 자료 중에서 주목할 것은 한 전직 안기부 직원이 8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선거대책반을 운영했으며 야권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다.⁵⁵⁾

안기부는 공식적인 선거대책반 이외에도 안기부 특보팀에 있었던 박철언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 박철언은 ‘월계수회’라는 비공식적 사조직을 조직하여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을 하였는바 그는 이를 자신의 회고록에 서술하고 있다. 그가 ‘노태우를 위한 특공대’라고 명명한 ‘월계수회’는 1987년 8월 20일부터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에 투입될 사조직 요원 양성과 노태우 후보 유세 때 청중 동원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박철언, 2005, pp269-289).⁵⁶⁾

당시 안기부에서 생산된 문건들은 13대 대선 당시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잘 보여준다. 13대 대선과 관련된 안기부 문건들은 대부분 ‘상록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즉 안기부는 ‘상록사업’이라는 공작 명으로 13대 대선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관리한 것이다.

상록사업과 관련된 일부 문건들의 제목이 ‘일일보고’와 ‘주간 추진 동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안기부가 일자별·주간별로 13대 대선 공작 상황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보여 준다. 이 문건들에는

55)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부산지역을 방문하던 날 우리는 부산시내에서 YS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지금 생각해 보니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었던 것 같다” (이병도, 1995, p292).

56) 당시 선거 개입에 대해 박철언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사실 당시 나와 우리 특보팀원 들로서는 일생을 건 모험이었다. 공무원 그것도 안기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직접 관여 했으니 만에 하나 패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도 끝일뿐더러 사법 처리까지 감수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철언, 2005, p274).

특정 종교단체 자금 지원 및 특정 협회 경비 지원 내역, 특정 단체에서의 시국 강연과 노태우 후보 지원 요구, 안기부 직원 및 가족들의 대민 접촉을 통한 선거 운동 성과, 사업장 근로자 득표율 제고 대책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⁵⁷⁾ 예를 들어 충북분실이 충북지역 역술인 등 300명이 참석하는 안보정세 보고회를 열고 노 후보 지지를 결의토록한 뒤 소요경비 111만원을 전액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대 대선 직후 작성된 안기부 문건 「대선 압승 이후 부내 동정 및 직원 반응」(일자미상)⁵⁸⁾을 보면 안기부의 적극적 선거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대선 압승 이후 부내 동정 및 직원 반응

- 부내는 지난 12·16 실시한 대선 압승과 부장님의 격려금 지급 등으로 전 직원이 피로도 잊고 자축 분위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
- 산하부서는 대선 이후에도 KAL기 폭파사건 범인 마유미 수사, 대선 후유증 조기 수습, 총선 업무 대비 및 대간첩 대책 중앙회의 준비 등 각종 현안 업무로 휴식 없이 연일 소관 업무 수행에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실 및 ○○ 직원 들은 금번 대선을 압승으로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향후 당부의 기능 재조정시 국내 보안정보 분야의 변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 다소 불안한 근무동정을 시현하고 있으며 ...

이 문건에 따르면 안기부는 선거 결과를 ‘대선 압승’으로 표현하면서 자축하고 있는데 이는 안기부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자기 측 후보의 당선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당시의 정황을 잘 보여준다. ○○실 및 ○○ 직원들이 “금번 대선을 압승으로 이끄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고 한다면 안기부는 기존의 부서 혹은 대선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만든

57) 당시 안기부 문건들의 제목은 「상륙사업 일일보고」(1987.10.15), 「상륙사업 주간 추진 동향」(1987.10.19), 「직원 및 가족 상륙사업 전위활동 추진 결과 보고」, 「사업장 근로자 득표율 제고 상의 문제점과 대책」(1987.12.08) 등이다. 「직원 및 가족 상륙사업 전위활동 추진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이 사업은 1단계(1987.09.23-10.11)와 2단계(1987.10-11.14)로 추진되었는데 그 성과로는 직원과 가족이 11,088명을 접촉하여 46,600명의 지지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58) 제목과 일자가 미상이지만 12월 16일 대선 및 KAL기 폭파사건이라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1987년 제 13대 대선 직후에 작성된 문건이 확실하다.

특별 부서를 통해 노태우 후보의 당선에 많은 기여를 할 정도로 13대 대선에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선 업무 대비”라는 구절은 안기부가 대선에 이어 1988년 제 14대 총선 업무도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⁵⁹⁾

4) 19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06.27)

김영삼 정권 시절에 이르러서는 안기부가 노골적인 선거 총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여당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선거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오찬 및 업무보고」(1995.01.20)⁶⁰⁾라는 문건을 보면, 제 1회 지방선거에서 운동권의 활동 전망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안기부 심○○ 국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재야운동권의 연합체인 전국연합을 비롯해서 한총련이라든가 각급 운동권 단체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목표를 반민자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여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 선거 분위기가 상당히 혼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갖춘다는 차원에서 예방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대처해서 문제권의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가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나갈 각오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쿠데타나 폭력혁명과 같은 위급한 체제 위협 상황이 아닌 이상 선거과정에 정보기관이 개입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위 인용문에서 안기부는 국가 안보의 목적이 아닌 여당 후보 낙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즉 정권 안보를 위해 지방선거에서의 예방 정보활동과 문제권 불법행위 척결 대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59) 기타 안기부 문건 중에는 「대선(13대) 관련 택시기사활용 특수사업 실적보고」, 「대선(13대) 관련 안기부 직원여론 동향」 등의 문건이 있다.

60) 1995년 1월 20일자 통치사료기록서.

1) 선거 기간 야당 정치인 사찰

중정의 일상적인 정치인 사찰 사례는 다수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찰은 선거 기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정의 정치인 사찰 대상 중에는 신민당 송원영⁶¹⁾ 前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민당 송원영 동향」(1968.04.23; 1968.04.24) 문건에는 “신민당 동대문 갑지구당 위원장 송원영 의원은 차기에 대비하여 공화당 전 국회의원의 조직와해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함”, “그간도 관혼상례에는 빠짐없이 참석 하였다는 바 차기에 대비한 기반구축과 인기전술이라고 함”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연도 미상의 중정 문건에서는 1월 30일에 “신한민주당 동대문 지구 후보 송원영 사무실 조직부장에게 100여명의 표를 모아주겠다고 연락한 자는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교회 목사 박○○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추정컨대 1월 30일은 1973년 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으로 판단된다.⁶²⁾

이상의 중정 문건에 따르면 정치인 사찰은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지역구 활동에서부터 선거 시기까지 줄곧 이어졌는데 일상시기 정치인 사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1) 송원영(宋元英)은 1928년 평남 용강 출생으로 제 7·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신민당 원내총무·정무위원, 통일민주당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62) 송원영은 제 7·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제 7대 총선은 1967년 6월 8일, 8대 총선은 1971년 5월 25일, 9대 총선은 1973년 2월 27일, 10대 총선은 1978년 12월 12일이다. 12대 총선은 중정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의 1월 30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는 9대 총선이다.

2) 판세 분석 : 제 12대 총선

다음으로 총선 시기 판세 분석 사례를 살펴보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선거 전략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총선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정보기관이 이에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보기관이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5년 제 12대 총선(1985.02.12)과 관련된 문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총선이 5개월이나 남은 시기에 입후보 예상자들의 실태와 예상되는 총선 판세 분석을 미리 확인했다는 점이다. 「제 12대 국선 전국선거구별 입지자 실태 분석」(1984.09)이라는 문건은 향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지역별· 시도별· 선거구별· 정당별· 출신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판단하고 당선 경합 지역에서 공천을 대체할 경우의 당선가능성까지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문건의 부록에는 전국 모든 선거구의 출마예상자를 정리하고 각 선거구별로 당선권·경합권·권외로 구분 정리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총선을 5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예상후보자와 당락을 미리 판단했다는 사실은 안기부가 선거 시기에 임박하여 선거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총선에 대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2대 총선 투표일인 2월 12일 직전에 작성된 문건인 「12대 총선 입후보자 예상득표 및 취약지구당 대책」(1985.02.07)에서는 각 선거구별

63) 이 문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번 12대 국선을 계기로 제 5공화국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건전정치 풍토의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국안정 저해 요인 배제 등 정국 안정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관세를 분석하고 취약지구 공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야당후보 호화주택 보유사실 유포, 야당후보 자금원 차단, 통일교 자금 수수설 등의 흑색선전, 야당 후보 계속 출마 유도, 여당 후보 자금 지원, 아파트 부녀회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12대 총선 공무원 밀집 거주 지역의 여권후보 득표 상황 보고」라는 문건에서는 공무원 임금 동결과 승진 기회 감소 등으로 공무원 밀집지역의 여권후보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 공작

선거 과정에서의 노골적인 부정행위보다 선거 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선거구도 자체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1987년 13대 대선에서 양 김의 분열이 노태우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 구도를 창출했던 것처럼 야당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경쟁력 없는 야당 후보를 세우는 등의 사전 공작은 선거 결과에 분명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수를 선거에 이용하는 공작도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1963년 제 5대 대선과 1971년 제 7대 대선, 1985년 제 12대 총선, 1997년 15대 대선 등이다.

1) 야당 후보 분열 공작

1963년 제 5대 대선에서 중정의 공작은 야당 후보의 분열을 유도하여 박정희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1963년 제 5대 대선 출마자는 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당의 허정, 자민당의 송요찬, 정민회의 변영태, 추풍회의 오재영, 신흥당의 장이석 등 7명이었다.

중정부장 김형욱은 야당 후보 6명 중 송요찬 후보는 사퇴시키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후보를 사퇴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정치공작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허정과 송요찬이 사퇴하였고 정계에서는 변영태의 사퇴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욱은 변영태의 후보 사퇴를 막기 위해 중정 요원을 동원하여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변 후보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 편지를 변 후보에게 보내는 공작을 펼쳤다고 한다.

실제로 변 후보가 이 거짓 편지 때문에 사퇴의사를 접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변 후보는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고, 결국 박정희는 윤보선에 승리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와 윤보선의 득표수 차이는 15만 6천표로 변영태가 획득한 득표수 22만 4천표가 대부분 야당 표임을 감안한다면 변 후보가 사퇴하지 않게 만든 중정의 공작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상 양성재, 1987, pp123-133).

국정원 내부 자료 중 안기부의 야당분열공작을 보여 주는 것은 12대 총선이다. 「12대 총선 입후보자 예상득표 및 취약지구당 대책」(1985.2.7)은 취약 지역의 경우 야당후보들이 계속 출마토록 유도해 분열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2대 총선시기 검토보고」는 김대중·김영삼 추종세력 모두에게 총선참여보장이라는 카드로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협의를 결속을 와해 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 경쟁력 없는 야당 정치인 지원 공작⁶⁴⁾

1971년 제 7대 대선 직전 김계원 중정부장에게 부여된 임무는 신한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진산 당수를 지원하는 것이었다(이하 김충식 1992a, pp244-247).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김영삼과 김대중보다는 유진산이 보다 상대하기 쉬운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64) 이 사례는 당시 중정의 공작이 실제로 행해졌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국정원 존안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공개 자료에만 근거해 작성했다.

이에 중정은 유진산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1970년 9월 29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한 달 앞둔 8월에 유진산 당수를 해외 순방시켜 베트남 티우 대통령,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일본 사토 수상을 만나게 함으로써 유진산의 이미지 제고를 노렸다. 또한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에는 박정희-유진산 회담을 열어 유진산의 위상 강화를 도모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유진산은 전당대회를 1주일 앞두고 후보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하여 중정의 공작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충식의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비록 실패한 공작이기는 했으나, 중정이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인 후보 조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3) 관제 야당 지원 공작

이 사례는 1985년 제 12대 총선에 대비하여 야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안기부 문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2대 총선 대비 국민당 지도부 당세 보강 지원 요망」(1984.12.04)이라는 문건은 국민당이 위기에 처하여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당제에 입각하여 국민당을 완충 정당으로 육성하여 민정당과 협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여당에 협조적인 정당을 지원·육성하여 총선시 강성 야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보기관의 사전 공작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문건은 한편으로 국민당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면서도 국민당 입당을 추진 중인 정치 해금자들이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안기부의 야당 지원 목적이 관제 야당을 육성하되 정권에 도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있었음을 보여 준다.

4) 북 풍

역대 선거마다 등장했던 색깔론은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선거에 당선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정보기관이 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1997년 15대 대선시기 발생한 일련의 북풍 사건이다.

북풍 사건은 국민회의 고문이었던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1996년 8월 월북한 것을 빌미로 선거일 직전까지 김대중 후보에 대한 타격을 겨냥했던 오익제 편지·김병식 편지·김장수 편지 등 3건의 서신과 안병수 회동사건·북한지원설 폭로사건 등 이른바 ‘3신 2사’를 통칭한다.

오익제 편지는 1997년 11월 20일 오익제의 평양발 서신으로 “이북의 여러 인사들도 김대중 선생의 대승을 기원하고 있다. 선생께서도 이북의 영도자와 합의하여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북한의 낙선공작이라는 이유로 편지 도착 사실을 비밀로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기부는 이를 공개하고 필적 확인을 거쳐 오익제의 친필이라고 발표하였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앞으로 온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김장수 명의의 편지에는 “김대중 후보를 북한이 적극 지지하며 집권하면 같이 손잡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1997년 12월 7일에는 북한 사회민주당 김병식 위원장 명의의 편지가 각 언론사에 팩시밀리로 송달되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1997년 11월 두 차례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인 안병수 조평통위원장과 비밀회동을 가졌으며, 재미사업가 윤홍준은 대선 1주일 전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및 서울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후보가 북한 김정일의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선 후 수사에 따르면 윤홍준이 안기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상 경향신문, 1998.03.07).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후 발간한 「제 15대 대통령선거 백서」에서 북풍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세를 뒤집기 어려워지자 북한과 안기부를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색깔론 음모를 기도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⁵⁾

검찰은 북풍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북풍사건의 본질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과 이를 역이용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이 결합된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결론지었다(한겨레, 1998.05.23).

이 사건은 1999년 4월 대법원이 권영해 前안기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안기부 前 실장 3명에게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4년, 자격정지 1~2년씩을 각각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동아일보, 1999.04.27).

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후 공작 의혹

선거 전에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관권선거를 자행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행위는 선거 결과를 뒤집는 일이다. 5·16 쿠데타가 2공화국을 불법적으로 전복한 헌정파괴 행위였지만 개표 직후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뒤엎은 사례는 한국 역대 선거에서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공개 자료는 정보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선거 결과를 뒤집고자 하는 정치공작을 사전에 기획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5)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1위를 기록하고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세를 뒤집기 어려워지자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두려워하는 북한과 안기부의 공안 세력을 이용하여 이번 대선에도 역시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발표하면서 선거에 정략적으로 악용하여 북풍-색깔론 음모를 기도……오익제 사건 등을 용공음해에 악용…… 우리 당 후보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흑색선전과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등 북한 관련 문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작을 계속했음(새정치국민회의 1998, p120).

여기에 다루어진 두 사례는 모두 회고록 등 공개자료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이며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1) 1963년 제 5대 대선시 김형욱 중정부장의 3가지 대책

제 5대 대선시 초반 개표 결과는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 10월 16일 새벽 4시 50분 개표상황은 윤보선이 1,128,187표, 박정희가 1,033,988표로 무려 10만 표 가까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16 쿠데타 주체들인 장경순·조창대·홍중철·신윤창·오학진·김용태·길재호 등은 김형욱 중정부장에게 “변전소를 파괴하여 암흑세계를 만들어 표를 바꿔치든가 개표 사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군을 출동시켜 비상사태를 선언, 선거무효를 선언케 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당시 김형욱은 선거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A안·B안·C안의 비상대책안을 각 도지부 등에 시달해 놓고 있었고 혁명주체들은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긴급 하달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양성재, 1987, pp133-134).

위 회고록의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은 단순 의혹에 불과하고 선거 결과 박정희의 승리로 결말이 났기 때문에 당시 김형욱이 세웠다는 세 가지 대책안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그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승복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것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2) 1967년 제 6대 대선 윤보선 후보 암살 기획

중정 ○○실장을 지낸 방○○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중정은 선거 패배에 대비 윤보선 저격 음모를 기획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의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김형욱 중정부장이 방○○을 불러 “만일 개표결과 윤보선의 당선으로 나타나면 총으로 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시를 받은 방○○은 서울 안국동 윤보선 안방이 내려다 보이는 덕성여고 2층 창고에 조준경이 달린 레밍톤 22mm 구경 5연발

카빈을 소지한 저격수 1명을 배치했으나 박정희가 116만 표나 앞서 당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문일석, 1993, pp301-315).⁶⁶⁾ 방○○은 2005년 6월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한홍구 위원과 미국에서 가진 면담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공작이 사실이었고 윤보선 후보가 승리했다면 끔찍한 암살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다행인지 모르지만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 박정희가 승리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았다.

마 | 타 국가기관과의 공조

1) 1992년 제 14대 총선 연기군 관계기관 대책회의

이 사건은 1992년 9월 7일 한준수 前연기군수가 1992년 3월에 있었던 14대 총선에 관련개입 사실을 폭로한 사건으로 총선 전에 연기군에 안기부가 주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설치되어 안기부 도 부지부장과 군 담당 안기부 정보관·군수·경찰서장 및 민자당 후보의 친동생이 참석해 선거 진행상황을 일일이 점검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설치·운동되어 왔다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온 비상설 선거 대책기구인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된 한준수는 공판 과정에서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 14대 총선에 즈음한 2월부터 정보관을 비롯한 안기부 요원 4명이 연기군에 상주하면서 정보수집·상황체크·지시 등을 했고 3월 중순부터는

66) 방○○은 육사 8기생 출신으로 중정 ○○실장을 역임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방○○은 1985년에서 1989년 6월에 걸쳐 르포 작가 문일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임 당시를 증언했다. 1985년 1월 미국시민권자가 된 방○○은 이 증언을 자신의 과거 과오에 대한 참회라고 규정했다.

안기부 충청남도 도지부 부지부장인 윤 차장이 상주하며 총지휘를 했다고 진술하였다(「92고합474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조서」(1992.11.10)).

3월 16일부터 진행된 일명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윤차장 주재로 안기부 정보관·서장·군수·여당 후보자의 동생 등이 모여 매일 1-2시간씩 선거 진행상황을 종합 분석하면서 자금 살포 상황, 여당 후보의 활동 계획,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야당 운동원 행적 차단, 부동표 흡수 계획, 야당의 자금 살포 폭로 및 차단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92고합474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조서」(1992.11.10)).

또한 한준수는 연기군에만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지사·도경찰청장·안기부지부장·지역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충청남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92고합 474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조서」(1992.11.10)). 나아가 한준수는 1989년 1월 청양군수 시절부터 「목민일기」라는 제목의 일기를 써 왔는데 (「93노127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조서」(1993.05.07)) 이 「목민일기」에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가 연기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⁷⁾

반면 한준수의 증언과는 반대로 여당 후보의 동생은 당초 모임 자체를 부정했다가 번복했는데 3월 18일 단 한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논의된 내용은 조치원 천주교 폭행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의 실체를 부정하였다 (「93노127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조서」(1993.05.27)).

67) 언론에서 보도된 「목민일기」의 내용 중 안기부 관련 내용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상태로는 선거 제대로 안 된다. 선거 기간 중에 비공식선거대책 협의 기구를 만들자”(안기부 윤부지부장). “돈 안 쓰고는 선거 절대 못한다. 청와대에 긴급 자금 요청을 해놓았다”(안기부 윤부지부장). “전동면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이 강성야당으로 돌변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는다. 행적을 미행해서라도 야당 운동을 차단시켜야 한다”(안기부 정보관). “상대방의 막판 돈질을 막지 못하면 패한다. 이것은 경찰에서 맡아줘야 한다”(안기부 윤부지부장). “안기부 요원의 흑색선전물 살포 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도 숙소를 옮겨야 할 것 같다”(안기부 윤부지부장).

한준수는 진실위와의 면담(2007.05.29)에서 이상의 사실에 대해 당시 안기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관했으며 선거기간 중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⁶⁸⁾

연기군에서 민자당 후보가 낙선한 이후 도지사로부터 연기군수를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준수는 증언한다. 1992년 3월 총선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면한 12월의 대선이었다. 즉 3월 총선에서 패배한 연기군 같은 지역은 12월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열세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상되었고 패배한 지역의 군수를 교체하여 12월 대선에서 여당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⁶⁹⁾ 이와 관련 한준수는 선거 책임을 물으며 군수 교체 압력을 가한 것은 도청이었지만 뒤에서 종용한 것은 안기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한준수 면담기록, 2007.05.29).

2) 1992년 제 14대 대선 부산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초원복집 사건)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더 유명한 부산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 사건은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기관장들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당의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은 김기춘 前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시장·부산경찰청장·안기부 부산지부장·부산지역기무부대장·

68) 한준수는 면담에서 “그 당시 선거는 안기부가 주관했습니다. 안기부 연기군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관·호텔 이런 곳에서 소집했지요. 군수·서장·안기부 담당자·군인·여당 지구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가면 무조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수시로 회의를 했지요. 회의는 몇 번이라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한준수 면담기록, 2007.05.29). 한편 한준수는 15년 전의 일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혼동하고 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원 공판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여당 지구당 위원장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민자당 후보의 동생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군인은 기무부대장을 말한다.

69) 이와 관련해 한준수는 면담에서 “6월 달인가 도지사한테서 관사로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나한테 공로연수를 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사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니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 되어 있어 야당이 된 곳은 전국적으로 가만히 안 둔다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다.

부산교육감·부산지검장·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2월 11일 아침 7시 부산시 남구 대연동 초원복집에서 김영삼 민자당후보의 당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이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시했다(동아일보, 1992.12.15).

이들은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해야 하고 신문사 간부들을 매수하여 YS에게 유리한 편파보도를 하도록 하며 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가 유세장에 인력을 동원토록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김재홍, 1998, p99).

김동길 선거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테이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남·부산이 발전할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파이다”(김 기무부대장), “부산지역 호남인표 10%와 군소정당표 3~5%를 빼면 나머지 85%인데 이 중 15%를 정주영이가 가져간다면 ○○은 끝나는 것이고 ...60%대로 떨어지니까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김 부산시장),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김 전 법무장관) 등의 발언을 했는데 안기부 부산지부장 역시 “최근 현대 수사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 기가 많이 죽었는데 그대로 나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지역신문이 더 단결하면 ...”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2.12.15).

이 사건은 대선 막판에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청을 한 관계자들만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적 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대선 시점에 안기부 부산지부장이 부적절한 모임에 참석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이다. 비록 안기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정보기관의 주요 간부가 선거에 개입한 사례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⁷⁰⁾

70)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이후에도 야당측이 여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단골 메뉴가 되곤 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등이 1996년 제 15대 총선 후 발간한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진상조사 공동백서」에서는 대구 기관장들의 ‘안기부 회의’ 개최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경북도지사 등 경북지역 기관장·단체장 10여명이 2월 9일 안기부 대구지부에서 모임을 가지려 하였다. 지사·지방경찰청장·도의회의장·도교육감·대구지방국제청장·

여기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과 무소속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여당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공작까지 수행한 사례들을 다룬다.

1) 신민당 김재화 후보 사퇴

1967년 제 7대 총선(1967.06.08)에서 신민당 전국구 후보 10번으로 등록한 김재화는 독립운동경력이 있는 재일동포 기업가였다. 중정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김재화를 국가보안법·반공법·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총련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하여 신민당 중앙당 경리장부를 압수하고 당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선거자금 등 경비지출도 동결해 야당 선거전열을 마비시켜 버리기까지 했다. 신민당 지도부 앞에 나타난 김재화는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전국구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중정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에 대해 당시 중정부장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부끄러운 ‘관건개입’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한다(김경재, 1991a, p183).

김재화 후보 사퇴 사건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야당의 선거자금줄을 묶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경우라 할 것이다. 신민당은 선거를 1주일 남겨 둔 상황에서 경비지출이 동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중정이 다른 시기도 아닌 총선 1주일 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야당 전국구 후보를

안기부 대구지부장·기무부대장이 그 대상이었다. 이 모임의 표면적인 이유를 자유총연맹 경북도지회 운영위원회 참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한낱 관변단체의 행사에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목적이 그 배후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국민회의 외, 1996, p64).

구속했다는 점은 국가보안과 반공, 외환관리라는 외형적인 목적보다는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정치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후보를 사퇴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이만섭 후보 낙선 공작

중정은 1971년 제 8대 총선에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후보 중 박정희의 3선 개헌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집요한 낙선 공작을 펴 고배를 마시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공화당 원내총무를 지낸 바 있는 이만섭은 자신이 낙선한 이유에 대해 3선 개헌을 반대했던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한 이후락 중정부장의 보복성 공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⁷¹⁾

이 사례는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단순히 야당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 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정의 낙선 공작이 이와 같이 여당 국회의원에게까지 행해졌다는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공작은 그 보다 더 일반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낳는다.⁷²⁾

3) 의원 출마저지 및 후보 사퇴압력

다음으로 안기부 문건을 통해 당시 정보기관이 야당 후보에 대하여 어떻게 선거 개입 공작을 벌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의 출마를

71) 이만섭은 진실위와의 면담에서 “이후락의 방해는 선거전에 돌입해서도 끝까지 집요했다. 공천을 주고서도 도대체 당선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여당 후보를 그렇게까지 탄압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선거구인 대구 중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동대구 쪽으로 이전되기도 했는데 ... 결국 1971년 5월 25일에 있었던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는 낙선하고 말았다. ... 물론 내가 낙선한 이유는 3선 개헌을 반대한 소신과 이후락 정보부장의 보복 때문이었다. 공천은 받았으나 양순직·예춘호 후보 등도 모두 낙선하고 말았다” 고 진술했다(이만섭, 2004, pp210-212).

72) 정보기관의 낙선 공작이 여당 후보자에게 행해진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1967년 제 7대 총선에서 김대중·김영삼 등이 출마한 지역구 7곳을 ‘정책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낙선 공작을 펼친 경우이다.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대표적인 경우가 김현규 의원의 사례다.

김현규 의원의 1985년 제 12대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 공작을 기획한 안기부 문건에 따르면 김현규가 1984년 관제야당이었던 민한당 의원들의 탈당을 주도한 인물로, 연행 조사하여 양김이 주도하던 민주화추진협의회 탈퇴와 신한당 탈당·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 약속을 받고 방면하였다는 기록과 민주협은 탈퇴했으나 제 12대 총선에서 신한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김현규를 7회 접촉하여 약속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처리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제 1안은 재차 연행하여 조사하는 방안이고, 제 2안은 무소속으로 당선시킨다는 방안이다. 안기부는 1안과 2안 중 부작용을 고려하여 2안을 추진한다고 명기하였고 예상득표를 예측하여 첨부하기 까지 했다. 이 예상득표에 따르면 김현규는 당선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여당 유력 후보의 표를 잠식할 무소속 후보를 사퇴시키기도 했는데 이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1990년 대구 서갑 보궐선거에서 정호영 당시 무소속 후보를 사퇴시킨 사건이다.

민자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호용은 1990년 3월 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 바로 다음 날인 3일에는 안○○ 당시 안기부 제 1차장이, 4일에는 안찬희 의원이 대구에 방문하여 불출마를 종용했다(이병도, 1995, pp284-285).

정호용의 부인 김숙환은 3월 3일 안기부차로 보이는 대구 1리 3406호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비롯해 3~4대의 승용차가 정호용을 미행하고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안기부 차량 숫자는 10여 대로 늘어났으며 3월 8일부터는 집 앞에서 출입자를 체크하기도 했다고 한다(이병도, 1995, p285).

이후 정호용은 노태우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득을 받았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김윤환·유수호 의원, 이종왕

前대구시장, 신현확 前총리, 정희택 前감사원장, 정수창 대한상의회장, 김준성 前부총리 등도 후보사퇴 설득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90.03.26).

결국 정호용은 3월 26일 후보 사퇴를 선언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안기부의 추가적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차후에 밝혀졌다. 안기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월간조선」 1995년 8월호에 따르면 노태우 대통령이 안기부에 지시하여 정씨에게 사퇴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1백억 원이 입금된 가명계좌를 발견했고 안기부는 이를 통해 정씨를 위협했다고 한다(월간조선, 1995.08, p280).

사 | 선거 시기와 제도의 변경 및 유지

선거 개입은 선거 과정이라는 협소한 시간적 틀만을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며 선거라는 게임의 룰 그 자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해해야 한다. 선거 시기의 공정성 못지않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도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한 요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선거 과정 중의 개입이 아니라 선거 시기를 조정하여 여당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거나 게임의 룰을 변경하거나 혹은 민주적 선거로의 이행을 차단하고 기존 독재정권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선거 개입 사례들이다.

1) 1985년 제 12대 총선(1985.02.12) 시기 조정 검토

「12대 총선 시기 검토 보고」(1984.09.18)라는 문건에 따르면 안기부는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조정하여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으며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정치공작을 기획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총선 시기 조정과 관련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1안은 1984년 12월 중순,

2안은 1985년 2월 중순, 3안은 1985년 3월 초·중순이다. 안기부는 이 중 2안의 이유를 “혹한기 중 야당 붐 조성 억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정치해금을 요구하던 김영삼·김대중 등 구 야권인사들이 결성한 민주화추진협의회 성원들의 강성야당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시기 조정을 통해 야당 붐이 조성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 12대 총선은 안기부의 2안대로 2월 12일 ‘혹한기’에 실시되었다.

이 문건은 선거 시기 조정뿐만 아니라 선거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여당 대책으로 공천탈락자를 무마하고 지구당위원장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야당 대책으로는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야당세력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김대중·김영삼 간 분열을 유도한다는 내용(위의 ‘야당후보 분열공작’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선거개입 인상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통반장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2) 내각책임제 개헌 공작

1986년 전두환 정권은 은밀히 내각제 개헌을 준비했다. 박철언의 회고에 따르면 1986년 5월 22일 장세동 안기부장이 개헌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하지 않고 시도의회만 구성하고 순수 내각책임제로 개헌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정당과 안기부 그리고 법제처장이 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제 연구·선거 제도·권력구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박철언, 2005, pp220-221).

실제로 안기부의 다음 문건들은 당시 박철언의 회고를 뒷받침한다. 「대통령 직선제의 문제점에 관한 유인물 배포」(1986.06.27), 「부 통근 버스 카세트 활용, 내각책임제 홍보 교육 실시 필요성 여론 대두(일자 미상)」, 「내각제 개헌 저지 서명운동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

(1987.01.07), 「내각제 개헌 저지 서명운동 관련자 분담 관리 계획」(1987.01.08), 「내각제 개헌저지 활동 대책」(1987.01.14)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 직선제의 문제점에 관한 유인물 배포」는 안기부 직원 교육에 활용된 문건이다. 안기부는 이 문건을 소속 전 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주지시키고 본 내용을 대국민 계도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첫째,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민주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둘째, 지역감정의 격화로 민족 분열상 노정의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국가 안보에 허점이 생기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 넷째, 엄청난 국력 낭비를 가져오고 행정 공백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 다섯째, 정치적 부패와 선거부조리가 만연되어 국민도의심 타락·법질서 무시풍조가 확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에 이어 「부 통근버스 카세트 활용, 내각책임제 홍보교육 실시 필요성 여론 대두」라는 문건에서는 직원들에게 내각책임제 홍보 교육 실시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홍보교육의 확대 실시를 요망하는 이유는 신한당 및 재야에서 특정인의 정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통령 중심제 직선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치 선동과 불순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가 안정과 민주주의 실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일부 직원 층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소한 제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등 여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기인되고 있음.

정보기관의 직원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제반 정치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정보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가 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매도하고 여당의 개헌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단화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안기부는 야당의 직선제 요구를 “정치 선동과 불순 책동”으로 규정하고 여당에서

제기하는 내각제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지위 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여당의 홍보활동 기구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³⁾

「내각제 개헌 저지 서명운동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 「내각제 개헌저지 활동 대책」 등의 문건은 1986년 12월 24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의 내각제 협상 과문(이민우 구상) 이후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의 개헌 저지 활동이 극대화된 시기⁷⁴⁾에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 문건에는 내각제 서명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순화와 경고·동향파악·위법 행위 시 의법 조치·대응홍보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들 업무를 치안본부·문공부·보안사·안기부가 기관별로 업무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각제 개헌 저지 서명운동 관련자 분담 관리 계획」은 1987년 1월 당시 공안 기관의 협조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문건에는 공안장관회의 개최 결과가 들어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부장(안기부장)·청와대 비서실장·정무 2수석·민정당 사무총장 및 내무·법무·문교·문공부 장관과 검찰총장·치안본부장·보안사령관이다. 즉 당시 공안장관회의에는 안기부장을 필두로 하여 청와대·여당·정부·검찰·경찰·군부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4·13 호헌 선언 이후 안기부 대응

안기부가 권력의 도구로 기능했다는 사실은 전두환 前대통령의 4·13

73) 이와 관련 안기부의 「제 2특보 박철언 의원내각제 개헌안 홍보교육 실시」라는 문건도 확인되었다.

74)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총재는 정부와 여당이 진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에서 내각제를 주장한다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소위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여 정가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몰고 왔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신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김영삼, 2000, pp323-324).

호헌조치에 대한 안기부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다시 확인된다. 안기부는 4·13 호헌 선언 이후 작성한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⁷⁵⁾

- 개헌 논의가 종식됨에 따라 가칭 통일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및 문제권 학생들이 집단소요 등 불순책동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는 물론 ○○○에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하면서 총력 홍보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 ○○○ 신당 발기인 500명에 대한 신상자료 파악 작업 및 문제 정치인의 내사 등을 병행하면서 사태별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 국회의원 선거 업무는 일단 중지하고 선거인단 선거에 대비 각 분실별로 세부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 그 외 ○○○서도 각 국실별로 대통령 각하 담화와 해설을 VTR로 재방영 하면서 양김의 정권쟁취 망상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직원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전개될 정국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음.

이 짧은 문건은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서 안기부가 어떠한 위상으로 활동했는지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다.

첫째, 안기부는 민정당의 내각제 개헌안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전두환 前대통령의 호헌조치 이후에는 태스크 포스까지 구성하여 호헌을 위한 총력 홍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둘째, 안기부는 선거에서 경쟁상대로 예상되는 신생 야당에 대한 조직적 사찰을 하고 있었다.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어지는 시점에서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가 민정당의 내각제 개헌안 수용의사를 밝히자 4월 13일 김영삼과 김대중이 자파 의원들을 데리고 집단 탈당하여 통일민주당 창당을 선언하게 된다. 따라서 안기부가 여기에서 말하는 신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75) 제목과 일자 표기 없이 “1. 대통령 각하 특별 담화 이후 부내 특이동정”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문건이다.

이 시점에 직선제를 주장하는 신당에 대한 안기부의 조직적인 동향 파악과 내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안기부는 권력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선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문건은 1987년 4·13 호헌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선거 업무”는 4·13 호헌 조치 이전 시점에서는 민정당의 내각제 개헌안이 관철된다는 전제하에 안기부가 내각제 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또 호헌조치 이후에는 간선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4·13 특별담화 이후 분야별 예상 문제점과 대처 방안」(1987.04)이라는 문건에서는 4·13 호헌 조치에 대한 야당 정치인과 재야·학원 등의 반대 운동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학원에서는 매일 순찰을 돌면서 불순 유인물을 조기에 제거하고 개헌서명을 하는 학생들은 정치활동 차원에서 처벌한다. 둘째, 예상되는 문제교수(35개 대학 89명)의 동향을 감시한다. 셋째, 문세성 교사 599명의 동향을 점검한다. 넷째, 정치부 기자에 대한 특별순화를 실시하고 불응·불법 발견시 경고·의법처리 한다. 다섯째, 극렬비판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밖에 양김 조기퇴진운동 등 정치권 신진대사를 적극 홍보하고 이민우 등 다당제 하의 정책야당을 육성하고 건전야당 저지세력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보고서는 4·13호헌조치에 대해 113인들의 긍정적 반응과 후속 강경 조치 우려, 양김 등 극렬세력의 위축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정세와 동떨어진 정세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석이 맞다면 곧 이어 터져 나온 6월 항쟁은 무엇인가? 이는 최상의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도 통치권자의 권력의지에 종속될 경우 진실을 은폐하고 통치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기타 이 시기 문건으로는 「각하 특별담화 발표 관련 각계 동향」, 「각하 특별담화 발표 후 학원동향 분석 및 전망」(1987.04.20), 「고대 일부 교수 각하 담화 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 동향 및 대책」(1987.04.23) 등이 있다.

「각하 특별담화 발표 관련 각계 동향」에서는 호헌 선언에 대한 정치·외교·언론·학원·종교·법조계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있다. 「각하 특별담화 발표 후 학원동향 분석 및 전망」에서는 학내 정치집회 철저 견제, 대학간 연합조직 결성 및 활동 봉쇄, 학외 문제권 연계활동 철저 차단, 불순 유인물, 벽보 제작 배포 행위 봉쇄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 일부 교수 각하 담화 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 동향 및 대책」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들의 리스트를 정리한 후 극렬 비판자·비판자·중도로 구분하여 성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⁶⁾

이상과 같이 안기부는 정권의 호헌 조치에 대한 총력 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선거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을 비롯하여 재야 세력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권에 의해 내각제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기존의 간선제 유지가 선언되었을 경우에는 선거인단 선거를 준비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여당의 집권을 위한 홍보 활동과 선거 준비에 동원된 넓은 의미의 선거 개입 사례로 볼 수 있다.

4) 안기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 문건

1995년 2월 20일 민주당의 권노갑 의원은 안기부의 「단체장 선거 연기 문제 검토」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선거 연기에 대한 제반 여건과 연기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집, 기초와 광역단체장 선거를 전면 연기하는 방안과 기초 단체장 선거만을 부분 연기하는 방안의

76) 이밖에 「민정당 안기부 발행 호헌관계 홍보책자 추가지원 요청」, 「민한국 정체폭로 및 규탄 홍보 추진실적 종합(부처별 활용실태)」 등의 문건이 있다.

장단점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안기부는 지방선거를 연기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하는 방안, 지자체법 개정에 의한 방안 또는 기타 방법 중 어떤 쪽을 택할 것인지의 절차 문제도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단체장 선거 연기의 여론화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이 문건에 대해 통상적인 자체 분석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한겨레, 1995.02.21).

선거 시기의 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선거 시기는 당초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혹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5년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는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1995년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통상적인 자체 분석업무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연기 문제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기존의 부당한 관행이 통상적인 업무로 종종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소 결

지금까지 과거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사례를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룬 사례들은 국정원 자료와 국정원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개 자료에만 의존한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사례 이외에도 다른 선거 개입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본문에 기술된 중정과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례들 대부분은 최고 권력자에게 정보기관이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가정보기관의 설립과정과 법적 지위관계 그리고 오랜 독재의 경험이 위와 같은 상황과 결과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성은 집권자의 의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국민의 자율적인 통치위임 결정에 기초한다. 선거 과정이 정보기관에 의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왜곡된다면 그로부터 성립된 정권은 사후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민주적 정당성의 태생적 결손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 헌법,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할 정보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주도 혹은 관리하여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선거 구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심지어는 선거시기와 제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 행위가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지속돼 온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그 수준과 방식은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된 경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경우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1999년 이후에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거나 사실로 확인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2002년 16대 대선 직후 한나라당이 발간한 「16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는 몇 가지 관련개입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부정선거의 주요 형태로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이뤄진 공작정치, 「노사모」를 중심으로 자율적 참여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위장한 불법선거운동, 불법적인 노·정 후보단일화, 방송의 편파보도, 검찰·선관위 등 선거 주무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관리 등 여권의 총체적 부정이 개입되었다”(한나라당, 2003, p62)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야당까지도 더 이상 국정원을 선거에 개입하는 기관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과정과 무관하면 무관할수록 오히려 선거를 통해 집약된 국민의 민주적 의지는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로도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자신의 우수한 역량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대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 헌법, 체제 수호라는 국가정보기관의 본래 목적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기관의 과거 부당한 선거개입에 대한 조사와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올바른 정보기관의 위상을 잡아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번 조사가 국정원이 성찰할 수 있는 거울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서론

정당과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적인 장치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수집하여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특정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당이고,⁷⁷⁾ 국회는 다양한 대안들을 갖는 정당들이 서로 토론과 협상 등을 통해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정 의 골간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헌법의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 한국에서 정당과 국회활동의 활성화와 자율성은 헌법 정신 구현의 첫걸음일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신념과 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이 정당을 통해 조직화되며 정당한 법률적 절차와 보호 아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에서 입법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당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당과 국회를 포함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며 필수불가결하다. 특히나 오랜 분단으로 인해 항시적인 안보위기를 국가 존립의 조건으로 삼아야 했던 한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우리의 헌정사는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일방적인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오욕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국가의 안전보장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권안보 수단으로 왜곡된 결과였다. 국회·정당과

77) 알란 웨어는 정당을 “종종 정부의 공직을 차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국가에서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일반적으로 사회의 단일 이익 이상으로 구성되는 어느 정도 ‘집합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알란 웨어, 1999, p7)으로 규정한다.

국가정보기관 사이의 이런 왜곡된 관계는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전반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3년 12월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제9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범위를 세분화시킨 것은 정당·국회와 국가정보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⁷⁸⁾

이처럼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국가정보원법> 제 9조 5항의 5개 호로 규정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활동에의 관여 범위는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의 유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정당·국회에 대한 정치개입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한다. 중정·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은 처벌이 아닌 바람직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발전을 위한 오욕의 과거청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법> 시행 이후의 정치개입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중정과 안기부의 정치개입의 유형과 사례를 동법 제9조에 규정된 정치관여 범위를 근거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즉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금지를 규정한 동법의 제9조는

78)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9조도 1994년 1월 5일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의 조항을 그대로 원용, 존치시키고 있다. 동법 제9조 2항에는 국정원 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②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④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⑤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세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1994년 이전 <중앙정보부법>이나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는 제8조에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에 한해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에의 관여를 금지할 뿐이었다.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토의와 협상의 산물인 바, 처벌이 아닌 과거사 진상 규명 및 발전적인 국정원상의 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그러나 이런 법률적 장치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사찰 범위 규정은 명확한 기준의 확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정원의 직무와 제9조의 직원의 정치관여의 금지 사이에 주관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국정원의 직무는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 및 7조와 10조 규정을 제외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이다. 이에 따라 직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의 정보수집 혹은 수사 대상에 정당이나 국회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조의 직무 내용을 광의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국회에 대한 정치사찰을 정보수집 및 범죄 탐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정보기관의 정당/국회 활동에의 개입 범위를 정보수집 방법에서의 불법성과 수집된 정보의 정략적 사용의 경우로 제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9조 2항의 1-5호에 해당하는 정치개입의 유형 및 그 사례로, (1) 야당 창당에의 개입 유형: 1980년 12월 제5공화국 관제야당 창당 공작 사례,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공작 사례, (2) 야당 활동에의 개입 유형: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례, 신민당 국회의원 유성환 통일국시 발언 사건 사례, (3)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유형: 1986~7년 내각제 구상 지원 활동 사례, 1995년

79)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법 정신에 위배되지만 과거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적 국정원상을 정립하려는 본 조사보고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청산되어야 할 과거 어두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정치공작들은 법적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적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련 안기부 문서 공개 사건 사례, (4) 최고 권력자를 위한 대(對)여당 정치개입 유형: 1971년 민주공화당 10·2 항명 사건 사례, ‘미림’팀 수집 도청정보의 악용 사례, (5) 국회활동 개입 의혹 유형으로 1998년 12월 30일 발생한 국회 529호 사건 사례로 분류하여 상론하고자 한다.

2 정보기관의 정당·국회 활동 개입의 유형과 사례

가 야당 창당 개입

1961년 창설된 중정 최초의 과업 중 하나가 민주공화당의 창당이 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당 창당이 급선무였고 이를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중정이 담당한 것이다. 중정의 정치공작으로 창당된 민주공화당의 태생적 한계는 이후 정당 본연의 역할 대신 박정희의 권력유지를 위한 사당화와 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정점에 둔 파벌간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기능하게 했다. 중정은 이를 넘어서 야당의 일상사에도 개입했다. 나아가 야당을 직접 만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12·12 사건 등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국가정보기관은 다시 정당 창당의 정치공작 일선에 서게 되는바 이번에는 쿠데타 세력의 권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집권정당의 창당만이 아니라 순응적인 야당들의 창당까지 맡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서 이른바 “제2, 3중대 정당들”로 호칭되었던 민주한국당과 국민당의 창당에 중정과 이후 개편된 안기부가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정권 출범기 타협적이고 순응하는 야당체제를 구축하려 했던 제5공화국에서는 정권 말기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세운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

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하여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순응적 야당체제의 와해에 대한 정권의 반응이었던 이 사건에서도 안기부는 배후의 핵심적 역할을 떠맡았음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국가정보기관의 정당 창당과 창당 방해공작은 1994년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현행의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1호의 정치활동에의 관여 범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정당 창당 관련 관여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1980~1981년 제5공화국 관제 야당 창당 공작과 1987년 4월의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공작(일명 용팔이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제5공화국 관제야당 창당 공작

1986년 제5공화국에서 제1야당 민주한국당의 창당 실무 책임자였던 신상우는 「고독한 증언」이라는 제하의 회고록을 발간하여 민주한국당의 창당에 얽힌 사실들을 증언했다.⁸⁰⁾ 제5공화국 출범 이후 1985년 2·12 총선을 통해 와해되기까지 순응적인 야당들에 대한 세간의 소문들을 확인시켜 준 이 회고록에는 중정과 새로 개편된 안기부가 야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신상우는 회고록에서 민한당 창당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남산 즉 중정의 C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고 한다. “C씨와 반장이라는 L씨가 미리 나와 있었다. 우리는 평소 국회와 정당 주변에서 자주 보아 온 터였기 때문에 어색한 인사

80) 「4. 신상우 전 민한당 부총재 ‘고독한 증언’ 제하 불순책자 발간 배포(일자미상)」 제목의 안기부 문건에는 동 책자에 “당부 간부 지칭”, “당부 관련 불순 내용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다음과 같은 처리 지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동 책자가 문공부에 납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발간되었고 문제 내용 다수가 기재된 점을 감안 동 책자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자 신상우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 조치함이 가하겠음.” 이와 관련 2007년 5월 28일 신상우와의 면담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안기부에서는 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위의 조치대로 출판사와 인쇄소에서 동 책자를 회수했고 저자의 항의에 300부를 저자 자택의 지하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한다.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다.” 이 자리에서 신상우는 중정 요원들인 그들로부터 정치활동 재개 사실과 유치송을 총재로 하고 신상우 자신은 조직 책임자 역할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2007년 5월 28일 면담조사에서 신상우는 이 때 만난 중정 요원들은 서울분실장 방○○과 야당팀의 현장요원 황○○이었으며, 회고록에도 등장하지만, 민한당 창당과정에서 중정의 현장 책임자는 현○○ 당시 차장이었다고 밝히는 등 관계자들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해 주었다.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신상우는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야당의 창당 작업에 있어서 어떤 방침의 결정뿐만 아니라 인선 까지도 사전에 알려 줄 것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었다”고 한다(신상우, 1986, p26).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정의 요청으로 국보위 입법의원 출신 손세일·한영수 등과 민정당 주위에 있던 관세청 차장 출신 최운지와 김문석(유학성 당시 중정 부장의 고향 친구) 등을 중정의 요구로 민한당 창당준비위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신상우의 증언으로는 민정당 내에서 지역구가 겹치는 등 자리를 배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민한당으로 보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까지 중정이 맡았다고 한다.

신상우는 면담조사에서 제5공화국 관제야당 창당의 최고 책임선과 자신이 당시 중정에 의해 정치활동 재개와 민한당 창당 조직책임을 맡을 것을 통고받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신이 중정 서울분실장 방○○과 차장 현○○로부터 들은 바로는 <청와대 대책위원회>가 정당 창당의 최고 결정기관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대책위원회에는 보안사·창당 참여 멤버·허화평·허삼수 등 청와대 보좌진 및 중정 차장 현○○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여당 창당은 권정달을 중심으로 하는 보안사가 실무를 담당했고, 야당 창당은 당시 야당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중정의 정치담당 파트가 실무 작업을

진행하여 이를 청와대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출마 지역들이 중복되는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인선과 배치 조정, 장성 출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일 지역구 출마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압력 및 여당 공천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야당 파견 등도 결정했다고 한다.

애초 청와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민한당의 조직책임을 한○○에 일임하려고 했으나 24인 장성회⁸¹⁾가 청와대 대책위원회에 10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이었던 자신을 천거하여 조직책임자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안기부는 민한당 창당 이후에도 당시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신상우에게 문제발언을 하는 민한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연행·조사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신상우는 해당 의원들을 만류하는 등 안기부의 민한당에 대한 조직적 개입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5공화국에서 관제야당의 창당은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신군부 세력이 중정과 안기부를 통한 정치공작의 산물로 현행 <국정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의 제2항 1호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2)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공작

제5공화국 관제야당 창당 공작이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지원과 방해를 금지한 현행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1호 중 앞부분(지원)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공작은 뒷부분인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배한 사례이다.

81) 24인 장성회의 존재는 신상우와의 면담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희성·유학성 등 당시 신군부 집권세력의 군 선배 장성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청와대 대책위원회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1987년 4월 전두환 정권 말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정권은 내각제 검토에서 대통령 간선제의 헌법을 유지하려는 4·13 호헌 조치를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빈번한 시위 등으로 정국은 혼란스러웠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호헌을 결정한 전두환 정권의 강경한 대응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정통야당의 회복을 기치로 민한당과 국민당 등 이른바 관제야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둔 신한민주당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의 분열 조짐으로 이어졌다.

이에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선명야당의 결성을 내세우는 신한민주당 내 김대중과 김영삼계가 통일민주당 창당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의 정당법에 따라 정당 창당에 필수적인 지구당 창당 작업이 진행되던 중 198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여 개의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행사에 폭력배들이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당원들을 폭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통일민주당측은 정부가 개입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초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1988년 9월 이 사건 관련자로 용팔이라는 별명의 조직폭력배 김용남과 사건 당시 신한민주당 청년부장을 지낸 이선준을 검거 조사하였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민당 내부의 알력이 원인으로 신한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었던 이택돈·이택희가 김용남에 청부폭력을 지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93년 3월 6일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재조사가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이루어져 사건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을 소환 조사하여 이택돈·이택희와의 사전공모와 필요자금 6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1993년 7월 2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부에서 선고한 이택돈(사건 당시 신한민주당 사무총장)과 장세동(사건 당시 안기부장)에

대한 1심 판결문 「93고합2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방해 사건 판결문」(1993.07.26)에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선이 당시 대통령 전두환에 있음을 알게 한다. 동 판결문에 따르면 이택돈은 1986년 10월경 전두환과 독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전두환은 그 자리에서 이택돈에게 김영삼 고문 등 신한민주당 내 강경파의 정치행태를 비난하면서 이택돈에게 여당과의 대화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전두환은 이택돈에게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과 만나볼 것을 부탁했다. 이에 이택돈은 장세동과 만나게 되었고 1987년 4월 김영삼 등이 신한민주당을 탈당하고 선명야당의 기치하에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 하자 조직폭력배 이승완 등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창당을 방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택돈에 대해 장세동은 약 6억원의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이승완에 대한 신변보장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배후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는 이택돈과 장세동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1993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장세동의 변호인 측이 항소이유로 제시한 창당방해 모의·자금대가 합의·폭력배를 동원한 이승완에 대한 신변보장 약속 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배후를 인정했다.⁸²⁾

이처럼 신한민주당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정치 폭력은 당시 신한민주당 내부의 비주류 측의 불만을 이용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판결문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이택돈이 장세동과 이 사건을 모의하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2) 1994년 4월 12일 대법원 제2부에서 선고된 상고심에서는 장세동의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사법적으로 신한민주당의 창당에 대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의 개입은 확인되었다.

이 사건이 당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안기부장 장세동의 과잉충성이 원인인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당시 5공화국의 정부여당의 조직적 야당 창당방해에 안기부장이 단순히 실무자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제1의 사명으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해야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야당의 창당을 저지 혹은 방해하려 했던 배후세력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서 정보기관의 사주에 의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정치폭력은 이미 1976년 5월 22일 당시 신민당의 전당대회 개최를 저지하려는 김태춘의 중앙당사 난입사건이 전례로 남아 있다.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은 이런 역사적 전례와 함께 제5공화국에서 안기부로 명칭을 바꾼 국가정보기관이 야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한국 국가정보기관 나아가 한국정치의 부끄러운 역사적 치부라 할 것이다.

나

야당 활동 개입

중정이나 안기부에서는 관제야당의 창당 공작이나 선명야당 창당 방해 외에도 일상적으로 야당의 활동에 개입하여 집권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왔다. 보다 타협적이고 순응적인 야당 지도부로의 교체, 집권자나 집권 정부 및 여당에 대한 문제발언 의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치인 사찰과 개인비리 수집과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은 야당 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 사례들이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의 임무 가운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치인의 범법 행위 등에 대한 내사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집권세력을 위해 야당을 순치시키거나 침묵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거나 국민들에게 야당의 이미지 실추를 위해 정략적으로 유포된다면 명백한 정치개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과 그로 획득한 개인비리 등으로 협박하여

정부여당에 협력케 하거나 선거에서의 당선 지원 혹은 낙선 공작 등 국가정보기관의 야당활동 개입 유형과 사례는 다양했다.⁸³⁾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야당 활동에 대한 정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1979년 10월의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과 제5공화국 관제야당체제 유지 공작 및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유성환의 통일 국시 발언 사건 등을 국가정보기관의 개입 사례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

유신에 반대하고 민주회복의 기치를 내건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에 대한 중정의 정치공작은 1976년 6월경부터 본격화되었다.⁸⁴⁾ 이 정치 공작은 당시 중정의 국내담당 차장보 양○○을 책임자로 하여 차기 신민당 대표로 보다 타협적인 이철승을 내세우려는 것이었다.

1976년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임기가 동년 5월 말로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정의 계획은 신민당의 지도부를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대표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시켜 김영삼을 지도부에서 축출하고 이철승을 당 대표로 내세우려는 것이었다.

1976년 6월 신민당 전당대회는 당일 새벽 주류와 비주류 당원 400여명이 대회장인 구 시민회관 별관(현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차지하기 위해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난투극을 벌였다. 이 난동으로 김영삼

83) 본 조사보고서에는 정당·국회 활동 개입 이외에 함께 정치인 사찰과 선거개입 및 정치자금 통제 분야를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주로 중복되지 않는 특정 야당 활동이나 야당체제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에 한정하고자 한다.

84)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에 대한 이 시기 정치공작 직전인 1975~1976년 초에 걸쳐 김영삼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자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정 문건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세무조사 결과보고」(1975.04.29),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 혐의자 첩보 입수 및 신원 내사보고」(1975.04.15),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등에 대한 견제대책 보고」(1976.02.02) 등은 김영삼에 대한 정치적 견제의 일환으로 정치자금 제공자들에 대한 내사와 압력이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총재계인 주류는 관훈동 당사에서 이철승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는 시민회관 별관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이른바 ‘각목 전당대회’ ‘반당(半黨)대회’라는 파행을 맞고 말았다. 이와 관련 김영삼은 2000년 발간된 그의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에서 중정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전당대회를 방해했음을 증언하고 있다.⁸⁵⁾

동 김영삼의 회고록은 당시 중정이 김영삼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탄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나 김재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본다면 김영삼이 주장하고 있는 중정의 야당탄압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영삼이 그의 회고록에서 말했듯이 자신 주변의 인물들이 중정 국장급을 만난 사실조차 자랑스러워 할 정도였다는 회고는 당시 중정이 야당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결과적으로 신민당은 중정의 의도대로 4개월 뒤에 개최된 1976년 9월 수습전당대회에서 이철승을 당 대표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철승을 대표로 하는 신민당은 중도통합론을 내세우며 극히 타협적인 정치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유신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누적되면서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신민당에 비해 득표율에서 1.1% 뒤지는 사실상의 패배를 하게 된다.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야당인 신민당으로 하여금 보다 선명한 투쟁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는 타협적인 이철승 대표에 반기를 든 김영삼계가 김대중계 등의 도움을 받아 총재체제로 복귀하면서

85) 김영삼의 회고록 : “양 과는 대회장 밖에서 충돌했다. 비당권파의 행동대가 각목으로 무장한 채 당권파의 입장을 난폭하게 막아서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중정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불량배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박정희와 중정의 야당탄압은 그의 18년 장기집권 전기간에 걸쳐 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야당총재였지만 당내에서 소수파와 같은 처지였다. 내 주위의 당직자들은 모두 박정희와 중정의 위협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중정의 국장 한 사람이라도 만날라치면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듯이 자랑삼아 떠들고 다니기도 했다” (김영삼, 2000, pp95-96).

김영삼이 이철승을 누르고 신민당 총재에 복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은 박정희가 기자들과 만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김영삼은 안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이후 중정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방해공작에 시달려야했다고 회고하고 있다(김영삼, 2000, p103). 예를 들어 전당대회 며칠 전 김재규 중정부장이 만나자고 해 만나자 “대통령각하의 생각은 확고”하고 자신이 당총재로 출마할 경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선거가 끝나면 100% 구속”할 것이라며 출마포기를 설득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다(김영삼, 2000, p106).

이상과 같이 비타협적인 대여투쟁을 강조했던 김영삼에 대한 박정희의 분노는 당시 중정의 조직적 견제와 협박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작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은 총재직에 당선됐고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1979년 10월 4일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은 김영삼이 보름 전인 9월 16일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박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박정희 유신정권에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한 발언은 사대주의적인 것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상실케 했다는 명목으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결의했다.⁸⁶⁾

이 같은 결정에 항의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에 공화당과 유정회 합동조정회의에서는 ‘사퇴서 선별 수리론’이 제기됨으로써 여야의 갈등과 대치는 더욱 첨예해졌다. 중정이 여기에도 또 다시 개입하는바 10.26사건 이후 사건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강신옥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한 발언은 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86) 김영삼에 따르면 제명 전날인 1979년 10월 3일 저녁 장충동 중정 안가에서 김재규와 만났다고 한다. 김재규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의 김영삼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심이 확고하며 제명과 구속은 물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김영삼, 2000, pp153-156).

김재규에 따르면 중정은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 이후 당시 신민당의 정운갑 대행체제를 굳히기 위해 신민당 당직자들에 대한 사표 강요와 신민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철회를 종용했다고 한다. 또한 김재규는 신민당 의원을 전원 구속시킬 수 있는 비리조사서를 작성해 두고 있었다고도 했는데 이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중정의 정치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규 자신이 신민당 의원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자 박정희가 자신에게 “준비를 다 해놓고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다고 했다.⁸⁷⁾

또한 한 언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한 박종규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김재규 중정 부장이 신민당의 황낙주 원내총무를 만나 정운갑 총재대행 체제를 존중할 것을 종용하고 회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⁸⁸⁾

이처럼 김영삼의 회고록, 김재규의 접견록, 법정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정의 정치공작은 박정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 아래 중정 부장이 총괄하고 국내담당 차장보가 집행을 책임지는 조직적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87) 이에 대해서는 김재홍(1998)의 책에 부록으로 실린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취록인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를 참조. 김재규의 최후진술이 10.26 사건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피고인 김재규의 일방적인 자기미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신정부의 대야당 활동에의 개입이나 특히 김영삼에 대한 정치공작 등은 김재규의 형량에 미칠 영향이나 10.26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자 김재홍이 박종규·황낙주·정운갑 등을 만나 확인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김재규의 육성 최후진술은 유신정부에서 중정의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을 확인하는 데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88) 1979년 10월 24일 김재규 중정부장은 황낙주 신민당 원내총무를 궁정동의 중정 집무실로 불렀다. 김재규는 황 총무에게 정운갑 총재대행 체제를 존중하라고 종용했다. 총재대행 체제란 당시 박정희 정권이 YS를 어거지로 밀어내고 대신 비주류 인사를 앉혀 놓은 정치 코미디였다. 중정부장 김재규는 주류인 YS계가 이 대행체제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회유했다. 그러자 황 총무는 그 길로 박정희의 측근이며 국회의원인 박종규를 찾아간다. 황 총무는 박종규에게 신민당의 결사항전 의지를 흘렸다. 이 얘기를 들은 박종규는 박정희에게 신민당을 더 누르면 정국만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할 예정이었다(김재홍, 1998, p74).

2) 제5공화국 관제야당체제 유지 공작

제5공화국 정부는 1981년 민한당, 국민당 등으로 관제야당체제를 구축했지만 이후 12·12군사쿠데타와 1980년 광주사건 등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에 제5공화국은 1984년 말 학원자율화 조치 등 이른바 유화국면을 조성하여 정권의 안정을 시도하게 되었다. 집권과정에서의 정통성 부재를 일관된 억압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부분적인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1985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리는 매우 예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총선에서 민정당의 승리와 함께 1981년 1월에 인위적으로 창출한 관제야당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재생산하는 것이 사활적 과제가 되었다.

「12대 총선 시기 검토 보고」(1984.09.18) 등 안기부 문건은 당시 안기부가 여당인 민정당의 승리는 물론 관제야당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에도 주력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대 총선 대비 국민당 지도부 당세 보장 지원 요망」(1984.12.04)이라는 총선 대책 문건에 따르면 국민당이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해금자와 3차 해금자중 3명의 영입을 지원 요청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의 국민당 입당이 민정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한 후 다당제에 입각하여 국민당을 완충정당으로 육성·보장하는 차원에서 민정당과 협조하여 관리토록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정부여당이 안정된 정국운영을 위해 안기부를 이용해 관제야당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1985년 2·12 총선에서 선명야당을 표방하며 불과 25일 전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게 되자 안기부는 신한민주당에 대한 탄압에도 관여하였다. 김현규 의원의 제12대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 공작을 기획한 안기부 문건에는 안기부가 1984년 민한당 집단 탈당을 주도하여 연행 조사한 결과 민주협 탈퇴와 신한민주당 탈당 및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약속하여 방면했으나 약속과 달리 민주협만 탈퇴하고 1985년 총선에 신한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의원의 출마를 저지시키려고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또한 안기부의 12대 총선공작의 주요 목표가 민정당의 승리뿐만 아니라 관제야당체제의 유지를 위한 신민당 견제에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되자 안기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관제야당체제의 유지를 위해 민한당과 국민당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기부 문건 「민한·국민당 총선 사후 대책 추진상황」(1985.02.22)에 따르면 안기부는 민한당이탈을 방지하고 국민당의 당선자들이 잔류하도록 자금지원 등으로 권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기부의 야당활동에의 개입은 제5공화국의 관제야당체제가 와해된 이후에도 1986년 말에서 1987년 초 이른바 개헌정국에서 신한민주당 내 강온파 분열을 촉진 또는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안기부 문건 「신한민주당 전당대회 동향 및 대책방안」(일자미상)에는 파벌간 암투 표출로 국민지지도 감퇴를 유도하고 이민우의 당권 재장악을 지원하며 김대중의 인간성과 권모술수 등을 이용 이미지 격하를 추진하는 유인물을 은밀히 배포할 것과 중도온건세력 지원을 지시하고 있다. 1986년 말부터 격화된 당시 신민당 총재 이민우의 “조건부 내각제개헌 수용” 등의 이민우 구상과 이 시기 안기부의 대야당 대책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안기부의 제5공화국 관제야당체제 유지와 강온파의 대립을 촉진 혹은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한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약화를 도모한 시도는 야당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공작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 할 것이다.

3) 유성환 의원 통일국시 발언 사건

1986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초선의원이던 유성환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안기부의 사찰과 협박에 대해 폭로했다.⁸⁹⁾

유성환은 2007년 5월 22일 면담조사에서 안기부가 자신이 당선된 이후 줄곧 미행 주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안기부가 유독 자신을 주시한 이유는 선거 유세 당시 “전두환 정권의 집권 이후 외채가 150억에서 300억 달러로 늘어났는데 브라질은 땅을 팔면 되고 멕시코는 석유를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는 수염이라도 팔면 되지만 털도 없는 전두환은 무엇을 팔 것인가?” 또 경쟁 민정당 후보인 한○○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절한 것과 관련해 “옛날 유능한 포수가 유능한 개를 데리고 사냥을 가면 꿩이라도 한 마리 잡지만 무능한 사냥개를 데리고 가면 통시(화장실)에 빠진다”는 등 전두환을 희화화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런 발언들에 대해 자신의 후배로 당시 안기부 대구지부에 근무했던 황○○이라는 사람이 “계속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으며 그가 안기부 본부에 연락을 취하자 계획된 7번의 유세에서 그 발언을 2번까지만 허용한다고 해 유성환 본인이 3번만 하겠다 하여 황○○이 다시 재차 본부에 보고하여 허용 받은 일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89) 유성환 의원은 “지난 17일 저는 안기부 수사국 제6과장이라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세동 부장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퍼시픽 호텔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602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6과장이라는 분과 낯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장이라는 분이 유언비어적 발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지구당 대회에서 서진 롬살롱 사건의 비호세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 전두환 대통령이 독립 기념관 화재사건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양손으로 그 탁자를 굳게 악지를 하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일개 수사과장 앞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국사범도 아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부장을 팔아서 국민대표인 헌법기관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야당을 사찰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수사관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기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평양과 38선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뒤를 예의 주시합니까?” 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성환은 그의 이런 발언과 의정활동에서의 신랄한 정부 비판이 결국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유성환의 증언처럼 통일국시발언 이전부터 안기부는 유성환을 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유성환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내무위를 통해 안기부에 자료 요청을 한 일이 있었다.

안기부 문건 「신민당 유성환 의원, 내무위에 당부 관련 자료 제출요구」(일자미상)에는, 유성환이 안기부에 미국·영국·일본·서독·이태리·프랑스·캐나다 의회의 공산당 의원 숫자 및 득표율, 건국 이후 보안법(반공법) 위반 처형자 수, 제5공화국 이후 보안법(반공법) 위반 처형자 수,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학력과 경력, 모택동과 등소평 노선의 정책·정치사상·대서방정책 차이, 서방 6개국 공산당 합법화 시기의 각국 GNP 수치를 질의하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안기부는 “당부 자료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 시 철회토록 순화·조정·위계”할 것으로 처리 지침을 결정하였다.

당시 탈냉전의 개시 등 국제정세의 변화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유성환의 제출 요구 자료는 보안 등과 큰 관련이 없는 일반적 내용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안기부의 처리 지침은 상당히 경직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성환의 의정활동에 대해 안기부가 예민하게 반응했음을 보여 준다.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하고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인천사태는 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투쟁이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시하여 용공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발언하여 이른바 “통일국시 사건”으로 구속된다. 유성환의 국회 본회의 5분 신상발언과 진실위 면담내용 및 관련 국정원 자료 등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와 국시에 관한 논쟁을 야기한 이 사건에 안기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⁹⁰⁾

90) 안기부,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질의 원고 내용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1986.10.13),

유성환의 통일국시 발언은 1992년 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⁹¹⁾. 따라서 이 사건은 유성환의 문제발언 등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안기부가 1986년 자료 제출 요청 거부, 피시픽 호텔에서 수사과장의 협박 등을 통해 유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다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급기야 유성환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에 이르게 하는 등 야당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방해한 대표적 정치개입 사례라 할 것이다.

다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의 범위나 행위 유형을 세밀히 규정한 1994년 1월 5일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9조 2항의 2호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찬양 혹은 비방을 정치활동에의 관여 행위로 규정하며 원장 이하 모든 직원에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자 혹은 집권 정당의 사조직으로 기능한 과거를 반성하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은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으로 방대하고도 심도 깊은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올바른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범위-국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의 면책 여부」(1987.03)에서는 미국·프랑스·서독·일본의 사례연구까지 포함하여 국회 내 발언이라도 원외 발표나 국회 발언 예정 내용을 미리 국회 내 발설 유포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민당 유성환 의원 배포 국회 질의 원고 내용 검토 및 조치 계획 보고」(1986.10.15)라는 제목으로 사건개요에서 조치계획 등 7개항의 처리지침이 기록되어 있다. 동 문건의 참고사항에서는 “1986년 10월 14일 2회에 걸쳐 당부 간부가 유성환 의원을 접촉 질의 원고 내용 중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동 부분 삭제·수정토록 엄중 경고한바” 유성환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다.

91)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유성환에 대해 1992년의 상고심은 “국회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뤄진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 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 있는 반면 정략적 목적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독점될 경우는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특히 수집된 정보들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가치평가나 해석은 국민의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호도하거나 국가의 정책방향을 특정 의도에 따라 변경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수집 혹은 생산된 정보나 그에 대한 평가들이 집권 여당의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로 1986~1987년 여당의 내각제 개헌과 야당의 직선제 개헌이 충돌한 정국에서 안기부에 의한 부정적인 야당상 정립 시도와 1995년 지자체장 선거 연기를 둘러싼 안기부 작성 문건 사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1) 1986~1987년 개헌 정국에서의 안기부의 부정적인 야당상 정립시도

1986~1987년은 내각책임제나 호헌을 주장하는 정부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과 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충돌했던 시기였다. 이런 미묘한 정치적 시기에 안기부는 내각제 개헌의 정당성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건들을 작성하여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국조성을 위한 정치공작을 실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⁹²⁾

위에서 지적한 사실들 이외에 주목할 것은 개헌 공방이 더욱 치열해졌던 1987년에 들어서면서 안기부는 역대 야당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많은 문건들을 생산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역대 야당 정치 활동상 분석」(1987.03.19)이라는 문건은 1부 제1~5공화국의 야당 활동상과 2부의 분석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 1~5공화국에서의 야당 활동을 상세히 고찰한 이후 결론에 해당하는 2부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92)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선거개입 부분 중 ‘선거 시기와 변경 및 유지’ 를 기술한 부분 참조.

II. 분석결과

○ 과거 야당은

-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의 제시 보다는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우선 국민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발언을 일삼는 등 비민주적 작태 시현(한일협정·월남파병·예비군 창설·고속도로 건설·새마을 운동 반대·예비군 폐지·그린벨트 해제 등 선거공약 남발)
- 정부의 외교행위마저 사대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은 외세에 의존하고 나아가 정부에 아국의 내정간섭을 요청하는 등 반민족적 사대근성 표출(김대중의 대미 대한원조 중지 요청·김영삼의 카터에 박대통령 지원 종식 요구)
-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민주 정치를 포기하고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쟁취에 혈안(한일협정 저지 의사당내 농성·폭력행사 및 6·3사태 유발) 김두한·송원영 의원 의회 내 폭력 행사, 월남파병 동의안 처리 반대 의사진행 방해, 제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불복 원내외 농성, 시위
- 국가안보 정책을 왜곡 선전하거나 무분별한 대북 접촉제의, 용공적 발언 자행.

이어 동 문건에서는 “현재 제1야당인 신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의회정치 포기”, “폭력적인 민중봉기에 의한 정권투쟁”, “용공세력 비호”, “외세의존” 등 과거 야당의 비민주적·비자주적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민주적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마저 결여된 느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야당인 신민당에 대해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평가가 안기부에 의해 낙인처럼 찍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주발전연구회⁹³⁾라는 이름

93) 본 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민주발전연구회’라는 집필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정원에의 확인 요청과 인터넷 검색 그리고 현존하는 학술연구단체 목록 등을 조사했으나 그 실체 확인은 불가능했다. 민주발전연구회는 당시 안기부 소속의 연구팀이거나 외주 연구 용역팀 혹은 당시 집권여당이나 안기부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독립적인 연구단체일 가능성도 있다. 사실 ‘민주발전연구회’의 실체는 내각제 개헌 혹은 호헌을 목표로 했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정부에서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왜냐하면 첫째, 동 회가 작성하여 현재 국정원에 존안되어 있는 동 문건은 그 규모의 방대함과 시간적으로도 건국 이후 당시까지의 야당의 실태에 대한 분명한 부정적 주관 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 문건이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민감한 여야 정치적 대치

으로 1987년 5월에 작성된 「역대 야당의 생성과 이합집산 실태의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있다.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관하면서 동 문건에는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야당은 집권육에 사로잡힌 양김에 의해 주도되어 재야·학원 등 급진 강경세력의 영향권 하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빌미로 한 장외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의회민주 정치 근본바탕을 도외시하는 급진성향으로 변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문건들은 개헌 정국에서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안기부의 조직적 개입의 준비과정을 잘 보여 준다.

2) 1995년 안기부 작성 「단체장 선거연기 문제 검토」 문건 공개사건⁹⁴⁾

1995년 2월 20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 권노갑은 안기부가 작성한 「단체장 선거 연기 문제 검토」(1994.11)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폭로하였다. 문건에는 안기부가 1994년 11월 전국 지부장들에게 “최근 일부 민자당 의원이 단체장 선거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바 선거연기 문제를 심층 검토해 ○국 ○과로 응신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여당 민자당은 행정구역 개편 선행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안기부 작성의 동 문건이 민자당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실현시키려는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당과 무관한 안기부 내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일정한

시기에 발행된 시의성 때문이다. 만일 위의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민주발전연구회가 안기부 내부 연구팀 혹은 외주 용역팀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부정적 야당상 정립을 위한 대표적인 안기부의 정치개입 사례가 된다. 그러나 민주발전연구회가 안기부와 독립된 연구팀이라 하더라도 안기부가 동 문건을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목적성을 고려할 때 안기부의 정치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부 여당의 정략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야당에 대해 주관적으로 부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동 문건은 안기부의 대야당 정치개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4) 이 사건 역시 앞의 ‘선거개입’ 부분에서 일부 다루어졌으나 간단히 다루었기에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여기서도 다루었다.

경계를 그으려 했다. 또한 청와대도 안기부 지부가 선거를 연기시킬 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무차원의 여론수집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도 공식 발표를 통해 동 문건이 안기부에 의해 작성·배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차원의 여론수집으로 내부참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시는 이미 1994년 1월 5일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의 제2항 2호에 의해 안기부가 단체장 선거연기를 주장하는 민자당을 지원하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안기부도 이 문건이 안기부의 고유한 업무인 여론동향 조사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일각에서도 민감한 시기에 경솔한 처사를 한 안기부를 질타할 정도로 이 문건은 안기부의 정부 여당 편들기 개입 의혹이 짙은 것이었다.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정치일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지자체장 선거일정을 민자당의 정략적 입장에 따라 연기하려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토의와 협상으로 실현될 문제였지 안기부가 수집한 여론에 따라 결정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일 안기부의 주장대로 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여론수집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 여당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판단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9조 2항 2호에서 규정된 특정 정당과 정치인 지지 혹은 반대 목적의 여론 조성을 위한 의견이나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여야당의 상반되는 정치적 이익과 관련되는 정보나 여론의 수집은 신중했어야 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대상은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대야당 정치공작이 국가정보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집권세력의 정치도구로 오용되게 했다면 집권자 및 그 최측근 세력 일부를 위한 대여당 정치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을 집권자의 사유물로 전락케 했다. 집권세력 내부에서 차기 유력 집권 후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과 개인적 비리 수집을 통한 집권자애의 충성 유지 및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의 사적 남용 등이 이런 정치개입 유형의 사례들이다.

여기에서는 대여당 정치개입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1968년부터 본격화된 공화당의 3선 개헌을 둘러싼 당 내분에서 1971년 10·2 공화당 항명 파동 사건까지의 중정의 활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민주공화당 3선 개헌 공방과 10·2 항명 사건⁹⁵⁾

민주공화당은 1967년 5월의 대선과 6월의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부정선거 규탄운동 등 불안한 정국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당내에서도 차기 대권 후계를 둘러싸고 내분이 심화되고 있었다. 당의장 김종필과 그를 지지하는 국민복지연구회의 김용태 등 김종필계와 당시 중정 부장 김형욱을 비롯한 백남익·윤치영·길재호·김진만 등 이른바 비주류계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복지회 사건의 책임을 물어 1968년 5월 24일 김용태를 제명하고 김종필을 당의장에서 사퇴케 함으로써 당내 유력한 후계세력을 제거했다.

95) 이 부분은 ‘정치인 사찰’ 부분 중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인 사찰’ 부분과 일부 중복되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별도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논의가 당내 외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68년 12월 17일 윤치영 당의장 서리는 부산 연설에서 개헌과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3선 개헌을 위한 의증을 내비쳤다. 이어서 1969년 1월 6일 길재호 사무총장은 개헌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3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1969년 2월 3일 개최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는 3선 개헌 찬반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동년 4월 8일에는 신민당이 발의한 권오병 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예춘호·박종태 등 친김종필계의 개헌반대파 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4·8 항명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기 동안 중정은 「김종필 동향보고」(1969.03.18), 「김종필 동향 첩보 입수」(1969.03.18) 등에서 김종필이 과거 직계 박종태·김용태 등과 개헌반대 의사를 표명, 개헌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범국민적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서려는 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김용태 동향 첩보 보고」(1969.04.09)와 「김용태에 대한 첩보」(1969.04.04) 등에서 김용태가 김종필계로 분류 주목받는 것이 억울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불변 등의 언동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 동향 보고」(1969.07.31) 제목의 문건에서는 김용태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김용태 의원은 1969년 7월 28일경 박 대통령을 접견, 중정에서 정치사찰을 금지하고 대공 사찰인 기본업무만을 수행해 줄 것과 공화당내 요직안배를 요청 복당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하 6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 성명 발표를 위해 조정 작업 중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화당 내 동정 첩보 보고」(1969.10.31)에서는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이후 공화당 내 김종필계의 구주류계와 비주류계의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구주류계는 71년 총선에서 김택수 의원을 재정위원장으로 기용하여 당내 세력 과반수를 확보해 김종필 당의장을 복귀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비주류계는 최근 요직을

사퇴한 이후락 전 비서실장과 김형욱 전 중정 부장을 배후 조종, 71년 총선에서 총 200석의 원내 의석 중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160~170석 가운데 100석의 자파세력 구축을 목표로 이후락은 울산에서 김형욱을 전국구로 입후보하고 당내에서 김성곤과 야합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이상의 문건들은 3선 개헌을 둘러싼 민주공화당의 당내 분쟁에 관해 중정이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실현을 위한 공작에 나섰음을 보여 준다. 3선 개헌에서 중정이 차지한 역할에 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특히 3선 개헌에 반대한 김종필계 의원들에 대한 이상의 중정 문건 이외에도 당시 공화당 당의장을 지낸 정구영의 회고록과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만섭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정구영은 그의 회고록 「정구영 회고록 : 실패한 도전」에서 1968년 5월 24일 국민복지회 사건과 동년 5월 30일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김종필 당의장의 정계은퇴 선언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는 국민복지회라는 단체는 “한마디로 농촌근대화 운동이었다. 공화당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도시는 발전하는데 농촌은 그늘진 지대로 남는다 해서 착안된 것이다. 얼마 후 박대통령이 내놓는 새마을운동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규정한다(이영석 편, 1987, p218).

이런 국민복지회가 김종필을 1971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박정희에 반란을 획책하는 조직으로 둔갑한 것은 “정치 모략이었고 김용태와 JP 그룹이 빠졌던 함정”이었다고 정구영은 단언한다(이영석 편, 1987, p221). 즉 정구영은 회고록에서 국민복지회 사건이 박정희의 3선 개헌을 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시 당의장 김종필계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으로 이를 위해 중정은 최영두·김용태 두 의원을 연행하여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⁹⁶⁾

96) 정구영의 회고록에는 “왜 복지회를 정보부에서 조사해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해. 내가 이 사건을 안 건 김형욱 부장한테서 설명을 들었지. 그 사람이 반도호텔에서 만나자기에 갔더니 복지회 사건을 설명하면서 서류를 보여주고 그래. 주된 내용은 박대통령이 71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그런 얘기야.

또한 당시 공화당 의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3선 개헌을 반대했던 이만섭도 2007년 6월 20일 가진 면담조사에서 3선 개헌에서 중정의 역할에 대해 증언했다. 1969년 7월 25일 박대통령의 3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 기자회견 이후 개헌안 발의를 위한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만섭은 개헌의 선행조건으로 권력형 부정부패의 책임자 이후락·김형욱의 퇴진, 중정은 대공 사찰에만 전념하고 정치사찰 중단, 창당이념에 부합되는 당의 체질 개선, 공명정대한 국민투표 실시, 4·8 항명사태로 제명당한 예춘호·양순직·박종태 등 5명의 복당을 내걸었다고 한다.

또 이만섭은 선행조건에 중정의 정치사찰 금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당시 3선 개헌을 위한 정치공작을 중정이 직접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위의 문건 「개헌 논의를 위시한 정계 동향 보고」(1969.07.31)에서 1969년 7월 28일 박대통령을 만난 김용태 의원이 복당 조건의 하나로 중정의 정치사찰 금지를 요구했던 점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당시 3선 개헌을 둘러싸고 공화당내 반대세력이 중정의 정치사찰에 강한 불만을 가질 만큼 중정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말해 준다.

1971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은 물가폭등·실미도 사건·광주 대단지 사건 등 일련의 정치사회적 위기에 봉착했다. 이와 함께 1971년 6월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을 국무총리와 공화당 부총재로 기용하게 되면서 1969년 3선 개헌에서 공을 세워 당시 공화당 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백남익·김성곤·김진만·길재호의 이른바 ‘4인 체제’와 김종필계 사이의 당내 내분이 재연되었다(조갑제, 1987, p52).

1971년 9월 30일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정치·사회·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물어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과 신직수 법무부 장관 및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공화당에 강력히 지시하였다.

그런데 강령이니 취지니 하는 건 또 다르고 허황되고 어린애 장난 같아. 그런데 그게 문제 되어 둘이 붙잡혀 갔는데 최영두씨는 그 일로 죽었어. 붙들려 가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어서 병을 얻고 말았는데 결국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된 것인지 3년 후에 죽었어” 라고 서술되어 있다(이영석 편, 1987, p211).

동년 10월 2일 실시된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류 측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이탈하여 찬성 107표 반대 90표 무효 6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 버렸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자신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당시 중정 부장 이후락에 지시하여 김성곤·길재호 등 23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중정으로 연행·조사하였다(김충식, 1992a, p368-371). 이어 김성곤과 길재호에게는 탈당계를 강요하여 이를 해당 지구당에 접수시킴으로써 당시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들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동년 10월 23일 당시 야당 신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과 김한수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을 국회모독으로 규정하고 진상요구 발언을 했다.

이처럼 당시 중정은 집권 정부나 여당을 위한 정치공작 뿐만 아니라 집권자와 그의 최측근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당 소속 유력자와 의원들에 대한 정치공작도 마다하지 않았다.

2) ‘미림’ 팀 획득 정보의 악용 의혹

김영삼 정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미림팀 사건에 대해서는 앞의 ‘정치인 사찰’ 부분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50호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불법 도·감청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에서 미림팀의 존재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문제는 이 같이 획득된 정보가 최고 집권집단에 의해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영삼 정부의 이원종 청와대 수석은 오○○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1996년 12월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 모임의 내용을 알고 백○○ 의원에게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고 말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 의원은 위 모임의 차기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통해 도청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밖에 언론들은 1994년 12월 박○○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 당시 경호실장이 김현철의 전횡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 미림팀의 도청에 걸려 비슷한 시기 경질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림팀에 의해 수집된 정치인들에 관한 정보 내용은 김○○, 오○○ 등 안기부 차장들을 통해 대통령 차남 김현철과 정무수석 이원종 등에 보고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이 국가안보는 물론 정부여당도 아닌 최고 권력층의 측근들에 의해 정략적으로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 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대통령의 가족이나 최측근들에 의한 국가정보기관 사조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마 | 국회활동 개입 의혹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으로 안기부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가 법률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1994년 6월 국회 상임위원회로 안기부를 감독하는 정보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의 통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문민화와 정치개입 금지에 관한 이런 법률·제도적 장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와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5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미림팀 사건으로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도 안기부·국정원의 불법적인 도·감청과 이의 국내 정치에의 활용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정부임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에서까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이하 집권세력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사실 미림팀 존재의 폭로와 연이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도 불법 도청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물론이고 여야당 모두의 정략적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른바 ‘국회 529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이런 대표적 사례가 된다.

‘국회 529호 사건’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8년 12월 30일 발생했다. 당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신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안기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본관 529호실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의원들의 동향 감시와 도청 및 감청 등 사찰활동을 벌여왔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흥분한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동년 12월 31일 국회 529호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기부 문건 59건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1999년 1월 1일 국회 사무처는 한나라당의 기물파손과 기밀문서 불법 복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안기부도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을 형법상 비밀침해 및 특수절도 혐의로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법원에 관련 문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신범 의원의 폭로와 달리 국회 529호는 안기부의 국회 분실이 아니고 1994년 6월 국회정보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기부 관련 문건을 열람하기 위한 자료열람실로 안기부의 국회 연락관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했다. 즉 국회 529호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설치된 안기부 자료 열람실로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용했으며 주 1회 국회 안기부 연락관이 국회 정보위원장에 「주간정보 보고」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사무공간이었다.

한나라당은 1999년 1월 2일 확보한 문건 가운데 1차로 12건을 공개했고 이어서 2차로 나머지 47개 문건을 공개했다. 총 59개의 이 문건을 분류하면 ‘북한동정’ 등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지원하는 대외비 문건 6건(주간정보보고), ‘국회 정치개혁 특위, 안기부장 인사청문회 대상 문제로 여야간 공방’ 등 첩보보고 문건 3건(1건은 미완성), 수집조정 대책비 집행계획서(예산계획서 초안 2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예정 상황 등 국회 및 각 당 발간 자료 6건, 「연합뉴스」 국회관련 기사와 증권가 정보지 공개자료, ‘정기국회 상황 파악 계획’ 등 타이핑 메모 2건, ‘여야 3당, 내각제 개헌 관련 동향 및 전망’ 등 자필 메모 4건, 기타 소형 수첩과 대학노트 등이었다(김당, 1999, p350).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치사찰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것은 1차 공개분에 포함된 「내각제 추진관련 정치권 입장 및 전망」이라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메모였다. 동 메모에는 내각제에 대한 한나라당·국민회의·자민련 등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대응 전략으로 “△‘경제회복과 국난극복’의 국정목표 설정을 통한 내각제 개헌 공론화 자제 여건 조성 △ 내각제 개헌 합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치 명분과 이념을 개발 △ 신3당 합당식 정계 개편을 통한 내각제 개헌 약속의 무의미화 유도” (김당, 1999, p355)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당은 위의 문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정치사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안기부 직원의 업무 범위로 인해서이다. 즉 안기부 직원은 정보요원으로서 정보 가치가 있는 것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동 문건의 작성자인 안○○도 국회내에서 획득한 정보로 이를 메모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안○○이 정치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이고 곧 박사과정을 앞둔 정치학도로서 개인적 관심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안기부도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하면서 연락관 개인의 관심의 결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미 1994년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따라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위해 유리한 여론의 조성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정신에서 볼 때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된다.

설령 김당의 주장과 안기부의 공식입장처럼 연락관 개인의 관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문건의 내용은 안기부 자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직원 개인의 정치관여 금지에는 위반되는 것이다.

이른바 ‘국회 529호 사건’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안기부 자료열람실을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위한 분실이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529호실에서 어떤 불법적인 도·감청 시설 등 정치사찰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시 안기부 국회연락관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 「내각제 추진관련 정치권 입장 및 전망」은 여전히 국가정보기관 전체 혹은 최소한 그 구성원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법률적 및 제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 금지가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국가정보기관은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 의도나 이익에 따라 정치개입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사찰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3 소 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한국의 정치는 비대화된 국가정보기관이 정당과 국회 활동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담당하는 초권력기관으로 기능했던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략적으로 도구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집권세력 내에서도 최고 권력자 개인을 위한 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런 오욕은 전반적인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장에서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도 계승되고 있는 1994년 1월 5일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 제9조에 의거하여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정당/국회 활동에의 개입과 공작에 대해 검토하였다. 위의 법률에 따라 야당 창당에의 개입 유형(<국정원법> 제9조 제2항 1호 해당), 야당 활동에의 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 최고 권력자 집단을 위한 대야당 정치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활동 개입 의혹 유형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야당 창당 개입 유형을 통해서는 청와대 대책위원회의 존재와 전두환 대통령과 이택돈과의 독대로 밝혀진 바대로 관제야당 체제 창설이나 야당의 창당방해를 지시한 최고책임자가 청와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중정·안기부가 주무책임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야당 활동에의 개입 유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야당 활동에의 개입을 총괄적으로 담당한 것이 국가정보기관이었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사건은 1976년 신민당의 지도체제를 보다 온건한 세력으로 교체하기 위한 정치공작에서 시작하여 1979년 10월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이르기까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등 측근들의 강경한 요구에 주무책임을 담당한 중정이 김재규 부장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함으로써 집권세력의 내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10·26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제야당 체제 유지를 위한 안기부의 정치공작은 신한민주당 출마 후보들에 대한 탄압은 물론 1985년 2·12 총선 이후 민한당과 국민당의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안기부의 지원과 개입이 확인되었다.

유성환 통일국시 발언 사건은 강경한 대여 자세를 가진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사찰·경고·협박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까지 무시하면서 구속한 사건으로서 안기부의 처리지침에서 확인되었듯이 관련 의원의 사법처리는 물론 정치적 도태까지 의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유형을 통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부정적인 야당상을 조작·유포시키고 집권여당에 유리한 정치일정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여론 조성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고 권력자 집단을 위한 대여당 정치개입 유형의 사례들은 국가정보기관이 정부여당의 정략적 도구 역할에서 나아가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 및 그 일부 측근의 개인적 사조직 역할을 했던 과거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강구된 민주화 이후에도 안기부 내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이 활동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러한 도청을 지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물론 정치권에 의한 정치사찰 의혹 제기 등이 일상화됨으로써 국가정보기관 내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8년 연말에 발생한 ‘국회 529호실 사건’은 공식적 사무공간인 국회 529호실을 안기부의 정치사찰 아지트로 몰아부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문체의 발단이기는 했으나 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사찰 의혹을 살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상의 유형과 유형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 국가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와 발전에의 기여라기보다는 집권세력 및 최고 책임자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국가정보기관이 불가피하게 비밀스럽고 다른 어떤 조직보다 상명하복이 필요한 특수 집단이라는 점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이 다루는 방대

하고 민감한 정보를 생각하면 권력기관화 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의 특성상 집권세력이 요구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래 바람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자세와 위상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국정원의 과제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94년 1월 5일 개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현행 <국가정보원법>에는 일반 직원들의 정치관여의 금지를 제9조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직 상부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4년 이전 중정과 안기부 법률에서 부장·차장·기획조정관에 한정되었던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하나의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면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조직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의 본산으로 인식되어온 국가정보기관이 오욕의 과거를 벗고 새롭고 발전적인 국정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의한 국정원의 감독과 통제라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원장 이하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정치관여의 금지를 단지 의무가 아닌 정치적 중립에 대한 법률적 보호로 인식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1 서론

가 정치자금의 의미

현대정치는 대중 민주주의이며 대중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일컫는다.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는 일개인에서 조직적인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일찍이 한 정치학자가 지적했듯이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며 정당의 활동은 현대정치를 움직이는 주체적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정치를 살펴보면 정당은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 헌법기관이기도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정치의 중심에 있었으며 정보기관도 막대한 권력과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국 현대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하였다.

정치의 중심 즉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정치행위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연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정치자금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가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이라 하면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당이나 정치가의 자금을 뜻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국권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자금도 정치자금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정치자금은 원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현대와 같이 대규모의 조직화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당비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한국정치의 경우 대중 정당이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써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부재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의 조달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어 왔다. 더군다나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경우 필요한 정치자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 국고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현대의 민주정치는 일반적으로 대중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정치자금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치활동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생산해내고 돈에 의하여 정치가 지배되는 금권정치로 발전하며 금권정치는 돈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여 파벌정치와 보스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돈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민주정치가 오히려 퇴색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앞에서 지적한 대중정당문화의 부재 때문에 이 같은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나

중정·안기부의 정치자금 통제를 통한 한국 현대정치의 왜곡

금권정치는 정치의 부패를 잉태하며 정치의 부패는 국민생활을 위협한다. 민주정치의 역사가 일천하고 게다가 민주적 정치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의 현대정치는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하여 탄생한 제3공화국에 접어들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명망가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정당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군부세력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권력의 모체로 삼아야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정치자금이 문제였다.

중정은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성하여 여당인 공화당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된다. 제4대 중정부장을 역임한 김형욱은 그의 일본어판 회고록에서 4대 의혹사건을 통하여 조성된 정치자금을 정치공작자금이라고 명명했다(김형욱, 1980, p84). 제3공화국은 정보기관에 의하여 집권정당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전근대적인 정치 행태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4대 의혹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빗발치자 1965년 2월 9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게 된다. 당시 이 법률은 산업·경제인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와 건전한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었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685호 제1조 목적).

즉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2006년 4월 28일에 제19차 개정을 할 때까지 약 2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는 누더기 법률이 되었다. 이 법률의 개정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왜곡된 정치문화의 현주소는 너무 초라하다고 할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정치의 중심은 바로 박정희 자신이었으며 이 시대에 박정희 독재체제를 떠받치고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킨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중정이었다.

중정은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여당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정의 힘을 바탕으로 박정희 독재체제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야당을 불문하고 감시·통제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정책간섭과 고위직 인사에도 개입하였다. 또한 정치활동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정치자금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대통령의 통치자금으로 활용하였으며 야당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을 내사하여 야당활동을 위축시켰고 여당과 여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조사를 통해서도 여당을 박정희 정권의 거수기 역할에 만족하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과거 중정과 안기부가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의 현대정치를 왜곡시켰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중정과 안기부의 정치자금 통제유형을 내부 문서를 중심으로 정형화 한 다음 정치자금에 대한 중정과 안기부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통제가 한국의 현대 민주정치 발전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만 앞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본 조사내용은 ‘정보기관의 정치자금 통제’에 관한 일단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 자료로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정치자금 통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했다. 특히 ‘4대 의혹사건’과 ‘안풍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형욱 회고록과 안풍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참고했는데, 안풍사건의 경우 사법부에 의해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 있는 자료이다.

2 정보기관의 정치자금 통제의 유형과 사례

가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창구

1) 4대 의혹사건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통치권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커다란 임무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임무 수행의 방법 중 하나는 통치권자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은 중정의 초대 부장을 역임한 김종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뒤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회가 안정된 뒤에는 군에 복귀할 것이며 정부는 민간인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정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돕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김종필 초대 중정부장에게 공화당을 창당하게 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정당의 창당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정이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소위 공화당 창당자금과 관련된 4대 의혹사건이다.⁹⁷⁾ 4대 의혹사건은 증권파동사건·워커힐사건·회전당구기사건·새나라자동차 사건을 일컫는다.

증권파동사건은 4대 의혹사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다. 윤응상이 김종필과 만나서 증권시장 조작을 위한 자금 1억원을 수령한 후 통일·일홍·동명 등 3개 증권회사를 설립하고 대한증권거래소를 직접 장악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주가조작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중정의 자금으로 유용되었으며 중정의

97) 4대 의혹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의 객관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김형욱의 일본어판 회고록을 참조하였다. 김형욱 회고록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자신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신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형욱이 중정부장을 지냈으나 중정과 국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고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도 있는 등 김형욱 회고록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한다.

지시에 의하여 증권거래소는 5억원의 특별융자를 얻어 3개 증권사의 자금으로 충당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2년 5월 마침내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제일에 주식거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자 증권파동이 일어났다. 결국 이 증권파동으로 인하여 위의 3개 증권사를 비롯한 5,242명에 이르는 일반투자자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물론 주가조작을 통하여 모은 거액의 자금은 중정의 김종필의 것이 되었으며 그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김형욱, 1980, pp89-91).

워커힐사건은 중정부장인 김종필이 직접 개입한 사건으로 관광객 유치에 의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 1961년 워커힐호텔을 지으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이 계획은 중정 국장인 석○○이 주관하였으며 석○○은 자신의 부하인 과장 임○○을 워커힐 사장에 임명하였다. 호텔건설공사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김종필 중정부장은 교통부 장관과 관광공사 총재에게 압력을 가하여 정부자금 5억3천600만원을 융자받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정이 막대한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다(김형욱, 1980, p87).

회전당구기사건(일명 파친코사건)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 기계인 회전당구기를 파친코 업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시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였으며 수입과정에서 중정이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이다. 문제의 파친코 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중정이 배후조종을 하였으며 김종필의 지시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하여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강성원·정지원·이영근 등이 이 사건에 개입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자금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한 조직준비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이 사건은 중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당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파친코를 장려하여 군정하의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불법적인 사건이었다(김형욱, 1980, p88).

새나라자동차사건은 중정이 자동차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승용차를 불법 반입한 뒤 이를 시가의 2배 이상으로 국내에 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김종필은 적어도 2억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모아서 박정희에게 상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야당을 분열시키고 공화당을 설립하기 위한 공작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공작에는 김종필 개인만이 아닌 중정이라는 조직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일으킨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김형욱, 1980, pp84-87).

박정희 군사정권은 군사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구인 중정을 통해 공화당의 창당을 위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자 군사정권의 2인자이자 초대 중정부장으로서 4대 의혹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인 김종필이 정계에서 일시적으로 은퇴를 하기에 이르렀다.

중정이 4대 의혹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국정원 존안 자료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 같은 김형욱의 증언 그리고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종필이 4대 의혹사건이 터진 이후 일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4대 의혹사건에 중정이 개입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4대 의혹사건에서 중정의 개입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4대 의혹사건을 통하여 조성된 막대한 정치자금의 행방이 모두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4대 의혹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사건을 넘어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정이 깊이 개입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며 중정의 월권과 불법적 행위가 당시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하였고 많은 민간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다.

2) 안풍사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자금개입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소위 안풍사건이다. 안풍사건은 1995년 6·27지방선거와 1996년 4·11 제15대 총선에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이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되었다는 사건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안기부의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안기부의 예산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은 1995년 4월까지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그 후부터 1997년 3월까지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근무하였다.

김○○은 1995년 5월 3일 상업은행 연희동지점에서 실질적인 안기부 계좌인 ○○○○문화사 명의의 계좌에서 8억원을 인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6년 1월 27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안기부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사·○○문화사·○○○○진흥회·○○○○연구소 명의의 계좌에서 1,197억원을 인출하였고 인출된 돈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는 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 관련계좌로 모두 입금되었다.

1995년 5월 16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하여 입금되기 시작한 안기부자금은 총 52회에 걸쳐 1,197억원 전부가 입금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남중금계좌를 통하여 925억원이 입금됨으로써 당시 민주자유당 및 신한국당의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의 관련설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1심에서는 주요 피고인이었던 김○○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하여 징역5년 자격정지2년, 민자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 대하여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김○○으로부터 125억원, 강삼재로부터 731억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하였다.⁹⁸⁾

그러나 2심에서는 동 자금이 안기부예산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1992년 대통령선거자금의 잔금으로 추정되어 관련 피고인들인 김○○과 강삼재에 대해서 국고손실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강삼재에 한하여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⁹⁹⁾

98) 「2001고합62, 93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강삼재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장물취득) 나. 안기부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 판결문」(2003.09.23)

99) 「2003노25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나. 안기부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건 판결문」(2004.07.05)

마지막 3심에서도 2심의 판결을 답습하여 1,197억원이 안기부예산이 아닌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자금 잔금으로 추정 기각하였다.¹⁰⁰⁾

이로써 1995년의 지방선거와 1996년의 총선에 사용된 1,197억원의 안기부예산 논란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잔금이었던 것으로 일단락되었다.¹⁰¹⁾ 물론 안기부 예산이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돈이 안기부 예산이었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이었다든 관계없이 안기부의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운영차장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안기부관련 계좌를 통하여 여당에 정치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기부는 정치자금 개입에 대하여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기부 예산은 그 규모·용도 등이 모두 베일에 싸여있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정 시절에는 부장이 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왔으나 안기부로 개편되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안기부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운영차장간의 투톱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을 안기부 운영차장 김○○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즉 국가의 공적기구인 안기부가 대통령의 사적 금고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이는 안기부의 씻기 어려운 불명예임에 틀림없다.

100) 「2004도45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나. 안기부법위반 사건 판결문」(2005.10.28)

101)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논란이 적지 않다.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던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행의 준수여부, 또한 1,197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의 출처여부 등 국민적 의혹사항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언론과 정치권의 몫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중정이나 안기부는 오로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만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이었다. 따라서 여당 또는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통제하였다. 그러한 통제의 방법에는 중정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압력과 물리력이 동원되었다.

중정은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 정권의 자금원 역할을 하던 기업가인 김○○ 공화당 의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 이 때 이용한 방법의 하나는 김○○ 의원의 과거 친 공산주의 활동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기업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박정희 정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였으며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고통치권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여당과 여당의원들을 통제했다. 우선 정치자금을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어 여당과 여당의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여당을 통제했는바 김○○ 의원의 사례처럼 중정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두 번째는 개별 여당의원들의 자금원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중정은 여당의원들의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조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기업활동을 통제하고 여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루트를 확인함으로써 여당의원들에 대한 통치권자 및 정보기관의 장악력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정치활동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밀함도 중정이나 안기부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들에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1990년 3당 합당 직후에 실시된 대구 서갑 보궐선거는 여당의 입장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야합으로 비난받던 3당 합당의 당위성을 선거승리를 통하여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선거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정호용이 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다. 이에 대통령과 경북고·육사 동기인 정호용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안기부의 공작이 벌어지고 결국 안기부는 정호용의 100억원대 비자금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이것으로 정호용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끝이 나게 된다.

이 사건은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도 그리고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사이라도 통치권자의 행위에 저해가 된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정치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으로 안기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임과 동시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정치자금이 유용하게 이용되었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다.¹⁰²⁾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의원들도 아킬레스건이 있기 마련이다. 중정은 이러한 여당의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여당의원들을 압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다만 야당의원들에게 행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의 방법은 자제하였을 뿐이다.

다 야당 및 야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을 하고 야당의원을 한다는 것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경찰·보안사·중정 등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다.

102)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선거개입’ 부분의 정호용 후보 사퇴 사건 참조.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물론 여성관계 등 사생활문제, 그리고 야당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는 야당인사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특급정보였다.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항상 축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상현 前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김상현 전의원은 중정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야당의 당직자들 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문제·정치자금관계·여성관계 등 주변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쪽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진술하였다(김상현 면담 기록, 2007.05.22).

중정과 안기부는 정치자금을 문제 삼아 야당과 야당의원을 탄압하였으며 때로는 야당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관제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법마저 사용하였다. 또한 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중정이나 안기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치공작을 일삼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여본다.

박정희 정권기의 대표적 야당 중진의원이었던 고흥문은 중정에 의해 개인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속한다. 중정은 고흥문 의원에 대하여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였으며 그의 재산관계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야당은 유진산계와 김홍일계로 분열하게 된다. 이듬해 9월 20일 신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신민당 전당대회는 양쪽 파벌이 분열하여 각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전당대회는 중정에 의하여 조정된다. 국정원 내부 자료인 「정치자금 관련 고흥문 의원 조사결과」(1972.09.20)에는 ‘고흥문은 고철로 하여금 조성한 토지에 사도(私道)포장 등으로 완전 대지화 하여 매각한 후 정치자금 조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허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소견이 있다.

이 조치가 보고된 날은 우연하게도 신민당 전당대회 날과 같다. 고흥문이 택지를 조성하여 그 매각대금을 신민당 전당대회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한 중정의 조치였던 것이다.

이 조치는 또 다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흥문 의원 택지 허가권 조종결과」(1972.10.16)에는 ‘실업인 고철이 임야를 택지로 조성함에 있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흥문이 국회의원 직권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사도 공사비 70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받도록 압력을 가함. 허가되면 대지를 매각한 자금이 고흥문 의원을 통해 신민당 전당대회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인정돼 당부에서 조종하여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허가되지 못하도록 조종하던 것을 1972년 10월 20일 허가조치 하도록 조치하였음’이라고 되어있다.

시기적으로 10월 유신 보다 앞선 문서로 신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 달 후에 원래 허가되어 마땅한 조치를 허가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중정이 일선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허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이 있었을지 만무하나 이러한 월권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야당원의 재산권 행사를 중정이 제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유신이후 박정희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은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여 박정희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김대중과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운 최연소 야당총재인 김영삼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이들에 대한 통제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통제 또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이 국정원 내부분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이들과 관련된 자료는 직접 이들 지도자를 통제하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료를 축적해 놓음으로써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통제자료로 이용하여 간접적인 정치통제의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야당 지도자와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 자료들을 통하여 당시 중정에 의하여 야당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정원 내부 문서에서 확인한 김영삼 전대통령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등에 대한 견제대책보고」(1976.02.23)에서는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에 대한 선거자금 제공자에 대하여 견제대책의 일환으로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문서가 있었다.

위의 자료보다 앞선 김영삼에 대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자료로는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혐의자 첩보 입수 및 신원내사보고」(1975.04.15),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세무조사 결과보고」(1975.04.29),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내사」, 「김영삼 정치자금 제공자 조사보고」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람한 자료만으로도 중정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공작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우선 야당지도자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불사하며 대통령의 통치 질서에 저항할 때 중정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야당지도자에 대하여 정치공작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지도자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차원에서 야당지도자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첩보가 입수되면 이에 대한 내사를 실시하게 된다.

둘째, 정치자금 제공자에 대한 면밀한 내사를 바탕으로 이들 정치자금 제공자에 대한 개인비리 및 회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치자금 제공자의 약점을 파고든다.

셋째, 정치자금 제공자의 약점을 압박카드로 삼아 야당지도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그만두게 하여 야당지도자에 대한 자금원을 봉쇄한다.

넷째, 자금원이 봉쇄된 야당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되며 이 경우 야당지도자는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톤을 낮추어 정치적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및 중정과 정면대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김영삼의 경우가 이러한 메커니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의 김영삼에게 제공된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면, 대개가 유신 이후 긴급조치 하에서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박정희 정권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김영삼이 제1야당인 신민당의 총재로 재임 중일 때 만들어진 문서였던 것이다.

중정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던 김영삼 총재를 정치공작의 타깃으로 삼았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영삼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 루트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중정은 김영삼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다음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정치자금이 양성화 되지 않았던 시절 더군다나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자해행위와 같은 의미를 지녔던 시절에 야당지도자인 김영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중정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정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야당지도자의 정치자금 제공원을 차단한 중정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공작에 나서는 것이다. 즉 유신정권에 비

협조적인 김영삼 체제를 파괴하고 온건한 야당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 그것이다.

1976년 9월에 실시된 당시 제1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였던 김영삼이 온건노선 주창자인 이철승에게 패하여 당수직을 내놓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김영삼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중정이 일련의 정치공작을 행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⁰³⁾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중정의 정치공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이며 야당의 전당대회는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동원되는 관계로 중정이 가장 손쉽게 정치공작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선 고흥문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도 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이었고 1976년 및 1979년의 신민당 전당대회도 전형적인 중정의 정치공작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1986년의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 사건)¹⁰⁴⁾도 중정의 후신인 안기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공작임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1976년의 신민당 전당대회는 정치자금의 루트를 잃어버린 김영삼이 중정이 기획한 정치공작의 희생양이 되면서 야당의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김영삼이 다시 총재로 복귀하는 1979년 5월까지 사쿠라 야당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박정희 정권의 소극적인 반대자에 머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중정의 야당

103)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정당·국회활동 개입’ 부분의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사건을 함께 참조.

104) 일명 용팔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이 신민당의 온건파였던 이택돈·이택희 의원과 사전 공모하여 필요자금 6억원을 제공하였음이 추후 밝혀졌다. 안기부의 자금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정당·국회활동 개입’ 부분의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공작을 참조하라. 한편 이택돈 의원 등이 쉽게 안기부의 공작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중정과 안기부를 거치면서 축적한 이들에 대한 내사자료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에는 이택돈 의원에 대한 주요발언 및 활동 등이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지도자에 대한 정치자금 통제를 통하여 나타난 정치공작 성공의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대의 또 다른 야당지도자인 김대중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정치공작이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관련된 문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정치자금」, 「김대중, 길재호 출두 시 총통제 선거 자금관계 집중추궁계획」, 「김대중 선거자금 제공」, 「KT 정치자금 지원 혐의조사」, 「KT의 대선자금 반입 봉쇄 대책」 등이 그것인데 정치적 위상으로 봤을 때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통제에 버금가는 정치자금 통제가 김대중 전대통령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KT의 대선자금 반입 봉쇄 대책」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정이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전달루트를 차단하기 위하여 벌인 공작인데 이 문서에는 김대중 정치자금의 봉쇄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우선 중정은 외국에서 김대중의 정치자금이 반입되는 경로를 파악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환치기·외국에서 현찰휴대 입국·일본은행 수표·미국 등 제3국 상사를 통한 우회적 반입·외국 대사관과 직원 이용·종교계 반입·구호단체를 통한 반입 등의 방법으로 김대중이 정치자금을 해외에서 반입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치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군사 독재정권하에서는 대통령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치자금의 반입 루트를 확인한 중정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립하였다. 첫째, 김대중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교포에 대해 교포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이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차별정책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얼마나 정권유지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의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친야적 호남출신 재일교포 국내소유재산 파악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소위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을 축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태동했다고 하는데 호남출신 재일교포들이 김대중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억압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종교계 반입외화 조사의 방법이다. 종교계가 대체적으로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중정은 특히 종로5가로 알려진 KNCC 등 민주적인 기독교계가 김대중을 도와주고 있고 김대중의 해외자금 반입창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그 결과 종교탄압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종교계의 반입외화를 조사하는 강수를 둔 것은 박정희 정권에 있어 자신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세력은 그것이 종교계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일관성이 나타난 행위일 것이다.

넷째, 구호단체 반입외화 조사의 방법이다. 이도 마찬가지로 중정은 구호단체까지도 김대중의 정치자금 반입처로 의심하였고 정권유지가 지상명제인 박정희 정권에게는 꼭 써야 하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중정의 야당 대통령후보 정치자금 압박공작 등의 도움을 받아 결국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후보인 김대중을 90여만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야당의원 및 야당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서로는 「신민당 연말 정치자금 사용내역」, 「이○택 선거자금 지원자 내사」, 「김상현의 처에게 송금한 내용과 송금자」, 「김형일 정치자금」 등의 문서가 있는데 중정이나 안기부가 신민당의 연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야당의원들 가족의 은행거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정과 안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내사 등을 통한 후 검찰과 경찰을 이용하여 야당의원들에 대한 통제를 지속했다.

유신 직후 신민당의 김○○ 의원은 중정에 연행되었는데 그가 정치자금을 조달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결과 신민당 사무국으로부터 130만원, 유진산 등 22명으로부터 767만원 등을 조달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정은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기 위하여 입건조치는 피하고 그에게 일절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엄중경고방면한 후 계속 감시 조치하였다(「정화대상자 조사결과보고」(1972.11.01)).

정치자금 자체가 불법적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야당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자금 조달 루트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치활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유신 직후에 야당의원들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정치자금 조달경위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문서이다. 다른 야당의원들도 이와 비슷하게 타의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를 정치의 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시대에는 중정과 안기부에 의하여 정치가가 정치의 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벌어졌던 것이다.

라 정치후원금의 전달루트 차단

중정 및 안기부는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기업의 야당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야당의원들의 개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사주하여 야당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회유하여 이른바 사쿠라 의원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소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한 일상적인 정보통제와 감시체제를 동원하여 정상적인 정치자금의 루트를 차단함으로써 정치문화의 불건전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정원 내부 문서로는 「김○현 관계철」, 「신민당 총재 동향첩보 보고」, 「신민당 동향보고」, 「김○일 비위사건 관련자」 등의 문서들이 있다.

10·26이후 신군부는 육군참모차장 출신으로 신민당의 사무총장과 원내 총무를 역임한 김형일 의원의 불순발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을 중정에서 야당에 정치자금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했고, 이때 정주영 비서 이○○을 통해 김형일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 (「김형일 신민당 의원 비위사실관련 조사내용」(1973.05.02)).

중정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조사한 것은 현대그룹이 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가보다는 야당에 더 이상의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군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업인들에 대한 일련의 압박 결과 제5공화국 하에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기업은 거의 없게 되었으며 정치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야당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관제 야당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당시의 야당을 두고 민정당의 2중대, 3중대론이 회자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일리 있는 해석일 것이다.

정치후원금 루트를 통제받는 야당은 연료탱크가 바닥난 달릴 수 없는 자동차에 불과하다. 이럴 때 독재정권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민주 정치는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정치자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작들이 우리의 현대 민주정치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일례로 1985년 2·12 총선 당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안기부가 여당인 민정당의 취약지구에 대한 공작 차원에서 야당후보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통일교 자금을 받았다고 흑색선전하며 야당후보가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여당후보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기에 까지 이른다 「12대 총선 입후보자 예상득표 및 취약지구당 대책」(1985.02.07).

또한 총선 후에는 야당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급속하게 신생 선명 야당인 신민당으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당으로 당선된 의원에게 잔류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선거 당시에는 온건야당에 대한 지원도 서슴지 않았다 (「민한·국민당 총선 사후대책 추진상황」(1985.02.22)). 우리나라의 일그러진 선거문화에 중정이나 안기부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자금은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깨끗한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치문화는 우리의 민주정치를 왜곡하였으며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왜곡된 정치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팽배해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정원이 전신인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의 정당과 정치가들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에 불법적 내지는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행동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틀은 당사자인 정당, 정치가들과 기업, 언론, 시민 사회 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건전한 정치 문화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국민적 합의하에 만들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 중에 본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보고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VI 결 론

앞의 보고서가 보여 주듯이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 국가정보기관의 부당한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정원이 지난 시절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복무했다는 오명을 씻어내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의 상을 확립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혹에 대한 조사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보다는 유형화를 통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정치인 사찰·선거 개입·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정치자금 통제 4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유형을 도출한 후 각 유형별 사례를 조사하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정보기관의 부당한 정치 개입 사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들의 단면일 뿐이라는 점이다. 국정원 내부 문서 중 상당부분이 파기됨으로써 남아 있는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고 시간적으로도 조사에 제약이 많아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제한적인 몇 가지 사례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우선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인 사찰은 (1) 집권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2) 야당의원들에 대한 정치사찰 및 탄압, (3) 반정부 인사에 대한 사찰과 탄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정보기관은 삼선개헌·유신 등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야당과 야당의원은 물론 집권당과 집권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향 파악은 물론 사찰을 수행했고, 정치자금·이권청탁·여자관계 등 정치인들이 관련된 비위사실을 수집하여 필요시 정치인들을 회유·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나아가 반정부(재야)인사들의 경우 ‘위해분자’ 등으로 분류하여 정보원과 감시요원을 활용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일일동향을 기록해 보고하는 등 정당·정치인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교수집단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관리해왔다.

특히 정치사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가장 오래 지속된 것으로 미림사건 등이 보여 주듯이 민주화 이후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의해서도 행해져 왔다. 나아가 정당한 국정원의 정보수집 행위와의 경계가 불분명함으로써 참여정부에서까지도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둘째,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선거의 총괄적 주도 및 관리, (2) 선거 시기 야당 정치인 사찰과 총선 판세 분석, (3)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 공작, (4)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후 공작 의혹, (5) 타 국가기관과의 공조(관계기관 대책회의), (6) 출마포기 및 사퇴압력과 낙선 공작, (7) 선거 시기와 제도의 변경 및 유지가 그것이다.

과거 정보기관은 대선과 총선 등을 총괄적으로 주도하거나 관리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개입을 했음이 확인되었다. 초기 중정 시절의 경우 회고록이나 면담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1971년 대선에서는 풍년사업이라는 공작명으로 김대중 후보 낙선을 위해 중정이 개입했음을 공식 확인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선거였던 1987년 제 13대 대선의 경우에는 당시 안기부가 상륙사업이라는 공작명 하에 선거에 개입한 것을 확인하였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정치 사찰이 총선 과정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85년에 실시된 제 12대 총선의 경우 선거가 개시되기 5개월 전부터 투표일 직전까지 안기부가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취약지구 공작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 가지 공개 자료는 중정이 대선 국면에서 야당 후보 분열 공작을 시행했으며 경쟁력 없는 야당 정치인을 지원했음을 밝혀주었다. 또한 12대 총선에서 관제야당을 지원하기 위한 안기부의 공작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법원 판결로 안기부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북풍 사건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직은 공개 자료에 근거한 개연성 수준에 불과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실시된 두 번의 대선(제 5대, 6대)에서 중정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작을 기획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의혹에 불과하지만 군부 권위주의 하의 선거를 정확히 재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반드시 확증되어야 할 사건이다.

선거 시기마다 설치·운동되어 왔다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관련된 정보기관 문건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공개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비교적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했다. 연기군(14대 총선) 및 부산지역(14대 대선)에서 안기부 관련자가 선거 시기에 여러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모종의 논의를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기관의 압력 행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해졌다. 특히 안기부가 1985년 제 12대 총선에서 김현규 후보에게 행한 공작과 압력이 당시 안기부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으며 1990년 보궐선거에서 정호용 당시 무소속 후보를 사퇴시킨 핵심기관이 안기부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 시기와 제도의 변경을 획책하는 정보기관의 활동은 보다 넓은 의미의 선거 개입 유형이다. 조사 결과 안기부는 12대 총선의 시기 조정에 관여하였으며 1986~1987년까지의 급박한 개헌 정국에서 내각책임제로의 제도 변경과 대통령 간선제의 유지라는 여당과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가정보기관의 정당·국회활동 개입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국가정보기관의 정당한 활동과 정치개입 혹은 공작의 경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1994년 1월 5일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위의 법률에 따라, (1) 야당 창당에의 개입 유형(<국정원법> 제9조 제2항 1호 해당), (2) 야당 활동에의 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 (3)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 (4) 최고 권력자 집단을 위한 대야당 정치개입 유형(동법 제9조 제2항 2호 해당), (5) 국회활동 개입 의혹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마다 2~3개의 사례를 조사했다.

야당 창당에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5공화국 출범 당시 세칭 관제야당 창당이 대표적인데 1961년 창설 직후 중정 최초의 임무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민주공화당 창당 작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중정 최후의 임무가 신군부집단의 정치적 기반 구축과 안정된 집권을 위한 관제야당 창설이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야당 활동에의 개입 유형에는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체명 사건과 제5공화국 관제야당 체제 유지 공작 및 유성환 전 신민당 국회의원의 통일국시 발언 사건을 사례로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야당활동에의 개입을 총괄적으로 담당한 것이 국가정보기관이었다는 사실이다.

집권 여당 지원을 위한 정치개입 유형에서는 1986~1987년 개헌 정국에서의 안기부의 부정적인 야당상 정립 시도와 1995년 안기부 작성 「단체장 선거연기 문제 검토」 문건 공개 사건을 조사했다. 1995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안기부가 작성하여 각 지부로 내려 보낸 이 문건은 당시 여당의 바람이었던 단체장 선거 연기를 위한 안기부의 공작 증거임에도 안기부와 당시 여당에서는 일상적인 첩보 수집이라고 강변했다. 이 사건은 민주화 이후 안기부의 정치관여 금지가 법률로 규정된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여당 일각에서도 안기부의 행위를 경솔한 것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이 정부여당의 정략적 수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실을 보여 준다.

최고 권력자 집단을 위한 對여당 정치개입 유형의 사례들로는 민주 공화당 3선 개헌 공방과 10·2 항명 사건 및 ‘미림팀’ 획득 정보의 악용 의혹을 조사했다. 이 사례들은 국가정보기관이 정부여당의 정략적 도구 역할에서 나아가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 및 그 일부 측근의 사조직 역할을 했던 과거를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을 통한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1)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창구, (2) 여당 및 여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3) 야당 및 야당의원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4) 정치후원금의 전달루트 차단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과거 중정과 안기부는 자신들의 권한과는 거리가 먼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해왔으며 특히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를 통해 여·야당을 막론하고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른 부당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하는데 일조했다.

이와 같이 과거 정보기관들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민주화 초기에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지속해 왔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기관의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그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과거 정보기관의 부당한 행위 즉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부당한 사찰,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의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선거에의 개입, 민주국가의 본령인 정당과 국회에 대한 관여, 정치의 원활유인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 등은 여타의 업적이나 공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가릴 수 없는 흠결이다.

정보기관의 정당성은 오직 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부당한 정치개입에 기초하여 유지된 정보기관이라면 그 정보기관의 모든 활동과 공적은 태생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정당과 정치인의 민주적 행위를, 국민적 의지가 집약된 국회의 의정 활동을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정보기관의 능력과 위상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허약할 수밖에 없다.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민주화 초기까지 지속된 부당한 정치 개입, 어쩌면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조금은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행위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완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요청되는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에 오히려 족쇄가 되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국정원은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일단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치 영역은 물론이고 과거 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했던 정보기관의 행동반경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보기관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과거의 정치 개입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와 조직의 낡은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상승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권력적 위상은 천정부지로 높아졌을지 몰라도 정보기관 본연의 정보력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의 개인적·과당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수단화된 조직은 그 특성상 제한된 정보생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생산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이 된다면 그 결과 생산된 정보는 불충분하거나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의 정보기관은 최고 권력자의 개인적·과당적 이익의 부산물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보편적·공통의 이익이 낳는 풍성한 결실을 향유한다. 개인적·과당적 이익에 기초한 정보력과 보편적·공통의 이익에 기초한 정보력의 차이는 양자간의 비교를 불허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이에 맞게 관련법도 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그리스어로 ‘미리 알다(혹은 먼저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을 선물해줌으로써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생존 경쟁력을 갖게 했다.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되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예측·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정원은 국민들에게 21세기의 불인 ‘정보’를 선물해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식마저도 삼켜버린 크로노스(Kronos)의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은 크로노스에서 프로메테우스로의 변신을 위한 진통으로서 의미 있는 역사적 작업으로 기록될 것이다.



-
1. 서론
 2. 재판에 대한 개입
 3.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4. 검찰과 중앙정보부 · 안기부
 5.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6. 결론
-

I. 서론

1. 문제의 제기 · 157
2. 조사방법과 자료의 입수과정 · 164
3. 자료의 내용과 성격 · 170

II. 재판에 대한 개입

1. 박정희 정권 시기 · 175

 - 가. 박정희 정권 초기 / 175
 - 나. 동백림 사건 / 183
 - 다. 제1차 사법파동 / 188
 - 라. 긴급조치 하의 재판 / 196
 - 마. 인혁당 재건위 사건 / 199
 - 바. 긴급조치 9호 하의 재판 / 206
 - 사. 총평 / 212
2. 전두환 정권과 그 이후 · 214

 - 가. 학생 시위에 중형 구형 / 214
 - 나. 집시법 등 즉심에 대한 개입 / 224
 - 다. 중요 시국사건과 관계기관대책회의 / 238
 - 라. 법정소란 / 285

3. 간첩 사건 재판과 사법부 · 290

가. 송씨 일가 사건 / 290

4. 문민정부 이후 안기부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 · 312

가. 00지법 부장판사의 ‘돌출판결’과 안기부 / 312

나. 운동권 출신 법관의 임용 배제 / 316

다. 한총련 사건과 안기부 / 320

라. 판사들에 대한 이념교육 / 327

마. 공안검사의 판사 상대 한총련 특강 / 331

바. 공안판사제 신설문제 / 336

Ⅲ.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1. 임기 만료 시의 재임명: 1973년 사례를 중심으로 · 342

2. 문제 사건과 문제 판결 · 363

3. 임용 시의 신원 조회 · 394

4. 일상적인 관리 · 398

5. 대법관 인사와 안기부 · 405

가. 김형기 형사지법원장의 대법원 판사 임명 / 406

나. K 민사지법원장의 대법원 판사 임명 좌절 / 414

IV. 검찰과 중앙정보부 · 안기부

1. 인혁당 사건과 공안검사들의 항명파동 · 425
2.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안보수사조정권 · 431
3.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과 검사 파면 사태 · 443

V.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1.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 484
2.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압력 · 490
3. 변호인 비리 조사 · 495
4. 변호사에 대한 연행조사 및 업무정지 · 498
5. 변호사 징계 처분 · 508

VI. 결 론 · 521

1 문제의 제기

신성한 법정이 난장판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신발짝이 날아다니고, 아우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공소장의 오자까지 그대로 베낀 판결문…. 아들 뺨밖에 안되는 피고인은 누가 누구를 재판하느냐며 재판장에게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곤 했다. 한국현대사의 한 시기는 분명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불행한 시대였다. 한 인권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결은 모든 분쟁과 법해석의 최종적 권위를 지닌다. 적어도 우리 법질서상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나 판결이 시대의 상식과 현실을 담보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 되면 그 권위를 상실하고 만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법이 그런 권위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와 그 판결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아니 조롱거리가 된다. 지난 5공화국 이래 시국사건에 관한 많은 판결들이 실제로 그런 양상을 보여왔다.(…)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국민의 ‘원망의 적’이 되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집어던진 신발짝이 법대 위로 날아드는 모습은 단지 외형상의 모독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문이 ‘갈짚은 짓’으로 치부 되면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왔다.¹⁾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인 박원순은 ‘조작 의혹’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신귀영 씨가 “공안사건에서 고문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증오를 받을 것이다”²⁾라고 절규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1)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1, 2006, 역사비평사, p418. 박원순은 당시의 판결문이 “고문대 위에서 조작된 허위진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허황된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신귀영 씨의 증언. 김지은 「“11년 전 160번 수사관 똑똑히 기억” - 국보법 피해자 증언대회」, 『오마이뉴스』 2004년 12월 16일자.

사법부가 이토록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은 국민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고문당하고 사건을 조작하더라도 법원의 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수사기관의 불법 사실을 파헤쳐 억울함을 풀어주리라는 기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사법부는 그런 기대를 저버렸고, 그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으로 나타났다.³⁾

이 광범위한 불신의 뿌리를 1970-80년대의 암흑기에 이른바 ‘인권변호사 4인방’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홍성우는 이렇게 진단한다.

한마디로 오늘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오로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시국사범(공안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 즉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에 따라 소신껏 판결하여야 할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여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문으로 복사하는 것을 능사로 알아왔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호소한 장기 불법구속, 고문의 호소 등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할 수 없다는 헌법상 보장된 형사소송의 대원칙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만은 예외였고, 공소 사실의 특정 여부조차 의문시되는 소설식 기술방법에 의한 장황한 공소장들도 그대로 한 자도 틀림 없이 유죄판결의 범죄 사실 내용으로 전제되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한 무죄판결의 기록이 태무하며, 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그들의 권한 밖의 일이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비하하여 왔다.⁴⁾

불행하게도 한번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사법부의 불행했던 과거는 또한 과거의 일로만 머물러 있지도 않다. 이른바 ‘사법살인’이란 극한표현까지 낳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모두 사법부에 의해 최종적인 마무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들은 당연히 사법부의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과

3)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1, 2006, 역사비평사, p419.

4) 홍성우, 「국가보안법상의 운용실태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 『간첩조작은 이제 그만』, 1989,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산하 장기수가족협의회 조직된간첩사건가족모임, p95.

명예회복, 재심판결에 기초한 국가배상 소송을 요구하게 된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침해의 최후 종착역이었던 사법부로서는 민주화와 더불어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과거청산 요구를 피해 갈 수 없다.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법부에게 과거청산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사법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모두가 과거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관예우 문제나 간간이 터져 나오는 법조비리,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은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의 외압과는 별 상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많은 요인을 제공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오로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법관의 인사에까지 개입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것이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떤 ‘외압’을 가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압을 이겨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법관 개개인과 사법부의 몫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법부 자체의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깊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과거 사법부에 외압을 가한 중앙정보부·안기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위원회가 논할 사안은 아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국민과 사법부에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점을 고할 뿐이다.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사법부는 본의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 수 있으나, 중앙정보부·안기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때로 일부 적극적 협력이 있었다할지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피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보고서를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지는 못했으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판결들 또한 적지 않게 있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개입과 당시의 용어로 ‘조정’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를 통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통제에서 최후의 심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쟁과 모든 법해석, 그리고 정권에 대한 저항이 결국 마무리되는 것은 사법부에서였다. 따라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를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실제 사법부에 가한 압력의 횡수와 강도에 상관없이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본 보고서는 각 시기별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찰의 기소, 증인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 등 재판의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등 사법전반을 어떻게 왜곡시켰으며, 법관 인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가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은 비록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판 진행에 개입하지는 않았고, 법관들 역시 외압을 느끼지 못하거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서 보듯이 공안검사들조차 중앙정보부나 검찰 상층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사표를 내던질 정도로 기개가 살아 있었다. 물론 중앙정보부는 동백림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전원이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실에서 볼 때, 아직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과동의 좌절과 유신 이후, 사법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특히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73년 3월 31일의 법관재임명에서 유신헌법은 이 임명권을 발휘하여 사법부를 크게 위축시켰다. 본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는데,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자들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수사와 비상군법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이 시기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어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역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조사에서 판명되었으며, 2007년 1월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의 수사에서부터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전두환 정권 등장 과정에서 사법부는 이영섭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오욕과 회한”이란 말로 표현했듯이 또 다시 큰 시련을 겪었다. 중앙정보부는 이 때 전 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살해사건으로 인해 힘을 잃고 개혁대상이 되었던 때인지라 1980년의 법관 숙정과 1981년의 법관 재임명에 간여한 흔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기부로 바뀐 이후 1981년 5월 연세대생 내란음모 사건 당시 안보수사조정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으며, 1983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대법원장 비서관의 뇌물사건으로 촉발된 소용돌이에서는 법원·검찰·재야법조계 등을 뒤흔들어 법조계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기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는 5공화국 초기 군사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이해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1983년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확실한 힘의 우위를 과시한 안기부는 학생시위 주동자들이 1년

내외의 징역을 선고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대해 이들의 형량을 3년 정도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은 안기부의 ‘조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한편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학내외 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완화되었는데, 일부 소장판사들이 안기부의 뜻과는 달리 즉결심판에서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검거된 학생들에 대해 무죄 또는 형면제를 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안기부는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안기부의 ‘민감한 관심표명’이 사법부에 초래한 파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대 초반에는 조작의혹이 제기되는 간첩사건들이 빈발했다. 이들 조작의혹이 따르는 간첩사건들의 공통점은 장기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피의자들의 자백이 상호 보강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들 피의자들은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하였다고 하소연하지만, 법원은 대체로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였고,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때 사법부가 이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은 안기부를 비롯한 대공수사기관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1982년 안기부가 적발한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경우, 100여일이 넘는 초장기 불법구금과 고문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판결이 났으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다. 본 보고서는 안기부에 남아 있는 생생한 공판대책 자료에 의거하여 안기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 수뇌부와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법원 인사에 개입하였으며, 증인을 탄압하였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안기부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근태 의장의 고문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재판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근태 의장 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수사관을 상주시키면서 ‘부작용을 무릅쓰고’ ‘강력수사’를 지시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의 사법절차

전 과정에 대해 세세한 공판대책을 세웠는데, 본 보고서는 안기부가 세운 공판대책이 사법부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1988년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안기부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안기부 역시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 행사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안기부는 여전히 일부 인사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며, 한총련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의 기각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본 보고서는 안기부가 일부 공안사건에서 이들이 내린 판결을 문제삼는 등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한총련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이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안기부가 법원에 대해 보인 불신과 의혹이 두 국가기관 간에 어떤 갈등을 초래하였는지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기부가 여전히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일부에서는 안기부의 의도가 실현되는 모습도 발견되지만, 안기부의 힘은 8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화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적어도 안기부 등 정치권력의 외압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자체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정치·학원·언론·노동 등 다른 분야 보고서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건들을 중앙정보부·안기부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 반면, 사법분야를 다룬 본 보고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다.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외압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왜곡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가한 외압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사법부가 최종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이 안기부의 외압에 영향을 받아 내린 판결에 의해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말 못할 내면의 고통을 겪었겠지만,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들, 나아가 전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사법부의 입장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에 관한 것이지만, 사법부도, 사법부에 외압을 가했던 중앙정보부·안기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도, 그리고 국민 모두 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과거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법부가 과거청산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의 재심에서 판결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2 조사방법과 자료의 입수과정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보고서의 작성에서 가장 기본이 된 자료는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존안자료였다. 본 위원회는 국정원에 보관된 문서를 인명, 사건명, 기관명, 법조항, 공판, 구속, 무죄 등 다양한 일반명사 등 여러 종류의 단어를 통해 찾았다.⁵⁾ 이들 국정원 내부 존안자료 이외에 학자들의 연구논문, 언론인이나 사건 당사자들의 취재기사나 회고록, 『법원사』, 『사법연감』, 『검찰연감』 등 법원과 검찰의 간행물, 각종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기록, 그리고 해당 사건이나 법관 인사를 보도한 신문기사 등이 보완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개자료의

5) 노동, 언론, 간첩, 정치, 학원 등 다른 분야의 보고서 작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존안 자료에 대해 확인했다. 각 분야별 기초 자료의 조사와 자료의 확인 모두 한홍구 위원이 담당했다. 간첩분야의 경우는 담당국에 과거사건 기록이 상당분량 남아 있었고, 본 위원회는 간첩죄 남용 분야의 경우, 해당 부서 보관자료에 일정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다른 분야의 경우는 해당 부서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다. 국정원 내부의 존안자료를 찾는 것은 본 위원회 조사활동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각 분야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법 분야에서만 자세히 서술 하도록 한다. 다른 분야의 존안자료 확인도 대체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경우 사법부에 미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행사된 측면이 많은데다가 일반적으로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판사,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의 특성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를 거의 드러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사법부 개입 및 통제 양상을 직접적/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관련자들의 면담도 중요한 자료였는데, 인권변호사 이외에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피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 일은 떠올리기도 싫다며 면담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면담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어렵게 면담이 성사되어도 역시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의견에 반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몇몇 법조인들을 제외하면 외압이 있었다는 자체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그런 외압에 꿈쩍이나 할 사람들로 보이느냐”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기본자료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국가정보원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 시절의 문서가 방대한 양이 보존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주제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료관리부서로 이관된 자료들이 그때 그때 존안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제가 같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정원은 이 방대한 자료를 제목과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위원회 역시 이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았다.

자료의 확인 과정은 먼저 해당 분야의 공개자료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하여 중요사건과 인명, 사항 등에 대한 단어 목록을 작성한다. 예컨대 사법분야에서 ‘사법과동’의 경우 사건 명칭,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을 대표해서 대법원장을 면담한 6명의 판사 이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 대책점에 섰던 공안검사 등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의 이름 등을 사용했고, 주요시국사건에서는 예컨대 김근태 사건의 경우 고문, 증거, 재정신청, 용공 등의 일반 명사나 민청련, 민주화운동 청년연합과 같은 단체명, 관련 인사 명단, 관련기관대책회의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 보았다. 이렇게 단어를 넣다 보면 공개자료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공작명칭 등이 나오기도 하고, 사전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 새로이 알게 된 공작명, 관련자들의 이름으로 다시 자료 확인을 하여 관련 자료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사법절차를 두고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던 주요 공안사건, 시국사건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았다. 또한 사법 분야의 경우 판사, 법관, 비리, 부정, 무죄, 기각, 적부심, 석방, 공안 등 사법부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관심을 가졌음직한 일반명사를 이용하여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과정 전반에 개입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안기부의 활동 대부분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존안 자료 중에도 사법 분야에 관한 자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 분야 관련 보고나 자료가 별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사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실제로 간첩 분야 조사에서 위원회는 관련철 등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한 양의 공판상황보고나 대책보고를 입수할 수 있었으며 존안자료의 확인을 통해서도 검찰·법원·변호사 등의 시시콜콜한 동향을 수집, 보고한 ‘법원 동향 보고’를 일부나마 입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들을 미루어볼 때 실제로는 매 사건 공판진행시 상당량의 문서가 생산되었으며 ‘법원 뉴스’라고 할 만큼 검찰/법원의 동향을 파악, 보고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문서들이 정확하게 등록,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존안되지 않고 폐기되어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는 사법 분야에서 총 122건의 자료를 정보관리부서에 요구하여 유관 부서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총 107건을 제공받았다.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은 문서 중 2건은 목록과 페이지 수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이런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데, 다행히 다른 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잠시 위원회의 구성과 자료입수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는 처음 민간위원 10명과 국가정보원 위원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출발하였다. 민간위원들은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것이고, 국정원 위원들은 원측 간사를 맡은 기조실장을 비롯하여 과거사와 관련이 깊은 부서의 장이 직책에 의거하여 위원을 맡았다. 본 위원회는 1차로 7대 사건을 조사한데 이어, 2차 조사에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언론·노동·사법·간첩죄 확대적용·정치·학원 등 6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간첩 분야의 경우는 현재도 국정원 안에 담당 부서가 확실하게 존재하지만 일부 분야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과거와는 기능과 성격이 크게 달라져 있다. 특히 사법 분야의 경우, 과거와 같이 사법부의 일상적인 동향을 보고하고 인사에 개입하거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등의 행태는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정원 부서 중에서 적절한 해당 분야가 있다고 하기 어려웠다. 굳이 관련분야를 찾는다면 간첩분야를 제외한 언론·노동·사법·정치·학원 등이 모두 국내정보 관련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측 위원 중에서는 간사로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과 간첩 분야를 책임지는 수사 관련 부서장을 제외한 3인의 부서장이 5개 분야를 나누어 맡아야 했는데, 국내정보 관련 부서 위원이 3개 분야를 맡고, 사법 분야는 국내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장이 원측 담당위원이 되었다.

위원회의 자료 입수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면, 진실위에서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목록을 확인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관리 부서에서는 본 위원회가 요구한 목록을 토대로 자료를 일일이 출력하여 해당분야의 원측 담당위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로 보내게 된다. 그러면 자료관리 부서로부터 진실위가 요구한 자료를 전달받은 원내 부서에서는 부서마다 사정에 따라 편차는 조금 있으나, 과거사 업무를 지원하는 TF를 두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한 후, 다시 보안담당 부서의 보안성 검토 등 2중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로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보안성 검토는 위원회의 설립 당시 원측의 요구와 자세한 배경설명에 따라 민간위원 전원이 양해하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보안성검토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간위원과 원 위원들 간에 양해가 된 것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은 부분적으로 자료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원 위원들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첫째, 외국정보기관과의 협조 관계이고, 두 번째는 정보제공자의 실명이다. 외국정보기관과의 협조 문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사 사건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세계의 정보기관 중 처음으로 민간 인사들과 함께 정보기관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고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외국정보기관과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노출되게 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보제공자의 실명문제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기관으로서도 정보제공자를 밝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내용은 그대로 두되 제공자의 이름만 지우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다.

이런 원칙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위원회에 제공되어 실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위원회는 1차로 선정한 7대 사건의 조사가 사건 별로 끝나감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지 약 1년이 지난 2006년 1월 중순부터 2차년도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1차년도의 7대 사건조사 경험과 시행착오의 교훈을 살려 개별 사건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언론·정치·노동·용공조작 의혹 등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분야별 조사를 할 경우, 개별 사건의 조사에 비해 시간과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4개 분야 이상을 조사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조사를 해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원내에 어떤 자료들이 존안

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조사분야와 해당분야 내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초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조사대상으로 노동·언론·간첩·사범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2006년도 조사를 마무리한 후 2007년도에 새로이 분야를 선정하여 조사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이고,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학원사찰과 정치개입 등 두 분야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언론·간첩·사범 등 4개 분야는 2006년도 3월부터 공개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국정원측에 목록 확인을 통해 자료 관리부서에 6월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밖에서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된 관심을 갖는 사안은 자료가 제대로 존안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단어로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찾아낸 자료가 위원회에 전달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우선 본 위원회가 1차 조사 때의 개별사건과 달리 분야별로 접근을 하자, 국정원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과거의 ‘잘못된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안기부 시절의 국정원 역사 전체를 문제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국정원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여러 차례 대폭적인 수술과 개혁을 거치면서 부서의 통폐합이 빈번했기 때문에 과거사건의 담당부서를 정하는 데에도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해서 2006년 6월 중순에 사범 등 각 분야에서 신청한 자료가 극히 일부나마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 전달된 것은 근 5개월이 흐른 11월 9일 이었다. 사범분야의 경우 107건 903쪽의 자료가 2006년 11월 9일부터 2007년 3월 20일까지 4개월여에 걸쳐 12회에 나뉘어 본 위원회로 전달 되었고,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은 문서 13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민간측 간사위원과 담당위원이 열람하였다.

3 자료의 내용과 성격

사법 분야에서 본 위원회가 입수한 107건 903쪽은 분량 면에서 본다면 방대한 수사기록이 있는 간첩 분야를 제외한 노동, 언론, 학원, 정치 등 다른 4개 분야의 1/4 내지 1/5 수준으로 자료의 양이 적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개입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요하는 것이었기에 간첩이나 학원 등 다른 분야에서 요청한 자료들 속에서 안기부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수사 부서에 존안되어 있던 사건기록 중에 공판대책보고 등은 안기부가 개별 사건의 공판 진행이나 재판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켜보면서 대책을 수립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사법 분야의 자료는 비록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다양한 방식을 하나씩 보기를 들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 분야 보고서의 상당부분은 1쪽 분량의 아주 짧은 보고서가 많았다. 이런 단편적인 보고서는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당시의 신문자료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장을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등 “무능력한 업무 자세로 일관”하는 “주사급 대법원장이라고 혹평하는 여론이 유포되고 있다함”이라고 비난하는 안기부 보고서⁶⁾를 잘못 읽으면, 대법원장의 신중한 업무 스타일이나 성품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올 무렵의 외부 상황과 법원의 판결을 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여파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문 근절의 공감대가 매우 높아졌고, 법원에서도 일반 형사사건 뿐 아니라 공안사건에서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속출할 때였다. 요컨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제약

6) 안기부, 「법원 출입기자, 000 대법원장 혹평 여론 유포」.

속에서도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감으로 인해 안기부 조정관의 ‘조정’이 딱혀들어가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안기부가 갑자기 “어떤 판사를 공명심판 추구하며 돌출판결을 일삼는다”라고 보고서를 올릴 경우, 그가 내린 판결을 추적해 보면 고문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는지,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국정원 존안자료에서 찾아낸 사법 관련 보고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상적인 법원동향 보고이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일찍부터 직원을 법원에 출입시켰다. 이들은 법원 내에 상주 사무실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다방 등을 근거로 판사들 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법원 일반직원, 범조출입 기자, 민원인 등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수집했고, 상부의 요구사항을 사안에 따라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기조실장 등 법원 간부들에게 전달했고, 드물게는 직접 담당 재판부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들 조정관들이 올리는 시시콜콜한 보고는 안기부가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둘째, 공판상황보고·공판대책보고 등의 문건이다. 공판상황보고는 조정관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건을 담당할 수사관이 공판정에 나가 공판의 진행을 지켜보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재판부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름만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법관의 인물조사서가 첨부되기도 한다. 담당수사관이 개인자격으로 공판을 방청하는 정도는 법적으로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담당 수사관이 법정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은 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위압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시끄러운 시국사건, 공안사건의 경우 방청권이 발부되는 등 일반인의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족친지의 얼굴 대신 중앙정보부·안기부 수사관들을 보게 된다는 것은

공개재판 문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비를 낳았다.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 사건처럼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쏠린 경우는 공판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 씩 전화로 보고되기도 했다.

공판상황보고는 종종 공판대책보고로 발전하곤 했다. 수사관들의 입장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고문 호소 등에 귀를 기울이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를 채택하거나 하면 상부 차원에서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때로는 상부에서 공판상황보고에 증인이 채택된 것을 보고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기에 앞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공판대책이 어떤 식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집행되며, 법원은 이에 어떻게 협력하였는가는 본 보고서의 송씨 일가 사건에 너무나 생생히 나타나 있다.

셋째, 안기부가 수사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해 공판대책이나 사법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정’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곤 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고문사건이나, 1983년도 학생시위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 선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이 법원에 직접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경우, 안기부가 법원에 대한 ‘조정’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무죄선고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다. 공판상황보고가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고라면, 무죄선고 경위는 안기부가 이미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굳이 ‘조정’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안기부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 나올 경우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든, 아니면 조정관이 알아서 작성한 것이든 무죄선고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다. 이 보고는 왕왕 조정관이 해당 법관을 직접 만나 경위를 청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기부는 단지 경위를 알아본 것이라고 변명할는지 모르나, 이렇게

안기부 조정관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 또는 동료법관들에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안기부 조정관이 탐문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서는 법관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안기부가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은 인사파일일 것이다. 많은 법관들이나 언론은 안기부가 법관 개개인에 대한 인물파일을 작성보관하고 있고, 이 것이 특히 고위법관의 인사에 큰 힘을 발휘했던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회가 입수한 자료들은 이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안기부로서는 앞으로 간첩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이 때의 공판대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판사들의 「인물조사서」를 보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연감의 인물록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현재의 온라인 포탈업체나 언론사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송씨 일가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일규 대법원판사의 경우, 판결 이전에는 안기부가 이일규 판사가 다른 간첩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그의 비판적 성향에 대해 걱정했고, 무죄판결 이후에는 안기부가 미행까지 하며 비리를 포착하려 하였는데, 정작 그의 인물조사서에는 과거 그가 내린 ‘문제판결’이나 다른 신상에 관한 특이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⁷⁾ 대법원 판사 인사 때도 물망에 오른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주관적인 선호도는 분명히 나타나나, 판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⁸⁾ 법관 재임명 등 법관인사에 미치는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영향력은 통상적인 인물조사서를 통해 관찰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법 분야 관련자료에서 여섯 번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법관의 비리나 부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처음부터 외부의 투서를 받아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비리조사 서류도 있지만, 이보다도 법관 재임명, 특히 유신쿠데타 직후인 1973년의 법관 재임명 과정에서 일부

7) 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 송씨 일가 사건 편을 참조할 것.

8) 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 대법관 인사 관련 항목을 참조할 것.

남아 있는 자료는 탈락시킬 법관을 미리 정해 놓고 그들의 주변을 살살이 캐어 비리의 단서를 포착하려는 표적수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판사비위관계철(김인중)」(72.9.12 작성)은 ‘7’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어, 사법파동 당시 주역의 한 사람이며, 유신 직후의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한 김인중 외 다른 판사들에 관한 비위관계철이 더 존재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중앙정보부·안기부는 검사가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입장에 반하여 죄목을 가벼운 방향으로 변경하려 하거나, 판사가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입장에 반하여 가벼운 판결을 내리려 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이들의 비리나 여자관계 등 약점을 캐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 재판에 대한 개입

1 박정희 정권 시기

가 박정희 정권 초기

1950년대 이승만 정권 시절, 사법부는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승만 정권의 직접적인 압력과 사법부를 향해 불어오는 이러저러한 외풍을 비교적 잘 막아내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1950년대에는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만연하였는데, 사법부는 자주 선거무효판결을 내려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 이승만은 이를 못마땅히 여겨 판사들을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권력을 가지고 멋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법관들은 “비위에 안맞으면 언제라도 옷 벗고 변호사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이 재판에서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⁹⁾

1957년 김병로가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법관들은 그같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958년 4월 서울대 문리대생인 유근일의 필화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6월 간첩혐의로 기소된 용산중학교 교감 이태순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등은 법원이 정치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어 7월 2일 유병진 판사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게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9) 변정수, 『법조여정』, 1997, pp29-30

법원에 대한 은밀한 압력이 통하지 않자, 이승만 정권은 이른바 “애국 청년”들을 동원했다. 조봉암의 무죄 판결 사흘 후 법원에 난입한 수백 명의 괴청년들은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이승만 정권은 제헌헌법에 규정된 법관 임기가 1958년 11월과 12월로 만료되는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문제를 통해 법원을 통제하려 하였다. 유근일 필화 사건, 이태순 교감 사건, 조봉암 사건 등의 재판장이었던 유병진 부장판사, 서민호 의원 사건 당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안윤출 부장판사 등 20여명의 법관이 대법원장의 연임제청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외풍의 바람막이였던 김병로의 정년퇴임, 유병진 판사 등 양심적인 법관들의 퇴출, 그리고 후임 대법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등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도 퇴색하기 시작했다. 조봉암에게는 결국 2심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959년 7월 판결은 집행되었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법원은 새로운 출발을 모색했다. 진보당 사건과 경향신문 발행정지 사건 등의 판결에서 권력의 의도에 순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법원 수뇌부에 대한 사임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조용순 대법원장 등이 사임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법관선거제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경향신문 발간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처리하지 않다가 이승만의 하야 선언 이후 몇 시간 만에 복간을 결정하자, 그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한 시민은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 사건의 규명에 적극성을 띠어 직무유기를 밝혀내고, 이에 대해 준기소 명령을 내리려 하자 대법관들이 하급심 재판장인 윤병칠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력의 눈치를 본 사법부 수뇌부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 이외에 법원에서는 이승만에

의해 연임이 거부된 법관들을 재임용하는 문제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4월혁명의 기운 속에서 사법부를 다시 쇄신하려는 움직임은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고 만다.¹⁰⁾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1963년 12월 민정이양까지의 군정 기간은 법원이 완전히 군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사법부의 암흑기였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는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법부 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등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당시 군부는 ‘5·16혁명과업의 완수’라는 미명하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속전속결주의를 밀고 나갔다. 혁명재판소 재판은 군인을 재판장으로 하여 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가운데, 방청인 출입은 제한되고, 충분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지법 단독판사로 근무했던 이돈명 변호사의 회고에 따르면 군사정권이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재판의 속전속결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명동 시공관에 법관 20-30명 데려다 놓고 통행금지 위반자 등 여러 가지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인들도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는지 이후에는 극장에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터무니 없는 짓을 다시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¹¹⁾

군사정권은 또한 4월혁명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에 대하여 3·15부정선거 원흉 등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명목으로 김용식 특검부장 등 특검검찰관 17명과 장준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¹²⁾ 한편 혁명재판소 재판관 차출에 응하지 않은 한복

10) 『법조야사』.

11) 이돈명 변호사와의 면담, 2006년 10월 12일, 군사정권의 요구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였지만, 법관들은 군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하러 갔는데, 이돈명 변호사가 많은 피고인들을 풀어주자 나항운 서울지법원장이 와서 옆구리를 찌르며 “너 어찌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해주었다고 함.

12) 『조선일보』 1961년 5월 22일자.

변호사도 구속되는 곤욕을 치렀다.¹³⁾

군사정권에게 사법부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감독의 대상이었다. 군사정권은 1961년 5월 31일 제1군 사령부 법무부장인 홍OO 대령(군법무관, 뒤에 중앙정보부 국장을 오래 지냄)을 <대법원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각급 법원에도 역시 감독관이 파견되었다. 또 1962년 4월 30일에는 현역군인인 전우영 대령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법관 자격이 없는 자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에 조진만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¹⁴⁾

군사정권은 1961년 8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228명의 판사를 임명했는데, 기존 법관 중 47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5명은 재임명 탈락 형식으로 법복을 벗게 했다. 이 때 법복을 벗은 법관에는 4월혁명 직후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담당했던 윤병칠 판사 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법관들이 당연히 포함되었다.

군사정권은 법관 임명 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법원장급 이상을 제외한 211명의 판사와 226명의 검사가 1주일 단위로 교육을 받았는데, 주된 교육내용은 군사혁명의 의의, 혁명입법 해설, 혁명과업의 방향, 공산주의 비판, 평화통일론, 민·형사 실무 등이었다.

당시 군사정권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 신사복을 못 입게 하고, 대신 코르덴이라는 천으로 만든 제복(국민복)을 입혔는데, 법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법원 복도에 테이프를 붙여 놓고 좌측통행을 강요하는 등의 통제는 자존심 강한 법관들의 불만을 샀다.

한편 박정희 의장은 1962년 5월 14일 대법원장에게 지시각서 5호를 내려보냈다. 이 지시각서에서 그는 혁명 이래 일부 법관이 아직도 새로운 세계관의 확립없이 돈과 술에 팔리고 정실과 야합하는 등 구 질서와 타협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으로 혁명정신과 동떨어진

13) 이돈명 변호사와의 면담, 2006년 10월 12일.

14) 전우영, 『내문내무』.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관들이 중대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불순분자는 방면하고 힘이 없어 권리 위에 땅을 치고 우는 약자에 대하여는 무고한 벌을 가하고도 하등의 양심적 가책도 없이 마치 법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였다¹⁵⁾.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당시 사법부를 군대의 법무감실 정도로 여겼다고 한다. 박정희 시절 법무부 장관 3년 여, 대법원장 10년을 지낸 민복기의 증언에 따르면 “내 생각으로는 그 당시 대통령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법부를 군의 법무감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 형사소송법에 ‘법관은 참모총장에 독립해서 판결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모총장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있거든요. 참모총장이 감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보았을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갖춘 정도”였다고 한다.¹⁶⁾

5·16군사정변의 주역들은 육군정보국 출신의 정보장교들이었는데, 이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거대한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를 만드는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에 의해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61년 6월 설치되었다. 군사정변의 설계자인 김종필은 “나는 최고위원이 되기보다는 중앙정보부장을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듯이 중앙정보부는 최고회의를 능가하는 권부의 핵심기관으로 등장했다.¹⁷⁾

실제로 1961년 6월 10일 공포된 최초의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하며, 정보부장은 “정보수사에 관하여 타 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또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은 범죄수사권을 갖지만,

15)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p453-454.

16) 『매일경제신문』 1990년 7월 17일자.

17) 한홍구, 『대한민국사』 3권.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으며, “정보부 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 특히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1963년 12월 14일 개정 당시 삭제됨)은 검찰권과의 제도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뒤에 1964년 검찰과 중앙정보부가 충돌하게 되는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이용훈 검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1963년 8월에도 중앙정보부의 외압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군사정권은 내부 권력투쟁의 결과 내각 수반이던 송요찬 장군을 구속했는데, 이용훈 검사는 송요찬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부하를 즉결처형한 사건을 1960년에 군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조사하여 불기소처리한 일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훈 검사를 만나자고 하였으나 그가 거부했고, 또다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이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를 통해 만나자고 연락을 해 왔으나 거절한 일이 있다고 회고했다.¹⁸⁾

한편 중앙정보부는 법원에 직원을 내보냈는데,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었던 김제형 변호사는 군 당국이나 조정관과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그런데 김제형 서울지방법원장이 판사의 권력기관 파견 등의 문제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쫓아내기 제거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을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 둘로 나누고, 김제형 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을 내버렸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자리를 빼앗긴 김제형 원장은 사표를 내고 나와 변호사를 개업했다.¹⁹⁾

1960년대에는 유신시대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와 국가권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은 이미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18) 이용훈,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법과 정치와 나의 인생』. (주)리틀웍스, 2000, p87-93

19) 최영도 변호사와의 면담, 이돈명 변호사와의 면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법원에서 국가 권력기관과의 갈등과 저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1964년의 이른바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이었으며, 검찰의 경우 인혁당 사건 당시 이용훈 검사 등의 항명파동이었다.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은 “통치권 우위의 사고방식이 민정이행 이후 최초로 사법권에 대해 노골적인 형태로 발휘된 사건”²⁰⁾이었다고 평가 되는데 이 사건의 시점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전국이 혼란스럽던 때였다.

196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전국 시위는 5월 20일 서울대에서 대학생 1,500여명이 모여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 대회’를 열면서 절정에 달했다. 경찰은 이 시위와 관련 학생과 시민 180여명을 연행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담당 양현 판사가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이튿날 새벽 4시 30분경 권총과 카빈 소총으로 무장한 13명의 군인이 군용 구급차량을 타고 서울형사지방법원 당직실에 난입한 것이다. 양현 판사가 이미 퇴청한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곧 양현 판사의 집으로까지 쳐들어가 한시간 반 이상 집안에 진을 치고 앉아 따지면서 위력을 행사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군인들이 판사의 사택에까지 찾아가 위협을 행사한 이 사건의 파장은 컸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 긴급 행정회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엄중 항의하기로 결의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들도 5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또한 국회에 비화, 야당은 이를 ‘국기를 흔드는 난동’으로 단정하고 본회의 질문을 통해 규탄하는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까지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파장이 너무 커지자 정부 당국은 법원에 난입한 군인 8명과 이를

20) 이상우,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지시한 상관(특전단 소속 최문영 대령)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무죄로 석방되고 일부가 최고 5년에서 3년까지의 선고를 받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그후 얼마 안 가서 모두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석방되어 나왔다.

이처럼 무장군인 법원납입사건의 파장이 크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최고 위층에서 지령된 계획적인 공작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보다는 “5·16과 군정을 통해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일부 장교들이 나름대로의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한 결과”²¹⁾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백형구, 최영도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이른바 ‘무장군인’들 중에는 공수특전단 출신 예비역 중령으로 중앙정보부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OO’과 ‘유OO’이라는 민간인이 2명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혹은 남아있다.

최영도 변호사는 특히 김OO과 유OO의 배후에 차지철이 있다고 의심되었으나 증거가 없어 거기까지는 파헤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 두 명의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소장에 밝히는 부분과 관련, 청와대와 육군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²²⁾

한편 백형구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OO과 유OO이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공개했다가는 정말로 내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냥 ‘민간인’이라고만 밝혔다고 증언했다. 백형구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중앙정보부나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 혹은 주도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김OO과 유OO은 공수특전단 출신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보조적 역할에 그쳤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정보기관이나 정권 차원의 주도 의혹은 부인했다²³⁾.

21) 이상우, 앞책.

22) 최영도, 『토기 사랑 한평생: 최영도 변호사의 즐거운 컬렉션 이야기』

23) 백형구 변호사와의 면담 (2006.11.06)

1967년 7월 8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단 사건을 발표했다. 유럽의 유학생과 교민들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거나 평양을 왕래하고 공작금을 받았으며, 서울대 학생 서클을 국내 연계조직으로 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200여 명에 달하는 사건 관련자 중 프랑스 화단에서 인정받던 화가 이응로 부부와 독일에서 활동해온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부부를 포함해 지식인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의 재판과정은 당시 많은 사회적 주목을 끌었다.

이 사건은 한 차례의 대법원 파기 환송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이 났는데 1차 대법원 파기 환송 직후 이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을 비난하는 이른바 ‘괴벽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판과정에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심은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간첩죄)·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1967년 12월 13일 조영수, 정규명에게 사형을, 정하룡, 강빈국, 윤이상, 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1968년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정하룡, 임석훈에 대하여는 사형을, 사형을 선고받았던 조영수는 무기징역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이상은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등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했지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968년 7월 30일 대법원은 피고인들 중 정하룡, 조영수, 김중환, 천상병, 윤이상, 최정길, 정규명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원심판결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1968년 12월 5일 정하룡, 정규명을 사형, 조용수를 무기징역, 어준, 임석훈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천상병, 윤이상, 최정길, 강빈국을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에 처했고 1969년 3월 31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재판과정에 중앙정보부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수자 등은 “1심 재판부는 중정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면서 “중정은 재판관과 검사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재판관은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3일간 호텔에서 감금되다시피 했다”고 주장²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재판 진행절차만큼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건 관련자 중에 이응로, 윤이상 등 해외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다가 이들이 각각 프랑스, 독일 등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점 때문에 이들이 한국으로 연행된 직후부터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백주에 자기 영토 안에서 한국 정보부가 불법납치를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이 사건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터라 재판과정도 상당히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재판정에는 매번 독일 정부대표 그린발트(본대 법학교수), 한국주재 독일 및 프랑스 대사, 독일 TV 방송국 등 다수의 외신기자들이 참관했고 또 당대 유명 변호사들이 입회했었다. 1심 판결 후 그린발트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실망했으나 절차 면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법정 분위기도 담당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자유진술이 허용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XXX 당시 중앙정보부 OO과장이 인정했듯 조정관이 재판진행 상황 보고를 위해 방청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주장하듯 수십 명의 중앙정보부 직원이 권총을 차고 들어와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장이었던 OOO 판사는 “1심 기간 중 판사들을

24) 이수자, 『내 남편 윤이상』, 창작과 비평사.

특정 호텔에 집단 투숙시키면서 판결문을 특정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나중에는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정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과중했다는 비판은 있었으나 공식적 재판진행절차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관상 재판진행절차가 비민주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의혹이 해명되었다 해서 판결에 중정 등 외부의 압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동백림 사건 등 증거보강 추가 수사계획」²⁵⁾에는 검찰지원비 25만원(검사 3명, 검사서기 2명) 및 재판 후 지원비 추가분 25만원(판사 5명)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중정이 검찰·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최소한 행사하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작성된 이 보고서 중 재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백림 및 통혁당 사건 증거보강 추가 수사계획」

- 기간 및 동원 수사관: 68.11.1-11.30(1개월간), 총 10명
- 상황 :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 공작단사건을 지난 7.30 상고심에서 조영수 등에 대해 2심이 간첩죄의 잠입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용에 잘못이 있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 중형을 선고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 환송
- 목적 : 사건 심리와 선고 공판에 있어 법관의 심증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범증 보강을 하여서 형의 언도에 차질이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가를 보위
- 공판일자 : 동백림 사건 사실심리(68.11.14), 민비연 사건 언도공판(68.11.26), 통혁당 사건 1차 공판(68.11.22)

25) 중앙정보부, 「동백림 사건 등 증거보강 추가 수사계획」 (1968.11.1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동백림 사건 발표문」 참조

○ 증거수사 요청

- 민비연 사건 : 민비연 회원 재조사, 복고 관련 여부 및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 내란음모 배후 관계, 정부 전복을 위한 데모 배후조종관계, 정부전복 선전 선동, 복고 선전 선동에 동조 사실
- 동백림 사건 : 조영수에 대한 입북 지령 수행사항, 국내 정보수집 제보관계 등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방증 수집

○ 소요예산 추가분

- 검찰지원비 추가분(보조검사 1명 포함): 검사 3명 5만원씩 15만원, 검사서기 2명 5만원씩 10만원
- 재판 후 지원비 추가분: 판사 5명 5만원씩 25만원

이 보고서 내용 중 ‘범증 보강’은 사건을 수사·송치한 중정이 옹당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요예산 추가분’의 항목이다. 증거보강 추가 수사계획상의 소요예산에 검사, 검사서기, 판사에게 각 5만원씩의 지원비가 왜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쌀 한가마가 5,250원이던 당시 시세로 볼 때 5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에 관해 1심 재판장 000은 중앙정보부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당시 지출결의서 등 회계장부가 존안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상의 검찰 및 재판부 지원비가 ‘추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서 상당 액수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XXX 중앙정보부 과장의 해명도 중정과 검찰·재판부와의 협력 관행에 대한 의혹을 더 높여준다. 그는 “만약 검사 및 판사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검사들의 경우 밥값과 교통비, 유흥 접대비 성격의 예산이었을 것이며 판사들은 대형재판이 끝나고 나면 한번 대접해주는 관행이 있었음을 감안, 수사국의 법원담당 직원이 재판 이후 식사대접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시

중앙정보부 검사와 판사에게 거마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으로 이는 직접적인 ‘회유’나 ‘조정’ 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정과 검찰·법원간 상당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인 셈이다.

동백림 사건 재판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은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의 ‘괴벽보’ 사건이다.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3일 후인 1968년 8월 2일, 서울 시내에 애국시민회 명의의 전단이 배포됐다. 동백림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과격한 논조로 비난하면서 “김일성의 판사를 잡아내라! 북괴와 야합하여 기회를 노리는 붉은 도당을 처단하라!”는 내용이었다. 다음날도 대법원에서 가까운 배재중학교, 법무부, 반도호텔, 그랜드호텔, 대한공론사 부근 등에 역시 애국시민회 명의로 작성된 벽보가 붙었다. 같은 날 조진만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안에 용공판사를 두어서 되겠느냐”며 힐문하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재판에 관여했던 최윤모 판사가 들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괴벽보와 협박편지 사건의 배후에 중정이나 행정부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물론 국회와 야당에서도 주모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조진만 대법원장도 행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1968년 9월 13일, 국회 내에 ‘괴벽보 사건 등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치성)’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발족 2개월 20일 만에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철저 수사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만 채택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당시 언론인 이상우 등이 괴벽보 사건의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면서 이 일로 인해 “모 기관의 중견 간부가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²⁶⁾ 본 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 직원 인사자료를 조회해본 결과

26) 이상우, 『신동아』 1985년 8월호.

1968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앙정보부에서 직위해제된 고위간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이 처음 발표된 1967년 7월부터 재상고심 확정판결이 내려진 1969년 3월에 걸친 동백림 사건 재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소한 공식적, 외부적으로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론의 시선이 몰려있는 가운데 형량의 과중함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재판진행절차 자체는 상당히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벌어진 괴벽보 사건도 중정이나 당국의 개입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백림 사건 등 증거보강 추가 수사계획」과 당시 중정 과장의 진술에서 확인된 바처럼 중정이 판·검사에게 거마비나 접대비조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일 만큼 중정과 검찰·법원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판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제1차 사법파동

사법부를 다스리려는 정권의 회유와 압력이 계속되었음에도 1971년 서울형사지법에서는 유난히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이는 웬만한 회유나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겠다는 소장판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지만 곧이어 벌어진 사법파동과 이어진 법관 재임명, 변호사법 개정 등으로 역설적으로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측면도 있다.

1971년에 이뤄진 무죄판결들의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그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김대중 후보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 후보의 15살짜리 조카에게 조준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다.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양헌 판사는 신민당사에 들어가 국회의원 선거 거부를 요구한 대학생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1971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6월 30일로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데다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자 중앙정보부 고위 간부가 찾아와 “무죄도 유죄도 상관없으니 선고기일만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²⁷⁾

그러나 무죄판결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것은 바로 목요상 판사였다. 목요상 판사는 월간 『다리』지에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어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와 검찰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목요상 변호사는 당시 단독실에서 합의부로 옮겨달라는 검사의 요청에 서부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회서기를 연행해가거나 타고 다니던 친구 소유의 자동차 봉인이 잘못되었다 해서 차를 압수해 가기도 하고 친척에게 세무감사를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해 무죄판결문도 친구집에 숨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⁸⁾

그해 7월 벌어진 사법파동의 희생양이 된 L부장판사가 유독 검찰의 표적이 된 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평가들이 많다. 즉 L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형사지법 항소 3부가 1971년 1월부터 7월까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9건의 재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공법 위반사건 5건도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검찰과 정보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무죄판결들과 함께 사법파동의 직접적인 계기 중의 하나가 된 것이 또한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사건이었다. 70년과 71년 법원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전상자와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랐는데, 이 당시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제한되어 있었다.

27) 최영도 변호사와의 면담.

28) 목요상 변호사와의 면담, 2006년 11월 2일.

그리고 같은 사안의 소송이 쏟아지자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의 위헌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베트남 참전 장병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려면 엄청난 정부예산이 책정되어야 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대법원 민사부에서 이와 관련 심리가 진행되자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측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위헌 판결이 났을 때의 현실적 어려움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1971년 6월 22일 2년여 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가배상법 사건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 붙여져 대법관 16명의 표결 끝에 9대 7로 위헌론이 합헌론을 눌렀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위헌판결을 대법원 판사 2/3 찬성으로 하게 돼 있는 것도 위헌이며 일반 판결처럼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계속되는 무죄판결과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 등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자기 노력은 “국민 전체에게는 이익될지 모르지만 집권세력에게는 오히려 스스로의 지위를 위협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²⁹⁾ 이에 따라 권력당국의 사법권에 대한 압력이 유형무형으로 가중되었는데, 이렇게 권력의 사법권 침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이었다.

1971년 7월 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000 검사가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인 L부장판사와 배석 000 판사, 입회서기 000 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걸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부장판사 등이 자신들이 재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증인 신문을 위해 제주도에서 출장했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하경철)으로부터 왕복여비, 숙박비는 물론 술대접 등 모두 10만원 가량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000 검사는 영장기재사실을 기자들에게

29) 이현환, 앞책.

공포하기까지 했다. 이 구속영장은 서울형사지법 유태홍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두 차례나 기각되긴 했지만 현직판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과 고의적인 피의사실 공포만으로도 대다수 판사들은 몹시 분개했다.

또한 당시 판사들은 이를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인식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37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집단사표를 내며 검찰의 사법권 침해사례를 공개했으며 연이어 서울민사지법과 가정법원 판사들도 이에 동조, 급기야는 전국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들이 결합하면서 전국 각지의 150여명의 판사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전국의 판사 41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사표를 낸 셈이었다.

구속영장 청구 당일 사표를 제출한 서울형사지방법원 법관들은 이어 7월 30일 ‘사법권수호건의문’을 통해 “동료 법관에 대한 영장 신청에 동정한 취지가 아니라 종전 검찰이 법원에 재판권 행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한데 연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검찰의 사법권 독립 위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영장 발부로부터 선고에 이르는 과정까지 검찰과 견해를 달리할 때 담당 법관을 용공분자로 취급,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고 신원조사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례
- ② 행정부에서 관심있는 사건의 담당 법관에게 검사 자신의 명맥이 걸려 있다는 말까지 하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처사를 하고 있는 사례
- ③ 일반 형사사건에 검사가 무리 또는 공소유지가 곤란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에 관한 상소심 판단도 받기 전에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양 공공연한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법관에게 전가하는 사례
- ④ 사건담당 법관을 미행하거나 함정수사, 가정조사, 예금통장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은밀히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례
- ⑤ 구속영장을 법원창구에 접수시키지 않고 검사가 직접 판사실로 가져와 발부를 강청하는 등 영장발부에 부당한 작용을 가하려는 사례

- ⑥ 법원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진상을 조사하기 전에 무고한 법관을 피의자 취급하여 모욕, 협박, 폭언 등을 서슴지 않는 사례
- ⑦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 미행과 함정수사, 피의사실의 공표, 영장의 계속청구 등 일련의 사실은 종전에 취해온 사법권 내지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위법적 작용을 거듭 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었다.

현직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반발해 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의 충격은 컸다. 7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대의원 비상임시총회를 소집해 결의사항을 발표했고 야당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사법과동의 원인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사법과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기했다. 또한 영장발부를 신청한 이OO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야법조계와 국회, 여론의 반발이 높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8월 1일 신직수 법무부장관을 불러 L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중지 지시를 내리는 한편 사법부 일은 민 대법원장이 수습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8월 2일 대법원 판사회회는 민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하여 사법권 독립을 보장받도록 결의했고 이 면담이 실현되지 않자 8월 9일 서울 민, 형사지법 판사들이 합동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검찰관계자 6명의 인책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의 배후에 강력한 통치권력이 존재하는 상황³⁰⁾에서 판사들에게 이 싸움의 승산은 없었다.

결국 1개월 만에 사법과동은 법원의 자체수습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판사들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과 검찰 관계자의 인책이라는 요구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를 되돌려 받는다는 아이러니한 명분으로 8월 27일 사표를 철회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법과동의 뒤처리에 있어서도 정권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가혹했고

30) 이상우, 앞책.

검찰에는 관대했다. L부장판사는 파동이 마무리된 후 사표를 제출 하였으며 파동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송명관 원장은 대전지법원장으로 좌천되었다가 사표를 냈다. 또 대법원장 면담에 참여하고 사법권수호건의안 작성 등 사법권 독립과 검찰 측의 인책요구에 앞장섰던 최영도, 홍성우, 김공식 판사들도 사표를 제출했다. 다른 법관들도 1973년의 법관 재임명 직전에 대거 사표를 내거나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반면 검찰관계자들은 한때 지방으로 진출되기도 했으나 1년이 못 되어 다시 서울로 불려 요직에 앉혔다.

그런 점에서 결국 “사법파동은 사법권 독립수호란 가치를 대외적으로 내걸었다가 스스로 깃발을 꺾어내린 격이 되었다. 이같은 미온적인 사태수습은 유신헌법의 탄생과 함께 체제 내에 안존하려는 패배주의를 법관들 사이에 낳게 한 사건이란 역설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다.”³¹⁾

사실상 사법파동 이전까지만 해도 “검찰이나 중정의 압력은 있었지만 그 압력에 굴복해 판결이 왜곡된 적은 없었다.”(최영도 변호사) 최영도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당시 형사지법 판사들은 ‘사표 내고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자’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개정 변호사법이 “경력 15년 미만의 판사가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한 법원의 본원 관할구역에서는 퇴직 뒤 3년 동안 사건을 맡지 못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판사들은 사표 제출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자리보전’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또한 정권에 밍보여서 사표를 제출하거나 퇴직한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한동안 중앙정보부와 정보경찰의 감시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³²⁾ 이 변호사법 조문은 6공화국 들어서 위헌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장판사들의 양심을 막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다.

1972년 유신 이전에 법원과 검찰은 한 때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려

31) 『법조50년 야사 下』

32) 최영도 변호사와의 면담, 2006년 10월 24일.

했으나 결국은 권력에 의해 장악되었다.

검찰이 권력에 의해 장악된 것은 1964년 인혁당 사건이 고비였다. 박정희의 사단장 시절 법무참모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인 신직수가 약관 36세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발생한 인혁당 사건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에 반발하여 기소장에 서명을 거부했고, 검찰 수뇌부가 서명을 강압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은 대체로 청와대나 중앙정보부 등과 타협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는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정·감독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제도, 공안사건을 바라보는 공통의 시각, 또한 정치권력 상층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하는 일부 검사들의 처신 등이 어우러지면서 큰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다.

법원의 경우 계엄 하에서는 대법원 ‘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사법부의 독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정 이양 이후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정 이양 이후에 중앙정보부나 청와대는 법관들에 대해 사용할만한 지렛대를 특별히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은밀한 수단도 없었고, 법관들도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비교적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 사건과 같은 난폭한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중앙정보부나 청와대가 전면에서 나서기보다는 같은 법조인으로 고시 선후배로 얽혀 있는 검찰, 특히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출신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³³⁾ 동백림 사건의 경우를 보면 중앙정보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괴벽보 사건과 같은 사건에 의존하려는 정황이 포착

33) 196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한일 막후 교섭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 1억 3천만\$를 받아 공화당 사전조직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속된 김준연 의원의 구속 적부심을 맡은 당시 변정수 서울지법 판사는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 출신인 K, A, 검사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변정수, 『법조여정』).

되기도 하고, 판사 회유비를 책정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판결은 중앙정보부의 의도와는 달리 비교적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는 판사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민단 단장을 지낸 재일동포사회의 원로인 김재화가 신민당 전국구의원으로서 나서려했던 1967년, 중앙정보부는 조총련계 불순자금이 유입되었다는 혐의로 김재화를 구속한 데 이어 전의원 양일동을 구속하였다. (김재화는 무죄판결을 받았음) 양일동은 뒤에 국회의원이 된 뒤 사법과동과 관련된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구속적부심 당시 직접 겪은 일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당시 현 의원인 김형욱 씨가 중앙정보부장 시대에 그분이 지휘하는 그 소위 중앙정보부원들이 와서 판사를 내 눈앞에서 위협하고, 그 판사도 보통판사가 아니요, 요새(사법과동 당시) 말하는 지방법원 수석 유태홍 부장판사야! 검사가 판사 뒤에서 그분 석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적부심사하는데 중앙정보부의 당시 서울책임자라고 하는 심모씨라고 하든가 모르겠지만 그분 이하 수십명이 들어와서 굉장했어요. 판사가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판사가 자기 직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³⁴⁾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가 당사자의 증언에 의해 국회 회의록에 남아 있지만, 이런 풍경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군 선배인 법원행정처장 전우영을 불러다가 권총으로 협박한 사실³⁵⁾에서 보듯이 천하의 중앙정보부도 군 선배를 권총으로 협박할지언정 법관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정황은 당시 사법과동의 주역이었으며 뒤에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와 최영도 변호사의 면담에서도 확인된다. 사법과동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 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34) 제77회 국회회의록 6호, 1971년 8월 6일, p14.

35) 전우영, 『내문내무』

중앙정보부나 검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서울지방법원의 유대홍 수석부장판사가 80년대 대법원장 시절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외압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훌륭히 해서 일선판사들이 그런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사법과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라 | 긴급조치 하의 재판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이 공포된 직후, 민복기 대법원장은 1973년도 신년사에서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가장 집중적,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강조했다. (1973년 민복기 대법원장 신년사)

사법부가 유신체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핵심은 사법부를 불신하거나,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추장스러워 했다. 그 결과는 법관의 영장 없이 저항세력을 체포해서 법관이 아닌 군인들이 재판하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1973년 10월부터 유신체제에 대한 학생과 재야의 저항이 본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한 사람과 긴급조치를 비방한 사람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했다. 이런 법으로도 학생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자 박정희 정권은 4월 3일에는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36) 홍성우 변호사와의 면담, 최영도 변호사와의 면담.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는 앞서와 같은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가 심판 처단한다고 하였는데, 같은 날 선포된 긴급조치 제2호는 긴급조치 위반자의 심판을 위하여 국방부 본부에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비상군법회의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법회의와는 별개의 것이었는데,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따라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권한이 법원의 권한에서 제외된 것이다. 비상군법회의에는 재판장, 법무사, 심판관 등을 두는데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로, 법무사는 군법무관으로, 심판관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일부 판사가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관으로, 일부 검사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의 검찰관으로 임명된 것과, “비상군법회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법회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대법원에의 상고가 가능하게 한 점이 긴급조치 시대의 사법에서 사법부에 ‘보장’받은 권한이었다.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사건은 대개 유신체제에 정면도전하는 사건으로서 중앙정보부가 대부분 수사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긴급조치 2호의 10항은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라고 하여 중앙정보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중정 수사상황보고³⁷⁾에 의하면 1974.4.26 비상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중인 피의자 47명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 245조 및 131조에 의거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견 금지 결정을 받아 서울 구치소장에게 시행토록 조치

37) 중정, 「긴급조치위반 수사상황보고」(1974.4.27)

까지 했다.

당시의 군법회의의 풍경은 아래 인용문에 적나라하게 나온다.

“당시 군법회의 법정에는 별 셋의 심판관과 영관급 장교인 법무사,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이나 군재판 관계자, 그리고 계호 및 정리임무를 띤 헌병들이 감시자로 버티고 있어 한명씩 차출되어 온 판사와 검사는 들러리에 불과했다.”³⁸⁾

학교 수업을 빼먹어도 사형이 가능한 법률을 갖고, 군인재판장이 재판하는 법정에, 법관은 기능인으로 들러리가 되어 끼어있는 현실을 보며 변호인이나 방청객들은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라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길래 재판이 아니라 ‘회의’일 뿐”이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위반자인 장준하와 백기완 두 피고에 대한 재판은 기소에서 선고까지 겨우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 형량이 되는 군법회의를 가리켜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의 상관행이 아닌 군법회의 판결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고 야유했다.³⁹⁾

당시의 ‘정찰제 판결’과 관련하여 한 기록은 이렇게 서술했다.

“정찰제 판결! 백화점 진열대에 붙여놓은 정가처럼 5년, 7년, 10년, 15년... 하는 식으로 조금도 재량을 갖지 못하고 선언이나 고지 기능만 있는 비상군법회의 재판부의 판결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 중에는 심판관석 뒷문으로 쪽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⁴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공판조서가 제대로 기록될 리가

38) 『법조50년 야사』 하권, p35

39)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2, p64

40) 『법조50년 야사』 하권, p36

없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인해도 공판조서에는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공판조서가 유죄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⁴¹⁾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 고의적인 변조였는지, 아니면 속전속결식 재판의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실수였는지 현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잘못 작성된 공판조서가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무고한 피고 8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징검다리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유신 시기에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긴급조치가 일상화되었던 것처럼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군법회의도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유신체제의 초기에 군법회의가 상설화되다시피 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에 대한 일체의 도전을 최대한 엄벌하겠다는 협박인 동시에 유신 정권이 법관 재임명 등으로 소장 법관들을 걸러낸 상황에서도 여전히 법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법회의의 설치는 그 자체가 중대한 사법권 침해이자 사법부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 | 인혁당 재건위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의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이용훈 등 세 명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며 항명했던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이 검찰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보여주었다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 과정 끝에 형 확정 18시간 만에 관련자 8명을 사형 집행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법원이 양심의 눈을 감을 때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청학련 관련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41) 공판조서 변조 문제를 둘러싼 자세한 내용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보고서 참조.

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발표한 뒤, 중정이 민청학련의 배후로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이 있다며 도예종 등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민청학련 관련자 여정남을 포함 모두 8명을 대법원 형 확정 판결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55분경부터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이들 8명의 피고인이 사형당한 1975년 4월 9일은 전 세계적으로 ‘사법 사상 최악의 날’로, 이 판결은 ‘사법살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군법회의도 아닌 대법원에서의 판결과 집행 절차가 이러했을 진대 군법회의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의 공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차단,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 기각, 발언 저지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졌고 공판조서는 심문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군법회의법을 근거로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금지명령을 내려 피의자의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긴급조치에 따라 시민과 학생들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해서 군법회의에서 1심, 2심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당사자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부의 존립의미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정 및 정부 당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중정이 깊이 개입했다. 당시 중정은 피의자들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송치한 후 직접 이들의 수용 상황을 점검, 감독했다. 000 중정 국장이 1974년 4월 26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수용자들의 분리수용현황, 금지조치 이행상태 등을 점검한데 이어 다음날부터는 수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에 고정 배치해서 이를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중정의 개입은 계속 이어져서 중정 직원이 검찰 심문시마다 동석하거나 피고인이 검찰관 심문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면 검찰관은 중정에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고 위협했으며 실제로 검찰 심문에 부인하다가 중정에 다시 끌려가 고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 받았던 고문으로 인한 공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했으며 검찰관이 중앙정보부 의견서를 보고 불러주는 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헌법상의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찾아와도 접견을 시켜주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로 송치된 후에도 군법회의법 제 245조 및 131조에 의거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견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황현승, 나경일 등은 대법원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었고 전창일은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 일주일 전에야 변호인 접견이 허용됐으며 구두선, 정점매 등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가족들과의 면회가 허용되었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장에는 ‘접견금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었으며 형이 확정된 후에도 교도관 등이 중정 담당관과 협의한 후에야 면회가 허락되었다.

재판 과정 역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방청이 상당히 제한되었는데 1977년 12월 작성된 「인혁당 구속자 가족 공판조서 변조 등 사실에 대한 내사결과보고」에는 재판부가 재판정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변호사 13명, 국방부 출입 기자단, 주한일본대사관 일등 서기관 手島堅持, 인혁당사건 관련자 가족 등 50여명 등 소수인원만 공판을 방청토록 조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판내용을 잘못 이해해 보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신기자들의 방청도 제한됐다.

이렇게 사실상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사들은 제대로 변론을 펼칠 기회조차 제한됐다. 변호사들은 공판 이삼일 전까

지도 진술서의 사본을 받지 못해서 검찰 측이 가지고 있는 진술서 사본만을 볼 수 있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가택 연금상태로 법정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신청은 단 한번도 허용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발언은 검찰과 재판관들에 의해 수시로 제지당한 상태에서 “예” “아니오” 형식의 답변만 강요되었다. 이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증의 조사 신청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다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당시 군법회의법 제340조에도 위배되는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강신옥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변론을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⁴²⁾

그런데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재판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변호사는 강신옥 변호사만이 아니었다. 김종길·조승각 변호사도 중정에서 연행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공판조서 변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김종길 변호사 등이 공판조서 변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74년 9월 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였다. 피고인 전창일, 우홍선, 김한덕, 이성재, 강창덕 등의 공판조서를 열람한 결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판조서가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김종길 변호사는 1974년 10월 중순 사무실을 찾아온 전창일의 처 임인영, 우홍선의 처 강순희 등에게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5년 2월 초에는 조승각 변호사도 이수병·김용원 등의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열람을 대법원에 신청해서 타자로 된 공판조서 등본 1통을 교부받아 검토했다. 역시 많은 부분이 자신이 공판정에서 직접 들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록되어

42) 강신옥 변호사 구속과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편에 자세히 설명.

있음을 확인한 조승각 변호사는 1심 2회 공판조서의 이수병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 부분에 “---”와 “X”로 표시해서 2월 중순 이수병의 처 이정숙, 김용원의 처 유승옥에게 나눠줬다. 조승각 변호사가 표기한 공판조서 변조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수병, 김용원 등이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는 회합하여 결의하지 않았는데 결의한 양 기재된 부분(401항 1-4행)
- 비밀조직은 구성치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1항 13행)
- 이성재가 전창일과 혁신세력구성에 합의치 않은 것을 합의한 양 기재된 부분(402항 4행)
- 4인 지도부(대정부투쟁목적)조직구성을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3항 2-3행)
- 도예종, 서도원이 지도위원에 추대되지 않은 것을 추대된 양 기재된 부분(403항 7행)
- 공산지하비밀조직 구성모의를 부인한 것을 시인한 양 기재된 부분(405항 5행)
- 동 목적을 위하여 3인식 회합을 결의치 않은 것을 결의한 양 기재된 부분(405항 11행)

공판조서가 실제로 변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석구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었던 김광식이 “재판정에서 지하 비밀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변란시키고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시인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서기 000 면담을 통해 당시 공판조서가 녹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며, 법정에서의 검찰관의 질문과 피고인의 진술이 오고간 문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공판조서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또한 반국가단체 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대목에서 실제 답변과 다르게 기재되

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서기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의 지휘 아래 작성되는 공판조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데다가 대법원 심리에서는 피고인 등을 직접 심리하지 않고 기록만 검토하기 때문에 공판조서가 변조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대법원 판결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이다. 실제로 김종길, 조승각 두 변호사가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산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결의를 한 사실” 등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자백과 관련된 부분으로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는 반국가단체 결성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 공판조서를 인용해서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던 것이다. 한 예로 대법원 판결문은 피고인 이수병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나) 동 공판조서 제 402면 내지 403면에는

문 :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

답 :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 투쟁에 합의하고 4인지도부를 조직구성한 활동상황을 조정 한다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다) 동 공판조서 제 405면에는

문 : 피고인은 상피고인 황현승, 이창복, 김종대, 유진곤 등 5인과 같이 목적 달성을 북조선에 의존치 말고, 우리들끼리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데모 등 제반 목적달성을 꾀하고, 월 1회 씩 1조에 김달수, 유진곤, 박중기, 2조에 김용원, 황현승, 이창복, 3조에 김용원, 김종대, 이창복 등으로 3인 씩 나누어 각기 회합하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답 : 네, 그런 사실은 있으나 누구를 꼬집어서 각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제 답변과 정반대로 작성된 공판조서가 대법원에서의 사형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가족들은 1977년 11월 21일 공판조서의 변조 등을 이유로 ‘세칭 인혁당 사건 15명 아내 일동’의 명의로 청와대에 재심탄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중앙정보부는 청와대에 재심탄원서가 제출되자 구속자 가족 대표 임인영 등과 김종길·조승각 두 변호사를 연행해 조사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 1977년 12월 29일자로 작성된 「인혁당사건 공판조서 변조 발설자 조사」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었다. 청와대에 보낸 재심 탄원서와 함께 조승각 변호사가 직접 공판조서 변조 부분을 밑줄과 X표 등으로 표시한 공판조서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이 보고서는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어 두 변호사를 연행조사한 목적이 이들이 향후 다시는 이런 주장을 펴지 못하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승각·김종길 변호사는 중정의 강요로 공판조서가 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진술서 내용에서는 공판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즉 재판정에서 한 변론을 이유로 강신옥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에 연행, 구속될 만큼 엄혹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정도로 공판조서 변조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2007년 1월 23일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도예중 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판조서에 대해서도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자백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는 부인하고 검사 심문 때 자백하다가 변호인 심문에서는 부인”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 “증거로 채택은 하되,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으로 이 공판조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1975년 4월 8일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대법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민청학련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중정 수사관이 입회한 검찰 수사과정,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방청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변론권이 침해당한 재판과정, 재판에서의 변론을 이유로 구속된 강신옥 변호사, 변조된 공판조서와 그 의혹을 제기했다가 연행조사를 받은 김종길·조승각 변호사 등 중정의 개입 및 외압에 의해, 혹은 사법부의 암묵적 묵인 및 협력에 의해 사법 과정이 국민의 인권에 반해 부당하게 진행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바 긴급조치 9호 하의 재판

1975년 4월 8일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어 북베트남 주도의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지자, 남베트남을 지원하여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바 있던 한국의 위기의식은 엄청나게 고조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그 동안 선포된 긴급조치 1호, 4호, 7호의 종합판으로서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를 청원, 선동, 보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 역시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지만, 제10항은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제 더 이상 군법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청와대나 중앙정보부의 입장에서는 검찰 뿐 아니라 법원까지 한 식구로 보아 준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원으로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일반법원으로 이관되어 온 것이 꼭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긴급조치 사건을 일반법원이 처리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들이 유신헌체 유지의 일선에 배치되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피해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특히 수석 부장판사 자리가 요직으로 부상되는 시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2006년 연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낼 당시 판사 이름의 공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것처럼 재판을 담당한 판사 개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법원 주변에서는 장차 대법원장 감으로 거론되는 인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서울형사지법에 발령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일반법원으로 돌아온 이후, 법관들이 직면한 사태는 “법관기피신청”이었다. 법관기피 신청이 인권 변호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5월 시인 김지하 피고인이 인혁당 사건이 조작이라는 내용의 수기를 신문에 발표했다가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부터였다.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권모 판사는 과거 군법회의에서 인혁당 사건을 맡은 사람인지라, 변호인들은 “인혁당 문제가 공소사실의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준비한 것이다. 이 때는 하도 살벌한 시기여서 김지하가 사형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실적인 우려로 제기되던 그런 상황이었다. 변호인들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법관기피신청을 내기로 했으나, 인권변호사들도 위촉되어 막상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피신청을 내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홍성우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솔직히 변호사인 내 이름으로 기피신청을 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다음날 법정에 들어가려는데 다른 분이 아직 안 와서 혼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이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컸어요. 김지하는 그 뒤에 어느 글에선가 그 법정의 모양을 ‘법정에 칼이 서 있더라’라고 표현했었지요. 그때 기피 신청으로 항고·재항고를 거치면서 재판이 무기 연기되었고, 그 사이에 월남 패망으로 경직되었던 사회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8월 5일에 김지하의 양심선언이 일본이나 유럽에서 크게 여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재판부도 함부로 어찌지 못하게 되었지요.”⁴³⁾

이어 1975년 8월에는 <어떤 조사>라는 수필에서 사형이 집행된 간첩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는 혐의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승헌 변호사의 변호인들이 이모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⁴⁴⁾

다음달에는 이미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는 김대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다시금 재판장인 황모 판사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증 제출 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김대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 과정에서는 녹음 검증을 하고 있는 판사실에 중앙정보부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내보내지 않는 등 재판이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았던 것도 한 이유였다. 이 기피신청 사건이 받아들여진 이후 고등법원 판사실에서 심리 할 때 그 광경을 찍은 사진에 1심 녹음 검증 때 판사실에 들어와 있다가 문제가 된 정보부원이 이번에도 판사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있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⁴⁵⁾

대법원은 결국 김지하, 한승헌, 김대중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열 달이 채 못 되어 발생한 명동 3·1구국선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유신정권 하의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명동성당에서 벌어진 3·1절 기념미사에서 강론과 설교에 이어 마지막 기도의 형식으로 <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되었는데, 중앙정보부는 이 선언의 서명자들을 연행하여 ‘정부전복 선동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송치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43)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박원순, p280에서 재인용.

44) 『법원사』, p699.

45) 한승헌,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 p143.

으로 법정에서 선 사람들은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정일형 의원 등 정계의 거물과 함석헌, 문익환, 이태영, 이우정, 안병무, 함세웅 등 저명한 종교계, 여성계 지도자들이어서 재판은 더더욱 주목을 받았다.

명동 사건의 재판에서는 유달리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동 3·1선언 자체가 “우리는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한다. 사법권의 독립 없이 국민은 강자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시녀로 거느리는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려는 뜻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주된 주제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

재판은 첫 공판부터 공개재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순탄치 않았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친지들은 방청권을 구하지 못해 법정에서 몇 명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웅성대고, 문익환 등 일부 피고인들은 “가족들도 보이지 않는 비공개 재판에 응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50명 정도 들어가는 법정에서 외신기자와 일반 방청객의 수를 고려하여 피고인 1인 당 5매의 방청권을 발부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돈명 변호사는 “재판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피고인 가족들인데 이 자리에는 피고인의 가족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조차 방청을 제한해 놓고도 오히려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방청을 허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변호인들은 방청권 발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재판부가 발부한 방청권에 방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입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방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족들은 입에 테이프로 X자 표시를 한 뒤 법정 밖에서 공개재판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방청권을 불태우기도 했다.⁴⁶⁾ 또한 공소장 부분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즉각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독립문제를 주로 지적한 이돈명 변호사는

46) 『새롭게 떠오르는 3·1민주국선언』, 『법조야사』 하, 이계창, 『법정에서의 진실 : 명동3·1 사건·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사법부의 독립성은 당연하며 법관은 법과 양심으로만 재판해야 한다. 외부의 압력이 있다면, 그 재판은 압력을 넣은 사람이 하는 재판이다. 1971년의 사법과동은 왜 일어났나? 그 이유는 1969년에 반공법을 담당하는 공안부 검사 사건이 많이 무죄가 되자 검찰이 사법부에 관여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중략)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라고 표현 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⁴⁷⁾

피고인에 대한 호칭 문제에서부터 검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고, 변호인들의 요구는 거의 거부된 증인과 증거의 채택, 사실조회 등에 이르기까지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돈명 변호사는 1심의 경우 재판장이 “너무 몰상식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1심은 “재판이 아니라 싸움”이었다고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회고했다.⁴⁸⁾ 변호인단은 검사의 논고 직전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전원 퇴장하였으며,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항의로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하여 최종변론 없이 1심을 마쳤다.

항소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는 1심 판결문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사실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증거도 안대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전부 검찰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해 주었다. 이걸 보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고 한탄을 안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2심의 경우 재판 자체는 비교적 공정히 진행되었지만 형량만 부분적으로 감경되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들의 상고는 19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상고심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 가족들은 성명을 내고 “이제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의 양심과 용기, 그리고 준법정신에 의한 공평하고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정보부는 재판진행 상황을 유심히 주시한데 이어 중앙정보부는 또 이 사건의 피고인인 함세웅 신부의

47) 『돈명이 할아버지』

48) 이돈명 변호사와의 면담.

상고이유서가 재야에서 널리 읽히기 시작하자 변호인인 하경철 변호사를 연행 조사하기도 하는 등 변호인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⁴⁹⁾

명동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루어진 1976년의 경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모두 221명이었다. 그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범복을 벗게 된다.

1976년 11월 8일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이영구 재판장은 수업 도중 “후진국일수록 1인 정권이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1인 정권 문제는 역사적, 경험적 사실로 그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표현은 비유이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두 달이 채 안된 1977년 1월 4일 그는 관례를 깨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가, 2월 5일자로 의원면직되었다.⁵⁰⁾

이보다 앞서 이영구 판사는 1976년 2월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할복 자살한 서울대생 김상진 씨의 49재에 맞춰 교내시위를 벌인 이른바 5·22사건의 주동자로 기소된 4명의 학생중 두 명에게는 징역과 자격정지 1년 6개월형을, 다른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언론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영구 변호사는 “지금도 그때 실형을 선고한 학생들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당시 정권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관대한 판결”이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그때 서울대 학생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자마자 정부에서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나를 인사조처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나중에 전해들었다”며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민 대법원장이 1976년 말 정기인사 때까지 나에 대한 인사를 계속 미뤄줬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미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대법원장이 힘들게 그 압력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49) 하경철, 『3·1민주구국선언 사건의 회고』, 『새롭게 떠오르는 3·1민주구국선언』, p102

50) 『법원사』, p701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청와대에서는 약이 올랐을 테고, 대법원장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⁵¹⁾

사 | 총 평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소장법관들의 몸부림이었던 사법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유아무야되고, 이어 유신이 단행되고 1973년 법관재임명에서 소장법관들 뿐 아니라 대법관들까지 대거 탈락하고, 탈락된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에도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법원은 매우 위축되었다. 긴급조치 하에서 사법부는 일부 사건에 대한 관할권마저 군법회의에 내 주어야 했다. 그러나 군법회의의 판결도 상고심은 대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 유신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의 최종적인 봉인은 여전히 사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다. 그 뼈아픈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법살인’이란 부끄러운 말을 낳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중앙정보부는 비상군법회의 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감독권을 확보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보부가 일선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법관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한 사례는 많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오적 사건>이나 <다리 사건> 때 판사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는 정도였던 압력의 강도는 유신 이후 매우 높아졌다. KNCC 공금 유용사건의 경우 담당 판사의 처갓집 세무조사까지 철저히 하는 바람에 담당 K모 판사는 “대법원 앞에 가서 목을 매어 자살할까 생각할 정도”로 심한 압박감을 받았다.

사법권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 좌절된 뒤의 허탈감에 법관 재임명 과정에서 정부의 뜻을 거스른 판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소장판사들의 경우

51) 『한겨레』 2007년 2월 5일자.

변호사 개업에도 많은 제한이 가해지는 현실 속에서 법관들은 권력의 압력에 점점 순응해갔다.

긴급조치 시대에도 일부 법관들은 나름대로의 저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렸다가 결국 법복을 벗은 이영구 변호사는 “유신시대에 사법부가 정권에 맹종한 것은 아니었다”며 “나처럼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도 있었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형을 내리려고 애쓴 판사들이 많았다”면서, “긴급조치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이었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당연한 저항을 억지로 누르려는 조치였다는 데는 모든 판사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법관들이 판결문에 그냥 도장을 찍지는 않았다”고 말했다.⁵²⁾

그러나 저항을 포기하거나 유신에 협조하는 판사들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디느니 판사는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느니 하는 추상적이고 아리송한 말로 유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자기합리화를 시도”했다. 당시 중견법관으로 재직하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의 회고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대법원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분들이었고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은 중앙정보부나 검찰에서 보기에 유신관이 투철하거나 박정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적어도 검찰이나 중앙정보부에 협조를 잘해줄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면서 개중에는 판사들 사이에 “중앙정보부원”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⁵³⁾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볼 때 적어도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하급심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영구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52) 『한겨레』 2007년 2월 5일자.

53) 『법조여정』, 변정수.

2 전두환 정권과 그 이후

가 학생 시위에 중형 구형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에 비해 한층 강렬해지고 또 저변도 넓어졌다. 5공화국은 이런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엄벌주의를 채택했고, 그 엄벌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에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본 절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정치권력이 안기부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두환 정권 초기는 유신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면서 학생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시위학생들은 대개 1년 안팎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의 병역법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현역 입영은 물론 방위 소집까지도 면제해 왔다.⁵⁴⁾ 그러다보니 군복무를 마쳐야 하는 운동권 남학생들의 경우, 어차피 군대가서 3년⁵⁵⁾ 간 ‘씩느니’ 시위를 주동하고 1년간 옥살이를 하면 군대문제도 자연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한국의 군사정권은 대학생들의 반정부 민주화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역의무를 이용해 왔는데,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련 실시, 학도호국단 창설, 병영집체훈련의 도입 등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 또는 시위를 주동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다.⁵⁶⁾

54) 『중앙일보』 1984년 3월 16일자.

55) 당시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33개월이었고 대학생이 교련을 이수하였을 경우 한 학기 당 1개월 씩 최대 6개월까지 복무단축을 받을 수 있었다.

56) 1983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내 시위 및 유인물 배포와 관련하여 대학생 116명이 구속되고, 23명이 즉시에 넘겨졌으며, 82명은 군에 입대, 5명은 수배되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1983년 6월 14일자.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은 녹화사업과 같은 부작용을 낳아 강제징집된 대학생 6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을 가져왔다.

그런데 교내시위를 주동한 학생들이 1년 내외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당시의 병역법 하에서 징집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군대에 강제 입영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의 시위 확산을 막는 하나의 방편으로,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남학생이 시위를 주동할 경우를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들의 형량을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만들면, 학생들의 데모가 줄어들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었기 때문에 안기부로서는 ‘조정’이라는 이름의 과정이 필요했다.

1983년 4월 11일자 <학원사태 관련자 조기 공판 진행 조정보고>라는 보고서⁵⁷⁾를 보면 1983년 3월 11일에 신라호텔에서 (아마도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려) “군입대 기피목적 학원사태 유발자 엄단 처리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학원 관련 사범 특히 군입대 기피목적 사태 유발자에 대해 신속한 재판 처리로 엄단함으로써(5년 이상 구형, 3년 이상 선고) ▷ 엄단 사실의 학내 전파로 재범 방지 ▷만성적 ‘데모고개’의 발본색원 등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안기부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학원관련 사건(5건 18명)을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공안부 전 검사에게 적절히 배분 ▷신속한 기소 및 공판 기일 지정으로 조속 처리토록 검찰 및 법원을 조정”하기로 하고 그 상황 보고를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는 앞의 ‘군입대 기피목적 학원사태 유발자 엄단 처리 방침’에 따라 1983년 3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속 기소”와 “조기 공판 진행”을 위해 “대검 공안부 및 대법원 행정처와 동 처리 방침에 따른 협조”를 구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전 관할 법원에 동 처리 방침을 시달”하였다.

안기부는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전 관할 법원에 처리방침을 시달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학생시위의

57) 안기부, 「학원사태 관련자 조기 공판 진행 조정보고」(1983.4.11)

대부분을 관할하게 되는 서울형사지법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아래는 보고서에 나타난 ‘조정’ 내용이다.

- 83.3.18 A대 000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기소 즉시 공판 진행 조기 종결토록 협조
- 83.3.25 00사건 관련자(10명) 구속 조정 후 서울형사지법원장 및 서울지검 공안부에 명단 통보, 조속 기소 및 공판 진행토록 재조정
- 83.4.6 B대 000 구속 기소와 동시 서울형사지법 원장에게 조속 공판 기일 지정(4.15 1회 공판)토록 협조
- * 기타 관련자들도 기소 즉시 공판 조속 진행토록 협조

안기부는 20일 사이에 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3차례에 걸쳐 ‘3년 이상 선고’라는 지침을 제시하면서 기소 즉시 공판을 진행하여 조기에 종결토록 협조를 구한 것이다. 한편 안기부는 이 사이 검찰에 대해서도 ‘조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기소일정을 잡았다.

- A대 000 4.6 기소 4.15. 1심 공판 예정
- B대 000 3명 4.12 기소 4.22, 1심 공판 예정
- C대 000 10명 4.12 기소 4.22, 1심 공판 예정
- D대 000 2명 4.13 기소 4.23, 1심 공판 예정
- E대 000 2명 4.18 기소 4.28, 1심 공판 예정
- * 공판 개정은 공소장 부분 송달을 위해 기소 후 5일이 소요됨

우리는 여기서 안기부의 ‘조정’이 들어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3년 3월이라는 시점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볼 이른바 외화 밀반출 사건을 둘러싸고 안기부의 압력에 의해 법원에서는 부장판사 2명, 검찰에서는 서울지검장과 남부지청장 등 검사 4명(2명은 파면)이 옷을 벗었고, 변호사 3명도 제명이 되는 대형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후술) 뿐만 아니라 2월 11일에는 외화밀반출 사건의 소용돌이가 이는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가 공안당국이 최초로 적용한 국가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안기부를 발각 뒤집어 놓은 때였다.

아래의 표는 안기부의 ‘5년 이상 구형, 3년 이상 선고’, ‘조속 기소’와 ‘조기 공판 진행’ 방침에 따른 조정으로 나타난 공판진행 상황과 결과이다. (후술)

★ 학원사건처리에정표

연번	성명	구속일	사건명	송치일자	기소일자	공판예정일	공판결과
1	A대 000	3.10	○ 군입대기피 목적 A대 시위기도(3.7)	3.18	4.6 000검사	4.15	4.23:구형 5년, 징역 3년
2	B대 000	3.24	○ 군입대기피 목적 B대 시위기도(3.22)	3.29	4.12 000검사	4.22	5.31 징역 3년
3	C대 000	3.24	"	"	"	"	5.31 징역 2년 6월
4	D대 000	3.24	"	"	"	"	5.31 징역 2년 6월
5	E대 000	3.25	○ 군입대기피 목적 E대 시위주동(3.22)	3.30	4.12 000검사	4.22	5.23 징역3년
6	A대 000	"	"	"	"	"	5.23 징역 2년6월
7	A대 000	"	"	"	"	"	5.23 징역2년6월
8	A대 000	"	"	"	"	"	5.23 징역2년
9	A대 000	3.25	○ A대 시위 주동 (3.22)	"	"	"	5.23 징역3년
10	A대 000	"	"	"	"	"	5.23 징역2년
11	E대 000	"	"	"	"	"	5.23 징역2년

12	E대 OOO	"	"	"	"	"	5.23 징역2년
13	E대 OOO	"	"	"	"	"	5.23 징역1년6월
14	E대 OOO	"	"	"	"	"	5.23 징역1년6월
15	B대 OOO	3.25	o B대 시위기도 (3.23)	3.29	4.13	4.23	6.16 징역 2년
16	B대 OOO	3.26	"	"	"	"	6.16 징역 2년
17	C대 OOO	4.2	o C대 시위기도 (3.31)	4.8	4.18	4.28	5.10 징역2년
18	C대 OOO	4.2	"	"	"	"	5.10 징역1년6월

- 위 표는 오른 쪽 끝 항목인 공판 결과 만을 제외하고는 위의 보고서를 전재한 것이다. 공판결과는 당시 언론보도를 토대로 작성했다.

안기부가 형사지법 수석부장이 아니라 형사지법원장에게 직접 행사한 ‘조정’은 위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먹혀들었다. 특히 안기부의 ‘조정’이 있는 후 첫 공판인 A대 OOO 학생의 재판은 정확하게 안기부의 방침을 구현했다. 4월 15일 첫 공판이 열리고, 8일 만인 4월 23일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것이다.⁵⁸⁾ B대생과 C대생의 재판에서는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주동자 3인에게는 3년형이, 나머지 피고인은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⁵⁹⁾ 1983년 2월 22일 1심인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D대생 3명에 대해 수원지법 항소부는 4월 30일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⁶⁰⁾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위 표의 E대생과 F대생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기부가 요구한 형량의 2/3인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58) 『중앙일보』 1983년 4월 23일자.

59) 『중앙일보』 1983년 5월 23일자 ; 『조선일보』 1983년 6월 1일자.

60) 『중앙일보』 1983년 4월 30일자.

그 이전의 교내시위 주동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5월 23일 수원지법은 교내시위로 기소된 D대생 00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6월 11일 수원지법 항소부는 4월 30일에 이어 또다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K대생 000에게 이번에는 원심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⁶¹⁾ 6월 24일 000 판사도 교내시위를 주동한 H대생 000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⁶²⁾

교내시위 주동자들에 대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라는 안기부의 ‘조정’이 갖는 의미는 이 조정이 있기 전 몇 달 간 서울형사지법이 교내시위 주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했는가와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 안기부의 ‘조정’ 이전 교내시위 주동자에 대한 서울형사지법의 형량**

선고일	재판부	피 고	형 량	출 전
1982.11.25	서울형사지법	A대생 000 등 4명	징역8월- 징역1년	『중앙일보』 1982.11.25
1982.12.28	서울남부지원	B대 000 등 2명	징역1년- 징역1년6월	『중앙일보』 1982.12.28
1983.1.6	서울형사지법	C대 000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중앙일보』 1983.1.6
1983.1.13	서울형사지법	D대생 000	징역 단기1년 장기1년6월	『중앙일보』 1983.1.13
1983.1.14	서울형사지법	A대생 000 등 3명	징역8월- 징역1년	『중앙일보』 1983.1.14

61) 『중앙일보』 1983년 6월 11일자.

62) 『중앙일보』 1983년 6월 24일자.

1983.1.15	서울형사지법	B대생 000 등 3명	징역1년- 징역1년6월	『중앙일보』 1983.1.15
1983.1.21	서울형사지법	C대생 000 등 3명	징역1년- 징역1년6월	『중앙일보』 1983.1.21
1983.1.21	서울형사지법	D대생 000 등 2명	징역1년	『중앙일보』 1983.1.21
1983.1.26	서울형사지법	A대생 000 등 4명	징역1년	『중앙일보』 1983.1.26
1983.1.27	서울형사지법	B대생 000 등 3명	징역1년	『중앙일보』 1983.1.27
1983.1.31	서울형사지법	C대생 000 등 2명	징역1년- 징역2년	『중앙일보』 1983.1.31
1983.3.4	서울형사지법	D대생 000 등 3명	징역1년 (원심확정)	『중앙일보』 1983.3.4
1983.3.11	서울형사지법	A대생 000 등 2명	징역1년-징역1 년6월(원심확정)	『중앙일보』 1983.3.11
1983.3.15	서울형사지법	B대 000 등 2명	징역1년-징역1 년6월(원심확정)	『중앙일보』 1983.3.15
1983.3.21	서울지법	C대생 000 등 3명	징역 1년	『중앙일보』 1983.3.21
1983.3.22	서울형사지법	D대생 000 등 7명	징역1년: 5명 1년6월: 2명 (원심확정)	『중앙일보』 1983.3.22
1983.4.14	서울형사지법	A여대 000 등 2명	1년(원심1년6월) 1년(원심확정)	『중앙일보』 1983.4.14

위 표는 안기부의 ‘조정’ 방침이 있기 전 약 5개월 동안 서울형사지법에서 교내시위로 재판을 받은 47명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47명 중 1명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7명이 1년 6월, 나머지는 1년 이하이고, 집행유예도 1명이 있다. 이를 안기부의 ‘조정’ 이후와 비교해 본다면, 안기부의 ‘조정’으로 단순 교내시위에 대한 형량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983년 12월에 작성된 안기부의 다른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학원사태 관련자 엄벌처리주의’의 적용실태를 보여주면서 이 방침이 많은 문제점을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엄벌처리주의의 실태를 아래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⁶³⁾

1) 실태

- 83년 이후 검찰에서는 학원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최고 5년형 구형으로 일관성있는 엄벌처리 원칙
- * 검찰은 학원사범에 대한 경찰의견을 최대한 인정, 거의 100% 영장발부, 구속기소 처리
- 법원은 검찰구형의 최소한 1/2이상 선고원칙 하에 평균 징역2년형 이상 선고
- * 83년부터 병역기피목적 학원사범은 반드시 3년형이상 선고 원칙
- 83년 학원사범(기결) 103명의 선고형량 분석

계 \ 형기	1년	1년6월	2년	2년6월	3년	5년
103	6	55	23	9	9	1

(83년 11.29현재)

- * 1년6월이 전체의 53% 점유

‘학원사태 관련자 엄벌처리주의’에 대한 안기부의 다음과 같은 진단은 참으로 정확한 것이었다.

63) 안기부, 「학원 현안 문제점 및 대응방안」(1983.12.1)

2) 문제점

- 사법처리의 경직성으로 학원의 대사법부 불신감, 대정부 불만감 조성
- 어린학생들을 최고형인 징역 5년형으로 구형, 중형 선고하는 현 사법처리에 대한 비판여론
- 학원사범 엄단원칙 확립으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용처리 회피 경향 등 경직화 현상 (검찰)
- 일부 판사들이 학원사범 처리의 재량식 판결에 노골적 불만 표시

사법부는 안팎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일부 판사들은 안기부의 방침에 호응했지만, 노골적인 불만을 펴는 판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도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관용처리를 회피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 역시 중형을 선고하였고 그 부담은 정권 자체에 가게 되었다.

3) 개선방안

- 일단 구속된 학생사범들은 지속적 사후 순화에도 불구하고 반성 또는 의식 전환 사례가 별무하고 법원의 학원사범에 대한 현재의 중형선고원칙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확립
- 중형선고원칙이 무너지면 법원의 생리상 학원사범 재판에 대한 통제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따라서 현행 중형엄벌주의 처리원칙은 계속 고수하되 구속자 누증으로 인한 부담해소를 위해
 - △ 최초 구속단계에서 대상자를 핵심주동자에 국한 소수화
 - △ 형확정 기결인의 수용행동 기록, 수형기간 등을 고려 1년에 1-2회 각하의 특별조치로 탄력성있게 대처

안기부는 “중형선고원칙이 무너지면 법원의 생리상 학원사범 재판에 대한 통제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계속 ‘통제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구속자 누증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각하의 특별조치’로

‘탄력성’있게 대처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요컨대 부담은 사법부가 지고 생색은 ‘각하’가 나서 풀어준다는 것이었다. 탄력성있는 ‘각하의 특별 조치’가 구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안기부의 보고서가 있고 약 20일 후인 1983년 12월 22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엄벌중심의 강경책이 당국의 기대대로 학원사태를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학원사태 주동자의 의식은 갈수록 침예해지고 사태는 계속 빈발”했다는 이유로 해직교수의 복직, 제적학생의 복교, 학원소요 사범과 공안사범들에 대한 대거 사면·형집행정지·복권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학원소요와 관련된 학생들은 134명이었다.⁶⁴⁾ 이어 정부는 1984년 2월 8일 48명, 3월 2일 159명 등 학원사태 관련 학생들을 대거 풀어주었다. 1983년 말과 1984년 초에 걸친 일련의 조치로 풀려난 학생은 모두 338명이었으며, 남아있는 학생은 22명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1983년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158명 중 140명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⁶⁵⁾ 안기부의 중형 선고 방침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만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안기부가 1983년 12월 1일자 보고서의 중형 선고 고수 방침을 포기한 것인지는 그 후의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해 알 수 없으나 유화조치와 사면, 석방 등이 이루어진 이후 검사들은 일부 시위학생들을 기소유예로 풀어주었고, 법원도 일부이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1984년 2월 28일 A대생 00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같은 법원 형사합의부는 A대생 00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⁶⁶⁾

안기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는지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알 수 없지만, 정부는 병무청을 통해 수형자의 획일적인 군입영 배제 방침을 변경, 앞으로는 형량과 죄질에 따라 선별 입영시킨다는 새로운 입장을

64) 『중앙일보』 1983년 12월 22일자.

65) 『중앙일보』 1984년 2월 8일, 3월 2일자.

66) 『중앙일보』 1984년 2월 28일자.

1984년 3월 15일 병무청장의 국방위 보고를 통해 밝혔다.⁶⁷⁾ 이 방침에 따르면 학생시위를 하고 1년 내지 1년 6월의 형을 받아도 당국의 입장에 따라 선별적으로 입영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병역기피”라는 이유를 들어 시위 주동자에 대해 법원에 중형을 선고시키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1980년대 5공화국 시기 시국사건은 유신 시절 이래의 악습인 ‘양형 동일화’ 원칙을 지켜 왔다. 1988년 6월, 5공 사법부의 악습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던 때 한 현직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80년 이후 시국사건의 ‘양형 동일화’ 현상은 유신 때부터 지켜지던 악습으로 청와대의 양형을 절대로 지키는 것이 불문율이었지요. 특히 주요 시국사건은 기관의 직원이 검사장에게 신고량을 전달하면 검사장이 형사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에게 전했어요.

위의 인터뷰 내용은 아마도 독재정권이 저항세력을 엄단하는 것을 정권유지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이를 위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체적인 방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와대가 그 정점에 있었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위의 법관의 발언은 기관의 직원이 주로 검찰을 통해 ‘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안기부가 직접 형사지법원장이나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집시법 등 즉심에 대한 개입

이처럼 1983년 학생시위 등에 대한 엄벌주의는 사법부 내외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1983년 말부터 정부는 이른바 ‘유화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후 학생시위사범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나 법원의 집행

67) 『중앙일보』 1984년 3월 16일자.

유예 판결이 잇따랐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와 구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심판에서 집시법 등에 대해 무죄선고가 연이어 나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즉 경찰서장이 직접 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을 사전조정하는 이른바 ‘양형 동일화’ 원칙이 통하지 않는 재판인 셈이다.

또한 즉결심판은 그날의 당직 판사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는 약식재판으로 법원장이나 안기부 조정관 등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거나 관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학생시위사범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식기소할 법한 사건들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1) A 판사 관련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 1984년 10월부터 1985년 10월 사이에 작성된 네 건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날짜상으로 가장 앞선 보고서는 1984년 10월 5일에 작성된 「시위학생 즉심, 형 면제선고자 남부지원 A판사성향 등 내사보고」로 A판사가 1984년 9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학생시위사범에 형 면제 선고를 했다면서 그 경위와 내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A판사는 학원 시위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OO 즉결심판소에 회부된 학생들에 대한 즉심에서 9월 22일에 OOO(A대)에게, 9월 28일에는 OOO(A대), OOO(A대), OOO(A대)에게 형 면제 선고를 했다. AOO 판사가 학생시위에 형 면제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안기부는 AOO의 신원상 특이점은 없지만 남편이 과거 무림사건과 관련 복역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동 A판사의 형 면제선고가 남편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다른 저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성향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안기부는 즉심, 형면제 선고경위를 조사한 후 A판사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소’했다고 전하고 있다.

“9.22 및 9.28 남부지원 즉심담당 판사는 당초 000(9.22) 및 000(9.28) 등이었으나 동일 위 판사들이 공판관계로 시간이 없으므로 대리로 맡아줄 것을 부탁받고 즉심을 맡았는 바, 심리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한번 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형면제 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판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다 있다고 변소하고 있음(법원 자체 규명)”⁶⁸⁾

그러나 안기부는 이러한 법원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안기부가 보기에 “학교 재학 중 문제서클이나 학원 데모 등에 가담 사실 없고 학업에만 전념”했으며 “판사 임용 후에도 자기 직무에 비교적 충실한 자로 평가받고” 있는 A판사가 학생시위사범에게 형면제를 선고한 것은 “납득가지 않는 처사”였다. 그래서 안기부는 이것이 “남편의 영향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지만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확증은 없는 상태라고 보고서에서 적었다.

한편 당시 안기부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A판사의 형면제 선고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보고서의 이어진 내용을 보면 안기부는 A판사와 가까운 B판사를 찾아가 A판사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묻기까지 했던 것이다.

2) ○○ 지원으로 좌천된 B판사

A판사의 즉심 형면제 선고 관련 보고서 다음으로 나오는 보고서는 이로부터 8개월 정도 뒤인 1985년 6월경 작성된 보고서로 인천지법 B판사의

68) 안기부, 「시위학생 즉심, 형 면제선고자 남부지원 A판사성향 등 내사보고」(1984.10.5)

무죄선고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 「OO 공단 입구 가두시위 관련 즉심회 부자 무죄선고 경위 확인보고」에서 적고 있는 개황에 따르면 1985년 6월 3일 19시 30분부터 25분간 인천시 북구 가좌동 소재 제5공단 입구 노상에서 A대, B대, C대, D대, E대 등 5개 대학 15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사독재 박살내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노동운동 탄압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가두시위를 벌였고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관련 혐의자 25명을 연행해서 이 중 14명은 ‘도로교통법 제63조 3항 4호(교통방행)’ 및 ‘경범죄처벌법 제1조 12호(업무방행), 24호(불안감조성), 28호(물건 던지기 등 위협행위), 44호(유언비어날조유포)’ 위반으로 6월 6일 인천지법에 즉심을 회부했다⁶⁹⁾.

그런데 담당 B판사 이 김OO 등 3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3일에서 4일을 선고했지만 김OO 등 1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노동운동 탄압’·‘군사독재’ 운운하는 구호에 화염병을 던진 ‘가두시위’에 무죄가 선고됐으니 안기부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안기부가 파악한 ‘선고 경위’에 보면 B판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인천 동부서 정보과장의 면담 요청까지 거절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개별신문까지 하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선고 경위

- 6. 6. 13:30경 인천 동부서 정보과장 등 2명이 즉심대상 학생 14명 인솔 즉심회부
- * 동 정보과장은 사전에 당일 즉결담당판사에게 사건설명코자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판사인 P00는 서류를 보편된다고 면담 불응
- 14:10-15:30간 즉결심판시 P 판사는
 - 잡범(20여명)을 먼저 처리하고
 - 가두시위 관련 학생피의자 14명 전원에게
 - ㅅ. 돌을 던진 사람 손 들어봐

69) 안기부, 「OO 공단 입구 가두시위 관련 즉심회부자 무죄선고 경위 확인보고」(1985.6)

ㅅ. 화염병 던진 사람 손 들어봐

ㅅ. 시위시 서로 본 사람 있느냐

등 사실심문시 피의자 전원이 응답이 없자

○ 피의자 개별심문을 통하여 처음부터 시위가담 여부를 묻자 무죄석방된 피의자들은 공히

- 00 제5공단에서 시위가 있는 것을 알고 00에 왔으나 시위가 거의 끝날 무렵 시위대열에 참가하였고

- 돌이나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

○ 동 판사는

- “시위한 증거가 없고 본인들이 부인하므로 정식재판이 들어오면 공소기각감이다” 라고 하면서 시위가담 부인한 관련자 11명을 무죄선고

안기부가 B 판사의 개별심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그만큼 안기부가 B 판사의 조치를 못마땅해 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투석전에 화염병까지 등장한 시위 가담 혐의로 잡혀온 학생들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즉 안기부는 B 판사가 애초부터 이들을 풀어줄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일단 B 판사가 11명의 학생들에게 무죄선고를 내리자 이들을 다시 엄단하기란 어려웠다. 이어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경찰과 인천지검은 이들을 다시 즉심에 청구하고자 서류를 보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포기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재조사 경위

○ 6. 8. 09:30 인천지검 공안부장이 인천 동부서에

- 무죄 석방자에 대한 6.10 재즉심청구 가능하도록 석방자 전원 재연행, 위반사항을 추가하여 서류보완하라는 지시에 따라

○ 6.8 - 6.9간 인천 동부서에서는

- 무죄석방자 A대 000 등 6명을 조사후 귀가조치

- 여타 미연행자 5명에 대하여 출석요구서 발부, 재즉심청구 가능하도록 신명확보 조치하였으나

o 6. 11. 11:00 000 검사의 재즉심청구 포기결정 통보에 따라 수사종결

그런데 안기부가 작성한 P판사의 신원사항만 보더라도 B판사는 1979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 3월에 법관에 임용돼 OO지법이 첫 근무지로 앞의 A판사의 경우보다 더욱 ‘초임’이었다. 때문에 이 보고서 상에서 P판사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정황을 상당히 감안한 것이었다.

평 가

- 동 P판사는 85.3 형사사건 담당판사로 임명되어 6.6 처음으로 즉결심판을 담당
- 학생시위 사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직감하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

즉 이번 무죄선고 건은 상황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니 학생시위 사건은 보다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주기만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평가와 상부에서의 평가가 달랐던 듯, B판사의 즉심 무죄선고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

우선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안기부의 압력은 즉심 바로 다음날부터 행사됐다. B변호사는 즉심 판결 다음날 저녁 법원 당직실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회고했다. “안기부라면서 판사님 집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당직 직원에게 B변호사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에는 자신이 배석했던 부장판사가 “안기부에서 당신 전임지를 묻더라”고 전해줬다. 그제서야 ‘아,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⁷⁰⁾

70) 『한겨레』 2005년 3월 7일자.

문제는 그해 9월 정기인사이동때 벌어졌다. B판사가 그해 9월 인사에서 강원도 OO지원으로 좌천됐던 것이다. 인천지법으로 부임한 지 6개월만으로 극히 이례적인 인사였으며 그해 6월의 즉심 무죄선고가 좌천의 원인이 되었음은 당시 법조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사실상 1985년 9월 1일자 인사는 이른바 ‘문제판결’· ‘문제법관’에 대한 좌천 인사가 여러 건 있었다. 반정부유인물을 돌린 전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 사무국장에 대한 즉심에서 “유인물의 내용이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던 OO형사지법의 C판사가 9월 1일자로 충남 강경지원으로 좌천됐고, 영장기각률이 높았던 서울형사지법 D 판사는 역시 같은 날 OO지원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던 것이다.

B·C·D 판사의 좌천 발령에 시기는 조금 앞서지만 1982년 OO대생 000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던 OO지법의 XXX 판사가 OO지원으로 전보됐던 일과 맞물려 재판과 관련한 인사 불이익 보복에 판사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졌다. 여기에 서태영 판사 사건이 불을 붙였다.

1985년 9월 1일자로 서울민사지법 수석단독판사로 발령받은 서태영 판사는 1985년 9월 2일자 『법률신문』에 발표한 「인사유감」이라는 글에서 대법원장의 부당한 법관 정기인사를 비판했다가 9월 4일자로 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던 것이다.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해서 판사를 좌천발령시킨데 이어 그러한 인사를 비판한 판사가 부임 하루만에 좌천됐으니 법조계가 발각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9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바로 “법관의 재판상 및 신분상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최근의 법관인사에 대한 의견서」를 대한변협에 보냈다. 이 건의문을 접수한 대한변협에서도 이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전체이사회를 열었고 격렬한 토론 끝에 12대 8로 대법원장 자진사퇴 권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이 국회에 전달되고 국회는 사상 최초로 유태홍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다. 유태홍 대법원장이 정부 권력에 영합, 사법적 정의구현에 소홀한 법관을 우대함으로써 법관의 심판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사법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⁷¹⁾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좌천 인사라는 불이익까지 당했던 B 판사의 사례는 어쩌면 당시 인천지법 분위기를 보면 예상가능한 일이 었는지도 모른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OO지법에 근무했던 K대 법대 S교수는 OO지법 근무 당시 즉결심판과 관련해서 법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밝혔다. 법원장이 “이번에 S판사 담당 즉결심판으로 넘어온 아무개가 성향이 아주 악질적이라고 한다. 이런 놈은 일벌백계해야 하니 최소한 구류 20일 이상은 때려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당부를 받고 즉결심판에 들어갔으나 정작 가서 보니 ‘학생들이 정의감으로 반체제 운동을 한 단순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죄석방을 하고 싶었지만 법원장이 간곡히 당부한 바도 있어 구류 3일을 선고했는데 이후 법원장에게 다시 불려가서 “그만큼 당부했는데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며 호통을 들었다면서 “법원장이 즉결사항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안기부에서 법원장에게 특별히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는 것이었다. S 교수는 이와 함께 그래도 자신은 같은 고향 선배인 김용철 대법원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준 덕택인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B판사는 OO지원으로 좌천되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3) C 판사 관련

B판사 관련 보고서가 올라간 두달 후쯤 C 판사의 즉심 판결 관련 보고서가

71) 변재욱 영남대 법학과 교수, 「권력의 불모된 법관의 양심」 『세계와 나』 1990년 12월호, p181.

올라갔다. 이번에는 사안이 학생 시위 관련이 아니라 출판물에 관한 것이었는데, 보고서 상에는 사전협조 요청을 비롯,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C판사의 이후 인사이동 기록 등을 보면 별다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는 어쩌면 1985년 8월 21일에 있었던 C판사의 판결에 관한 법원의 입장 정리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1985년 9월 1일 인사과동으로 인해 사상 초유로 유태홍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되는 등 대규모 사건이 터지면서 안기부나 법원이 따로 C판사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웠던 덕을 본 것일 수도 있다.

1985년 8월 24일 작성된 「OO서각 대표 000 등 즉심, 무죄선고 사유확인 및 조치보고」 보고서는 즉심 판결과 관련해서 안기부가 얼마나 주의깊게 추이를 관찰하고 어떻게 사전조정을 시도하고 이후 판결과 관련 판사에 대해 어떠한 압력을 가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요

- 8.21 “민주정치 1” (신한당 000등 국회발언 내용 수록)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경찰로 하여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동 책자 474권을 압수하고
- 발간자 000(여, 42세)를 연행, 발간경위 등 조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 법원에 유죄선고토록 사전협조(조정)한바 있음에도
- 즉심 담당판사 C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 또한 C판사는 동시에 즉심회부된
 - 황석영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책자 판매 관련자 이00(34, 진명서적 영업부장)에 대해 책장사라는 정상 참작, 형면제를 선고
 - 민민연 불순성명 제작 관련자 이부영(44, 민민연 민생분과 위원장), 오경열(29, 민민연 실무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 명령을 각 선고한 바 있어
- 동 C판사의 무죄 등 선고 사유확인 및 관련 조치보고임⁷²⁾

즉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정치 1』 책자 발간 관련 사건을 먼저 인지한 안기부가 8월 21일 ‘경찰로 하여금’ 000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연행조사하게 했으며 즉심에 회부한 것도 안기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 ‘유죄’를 선고하도록 ‘사전협조(조정)’까지 해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1985년 8월 23일, 전혀 예상 외로 C판사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황석영의 책자 판매와 관련하여 이00에게는 형면제를 선고하고 민민연의 불순성명 제작과 관련한 이부영, 오경열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검찰 송치 명령을 선고한 것이다.

안기부의 사전협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4. 즉심 처리조정 사항’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즉심 처리조정 사항

- 85.8.22-23간 2차에 걸쳐 00형사지법 원장 및 동지법 수석 부장판사에게
 - “민주정치 1” 책자는 문제 국회의원 000이 홍보용으로 발간한 불순책자로서
 - 동 책자 내용에는 실정법상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 시판될 경우 정국 안정에 위해롭고
 - 이를 묵인할 경우 유사내용 책자 제작판매가 우려되므로 유죄선고토록 협조 요청(조정)한 바 최대 협조 다짐
 - * 황석영 저 책자 및 민민연 불순성명서건도 동시 협조 요청
- 수석 부장판사는
 - 85.8.23 즉심 직전 즉결담당 C판사에게
 - 동 책자에 수록된 000의원 발언 중 광주사태 부분이 시중에 유포되면 유언비어가 되어 사회안정에 유익한 것이 못되며
 - 유, 무죄는 정식재판에서 논하도록 하고 즉심에서 유죄 인정 구류 선고해줄 것을 당부
 - * C판사는 “국회의사록이 일반에게 반포됐다 해서 허위사실 날조 유포가 되겠느냐”고 반문, 구체적 언급 회피

72) 안기부, 「00서각 대표 000 등 즉심, 무죄선고 사유확인 및 조치보고」(1985.8.24)

이에 따르면 안기부는 8월 21일 경찰이 000 등을 즉심에 회부한 직후인 8월 22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000 서울형사지법원장 및 000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가 유죄선고를 ‘협조’ 요청했고 법원 역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 부장판사는 C판사가 즉심에 들어가기 직전 “동 책자에 수록된 000의원 발언 중 광주사태 부분이 시중에 유포되면 유언비어가 되어 사회안정에 유익한 것이 못되며 유·무죄는 정식재판에서 논하도록 하고 즉심에서 유죄 인정 구류 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C판사는 이러한 ‘강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무죄선고를 내려버렸다.

당연히 안기부는 사전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판결을 내린 C판사에 대해 이른바 ‘조치’에 들어갔다.

5. 관련 조치사항

- 무죄선고 즉시 00형사지법원장 및 수석부장 판사에게 강력 항의
 - * 형사지법 원장 등은 “면목 없다” 면서 향후 대책수립 적극 협조 다짐⁷³⁾
- 형사지법원장 및 수석부장을 직접 방문 엄중 항의, 담당판사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구
 - * 수석부장은
 - 향후 여사 사례 없도록 책임지고 자체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으니
 - 담당 C판사에 너무 힐책 말아주길 요망

안기부는 무죄선고가 나자 즉시(이 보고서 작성일자가 8월 24일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 조치’는 8월 23일 즉심 선고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전협조를 요청했던 00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 판사에게 00단장을 보내 강력 항의했다. 그러자 형사지법원장과 수석

73) 당시 조정관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들의 조정결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심했다고 한다. 실제 법원장이 일개 조정관에게 “면목 없다”라고 했을 가능성은 아무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고 해도 거의 없다.

부장은 “면목 없다”면서 “향후 여사 사례 없도록 책임지고 자체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으니 “담당 C판사에게 너무 힐책 말아주길” 요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즉심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안기부의 사전 ‘조정’이건 사후 ‘조치’이건 담당 판사에게 직접 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장이나 수석 부장판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다수 판·검사들이 이른바 ‘외압’에 대해 법원 및 검찰 내부의 상부에서 오는 압력은 많이 받았으나 그것이 법원이나 검찰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혹은 법원이나 검찰 상부 선에서 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C판사 관련 안기부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 C 판사가 즉심 판결과 관련해서 받은 압력이란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에게서 온 것 뿐이었다.

이렇게 사전·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만큼 C판사가 무죄선고를 내린 사건이 안기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안기부는 즉심 판결 직후 조치를 취한데 이어 향후 조치에 대해서까지도 계획했다. “담당 판사 대한 비위내사, 견제 자료 확보”와 “여타 비협조 판사들에 대한 비위 자료 집중 수집”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안기부가 이후 C판사를 비롯한 ‘비협조 판사’들에 대한 비위자료와 견제 자료를 실제로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C판사가 이후 별다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향후 전개된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 때문에 안기부 등이 보복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D 판사 관련

C판사 사례에 이어 000 서울형사지법원장과 000수석부장판사가 안기부의 ‘조치’ 과정에 개입한 또 다른 사례가 1985년 10월 10일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즉심 무죄선고 사례이다.

이에 관한 안기부 내부 보고서는 1985년 10월 12일 안기부에서 작성한 「Y대 여학생, 시위준비물 운반 등 관련 즉심 무죄선고 경위확인 보고」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1. 개황

○ 경찰에서는

지난 10.8. 18:00 종로, 서울역 등지에서 서울대 등 시내 일부대 문제 학생들이 IMF, IBRD 총회 반대 가두시위설에 대비 경제근무 중

- 동일 18:40경 종로 신문로 1가 소재 덕수제과 앞 육교위에서 상자를 휴대 배회하고 있던

· 000(21, A대)

· 000(19, A대)

등 2명을 각 불심검문시 메가폰, 신나(1리터)를 소지, 연행 조사한 바

- 위 000 등 2명은

85.10.8 15:10경 A대 여학생 휴게실에서 인문대 여학생회장 XXX으로부터

· 동일 19:00 IMF, IBRD 총회 반대시위시 사용할 메가폰, 신나구입(비용 25,000원 수교) 및 신문로 소재 덕수제과 앞 육교까지 운반 부탁을 받고

· 세운상가에서 위 시위도구를 구입, 약속장소에서 배회타 사전 검거

경범죄처벌법(제1조 4호: 폭행 등 예비) 위반으로 즉심회부(10.10)

○ 10.10 00 형사지법에서는 위 2명에 대하여 무죄선고하였는 바

○ 동 사건 처리(경위) 확인보고임⁷⁴⁾

이 사건은 위의 개황에서 알 수 있듯 이른바 ‘시위 미수’ 사건으로 다른 세 건의 사례에 비해 사안으로 볼 때 가장 경미한 편이었다. 또 즉심 담당 판사였던 D판사는 즉심 담당은 네 번째였지만 서울민사지법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9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전보되어 이제 막 한달이 지났을 때였다. 게다가 안기부가 파악한 신원사항 평가에 따르면 D판사는

74) 안기부, 「A대 여학생, 시위준비물 운반 등 관련 즉심 무죄선고 경위확인보고」(1985.10.12)

“온순단정, 정부시책에 협조적”인 판사였다. 또 즉심 무죄선고 관련 좌천 인사 등으로 인해 유태홍 대법원장이 탄핵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후이기도 했다. 그러한 정황이 충분히 참작된 듯, D판사에 대한 조치도 상당히 유화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담당 판사를 불러 ‘피의자들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입법정신에 충분히 합당, 유죄선고를 해야 했다’고 주의를 환기하자 D판사는 차후 유사 사례 없도록 잘 살피서 판결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형사지법원장이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치 않도록”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D판사의 즉심 무죄선고 사건은 무난히 처리되었다.

본 위원회에서 입수, 검토할 수 있었던 즉심 관련 보고서는 1984년 10월부터 1985년 10월 사이의 단 네 건 뿐이었지만, 이 네 건의 사례로 미루어볼 때, 학생시위 등에 대한 유화조치 이후 즉심에서 학생시위사범 등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지나치게 사회 분위기가 풀리자 안기부가 즉심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사전 조정에 좀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즉심 판결 등에 안기부가 개입할 때 조정관 등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일선 판사들 선에서는 외부 압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두환 정권 후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년간은 시국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고문’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거웠다. 1985년에는 민청련 김근태 전 의장의 고문 문제가 불거졌고 1986년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으며 급기야 1987년에는 고문으로 인한 박종철 사망사건이 벌어졌다. 이 세 사건은 모두 치안본부와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사건 발생 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 등을 우려한 안기부가 관계기관과 사후 대책 처리방안을 논의·시행했다. 안기부 주도로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처리 방침이 결정됐고 사법부는 이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도 했고 때로는 몇몇 검사와 판사가 외압에 저항,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고문 은폐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고문’이라는 최악의 인권유린행위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 세 사건 이외에도 피의자/피고인들이 고문 사실을 폭로하면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들은 많았다. 1984년 5월 함주명이 안기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으며 검찰에서도 다시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 똑같은 자백을 되풀이 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⁷⁵⁾. 박우동 전 대법관의 회고에 의하면 1986년 강희철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상식에 어긋나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옳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심이 아니어서) 상고기각 판결이 불가피했다”며 “어디에 발전소, 군부대가 있다는 것을 탐지했다” 는 등 판에 박은 공소사실에서 조작성이 내보였지만 아무

75) 2007년 1월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에 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007년 8월 21일에는 국가배상판결까지 이루어졌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인혁당 사건 당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감정도 고뇌의 흔적도 느낄 수 없는 항소심 재판에 부아가 치밀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역시 1986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장형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영장도 없이 수십일 동안 감금당한 채 이근안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거짓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묵살했다.

검찰과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피의자/피고인의 고문 주장에 눈과 귀를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협박에 의해 진술됐거나 재판에서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헌법 제12조7항)”는 원칙이나 ‘무죄추정’ 원칙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⁷⁶⁾

1) 관계기관대책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한 수많은 피의자/피고인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그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외면해버렸다. 때로는 ‘고문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때로는 간첩 등의 수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강압 수사’는 필요악이라 생각하면서. 심지어 검찰은 검사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조서와 자술서의 임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⁷⁷⁾ 그런 우리 사회에 ‘고문’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부각시킨 것이 바로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한달 가까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사건이었다.

76)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77)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김근태 사건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한 것이었지만 인권변호사 등에 의해 고문 문제 등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안기부는 공동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기부는 주요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수사기관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안기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조정·지휘했는데 이때 사안별로 혹은 대처 단계별로 검찰·법무부·문공부·청와대 등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공동대응을 협의하거나 지시했다. 이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사실상 ‘정부당국의 정책 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그 방침에 위배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국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 안기부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거의 상설·공개기구로 기능하던 노동대책회의 등과는 달리 비정기적·비공식 회의로 참가 대상도 때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시국사건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이처럼 비공식 비밀회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펴낸 『87-88년 인권보고서』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관계기관대책회의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한 정보기관과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회합을 갖고 그 문제의 성격과 정부당국의 대처방안을 의논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실상 관례적으로 존재해 왔다. 독재권력의 속성상 집권자에 충성하는 정보집단인 청와대 비서실, 안기부, 보안사 등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아닌가 한다.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문제의 수준이나 정치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왔다. 정권적 차원의 문제에 대처하는 모임으로서 가장 고차원적인 것으로는 국무총리, 민정당 대표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이 정례회동하는 것이 있으며 그 아래로는 대통령 특별보좌관, 안기부장 또는 차장, 보안사의 담당자, 관계부처의 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이 회동하여 시국에 대한 대처방향과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군 고문 살해사건과 같이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처리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이 있다. 이 회의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관의 발의로 안기부장이 소집하며 주 2회 정도 안기부 별관이나 호텔 등지에서 회합을 하는데, 비록 법령상 의결권이나 정책집행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참석자들의 수준에 비춰볼 때 협의된 내용은 사실상 정부당국의 정책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의 담당 검사의 회고록 등 공개자료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김근태 고문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단어가 명시된 국정원 자료⁷⁸⁾를 입수한 덕분에 어느 정도나마 관계기관대책 회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1988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1988년 10월 22일 열린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후에 안기부장을 역임(1989.7~1992.3)하기도 한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이 관계기관대책회의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남아있다. 서동권 검찰총장은 공안관계장관회의(관계기관대책회의)가 실재했으며 ‘시끄러울 때’는 주 2회 정도 모였고 가장 많이 모였던 것은 1986년 말부터 1987년 초반이었으며 건대사건, 미문화원 사건, 박종철 사건 등의 경우에 개최되었음을 인정했다. 김광일 위원이 공안관계장관회의가 어떤 경우, 누구의 주재에 의해 개최되는지 묻자 “여러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재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관계기관장회의가 열리게 되며 주로 안기부장이 주재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처의 장이 요청해서 주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면서 한 예로 건대사건의 경우 법무부 차원에서 안기부에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해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법무부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대사건의 경우에 대부분의 구속자를 전부 기소유예 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하기 이전에 그 대부분이 학생이니까 형사처분을

78)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

하는 것보다는 기소유에 처분을 해서 학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무부라든지 혹은 문교부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기관에서 연락이 되어서 협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덧붙여 그는 박종철 사건 당시 경찰에 수사를 넘길 것을 결정한 1986년 1월 17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관해서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 치안본부, 검찰총장 등이 참여했다면서도 이는 “문귀동 사건 때에 애기된 관계기관대책회의와는 다르다”고 답변, 공안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경우 노동대책회의 등과는 달리 사안과 중요도 등에 따라 참가 기관이나 회의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부연설명했다.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한 안기부의 시국사건 처리 개입 및 조정에 관해서는 이후 김근태 고문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2) 김근태 고문 사건

먼저 김근태 고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알 수 있는 원내 자료로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과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은 1985년 12월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제5공화국 후반기 정국 안정 도모는 물론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수행과 '88평화적 정권교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민민련 등에 대한 단계별 소탕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85.12.1~1986.2.28까지 민청련 관련 수사종결, 홍보계획, 조직 완전

척결, 공판대책 강구 등의 시행계획이 담긴 1단계 처리 계획과 민민련 등 문제권 관련 조사착수, 홍보계획, 예상상황 적극 대처, 공판대책 강구 등의 시행계획이 담긴 2단계 처리 계획을 비롯 비상조치 발동까지 이어지는 총 6단계의 처리계획을 담고 있다.

이 6단계의 처리계획 중 민청련 처리계획인 1단계 계획과 민민련 등 문제권 처리계획인 2단계 계획은 민청련의 경우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엄단”할 것과 민민련 등 문제권의 경우 “전원 구속 엄단 조사, 문제단체 척결 및 문제권 소탕, 사안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사회안정 풍토 정착”을 기본방침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엄단’이라는 법적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는 당연히 이 계획의 ‘협조기관’으로 기능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이 중 민청련 관련 처리계획인 1단계 계획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역할’을 살펴보자.

먼저 검찰은 ‘시행계획 1. 수사종결’ 단계에서 “김근태 등 관련 구속자(7명) 관리 철저, 공소유지 만전”과 “목비권 행사 중인 김근태 공소사실 추가 보완” “반성문 제출한 최민화(부의장), 김희상(대변인) 및 이을호(정책실 부실장) 등 3명 계속 설득, 공소유지” “기타 집시법 위반 구속자 계속 조사,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추가 기소”를 해야 하며 ‘시행계획 2. 홍보계획’ 단계에서는 대학가 방학 후인 86.1 중 보도문 초안을 작성해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사건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시행계획 3. 조직 완전 척결’ 단계에서는 ‘잔존세력’이 “계속 불순활동 자행시 의법 조치”해야 하고 ‘시행계획 4. 공판대책 강구’ 단계에서는 법원과 협조 하에 공판기일을 결정하고 ‘최고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법원의 역할은 ‘시행계획 4. 공판대책 강구’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관련자 전원 중형 선고, 엄단 조치” “86.3(개학) 전 1심 공판 종료(피고인 분리 심리)” “피고인 등 공판정 대정부 규탄 장소화 획책 강력 저지” “법정 내외 소란 및 불순행위자 격리조치”의 기본방침 하에 각각의 세부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자 전원 중형선고, 엄단조치
 - 검찰, 사전 법원 협조 최고형 선고
- 1심 공판, 최소한 개학전 종료
 - 피고인별 분리 심리
 - 검찰, 법원과 협조 공판기일 결정
 - 주1회 이상 공판 개정
- * 피고인 묵비권 행사, 방청객 소란 난동 등 사정 발생시 주 2회 이상 공판기일 변경 조정
- 공판정 내외 소란 및 불순행위 저지
 - 공판정 내외 병력 배치, 경비 강화
 - 공판정 주변 검문검색 강화, 문제인물 출입 차단
 - 방청객 소란행위시 형소법 제281조(법정 경찰권)에 의거 필요조치 강구
- 공판정 출입자 통제 및 피고인 호송방법 결정
 - 방청권 제한발부(가족 1매, 일반 방청권 20매 내), 학생, 문제인물 출입 엄격 통제
 - 출정 거부 피고인 순화, 최단시간 내 출정
 - 입퇴정시 불순구호 제창 등 소란행위 강력 저지
 - 피고인은 최단시간내 입퇴정, 가족 및 학생 등과의 접촉 대화 차단
- 공판정내 대정부 비난발언 등 정치선전 강화 강력 저지
 - 피고인, 변호인 등 공소사실 이외 발언 즉각 저지
 - * 필요시 일시 휴정 등 공판절차 최대 활용, 탄력적 운용
 - 정치성 색채 문제인물 증인신청시 기각, 최소인원으로 조정
- 공판상황, 사실보도에 국한
 - 문공부, 사전 언론사 협조
 - 사실보도에 국한 축소 보도
- 유관기관 공조, 변호인 사전 순화
 - 재판부 기피신청 예방
 - 정치사건화 저지
- 피고인, 변호인 등 재판부 기피신청시 신속 대처
 - 법원과 협조, 최단기일(16일) 내에 신속 처리
 - 1심 구속만기일 임박시에는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신속처리(형소법 22조)

민민련 등 문제권 관련 처리계획인 2단계 계획에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은 위 ‘민청련 계획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소한 민청련 김근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상황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 검찰은 1985년 10월 25일 ‘민청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김근태에게 국보법 제7조 1, 3, 5항(찬양 고무 동조, 이적단체 구성, 용공서적 소지) 및 집시법 제3조 1, 2항(집회 시위 금지, 시위선동)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김근태의 변호인 접견권까지 제한하고 기소 이후에도 검찰로 불러 조사함으로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최대한 심리를 서둘러 개학 전에 끝내지는 못했지만 1986년 3월 6일 1심 선고공판을 했으며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실제로 법정 소란 등에 법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있는데 국정원에는 「민청련 김근태 선고공판(1심) 동향」 등 상세한 공판상황보고가 몇 부 남아있다.⁷⁹⁾ 이 보고서 중 ‘관련 동향’ 항목을 보면 “08:00 소란책동 예상자 문익환(민민련 의장), 계훈제(민민련 부의장), 김정남(민민련 회원), 김현숙(민청련 회원), 임채영(명동성당 청년회원) 등 6명 법정 주변 차단” “08:30 공판정내 외곽에 경찰병력 3개 중대(12/450) 배치, 검문 검색” 등이 적혀 있어 위 단계별 처리계획대로 ‘법정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병력 배치 및 ‘소란책동 예상자’의 방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민청련 김근태 사건의 경우, 검찰로 송치된 1985년 9월 26일 예기치 않게 김근태의 부인 인재근 씨, 김상철 변호사 등과 김근태 씨가 마주치게 되면서 김근태 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 처리계획 외에 별도로 고문 문제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했다. 한편 고문 문제로 인해 진술조서의

79) 이 공판상황보고는 김근태 사건이 대공분실에서 수사한 사건이었음에도 안기부 조정관 등이 매번 공판에 참석, 상황을 면밀히 지켜봤다는 것 역시 알 수 있게 해준다.

임의성 문제가 제기된다거나 해서 ‘중형’ ‘엄단’ 조치가 행해지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예방하는 대책 마련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김근태 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받은 고문에는 안기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근태, 이을호, 김병곤 등 3명이 대공분실로 연행된 지 5일 후인 1985년 9월 9일 안기부에서 작성한 「학원 소요 배후 조직 ‘서울대 민추위’ 등 수사진행상황보고」에는 대공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 안기부가 어떻게 조정권을 행사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먼저 김근태 등에 대한 수사에서 “당부는 수사관 상주, 수사 조정 및 각종 자료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향후 수사처리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 향후 수사처리 방향

- 금번 수사를 계기로 민청련 조직 자체를 최소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이상 수준으로 의율 조직 외해
-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 강력수사로 사건 실체 전모 규명
- 도주한 민청련 전집행국장 이범영과 ‘서울대 민추위’ 관련 수배자 박문식 등 검거 주력
- 관련자 전원 법정 중형으로 엄단,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차단
- 수사종료후 적기에 사건전모 홍보로 학원 소요 배후실상 폭로⁸⁰⁾

즉 안기부는 수사 초기인 9월 9일 이미 민청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홍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놓았음은 물론, 안기부 수사관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고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근태 씨는 자신이 당한 고문 일자와 고문 방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1985년 12월 19일 1심 1회 공판에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받았다.

80) 안기부, 「학원 소요 배후 조직 ‘서울대 민추위’ 등 수사진행상황보고」 (1985.9.9)

“본인은 9월 한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매일 각 5시간 정도 당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날 각 5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차례 씩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네 장례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 그 다음에 20일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즉 안기부가 수사진행상황보고를 올린 9월 9일은 이미 김근태 씨가 나흘 이상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을 때로 안기부 수사관이 대공분실에 상주하면서 수사를 조정했다면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대공분실에서 벌어지고 있던 고문을 중지시키기는커녕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강력수사로 사건 실체 전모 규명’ 방침을 세웠고 9월 10일, 13일, 20일, 25일 네 차례에 걸쳐 김근태 씨는 심한 고문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근태 씨가 검찰로 송치된 1985년 9월 26일 김근태 씨의 부인 인재근 등과 마주치게 되면서 김근태 씨가 치안본부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큰 파문이 일었다. 인재근 씨는 즉각 변호인들과 함께 고문 문제를 강력 제기하기로 했고 일주일만인 10월 2일 이돈명 변호사 등 8명이 김근태 씨의 고문 흔적을 남기기 위해 ‘신체감정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김근태 씨의 몸에는 전기고문 등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생긴 발뒤꿈치의 상처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안기부로서는 ‘고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감정 증거보전이 기각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안기부는 이 신체감정 증거보전 신청 담당재판부를 ‘강력 조정’, 기각하도록 했다.

안기부가 1985년 10월에 작성한 「학원 및 노조 배후 조직 민청련 수사 진행상황 보고」에는 재판부 조정 처리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4. 김근태 구속 관련 신체감정 증거보전 청구 기각

- 지난 10.2 김근태 변호인 이돈명 등 8명은 김근태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
 - “신체감정 증거보전” (감정 및 검증)을 청구한 바 있어
- 사전 물의야기 예방 차원에서 법원(000 판사)을 강력 조정
 - 10.12 김근태에 대한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결정 처리토록 하였음⁸¹⁾

처 리 상 황

- 10.2 증거보전(신체검증 및 감정) 신청
- 10.4 담당재판부, 변호인에게 증거보전 목적 소명 요구
- 10.5 담당변호인 담당재판부에 검증 기일 조속 지정 요구
- 10.8 담당재판부, 검증실시 검토
- 10.10 국립의료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 회보서 접수
 - * 정형외과 부과장 000
- 10.11 감정절차 진행 연기 결정 및 경찰 김근태 조사기록 검토
- 10.12 증거보전 필요성 불인정, 기각 결정

이 보고서에서 안기부가 이야기하는 ‘강력 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처리상황 일지를 보면 000 판사는 10월 8일 검증을 실시할 것을 검토했고 10월 10일에는 국립의료원에서 감정인을 추천받는 등 신체감정 증거보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그 하루 뒤인 10월 11일 감정절차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10월 12일에는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 10월 10일 000 판사와 관련 어떤 일, 안기부가 ‘강력 조정’이라 부른 일이 일어났고 하루밤새에 담당판사는 생각을 바꾸게 됐음을 알 수 있다.

81) 안기부, 「학원 및 노조 배후 조직 민청련 수사 진행상황 보고」 (1985.10)

일단 신체감정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안기부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김근태 사례 뿐만 아니라 같은 민청련 관련자 이을호, 전학련 삼민투위장 허인회, 백범사상연구회장 정진관 사례 등 여기저기에서 고문 및 사건조작 시비가 계속되자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85년 11월에 안기부가 작성한 「최근의 학원 좌경 폭력 소요 배후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 보고서는 ‘I. 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에서 김근태, 허인회, 이을호, 정진관 사건의 고문 주장이 모두 이들의 구명 및 정치투쟁 가속화를 위해 재야 운동권세력들이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후 ‘II. 사건 성격 시비에 대한 진상’에서는 삼민투쟁위원회 사건과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 어떠한 이유에서 ‘용공’인지를 설명했다.⁸²⁾ 비슷한 내용을 담은 날짜미상의 또다른 보고서는 제목 자체가 「허구적 주장의 배경」으로 이 보고서는 김근태 씨가 “고문주장과는 달리 일절의 흔적이 없고 얼굴색도 건강, 보행 및 거동도 정상”이라면서 “담당변호인단에서 고문흔적 증거보전신청(10.2)함으로써 동 사건 담당 000 판사는 국립의료원에 감정인 추천의뢰(10.4), 동원 정형외과 부과장이 감정의사로 선정(10.8)까지 되었으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⁸³⁾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안기부는 김근태 씨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부터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데다가 000 판사를 ‘강력 조정’해 기각 결정토록 했다.

그런데 국정원 존안 보고서 중에는 역시 198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고문 및 용공조작시비에 대한 대응논리」⁸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는 작성자가 안기부가 아니라 ‘서울지검 공안부’로 적혀 있다.

82) 안기부, 「최근의 학원 좌경 폭력 소요 배후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1985.11)

83) 안기부, 「허구적 주장의 배경」 날짜미상, 한편 이 보고서의 ‘주장내용별 실상’에서 000 판사 관련 사항은 타이프로 친 보고서를 손으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다. 보고서는 “담당변호인단에서 고문 흔적 증거보전 신청(10.2)하였으나 동 사건 담당 000 판사가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적인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을 “담당변호인단에서 고문흔적 증거보전신청(10.2)함으로써 동 사건 담당 000 판사는 국립의료원에 감정인 추천의뢰(10.4), 동원 정형외과 부과장이 000 감정의사로 선정(10.8)까지 되었으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수정했다.

84) 서울지검 공안부, 「고문 및 용공조작시비에 대한 대응논리」 (1985.11)

하지만 그 내용은 목차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작성했거나 거의 베껴 썼다 싶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안기부나 서울지검 공안부 중 한 기관에서 이들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서 돌렸거나 한 기관에서 먼저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기관에서 그대로 보고 쓴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최근의 학원 좌경 폭력 소요 배후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과 서울지검 공안부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문 및 용공조작시비에 대한 대응논리」 중 목차와 김근태 고문 관련 부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p>최근의 학원 좌경 폭력 소요 배후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 85.11.</p>	<p>고문 및 용공조작시비에 대한 대응논리 1985.11. 서울지검 공안부</p>
<p>차례 1. 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 1. 김근태(민청련 전의장) 사건 2. 허인회(전학련 삼민투위장) 사건 3. 이을호(민청련 정책실장) 사건 4. 정진관(백범사상연구회장) 사건 11. 사건성격시비에 대한 진상 1.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2.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p>	<p>목차 고문주장에 대한 반박 1.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 고문주장에 대하여 2. 전학련 삼민투위장 허인회 고문주장에 대하여 3. 민청련 정책실장 이을호 고문주장에 대하여 용공조작주장에 대한 반박 1.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2.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p>
<p>1. 사건 수사과정 시비에 대한 진상 1. 김근태(민청련 전의장) 사건 <사건개요> ○ 김근태는 83.9.30 제적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청련이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한 후 85.8까지 의장으로 활동한 자로서</p>	<p>고문주장에 대한 반박 1. 민청련 전의장 김근태 고문주장에 대하여 김근태는 1983.9.30 제적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청련이라는 불법단체를 결성한 후 1985.8까지 의장으로 활동한 자로서</p>

<p>85.9.7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치안본부(대공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9.26 검찰에 송치되어, 10.25 구속기소되었음.</p> <p><진상></p> <p>○ 김근태는 검찰수사시 자신에게 불리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으므로 가혹행위나 진술강요조차 없었음이 자명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폭행,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 사례는 일체 없었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임.</p> <p>왜냐하면 경찰수사시의 자백은 본인이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하여 자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임.</p> <p>○ 김근태에 대한 고문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85.9.26 김근태가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검찰청사 4층에 대기 중인 동인의 처 인재근을 보자 갑자기 복도에 주저앉으면서 심한 고문을 당한 것처럼 말하여 이를 목격한 인재근이 이를 문제삼아 구명운동에 이용하고자 의도적으로 교계·학계·노동계 및 해외교포들에게도 왜곡하여 전파한 것임.</p> <p>○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따라 검찰수사 과정에서 동 사실의 진부를 조사하였으나 고문의 흔적을 일체 발견할 수 없고, 얼굴색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보행이나 거동에 고문의 의심을 가질 만한 여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음.</p>	<p>○ 김근태는 1985.9.7.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9.26 검찰에 송치되어, 10.25 구속기소되었으며,</p> <p>검찰 수사시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바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폭행,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고,</p> <p>○ 김근태에 대한 고문 운운 주장은 9.26. 김근태가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검찰청사에 대기중인 동인의 처 인재근을 보고 갑자기 복도에 주저앉으면서 심한 고문당한 것처럼 말하여 이를 목격한 인재근이 이를 문제삼아 구명운동에 이용하고자 의도적으로 교계, 학원계, 노동계 및 해외교포들에게도 왜곡, 과장 전파한 것으로서</p> <p>○ 외관상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고문의 흔적을 일체 발견할 수 없고, 얼굴색도 건강색으로 보행이나 거동에 고문의 의심을 가질 만한 여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음.</p>
--	---

<p>○ 그러나 동인은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고, 처벌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 검사의 심문에서조차 시종일관 묵비하면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앞으로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시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사실을 왜곡 주장할 것은 뻔한 이치임.</p>	<p>○ 그러나 동인은 자신의 죄상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궁색한 방편으로 검사의 신문에서조차 시종일관 묵비하는 등 갖은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앞으로 가족이나 변호인들을 만날 때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사실을 왜곡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p>
---	--

이 보고서들에는 1985년 11월이라는 것뿐 정확한 작성일자가 나와있지 않아 선후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안기부 보고서 앞에 “최근 수사 과정에 대해 시비(고문 및 사건조작시비)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반박설명 자료로 그 진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손으로 쓴 메모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나 역시 안기부가 작성한 유사한 내용의 「허구적 주장의 배경」이라는 보고서가 또 하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안기부에서 대응책을 마련, 이를 서울지검 공안부에 전달했고 검찰은 안기부의 방침을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안기부는 1985년 11월 김근태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대응논리를 개발한 후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월에는 6단계에 걸친 장기적인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12월 19일 1심 1회 공판에서 김근태 및 변호인들이 고문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재판부에 고문검증 신청을 요구한데다 12월 30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에서 담당경찰 8명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세부적인 공판 대책보고를 세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에는 1986년 1월 6일자로 작성한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라는 보고서가 남아있어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를 특정 사안으로 다루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1월 초에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안기부가 어떠한 대처방안을 구상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⁸⁵⁾ 이 보고서는 ‘1. 개황’ 항목에서 김근태와 관련한

85) 1999년 12월 16일 이근안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

상황을 “지난 12.19 1심 1회 공판시 법정진술에서 경찰 조사기간 중 고문 및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 이를 계기로 재야, 종교, 구속자 가족 등 문제권이 연합, 고문빙자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일방, 공판정에서의 도적으로 소란 등 시비, 공판을 방해함은 물론 공판정을 정치선전장 화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고 해외 문제 교포, 국외 인권단체 및 조야 등에 왜곡전파하여 인권문제 위요,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 “구속자 가족, 문제권과 연계, 김근태 구명운동 전개”와 “고문수사 시비, 의도적 공판 방해 자행”을 들고 “재야 문제권의 김근태 등 고문시비 관련 불순행사 철저 와해” “구속자 가족 관리 철저, 구명운동 등 저지” “문제권 대정부 투쟁 강력 대처로 초동 단계 와해” “철저한 공판대책 수립 대처” “해외 문제인물의 국익저해 등 불순활동 철저 봉쇄” “국내 인권문제 관련 해외홍보 철저”라는 대책을 세웠다.

특히 “관련자 전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엄단”⁸⁶⁾한다는 기본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공판대책을 제시했다.

④ 철저한 공판대책 수립 대처

- 공판일정 준수, 2월 중 1심 선고 완결
- 김근태에 대하여는 중형(7년 이상) 선고, 사회와 완전 격리
- 변호인 등 고문수사 논쟁 저지
- 소송지휘권 확립으로 법정질서 유지
- 경비강화로 문제인물 출입차단 및 격리
- 방청권 엄격 제한 발부 및 출입자 검색 강화
- 언론 축소보도로 자극 배제⁸⁷⁾

OO단장에게서 “김씨의 고문주장이 제기되자 안기부 OO국장, OO단장, OOO 공안부장, OOO 검사 등과 함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씨에 대한 면회, 접견금지 및 상처 조기 치유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86) 안기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 (1985.12)

87) 안기부,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 (1986.1.6)

심지어 재판부의 ‘선고형량’까지 일찌감치 지시한 이 공판대책은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1986년 3월 6일 1심 재판부는 김근태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근태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고 1988년 6월 30일 가석방됐다.

이렇게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1985년 12월 30일 당시 변협 인권위원장 유택형, 변정수 변호사 등 7명과 김근태의 처 인재근 등은 김근태가 1985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민청련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경찰관들로부터 전기,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불법감금을 당했다면서 당시 수사책임자 윤OO 등 경찰관 및 정석모 전 내무장관, 박배근 전 치안본부장, 담당검사 등 17명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독직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XXX검사는 1986년 12월 30일 독직 폭행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고 1987년 2월 23일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가 무려 1년 7개월간이나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고발인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것이다. 1988년 2월 5일 현재 당시 법원에는 김근태 재정신청 외에도 권인숙, 우상호(이한열 사망 사건 관련)의 재정신청 등 24건의 재정신청이 계류되어 있었다.⁸⁸⁾ 법원은 1988년 2월 이들 미제 재정신청 심리를 이달 내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 심리 개시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관계당국은 88올림픽을 즈음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서울에 몰려있는 이때에 재정신청 심리로 인해 공안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한 당국의 분위기는 국정원 존안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1988년 9월 12일자 「법조계 동향」 보고서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 조열래 부장판사가 김근태

88) 『조선일보』 1988년 2월 5일자.

관련 재정신청 담당인데 조 판사가 “김근태 관련 재정신청사건 올림픽 후 심리처리 복안”을 언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그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담당 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동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 동 사건을 접수한지 1년 7월이 지나도록 심리를 한번도 진행치 않아 그동안 담당변호인 변정수 등으로부터 5차에 걸쳐 심리촉구를 받은 바 있어 더 이상 지연시킬 명분이 없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질의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론할 것이 분명하므로
- 올림픽이 끝나면 심리기일을 지정, 관련자 소환 심문 후 처리할 복안이라면서, 설령 동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당장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등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함⁸⁹⁾

그런데 당시 법원인사가 1988년 7월 1일자로 있었으며 조열래 부장판사는 이때 대구고법 부장판사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인사이동되어 김근태 재정신청 담당판사가 된지 겨우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오랫동안 심리가 지연된 끝에 새 재판부가 구성되자 그에 거는 기대가 높았겠지만 ‘1년 7개월’이란 지연된 재정신청 심리에 대한 항의나 압박은 전 재판부가 받은 것에 비하면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김근태에 관한 재정신청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어떤 사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편 88 올림픽은 9월 17일에서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조열래 판사는 9월 12일자 보고서에서 예상한 대로 재정신청 심리를 받아들였다. 또 조 판사가 예상한 대로 198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김근태에 관한 재정신청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었던 이유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1988년 10월 5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에 의해 9월 12일자 보고서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다.

89) 안기부, 「법조계 동향」(1988.9.12)

“김근태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은 두 건이 당 법원에 계류되어 왔습니다. 한건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류택형 변호사 외 6명이 신청한 사건으로서 87년 1월 20일 87초25호로 접수되었고 또 한 건은 김근태의 처 인재근이 신청한 재정신청사건으로서 87년 3월 11일에 87초37호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7초25호 사건은 87년 2월 25일에 87초37호사건은 87년 4월 2일에 관계인들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으며 88년 2월 16일 87초25호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로부터 서울 형사지방법원 85초1285호 증거보전사건 기록 및 결정문의 서류송부 요구신청에 따라 88년 3월 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록 송부 요청을 하였으나 동년 3월 15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동사건이 이미 완결되어 기록이 86년 1월 29일 검찰청에 인계되었기 때문에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불능통지를 받았습니다. 그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사법부의 개편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어 새로운 재판부에서 그동안 이 사건을 인계 받아 기록검토하고 88년 9월 28일 피신청인 김OO과 증인 송OO을 소환심문 하였고 오는 10월 26일 피신청인 서OO과 동 흥OO 및 증인 최OO을 심문할 예정으로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신청은 이후 22개월만인 1988년 12월 15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4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조열래 부장판사의 서울고법 형사3부는 결정문 범죄사실을 통해 “(김OO 경감 등 4명)이들은 85년 9월 4일 김근태씨를 서울 갈월동 대공분실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문대에 담요를 깔고 알몸으로 누인 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로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한 것을 비롯, 같은 달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물고문·전기고문·전기봉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⁹⁰⁾

한편 이렇게 “설령 동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도 당장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⁹¹⁾면서 재정신청 심리를 강행, 4명의 고문경관을 재판에 회부한 조열래 판사는 2년 뒤인 1991년 1월 29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발령된데 이어 1991년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법관 재임용을 앞두고 탈락대상자 12명에 포함되어 1991년

90) 『중앙일보』 1988년 12월 15일자.

91) 안기부, 「법조계 동향」 (1988.9.12)

4월 8일자로 퇴직했다. 그런데 1991년 조 판사가 사표를 내기까지의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먼저 1991년 1월 29일 대법원이 단행한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급에 대한 인사조치는 그해 4월 16일 실시된 법관 재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000당시 대법원장은 1991년 4월로 예정된 법관 재임명 심사를 앞두고 그해 1월부터 탈락예상자를 선정, 미리 자진 사퇴시킴으로써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재임명 탈락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이 논란이 됐다. 한 신문은 1991년 1월 30일자 기사에서 “당시 법원 주변에서는 재임명 탈락 대상자들이 ‘재판과 관련한 비리’ 또는 ‘고압적 재판태도로 인한 재야 법조계의 반발’ 등의 이유로 사표 종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 대법원의 탈락자 선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좌천인사를 당한 한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노동사건에서 비교적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몇몇 판결을 내렸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인권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⁹²⁾ 시국사건 등의 판결에서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들이 재임명 탈락 대상에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선정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인 셈인데, 이러한 의혹은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볼 때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과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넘겨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외부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는 전혀 없고 각급 법원장의 판사에 대한 구두

92) 『한겨레』 1991년 1월 30일자. 당시의 법원 인사기록과 관련 신문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노동사건에서 비교적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몇몇 판결”을 내렸던 부장판사는 김연호 판사로 1983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198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1990년에만 해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가 무조건 불법성을 띤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1990.4.26)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했다면 노동위원회가 신고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한 신고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1990.6.25)하는 등 노동쟁의에서 노동자 손을 여러 차례 들어주었다. 김연호 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자마자 사표를 제출, 1991년 2월 1일자로 퇴직했다. “인권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조열래 판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및 서면평가와 진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대법원 나름대로 객관적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993년 12월 28일 안기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일부 판사들, “판사평가서” 관련 불만」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일부 판사들은 지난 91-92년간 당시 000 대법원장의 지시로 은밀리 작성된 “판사평가서”가 아직도 법원행정처에 남아있어 법관 인사에 그릇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바
- “판사평가서”는 000 전 대법원장의 특별지시로 당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00실장의 주도하에 은밀리 작성된 것으로
- 각 판사들에 대한 장, 단점, 청와대내 인맥, 법조계 인맥은 물론 개개인에 대한 사생활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 000 전 대법원장 퇴임시 일부는 파기되었으나 그 대부분의 기록이 아직도 법원행정처에 비밀문서로 남아있어
- 잘못 사용될 경우 판사들에 대한 인사 및 신분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임.⁹³⁾

“각 판사들에 대한 장, 단점, 청와대내 인맥, 법조계 인맥은 물론 개개인에 대한 사생활”까지 자세히 기록한 판사 평가서를 000 대법원장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판사 평가서를 작성할 만한 역량과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그 2년 뒤인 1993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우동 변호사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것(재임용작업)을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 했겠느냐”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런 것을 심사할 기구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전에도 없었으니만큼 (법원) 외부에서 했다는 추론은 된다”고 말했다.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한 배태연 변호사도 “법원 내부적으로 개별 판사들을 평가할 역량과 시간이 없었던만큼 판사들 판결 성향을

93) 안기부, 「일부 판사들, “판사 평가서” 관련 불만」(1993.12.28)

일일이 파악했던 안기부에서 (재임용) 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⁹⁴⁾

이렇게 선정 기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은 재임용 탈락 예상자들에게 자진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에 반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판사들은 1991년 1월 29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 좌천됐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부산고법 부장판사 1명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전보발령했는데, 이처럼 “이미 지방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다시 지방고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 법원 관계자도 “이들 4명이 오는 4월의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대상자로 지목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거절해 좌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⁹⁵⁾

이미 1987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198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던 조열래 판사가 1991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좌천된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함께 좌천된 다른 판사들이 발령 직후 사표를 낸 반면 조열래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부임, 그후로도 두달 가까이 사표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4월 초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 대상으로 12명의 판사 명단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자 결국 사표를 제출, 1991년 4월 8일자로 퇴직했다.⁹⁶⁾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 오른 뒤 좌천 인사 등 계속된 사퇴 압력에 조열래 판사가 퇴직하게 되자 당시 전민련 사건

94) 『한겨레』 2005년 3월 7일자. 배 변호사는 1985년 춘천지법 근무 당시 반정부 서적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1987년에도 가두시위 대학생들을 석방한 전력이 있었다.

95) 『한겨레』 1991년 1월 30일자.

96) 『한겨레』 1991년 4월 5일자. “4일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임용 탈락대상자에는 부산고법 조열래 부장판사, 부산지법 정창환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차영길 부장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영오 부장판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서울고법 판사 2명도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사법연감』의 법관 인사기록에 따르면 조열래 판사와 정창환 판사는 1991년 4월 8일자로, 차영길 판사는 4월 9일자로, 이영오 판사는 4월 11일자로 각각 퇴직했다. 또 서울고법 판사 중 이 무렵 퇴직한 판사는 정남희(91.4.11일자) 판사와 배태연(91.4.13일자) 판사가 있다.

으로 홍성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근태 씨는 천정배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며칠 전 조열래 부장판사가 강요된 사표를 제출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고서는 나의 역겨움이 드디어 열은 구토감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천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88년도 하반기의 사회·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조 판사가 남영동 고문경관들인 김OO, 백OO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꼭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한 말과 주장, 그리고 자세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당해 재판에 간접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있게 되는 정치적 탄압에서 이런 평가가 중요한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법정에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평가는, 관여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구요. 저들이 말하는 통치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따져, 그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과자료가 되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J 씨와 L 씨 처럼 승승장구하게 되고, 눈에 벗어난 사람은 조 판사 비슷한 처지로 되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⁹⁷⁾

1985년의 김근태 사건은 안기부에서 수사한 사건이 아님에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안기부가 어떻게 주요 시국사건을 조정·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안기부는 수사초기부터 대공분실에 안기부 수사관을 상주시키면서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강력 수사’ 방침으로 수사를 조정했고, 검찰 조사 도중 고문 사실이 노출되면서 담당 변호인단이 신체감정 증거보전 신청을 내자 000 판사를 ‘강력 조정’해서 기각시켰고, 고문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방침 및 장기·단기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과 법원을 조정, 결국 징역 7년형을 이끌어냈다. 한편 고문경찰관 고발과 관련한 재정신청 건의 경우 안기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조사를 강행, 고문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우는 원치 않던 결과를 초래한 조열래

97) 김근태, 『우리 가는 이 길은』, 도서출판 새날, 1992.

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1991년 법관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이어 좌천 후 사표를 내 의혹을 남기고 있다.

3) 부천시 성고문 사건

물고문·전기고문 논쟁으로 뜨거웠던 김근태 사건이 1986년 3월 6일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 선고로 일단락된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번에는 이른바 ‘부천시 성고문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위장취업 혐의로 6월 4일 부천경찰서로 연행된 서울대 4학년 중퇴 권인숙 씨가 문귀동 경장에게 성고문을 당한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검찰의 수사발표, 그리고 권인숙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깊숙이 개입,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자료는 거의 찾지 못했다. 국정원 자료 확인을 통해 권인숙의 공문서 변조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진행 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인천분실 OO과장 000, 권인숙 피고 실형 선고 조종관련 동정」이라는 문서명을 찾았으며 동문서 제목은 1986년 12월 4일 실형 선고에 안기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통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은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희 인천지검 검사장의 회고록 『나 이제 자유인 되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을 자퇴한 권인숙이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진만 바꿔 붙인 뒤 주식회사 성신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은 1986년 5월 21일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이 그녀를 의심해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바람에 며칠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방에 머무르던 그녀는 동네 통장의 신고로 6월 4일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6월 말 권인숙은 이상수, 홍성우, 조영래 변호사 등에게 자신이 부천경찰서에서 문귀동

경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성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7월 3일 권인숙이 고소장을, 7월 5일에는 조영래 등 변호사 9명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고발장이 접수된 7월 5일부터 김OO특수부장 등 특수부 검사 전원이 나서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실 당시 안기부나 검찰,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권인숙 씨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당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이었던 박철언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시 안기부나 검찰, 경찰의 분위기는 권인숙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급진 좌경 사상에 물든 나머지 혁명을 위해 성적 수치심마저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7월 10일의 안기부 인천분실장의 보고조차 권양이 성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6월 6일과 6월 7일에 문 경장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 조사한 일이 없거나, 문 형사는 권양을 입장시킬 때 유치장까지 간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7월 11일, 안기부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장세동 부장은 ‘현 상태에서는 공권력 마비를 위한 공산 세력의 조작이다. 사실대로 수사하여 진위를 가려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당시 인천지검은 김경회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었으며, 권인숙 양 사건은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특수부 김수장 부장검사는 내가 평소 아끼는 서울법대 1년 후배였다. 당초 김경회 검사장이나 김수장 부장검사는 문귀동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5공 당시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 씨가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경찰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문귀동 경장의 구속 문제를 두고 서동권 검찰총장과 김경회 인천지검장이 입씨름을 해야 할 정도로 권력 핵심부의 입장은 강경했다.”⁹⁸⁾

실제로 수사 초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했는지 알 것이다”고 장담할 정도로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던 검찰은 7월 16일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른 발표를 내놓았다.

1. 권인숙이 조사를 받던 6월 7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의 사건현장인 조사실은 2면 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였고 조사실 뒤편 무기고의 전등불빛이 조사실 안으로 비쳐들고 있었으며 현장 옆의 다른 조사실에서도 다른 경찰관들이 날씨가 더워 모두 문을 열어놓은 채

98)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랜덤하우스 중앙, 2005.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현장 부근에는 늘 인적이 있었으므로 성고문이 있었다는 권인숙의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

2. 그렇지만 전날인 6월 6일 새벽4시부터 6시30분 사이에 문귀동이 제5조사실에서 권인숙을 조사하는 과정에 자켓을 벗게 한 후 티셔츠를 입은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쥐어박아 폭행을 가한 사실, 6월 7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문귀동이 제2조사실에서 조사 중에 권인숙의 가슴을 3-4회 손으로 쥐어박아 폭행한 사실은 스스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권인숙의 고소내용 중 성적 모욕행위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폭언, 폭행 부분은 문귀동이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인 과오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았고 지난 1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문귀동을 기소유예할 방침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사건의 성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권인숙을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운동권”으로 규정하고 “성을 혁명의 도구화”한다고 공격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급진좌경사상에 의한 노학연계 투쟁을 전개해 왔던 권인숙의 ‘성적모욕’의 허위사실 주장은 운동권 세력이 상승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 투쟁의 일환으로서, 폭행사실을 성 모욕행위로 날조·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일선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 혁명투쟁을 사회 일반적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됨.

이러한 사실은 동 권인숙이 학원 의식화 투쟁을 벌이다가 성적불량으로 대학 4년 제적 후(서울대 가정대 의류학과) 부모의 권유도 뿌리치고 가출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반정부·반체제 투쟁활동을 전개한 전력을 볼 때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수사에 착수한 7월 5일부터 수사결과를 발표한 7월 16일까지 그 열흘간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수사

담당 김경희 전 인천지검 검사장의 회고록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 일지를 재구성해보자.

○ 7월 4일

- 김성기 법무부장관의 전화. “경찰에서 권인숙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하면 받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두시간 후 000 경찰국장과 XXX 수사과장의 방문. 상부의 지시라며 낮 12시 권인숙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는 경찰의 고소장 접수.
- 검찰 간부들과 검사들을 총동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전력을 쏟기로 결심.

“그러나 문귀동이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고 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 자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 증거 수집 및 심지어는 증거 조작에까지 몰입하고 있었다. 전 경찰의 방대한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인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치안본부에서는 A라는 경무관을 부천서에 상주시키다시피 하였다. 경찰은 물론 모든 공안기관이 사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을 사시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고립무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은 이미 정권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건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 7월 9일

박철언 안기부장 특보가 만나자고 한다는 K 부장의 전언.

○ 7월 10일

- 박철언 특보와의 전화통화. 장관, 총장께도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함.
- 김OO 검찰국장의 전화. 아침 간부회의에서 장관이 “나의 직을 걸고 명령 하니 원칙대로 파헤치라”고 했다고 함.

“어제까지와의 태도와는 판이한 이 현상이 정부 권력의 취약성 때문인가 아니면 쫓대없는 검찰권의 방황이라 할 것인가?”

○ 7월 15일

- 오전 10시 30분경. 대검 총장실로 호출됨. 안기부장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왔으며 안기부에서는 발표문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서 등에 성고문의 ‘성’자도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함.

- 오후 3시경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

“이미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 7월 16일

- 수사결과를 발표하라는 대검의 요청 거부.
- 오후 6시 30분, K부장이 발표.

○ 7월 17일

- 오후 3시경 검찰총장의 전화. 인천과 서울의 일부 검사들이 어제 발표에 대해 이견과 불만을 내는 소리가 공안기관에 감지되니 부하들 입 단속을 시키라는 지시.

“지금 이 마당에 검사장이 입단속이나 시킬 형편인가? 수컷구멍에 목을 묻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아무리 보안을 당부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격이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⁹⁹⁾

발표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은 모든 것을 다 파헤치겠다는 결의로 수사했고 권인숙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던 것이다. 김경희 검사장은 대검의 수사발표 지시까지 거부하며 버텼지만 당시 일개 지검 검사장의 힘은 외압에 저항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결국 K특수부장이 왜곡·축소된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했고, 외부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끼워넣는 것도 저지하지 못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수사 방향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김경희 검사의 회고록 외에도 198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 10월 22일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개최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관한 조승형 위원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귀동 사건 때에 얘기된 관계기관대책회의하고 다르다”고 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 개최 사실을 인정했다. 더 나아가 7월 16일

99) 김경희, 『격동의 시절 검사 28년, 나 이제 자유인 되어』 중앙 M&B, 2002.

검찰 수사결과 발표시 함께 배포된 홍보자료가 검찰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안기부와 문공부의 작품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 장석화 : 그 당시 수사결과 발표할 때 홍보자료작성자가 안기부와 문공부 관계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어떨습니까?
- 서동권 :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답변도 사실은 최근에 제가 대검 관계자한테 알아서 그런 기관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확인했을 뿐이지 그 당시 어떤 경위로 해서 같이 발표가 나갔느냐 하는 것은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성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검찰은 그 ‘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¹⁰⁰⁾

후에 수형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역시 “성을 혁명의 도구” 운운하며 권인숙을 역공격한다는 시나리오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일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것이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검찰이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대통령, 안기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권인숙의 주장을 부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권인숙의 변호인 등은 7월 18일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발표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해 버렸다”면서 검찰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7월 22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권인숙의 주장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문경장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고문을 부인하는 듯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월 29일에는 미 국무부도 “권인숙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시인된 사실보다 더욱 심하고 가혹한 것이었다는 믿을만한 주장이 있다”며 “수감자들의 고문과 학대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고 이 같은 권력남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100)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88년 10월 22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압력 때문에 검찰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 7월 22일

- 수사기록 원본은 대검으로, 복사본은 법무부로 송부.
- 저녁 퇴근 무렵, K 부장이 대검의 지시사항 전달. 사실의 마지막 부분만을 빼고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하라는 것.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결정은 유예하는 처리 방향? 모두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L 검사에게 왜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는지,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전화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대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 엉터리로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알팍한 일말의 양심 때문인지? 상부가 갈팡질팡하고 검찰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 7월 24일/25일

- 불기소장 초안 독촉 계속됨.

○ 8월 2일

- 대검 차장의 전화. 8월 1일자로 결정을 하라는 통보
- 11시 48분. 다시 대검 차장의 전화. 결정을 보류하라는 통보

○ 8월 19일

- 권인숙 사건 종결 지시.

“권인숙 사건을 오늘 중 결정을 하란다. 드디어 바람직하지 않은 지시가 왔다. 강제 추행 무형의, 가혹행위 기소유예. 즉 성고문 부분은 혐의가 없고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가혹하게 다룬 점만을 인정, 사안이 가벼우니까 기소유예라는 등식이다. 곧이어 장관이 주는 격려금이라고 하면서 돈 200만원을 가지고 검찰 1과장이 왔다. 간부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주라고 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이렇게 왜곡 축소된 채로 검찰에서 종결을 보게 된 것이다.”¹⁰¹⁾

권인숙과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고발인은 검찰의 문귀동 불기소 처분에 불복, 9월 1일 형사소송법 제260조1항에 의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101) 김경희, 앞책.

제출했다. 당시 권인숙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166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0월 31일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받은 대법원 형사4부는 1년 넘게 사건을 방치한 채 시간을 끌다가 1988년 1월 18일 변호인단이 재정신청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하자 드디어 1월 29일 문귀동에 대한 원심결정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시 재판부가 든 판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 (나) 헌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규정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동 피의자의 피의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여성으로서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원심 판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그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결국, 원심은 재정신청 제도와 기소편의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1988년 2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대법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문귀동에 대하여 부심판결정(88초15)을 내림으로써 사건발생 1년 9개월만에 문귀동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다. 사건 심리를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그해 4월 9일 문귀동을 구속했고 1988년 7월 23일 1심 재판부는 원래의 가혹행위 공소사실 이외에 공소유지 담당지정 변호사가 제1심 재판과정에서 추가한 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 문귀동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쌍방은 재판결과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1988.12.6)과 상고심(1989.3.14)이 각각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이어 1990년 1월 법원은 1986년 10월 10일 권인숙을 대리하여 변호인단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성고문 사실과 이를 조작, 은폐하기 위해 기도한 불법행위에 대해 2억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권인숙에게 성고문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경희 전 인천지검장이 회고록에서 말했듯 “인천지검, 더 넓게 검찰 전체가 외압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던 문경장을 법원이 대신 처벌”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귀동의 성고문 혐의에 대해서는 외압에 굴복한 검찰을 대신해 사건 발생 2년 10개월만에 문귀동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이었지만 권인숙의 공문서 변조 등 혐의에 있어서는 법원 역시 외압을 이기지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의 심리로 권인숙의 공문서 변조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것은 1986년 10월 13일. 그런데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성고문사건의 검찰 수사기록 검증과 문귀동과 부천경찰서 경찰관인 L, K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다시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파행을 겪었다. 그리고 1986년 12월 4일, 재판부는 “비록 목적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심정에서 위장 취업했다고 하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사진을 갈아붙이고 기타 인적 사항을 도용해 이력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 지나치다”며

실형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권인숙이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되었다. 권인숙은 1987년 7월 8일, 구속된 지 13개월만에 특별 가석방됐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의 실형선고에는 강력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당초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권인숙을 즉시 석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선고 직전에 실형 1년6월로 조정되었다는 뒷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나머지 배석판사와 상의 없이 결정한 형량이었으며 재판부의 한 사람은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후일 사석에서 고백했다고 한다.¹⁰²⁾

4)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 사건·권인숙 성고문 사건에 이어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와 역할을 전 사회에 폭로한 세 번째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박종철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또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더불어 안기부의 위력에 장악당한 검찰의 현실을 드러내 준 것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수석검사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안상수 변호사는 1998년 출판한 회고록 『안 검사의 일기』에서 그 무렵 안기부와 검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임기를 1년 앞두고 안기부와 경찰력에 의하여 정권을 지탱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은 안기부와 경찰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었다. 경찰은 이른바 로마병정으로 불리는 수만 명의 전투경찰대를 가지고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한편 엄청난 숫자의 정보요원으로 재야세력과 야당인사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정권유지의 기동노릇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비호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기세가 등등해져 각종 시국사건에서 엄청난 횡포를

102) 안경환, 『조영래 평전』 강 출판사, 2006.

부리고 있었다. 경찰총수를 지냈던 사람이 안기부의 차장으로 앉아있었고, 치안본부장은 대통령과 자주 독대를 하는 등 신임을 과시하며 검찰을 우습게 본다는 소문까지 돌아서 검찰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성고문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검찰의 무기력은 군사정권하에서 검찰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 …지금까지 정권의 안보에 관련이 있는 시국사건은 성고문사건처럼 검사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소신껏 다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의 힘은 이미 검찰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검찰의 통제범위 밖에 놓여있었다. 더구나 경찰이 자신들과 정권에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변사사건 수사에 고분고분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다만 변사사건이므로 마지못해 검찰의 지휘를 받기는 하겠지만 안기부에 기대어 검찰을 억누르고 진상을 은폐하려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역설적으로 한 가지 희망이 있기는 했다. 검찰의 이런 현실 때문에 검찰 내부에는 위기감과 함께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득 차 있었다. 한마디로 경찰을 누르고 다시 수사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중이었다. 검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을 그런 계기로 판단해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싸워볼 수 있으리라.”¹⁰³⁾

그러나 안상수 전 검사의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 1987년 1월 15일 박종철 변사사건 보고를 받고 즉시 경찰병원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을 경찰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옮겨 가족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부검을 하는 등 초동수사를 서둘렀지만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한 안기부와 경찰의 압력은 어김없이 검찰을 억눌렀다.¹⁰⁴⁾

103) 안상수, 『안 검사의 일기』 새로운 사람들, 1998.

104) 한편으로 이때 안기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서울지검 공안부가 아닌 형사부에서 박종철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덕분에 박종철의 사인이 ‘심장마비’가 아니라 물고문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은 2007년 6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안부장이었던 최환이 2005년 보낸 팩스 내용을 공개하며 그의 공로가 컸다고 밝혔다. “(팩스의) 내용인즉 1월 14일 저녁에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이 서울지검 공안부에 찾아와요. ‘시체를 가족들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말이죠. 가족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화장하고 종결 처리하려고요. 뭐, ‘우리 다 한 통속 아니냐’는 생각이었겠죠. 그때가 저녁 7시 40분이었는데 학원 담당 검사가 퇴근한 뒤였어요. 공안부에는 최환 부장검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글썽이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병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퇴근해 버린단 말이죠. 남영동 형사들로선 복병을 만난 거죠. 항의해도 안 되니까 치안본부에 보고해요. 당장 최환씨한테 밤중에 ‘왜 네가 그러느냐, 해달라면 해주지’ 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위 당국자는 물론 중앙정보부 당직자, 그리고 나중에는 청와대 같은 곳에서까지. 그래도 최환씨가 버틴 겁니다. 다음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갑론을박했고), 현대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결국 타협안이 형사부 당직검사였던 안상수씨가 실무를 맡고 최환씨 지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치안본부는 1월 15일 ‘박군 변사사건’ 공식 시인 발표에서부터 은폐 노력을 기울였다. 사건발생 후 30여시간만인 1월 15일 오후 6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1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연행하여 오전 9시 16분경 조반으로 밥과 콩나물을 주니까 조금 먹다가 어젯밤 술을 많이 먹어서 밥맛이 없다고 냉수나 달라고 하여 냉수를 몇컵 마신 후 10시 51분경부터 심문을 시작, 박종운 군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처원 치안감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고 부연설명했다고 한다.

부검을 통해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한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안상수 전 검사는 안기부에 가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 그날 12시 안기부에서 OO단장을 만난 안상수 전 검사는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주장했고 OO단장도 그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 안기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이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

박종철 가족들이 관련자들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소장에는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당정대책회의’를 통해 안기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2)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의한 은폐, 축소조작 음모

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은폐 음모: 같은 달(1987년 1월) 17일 오후 정보보고를 통해 박 군의 고문살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안전기획부장이던 피고 000은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당시 정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 진상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국가안전기획부

부검 결정도 최환씨가 했고요. 안상수씨에게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를지 모르니 철저히 입회해라, 부검 소견을 문서로 받아놔야 한다’는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안상수씨가 소견서를 받아놓게 된 겁니다.” 즉 사안의 중요성을 직감한 최환 당시 공안부 부장검사가 안기부와 치안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차장이던 피고 이OO에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의 은폐, 축소조작과 국민들의 추모 및 항의집회 봉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이OO는 대통령사정담당 수석비서관이던 피고 김OO, 내무부장관이던 피고 김OO, 검찰총장이던 피고 서OO과 함께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박 군의 고문 살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였는바, 이들은 이미 의사 오연상의 증언 등이 신문에 보도되어 이 사건에서 고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고문행위 중 약간의 구타와 물고문만을 시인하고 전기고문 사실은 부인하여 고문의 잔혹성을 은폐한다. 관련자도 5명의 고문살인범 중 2명만을 범인으로 발표한다. 이 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하며, 박 군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수, 협박 등을 통해 무마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들의 추모행사와 항의집회 등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칙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군사정권에 대한 범국민적인 항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등의 기본 방침을 결의하였습니다.…105)

1987년 1월 17일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경찰로 수사권을 넘기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만은 아니다. 안상수 전 검사도 회고록에서 1월 17일 오후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되,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적고 있으며 그날 저녁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7일 오후 3시부터 OOO 치안본부 수사부장을 전담특별조사반장으로 하여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관련 취조경찰관 2명의 신병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혀 수사권을 인계받았음을 발표했다. 또 1988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은 “담당검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마치고 저녁때 돌아와서 검사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은 경찰에 넘겨줘라. 검찰이 한참 내사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느닷없이 경찰에 넘겨주라고 검사장한테 지시를 해서 검사장이 주임검사들한테 그날 저녁에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대책회의 시간이 오후 4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5)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역사비평사, 2006.

그러니까 1월 17일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라는 조승형 위원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기억이 난다”면서 당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 치안본부, 검찰이 참여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관계기관대책회의 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인계받은 후 1월 19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그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1월 20일 A, B 두 경관이 검찰로 송치됐다. 신OO 형사2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검찰 수사팀은 1월 23일 현장검증을 거쳐 1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발표했고, 12시 주임검사인 신OO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두 고문경관을 기소했다. 당시 기자회견 발표문 및 공소장에는 현장검증에서 이미 확인한 ‘구타 행위’의 존재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었는데 이에 대해 안상수 전 검사는 회고록에서 “물고문에다 구타까지 했다면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훨씬 클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그 부분은 빼고 발표하도록 조치한 결과로 여겨졌다”고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결정한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7일 안상수 전 검사의 A, B 접견으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A, B가 실제 박종철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욕조물에 머리를 누른 것은 C, D, E라고 자백한 것이다. 안상수 검사는 “범인이 세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신창언 부장과 서익원 차장, 정구영 검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결정을 기다렸다. 3월 4일 내무, 법무장관과 안기부장, 검찰총장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신창언 부장에게 전해듣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3월 7일 치안본부에서 10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 10일 동안 치안본부는 A, B에 대한 회유공작을 펼쳤다. 3월 8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치안본부 000 차장이 A, B를 접견하는 등 치안본부의 간부들이 이틀이 멀다하고 A 등을 면담했다. 3월 13일에는 치안본부의 한 경감이 A의 가족

들에게 “앞으로 변호사와의 접촉을 끊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3월 21일,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덮으라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가 통보됐다.

“경찰 측에서는 절대로 덮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안기부 등이 검찰도 경찰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인데, 나라를 위해 검찰이 양보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며 공박했다고 한다. 결국 덮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제 조OO의 말대로 하자면 주범은 거리를 확보하고 종범만이 감옥살이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도덕성의 상실이요, 권력의 횡포이며, 사법의 타락이 아닐 수 없었다.···더욱 분통이 치미는 것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태도였다. 안기부, 보안사, 법무부, 내무부 등이 모인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법무부의 주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정말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끝까지 관철하려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안 되면 사표까지 내면서라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 때도 그랬다. 일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해놓았는데 관계기관대책회의 압력에 못 이겨 범인 문귀동을 기소유예 처분하도록 해버렸다가 나중에 검찰을 망신시켰다. 김근태 씨 사건 때도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가 끝내 진상이 드러나 검찰의 위상만 실추시키고 말았다.”¹⁰⁶⁾

그렇게 A, B 외에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꿀먹은 벙어리로 지내고 있는 사이 4.13호헌 조치가 발표됐다. 안상수 전 검사는 그제서야 왜 그렇게 안기부에서 기를 쓰고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중대 조치가 하루 아침에 결정될리는 없었을 것이다. 호헌으로 가려는데 악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안기부로서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극구 누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⁰⁷⁾ 한편 계속되는 치안본부측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A과 B는 계속 버티고 있었고, 공범 3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지 못한 검찰로서는 기소된 2명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도 없었기에 재판기일을

106) 안상수, 앞책.

107) 안상수, 앞책.

연장할 수밖에 없어 기소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5월 11일, 안상수 검사와 신OO 부장은 안기부직원 요청으로 엠베서더호텔 1817호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안기부 직원은 “우선 안기부로서는 이 시국에 사건의 진상이 새로 밝혀지면 정부가 견디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야와 학생이 들고 일어날 테고 야당이 단합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5공화국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야 한다. 이것이 안기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안기부에서는 A 등이 원하는 것이 무죄가 아니고 형량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형을 적게 받는 것만 보장되면 이 사건은 묻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상부로부터 검찰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첫째, 구형은 7년, 1심 선고는 5년 정도만 되도록 해 달라. 그 정도면 설득이 될 것이다. 둘째, 변호사를 설득해서 사임케 해 달라. 셋째, 신 부장이 A을 만나 의증을 탐색하면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이 사건은 묻혀야 하고 또 묻힐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훗날 깨져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안 된다. 1심만 무사히 지나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안기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었다.

안기부가 ‘구형’과 ‘선고형량’까지 지정해 검찰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5월 12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최종면담에 다녀온 신OO 부장은 A, B가 입장을 바꿔 이대로 자신들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겠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벌여온 검찰과 경찰 간의 줄다리기가 경찰 쪽의 완승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찰보다는 안기부의 승리였다. 그동안 줄곧 흔들려왔던 A은 일주일 전 변호사를 만나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었다. 그런데 안기부가 개입하면서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만일 안기부가 우리에게 주문한 대로 1심에서 7년 구형 5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3년 정도로 내려가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면 그들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치안본부가 아닌 안기부의 제의니 실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리라”는 것이었다.¹⁰⁸⁾

사건의 대반전은 1987년 5월 18일에 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5·18 추도미사에서 박종철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고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야운동가 이부영이 교도관들과 A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쪽지에 기록해서 교도관을 통해 외부로 내보냈던 것이다. 고문경관 3명의 실명까지 공개한 성명이 발표되자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검찰은 5월 20일 채수사에 착수, 그날밤 C, D, E를 소환조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5월 21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000 검사장이 범인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000 검사장은 2월에 이미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3개월 동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안기부의 압력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함구했다. 결국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상황을 타개해나갈 힘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은 그만큼 그 당시 안기부의 힘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5월 25일 김성기 법무장관과 서동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경위를 보고했다. 박철언 당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이날 김성기 법무장관과 서동권 검찰총장이 “3월 7일에 있었던 장세동 안기부장, 이해구 1차장, 정호용 내무장관, 김성기 법무장관, 서동권 검찰총장, 이영창 치안본부장 간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진상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 전두환 대통령은 전면개각을 단행, 노신영

108) 안상수, 앞책.

국무총리와 장세동 안기부장을 사임시켰다. 김성기 법무장관, 정호용 내무장관, 서동권 검찰총장, 이영창 치안본부장도 사임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관계 기관장들이 모두 경질된 것이다. 한편 이렇게 안기부장까지 교체되게 된 데는 정호용 당시 내무장관의 발언도 한몫 했다고 한다. 당시 정 장관은 “박군을 치사케 한 치안본부 대공팀은 경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안기부가 관장한다. 예산이나 업무지시가 안기부로부터 나온다. 구속된 A, B에게 제시했다는 1억원짜리 예금통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기부의 예산을 몰래 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기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쪽에만 책임을 물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내무, 법무와 함께 안기부장도 동반퇴진하도록 주장했다는 것이다.¹⁰⁹⁾

5월 23일 검찰은 여론의 호된 질책에 밀려 추가로 고문가담 경찰관인 경위 C, C, E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5차장 등을 범인축소 조작은폐 혐의로 구속했다. 1988년 1월에는 안상수 전 검사와 당시 박종철의 시신을 부검했던 부검의 황적준 박사가 치안본부장과 경찰 수뇌들이 사건 당시 고문 치사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그간의 진상을 공개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재수사에 나서 치안본부장 강민창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0부는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1990년 8월 17일 강민창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1991년 12월 27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 중 직무유기죄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고문경찰관들은 1988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109) 안상수, 앞책.

1985년 김근태 고문사건부터 시작해서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리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고문 및 가혹행위 등과 같은 인권문제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중요한 시국사건이었던 동시에 안기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통로를 통해 어떻게 검찰과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지를 드러내 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이러한 외압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동안 피고인들, 변호인들, 그리고 시민들은 엄청난 용기와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냈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5) 보도지침

김근태 고문 사건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는 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사안 및 대책 단계에 따라 청와대에서부터 문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기관에 대한 방침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 대책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 예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이라는 보고서 상의 민청련 관련 수사 종결, 홍보계획, 조직 완전 척결, 공판대책 강구 등의 시행계획이 담긴 1단계 처리 계획의 ‘시행계획 4. 공판대책 강구’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나온다.

○ 공판상황, 사실보도에 국한

- 문공부, 사전 언론사 협조
- 사실보도에 국한 축소 보도¹¹⁰⁾

사전에 언론사와 협조, “사실보도에 국한 축소 보도”하도록 하는 문공부의 역할은 이른바 ‘보도지침’에 의해 구현됐다. 1986년 9월 『말』지가 폭로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의 ‘보도지침’ 전문에는 김근태 사건 수사발표에서부터 1심 공판에 이르는 과정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날짜별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0) 안기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문제권 단계별 처리 계획」

10.29.

▲ 검찰이 발표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주협’이 아닌 ‘민주위’) 이적 행위 관계

- ① 꼭 1면 톱기사로 써 줄 것(부탁)
- ② 주모자인 김근태 가족의 월북상황, 출신배경 등 신상에 관한 기사가 연합통신 기사로 자세하게 나올 것이니 꼭 박스기사로 취급할 것
- ③ 해설기사도 요망

▲ NCC, ‘고문대책위’ 구성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11.6

▲ ‘민주협’과 ‘민주위’는 별개 단체이므로 ‘민주위’를 쓸 때에는 반드시 ‘서울대 민주위’로 표기할 것

11.11

▲ 오늘 상오에 있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주최의 고문 보고대회는 보도하지 말 것

11.12

▲ 민주협 고문항의 농성과 관련, 농성사실 자체와 양김씨 동정, 김동영 총무 움직임, 부근 교통차단 사실 등은 오늘도 스트레이트 기사나 스케치 기사로 쓰지 말 것

12.19

▲ 김근태(‘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 의장) 첫 공판, 김은 정치범이 아닌 보안 사범이므로 스케치기사나 사진 쓰지 말고 공판 사실만 1단으로 보도할 것

1.9

▲ 김근태 공판

사진과 스케치 기사 실지 말고 사회면에서 크지 않게 취급할 것

1.23

▲ 김근태 공판

그가 “고문당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당했다”는 등의 주장은 보도하지 말것. 사진이나 스케치 기사 쓰지 말 것

1.30

▲ 김근태, 김병오 공판

간단하게 취급할 것, 특히 김병오 피고의 주장은 실지 말 것

2.22

▲ 다음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 ② 이을호 ‘민청련’ 정책실장, 구속 후 정신분열증세 일으켜 감호유치기간 연장된 사실¹¹¹⁾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문공부에 언론보도 지침을 내리고 문공부는 다시 ‘보도지침’이라는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세부 방침을 하달하는 이러한 상황은 부천시 성고문 사건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비록 본 위원회가 부천시 성고문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는 사실 및 검찰 수사발표 당시 함께 배포된 「사건의 성격」이라는 자료가 문공부와 안기부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은 후에 안기부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이 198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부천시 성고문 사건 당시에도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축소 보도’ 등의 지침이 내려졌을 것이며 이것이 문공부의 보도지침에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1986년 9월 『말』지가 폭로한 보도지침 상의 부천시 성고문 사건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7.9

- ▲ 부천시 형사의 여피의자 폭행(추행) 사건은 당국에서 조사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 ‘성폭행사건’으로 표현하면 마치 기정사실화한 인상을 주므로 ‘폭행주장관련’으로 표현 바꾸도록.

111)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 『보도지침』, 1988, 두레 중 ‘보도지침’ 전문 : 85년 10월~86년 8월에서 재인용, p256.

7.10

▲ 부천서의 '성폭행사건'

- ① 현재 운동권측의 사주로 피해 여성이 계속 허위 진술
- ② 검찰에서 엄중조사 중이므로 내주 초 사건 전모를 발표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
- ③ 기사 제목에서 '성폭행사건'이란 표현 대신 '부천사건'이라고 표현하기 바람

7.11

- ### ▲ 부천서 성폭행사건, 검찰 발표 때까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일체 보도하지 말 것. 부천사건의 검찰발표 시기에 관한 것이나 부천사건 항의 시위, 김대중의 부천사건 언급 등 이와 관련된 일체를 보도하지 말 것

7.12

- ### ▲ '부천 성고문' 관계는 발표 때까지 일체 보도 자제 요망. 모든 보도를 자제할 것

7.15

- ### ▲ '부천 성고문 사건'은 계속 보도를 자제할 것. 오늘 기독교교회협의회(NCC) 등 6개 단체에서 엄정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는데 이 사실은 보도하지 말 것

7.16

- ### ▲ 부천 성폭행 사건, 계속 발표 때까지 보도를 자제할 것

7.17

▲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보도지침

- ① 오늘 오후 4시 검찰이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만 보도할 것
- ② 사회면에서 취급할 것(크기는 재량에 맡김)
- ③ 검찰발표 전문은 꼭 실어줄 것
- ④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
- ⑤ 이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할 것
- ⑥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 불가

- ⑦ 시중에 나도는 ‘반체제측의 고소장 내용’이나 ‘NCC, 여성단체 등의 사건관계 성명’은 일체 보도하지 말 것

7.19

- ▲ 18일 오전 8시부터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NCC 인권위원회, 여성위, 구속자 가족 등이 공동으로 부천사건 폭로대회를 가질 예정. 이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 ▲ 부천 사건 변호인단 회견은 회견했다는 사실만 보도할 것

7.20

- ▲ 범야권의 ‘부천 성폭행사건’ 규탄대회 관계(명동성당)
 - ① 경찰저지로 무산된 사실은 2단 이하로 조그맣게 실고 사진 쓰지 말 것
 - ②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환 추기경이 피해당사자인 권양에게 편지 보낸 사실과 신민당 대변인의 집회방해 비난성명은 간략하게 보도할 것
 - ③ 재야 5개단체의 재수사 촉구 성명은 보도하지 않도록
- * 안전기획부측, ‘명동집회’는 홍보조정지침대로 보도할 것을 요망
- ▲ KSCF(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부천사건 규탄 회견은 보도하지 말 것

7.23

- ▲ 대한변협, 부천 성고문사건 재조사 요구는 1단 기사로 처리할 것
- ▲ 명동 수녀들의 성고문 규탄 기도회는 1단기사로 처리하기 바람
- * 일부 신문에 김추기경 강론요지가 실렸으나 즉각 삭제시켰음

7.27

- ▲ 양김씨와 재야인사들, 부천사건으로 단식농성 중인 권양에게 위로편지. 묶어서 사회면에 간략히 보도하되 김대중이 제목에 안 나도록할 것
- ▲ 미 국무성, “성고문 사건에 개탄 표명” 이 내용은 보도하지 않도록할 것

7.29

- ▲ 성공회 주최의 ‘부천사건 규탄’ 모임은 사회면에 조그맣게 1단 기사로 보도할 것
- ▲ 민정당, 국회 상임위 열어 부천사건 규명하겠다고 제의한 내용을 보도할 때 부천사건을 ‘성고문’·‘성추행’으로 표현하지 말 것

7.30

- ▲ 미 국무성, “부천 성고문 사건에 유감”이라는 논평은 보도하지 않도록
- ▲ 부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각 단체의 항의 움직임은 보도하지 않도록

8.4

- ▲ 오늘 국회상임위가 열리나 ‘부천사건 문답’은 너무 크게 하지 말 것

8.5

- ▲ 4일 저녁, 서울 홍제동 성당에서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성고문 규탄 집회. 이 사실은 보도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이 보도지침 내용 중 7월 17일자와 7월 20일자 지침은 ‘안기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던 7월 17일, 보도지침은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 안기부에서 작성한 「사건의 성격」에서 규정한 대로 이 사건을 보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범야권의 ‘부천 성폭행사건’ 규탄대회와 관련한 7월 20일 지침은 “안전기획부측, ‘명동집회’는 홍보조정지침대로 보도할 것을 요망”이라고 적고 있어 안기부에서 내린 ‘홍보조정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즉, 안기부는 김근태 고문 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처럼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는 주요 시국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수단을 통해 사건의 처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법부가 정권의 압력으로 제 구실을 못함에 따라 법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다. 제5공화국 시절 피고인들이나 재판을 거부하고,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법관에게 야유를 보내는 법정소란은 하나의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했다. 법정소란은 물론 1970년대에도 부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이 급진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정보기관의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거세게 일어났다. 1985년에 들어와 민정당사 점거 사건,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등 대형 시국사건이 발생하고, 공안당국은 관련자 전원구속 등 강경히 대응하자 피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집단적인 구호제창이나 노래를 부르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의 법정소란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면서, 정권과의 기세 싸움을 벌였다. 또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려 하면, 피고인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정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1985년 7월 15일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발생한 법정소란은 방청객까지 가세하여 공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 때문에 김석희 법무부 장관이 취임 5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기도 하였다.¹¹²⁾ 그런데 김석희 장관의 전격 경질은 미문화원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안기부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안기부는 “삼민투가 사용하는 ‘민중’이란 용어는 특정계층의 연합개념으로 이른바 계급투쟁의 전제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자들 모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동자인 함운경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구속된 다른 1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안기부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온건한’ 혐의만을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리고 김석희 법무부장관은

112) 『중앙일보』 1985년 7월 15일, 16일자.

농성학생 구속 직후에 열린 국회에서 삼민투가 사용한 민중이라는 용어가 좌경적 계급용어인지 감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온건한 태도는 안기부의 강경 입장과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법정소란이 발생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안기부의 편을 들어 김석희 법무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¹¹³⁾

안기부는 초유의 법정소란이 발생하자 공판대책 보고를 세우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¹¹⁴⁾ 안기부는 먼저 법원의 태도와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했다. 안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가. 법원 태도

- 법원은 지난 민정당 난입농성사건에 이어 금번 미문화원 점거사건 공판에서 또다시 극렬한 법정 내 소란, 소요로 인해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개탄
- 금번 미문화원 점거사건 공판을 향후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 유지의 분수령적 계기라고 판단
- 대법원장의 진두지휘하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비서실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수시 대책회의 개최, 향후 대처방침 논의
- 법원은 “법정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의 권위와 질서 유지를 위해
 - 자체적으로 강경 대처, 원만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며
 - 가급적 공판진행절차, 조치계획 등은 법원 및 재판부에 맡겨달라는 입장임
- * 서울형사법원장은 상부에 1회 공판 중간보고서 피고인 및 방청객 등 계속 소란자행시는 부득이 경찰권 개입요청도 불사하겠다는 소신 개진

안기부 보고서는 이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했는데, 주심과 배석 판사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재판장인 이OO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신원사항과 함께 ‘법조계 평판’이란 항목으로 “온순단정, 국가관 확고, 방침 결정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격 소유자”라고 기술하면서 “금번

113)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1993, 한국일보, pp.45-47.

114) 국가안전기획부, 「농성사건 공판 대책보고」, 일자미상,

재판에 대한 자세 및 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 금번 재판에 대한 자세 및 태도

- 미문화원 농성사건 공판이야말로 향후 법원의 권위가 법정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의 시금석 재판으로 인식
- 법정경찰권 소송지휘권의 소신있는 행사로 강력한 법정질서 유지 표명
- 1회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방청인의 소요, 소란으로 휴정 후, 형사지법 원장, 수석부장판사에게 강력대처 방침을 개진하였으나 오히려 상사들이 금회 공판만은 인내하도록 만류하는 입장이었다 함
- 2회 공판기일을 당초 방침과 달리 2주 후로 지정한 것은
 - 피고인 변호인단이 피고인과의 충분한 접견기회가 없어 변론 준비를 못 하였다고 주장, 연기신청을 해움에 따라
 - 일단 변호인 등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향후 강경대처 방침명분을 세우기 위한 조치이나
 - 앞으로는 당초 방침대로 매주 월요일 공판 진행, 8월 중으로 1심 공판 종결 복안임

위와 같은 “금번 재판에 대한 자세 및 태도”를 확인한 안기부는 “재판부의 성향 및 자세는 전혀 문제점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결론 지었다. 안기부의 뜻대로 이OO 부장판사는 법정소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청객을 제한하고, 피고인을 분리심리하며 주 3회 씩 공판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절차를 끝내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¹¹⁵⁾ 피고인들이 ‘광주학살’, ‘현정권’ 등의 표현을 쓰면 재판부는 ‘광주사태’ ‘현정부’ 등으로 고쳐서 표현하도록 일일이 지시했다. 7회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잦은 제지에 피고인들이 항의하다가 피고인 12명 중 9명이 퇴정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사실심리의 종결을 선언하기까지 했다.¹¹⁶⁾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실질적인 공개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¹⁷⁾

115) 『중앙일보』 1985년 7월 20일자.

116) 『중앙일보』 1985년 8월 7일자.

117) 『중앙일보』 1985년 9월 2일, 9월 7일자.

변호인단은 9월 23일 열린 13회 공판에서 “이 이상 법정에서 서는 것이
 정당한 법의 적용이나 피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혀 기여할 수 없
 다고 판단”하고 전원이 서명한 사임계를 제출했다.¹¹⁸⁾ 피고인들의 재판
 거부로 구형공판은 꺾석공판이 되고 말았다. 10월 2일의 선고법정에서
 재판장 이OO 부장판사는 극히 이례적으로 판결문 이외에 장문의 훈계문을
 낭독했다. 물론 1983년에 새로이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147조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훈계문’은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불문율에
 가까운 법언(法諺)을 깬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훈계문’에 대해서는
 “자기 주관 및 사상을 지나치게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¹¹⁹⁾

이 재판이 끝난 후 안기부는 ‘미문화원 담당판사 격려 방안’을 모색
 했다. 안기부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 3인의 판사에 대한 격려방안으로
 해외여행 또는 격려금 지원 등을 검토했다.¹²⁰⁾ 실제로 재판장인 이OO
 부장판사는 재판 종료 약 1년 후인 1986년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제도
 시찰을 명목으로 미국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¹²¹⁾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탓에 법정소란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오히려 더욱 거칠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정소란은 법관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한 예로 1988년 10월 서울형사지법의
 김OO 부장판사는 서울대 국사학과생 김◇◇의 공문서 변조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배당할 것을 요구하여 사건이 재
 배당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의 1차 공판은 9월 21일 개최
 되었는데, 김◇◇는 법정에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하루 전에 도착되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방청치 못하였다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118) 『중앙일보』 1985년 9월 23일자.

119) 『조선일보』 1985년 10월 5일자.

120) 국가안전기획부, 「미문화원 담당판사 격려 방안」.

121) 『사법연감』 1987년판, 법원행정처, p.167.

강력히 항의하면서 법정소란을 야기했다. 재판장인 김OO 부장판사는 이에 당황하여 재판진행을 중단하고 차기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 김OO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찾아가 “동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당하는 등 계속 재판 진행하기 곤란하다”며 동 사건을 재배당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고, 수석부장판사는 “동 사건을 다른 합의부에 재배당할 수 없어 자신이 담당키로”하였다는 것이다.¹²²⁾

유신 이후 시국사건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를 기피하는 사례는 자주 있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을 회피하여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동 사건 담당재판부 교체와 관련 일부 법관 및 일반직원들 간”에 형성된 여론이라면서 “설령 관련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골탕 먹이려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장악, 재판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최근 일부 판사들이 민주화 바람에 편승, 피고인들에게 끌려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OO 부장판사가 그 본보기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계속 기소될 텐데 그렇게 허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런 사건을 감내할 자신이 없으면 사표를 내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¹²³⁾ 김OO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인 1990년에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1991년 8월 의원면직 형태로 법복을 벗었다.¹²⁴⁾

122) 국가안전기획부, 「법조계 동향」, 1988년 10월 24일.

123) 위와 같음.

124) 『사법연감』 1992년판, 법원행정처, p.278.

3 간첩 사건 재판과 사법부

가 송씨 일가 사건

안기부가 1982년 발표한 송씨 일가 사건¹²⁵⁾은 안기부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개입, 조정했던 사건이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 북괴 노동당 연락부 부부장 송창섭 외 동인의 처 한경희(사망)에게 포섭되어 일가친척으로 점조직식의 간첩단 조직, 서울과 충북을 거점으로 57.5-82.3까지 암약해온 고정간첩사건”이라는 이 사건은 당대의 유명한 인권변호사들이 결합함으로써 비록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여타의 간첩사건과는 달리 여러 주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게 되었다. 인권변호사들은 사건 관련자들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 다른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안기부의 불법 장기 구금 및 고문 문제와 이로 인한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문제제기를 인정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2년 4개월간 무려 7차례의 재판을 하게 됐다.

이렇게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서 몇 차례나 판결이 뒤집히자 안기부는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검찰과 법원에 개입,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유죄판결 유도에 있어서 검찰과 법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검찰 조사 및 기소단계에서부터 검찰은 안기부에 협력하고 동조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안기부는 “기소 이후 공소유지는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또 끊임없이 회유 및 압력을 가하는 안기부에 법원 역시 재재항소심이 끝나기도 전에 재재상고심 주심 판사를 확정하는 등 안기부와 검찰, 법원이 이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125) 송씨 일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간첩죄 확대적용 분야 보고서 중 송씨 일가 사건 부분 참고.

가지 측면에서 송씨 일가 사건은 간첩 사건에 있어 안기부, 검찰, 법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 각 심급별 재판결과

피고인	①00형사지법(82고합800)	②00고등법원(83노484)	③대법원(83도1578)	④00고등법원(83노2329)	⑤대법원(84도135)	⑥00고등법원(84노1172)	⑦대법원(84도2252)
	82.12.24 선고	83.4.25 선고	83.8.23 선고	83.12.23 선고	84.4.24 선고	84.8.24 선고	84.11.27 선고
	주심 000	주심 000	주심 000	주심 000	주심 000	주심 000	주심 000
송지섭	사형 및 무기(간첩)	징역 25년 및 자정25년(간첩)	유죄부분 파기 - 임의성 결여로 검찰조서 증거능력 부인	징역 10년 6월 및 자정 10년6월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유죄부분 파기	징역 7년 6월 및 자정 7년 6월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상고기각
송기준	사형 및 무기(간첩)	징역 25년 및 자정25년(간첩)		징역 10년 및 자정10년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징역 6년 및 자정 6년 *일부 공소사실(일반 이적죄) 무죄	
송기섭	무기징역(간첩)	징역 15년 및 자정15년(간첩)		징역 7년 및 자정7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역 4년 및 자정 4년	
한광수	징역 15년 및 자정15년(간첩)	징역 10년 및 자정10년(간첩)		징역 5년 및 자정5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6월 및 자정 3년6월	

송기복	징역10년 및 자정10년 (간첩)	징역2년 및 자정 2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죄부분 파기	징역 1년 6월, 징유3년 및 자정 1년6월 *일부 공소 사실 무죄		징역1년, 징유2 및 자정1년	
송기홍	징역 5년6월 및 자정 5년 6월 (간첩)	징4년6월 및 자정 4년6월		징역1년, 징유3년 및 자정 1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유죄부분 파기	징역1년, 징유2년 및 자정 1년	
송기수	징역 5년 6월 및 자정 5년 6월	징역 4년 6월 및 자정 4년6월	파기	징역4년 및 자정 4년6월	파기	징역 6월, 징유2 및 자정 1년 *일부 공소사실 무죄	상고기각
한용수	징역3년, 징유 5년 및 자정 3년 (편의제공)	향소기각		징역1년6월, 징유 3 및 자정 1년6월		징역1년, 징유2년 및 자정 1년	
송오섭	징역 1년 6월 징유 3년 및 자정 1년6월 (회합)	향소 포기					
송광섭	징역1년, 징유 2년 및 자정 1년 (회합)						
김춘순	징역1년, 징유2년 및 자정 1년 (회합)	향소기각	상고 포기				
한영희	징역1년, 징유 2년 및 자정 1년 (편의제공)						

1) 검찰 신문에서 공소유지까지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의 자백 및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 조사 외에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달리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기부로서는 검찰 조서가 안기부 조서대로 작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한다 해도 통상적으로 임의성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송씨 일가 사건에서는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우선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검찰청이 아닌 밀실의 성격이 강한 구치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치소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전후로 안기부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면담,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할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상황은 송지섭, 송기준의 서울구치소 면담기록부에 의해 확인되며 후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²⁶⁾.

먼저 송지섭의 경우를 보면 송지섭의 검사 신문은 1982년 7월 9일 1회를 시작으로 동년 8월 26일 9회에 걸쳐 진행되는 데 서울구치소 면담기록부에 따르면 그 기간을 전후로 안기부 수사관이 5회에 걸쳐 송지섭을 면담했다. 제 1, 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7월 9일 접견기록에는 안기부 수사관이 구치소에 방문하여 “김 검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는 모든 걸 시인하고 이제 와서 번복을 해”·“듣기로는 사실을 자꾸 부인한다는데 안기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왜 또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나요?”라면서 검찰에서의 혐의사실

126) 1983.8.23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 구속 후에 또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형소법 제309조에 따라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부인을 힐난한 것으로 되어있다. 1982년 7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송기준의 경우도 그해 7월 9일과 7월 12일에 안기부 수사관들의 접견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안기부 수사관이 “다른 생각 마시고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보여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까 생각하세요”라고 자백유지를 권고했으며 실제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은 7월 9일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입북부분을 부인하였던 송기준이 7월 12일 안기부 수사관의 접견 이후에는 입북부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내용을 시인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안기부 조서 내용 그대로 검찰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은 안기부의 일방적인 압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러 증언을 바탕으로 볼 때 당시 검찰은 단순히 안기부 수사관이 검찰 조사 기간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중석의 글에 따르면 송기준의 경우, 1982년 7월 9일 XXX 검사가 구치소로 조사왔을 때 입북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3일 후인 7월 12일 구치소에 안기부에서 수사했던 4명 중 000 계장 등 3명이 와 “너 왜 검사 앞에서 부인하느냐. 자백하면 기소유예나 집유로 내보내주려고 상사들과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다시 가서 조사받아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송기준이 수사관에게 안기부에서 했던 대로 자백하겠다고 약속하자 XXX 검사가 들어왔고 송기준은 수사관과 XXX 검사 앞에서 역시 그대로 자백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옆방으로 옮겨 검사가 다시 질문했을 때 송기준은 다시 부인했는데 그러자 검사가 수사관 000 계장을 다시 불러서 “이 사람 또 부인한다. 이야기 좀 잘해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백의 임의성’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백형구 변호사 역시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이 사건 담당 판사 중 한 명에게 들었다면서 송기준의 사례를 이야기해주었는데, 그에 따르면 송기준이 처음 검사 앞에서 여성으로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옷을 벗고 고문당한 모습을 보이

면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 검사가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송기복이 안기부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안기부 수사관을 불러 이대로는 기소 못 한다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안기부 수사관이 송기복을 면담, 안기부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검찰에서의 신문방식은 일문일답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가면서 간간히 피고인에게 확인만 하는 유도신문 방식이었다고 한다. 송기복은 상고이유서에서 “검사 수사 도중에 두 번씩이나 수사관이 방문하였고, 이러한 심리적인 공포 속에서 안기부의 진술서를 그대로 읽어나가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검사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종용했다고 하는데, “분단된 조국이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니 시인하라” · “당신만 혼자 아니라고 부정해도 당신의 친척 동생들이 전부 시인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홍수 속으로 떠내려가는 무리 중에 혼자만 떠내려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또 혼자만이 독야청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역설’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피의자들이 안기부에서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엄청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거짓 자백하였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안기부 수사관을 불러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소장을 작성, 1982년 8월 4일 이들을 기소하게 된다.

안기부에서 1982년 8월 4일 작성한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사건 피의자 한영희, 송광섭, 김춘순 처분의견」에 보면 1982년 7월 28일 담당검사와 협의시 “검찰에서는 한영희, 송광섭, 김춘순 등의 편의제공 및 회합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는 가능하나 범증이 경미하고 상피의자들과의 친족관계인 점 등을 감안, 기소유예 처분하는 반면, 상피의자에 대한 범증 보강의견을 제시”했으나 “당부에서는 위 피의자들의 범증이 경미하여 구속해제하더

라도 불구속 기소처리하도록 협의한 바 있다”면서 검찰측과 재협의 처리하겠다는 조치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이 보고가 올라간 바로 그날, XXX 검사는 편의제공 혐의로 한영희를, 회합 혐의로 송광섭, 김춘순을 불구속 기소한다.

이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안기부의 의견을 따랐던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무죄판결이 나오자 안기부는 검찰의 공소유지 책임을 강력촉구하기 시작한다. 안기부에서 작성한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및 대책 보고」(83.8.24)에서는 “검찰의 신문조서에 임의성을 부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전체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판례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검찰의 공소유지 등 검찰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일단 사건을 수사 송치하면, 원칙적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 등은 검찰의 책임이며 더욱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25년까지 선고받은 간첩사건을 오직 생존만을 생각하고 허위진술하는 간첩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는 번복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은 검찰과 법원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한데 이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 가.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4개월간 재심리 기간 중 법원, 검찰과 협조, 증거보강 등으로 필히 유죄토록 유도
- 나. 송치된 사건이 기소된 이후의 공소유지, 형량, 선고 등은 전적으로 검찰 책임으로, 앞으로 특히 안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 책임을 강력 촉구하고, 검찰의 조서가 형소법 312조에 의거 공판에서의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범의 원위가 지켜지도록 검찰 전체가 대처하도록 조치

즉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은 전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니 검찰이 나서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이후 검찰은 안기부와 긴밀히 협력

했다. 한 예로 1983년 10월 검찰이 제출한 「송지섭 등 사건의 파기 환송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개진한 의견이라는 것이 안기부가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었다. 더 나아가 담당 검사는 두 번째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안기부와 함께 판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거나 증인신문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다.

2) 두 차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 무죄추정 원칙이나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협박에 의해 진술됐거나 재판에서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 등을 저버리고 안기부의 의견대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안기부는 1심에서부터 재재상고심에 이르는 일곱 차례의 재판 과정 내내 재판 당일 날짜로 공판상황 보고를 올렸으며¹²⁷⁾ 상고심과 재상고심에서 연거푸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자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

일단 1심과 항소심은 안기부의 의견과 일치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안기부에서는 1심을 담당할 000 판사에 관해 “부친 000는 해방 후 남로당 입당, 보도연맹원으로 활동타 6·25 당시 아군에 처형”되었다는 신원특이내용을 담은 「신원특이사항보고」를 올리는 등 예의 주시했지만 1심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그러한 안기부의 우려는 기우였던 듯 싶다. 349면에 이르는 이 방대한 판결문은 공소장의 오기(공소장 99면, 송지섭이 68년 1월 송창섭과 접선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인데도 다섯 번째로 오기)까지 그대로 잘못 적고 있듯이(판결문 79면) 거의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공소장을 옮긴 것이었던 것이다.¹²⁸⁾

127) 이렇게 상세한 공판상황보고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한 매 공판시마다 안기부 수사관이 법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28) 서중석, 앞글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가 구성되자 안기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일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재판부가 1981년 8월 24일 안기부에서 송치환 재미교포간첩 홍선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간첩죄 부분을 인정치 않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사실이 있기¹²⁹⁾ 때문이었다. 이에 안기부는 “공안부장 및 공판 송무부 부장검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와 긴밀히 접촉, 각 피고들의 활동특성 등을 설명, 심증을 갖도록 하고 담당 간부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나, 최근 북괴의 대남전략전술 및 간첩사건의 특성 등을 설명, 동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담당재판부에 반영시키도록 협조” 한다는 대책을 세웠다¹³⁰⁾.

안기부의 우려는 그대로 들어맞아 1983년 8월 23일 대법원은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를 들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안기부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섰다, 안기부는 바로 당일 「간첩 송지섭 상고심 파기 환송에 따른 법원동향 보고」를 올리면서 법원동향을 전했다.

- 000 대법원장은 이일규 대법원판사를 불러 파기사유를 힐책하자 이일규는 기록검토결과 피고인이 이복에 다녀오지 않은 것 같은 심증이 들어 파기 환송한 것이라고 보.
- 000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하여금 판결문 및 공판기록을 검토, 보고토록 긴급지시하는 한편 000 비서실장에게도 판결문 검토 지시.
- 000 대법원장은 000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일규 판사의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의 간첩조사가 불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첩사건 재판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난번 홍선길 간첩 사건 판결 때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또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결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

했다는 것이다¹³¹⁾.

129) 안기부,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 대책 보고」 날짜 미상

130) 이와 관련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위원회와의 면담(07.2.6)에서 정확히 송씨 일가 사건 때였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대법원장 비서실을 통해서 안기부 직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묻는다거나 의견을 전달하고 갔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은 바 있지만 ‘사전에 뭐라 할 얘기는 없다. 우리는 다만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결정할 뿐이다’라고 여러 차례 거절된 바 있다”고 진술했다.

131) 그러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홍선길 판결 때나 송씨 일가 판결 전후로 000 당시 대법원장에게 어떠한 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진술, 000 당시 대법원장이 안기부 측에 한 이야기와는 달리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던 듯 하다.

이어서 안기부는 구체적으로 문제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날짜 미상 「서울, 충북 중심 고정간첩단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문제점 분석 보고」에서는 파기환송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5. 파기환송에 따른 문제점

○ 본 사건이 대법원 판시와 같이

-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간 구금 등을 이유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등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 명백한 사실상의 간첩사건을 무죄선고할 경우

- 현재 공판계류 중이거나 향후 송치될 수사 중인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사 사건건 선임변호사가 본건 판례를 인용,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구금으로 인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여 간첩사건 재판법정이 장기 구금, 고문 시비장화 함은 물론 하급심 판결에 지대한 파급영향 우려
- 간첩사건 수사에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거 후 48시간 이내에 구 증,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 요구된다면 간첩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함
- 북괴는 그들의 대남공작 범정투쟁 전술이 주효하고 있다고 판단, 더욱 교묘한 범정투쟁 전술을 개발, 고첩망 재건 및 조직에 활용할 소지가 다분
- 간첩이 대공수사기관의 장기간 구금 이유로 무죄방면될 경우 투철한 국가안보관에서 혈연, 친지, 친우관계를 불문, 당국에 신고고발한 신고 자는 향후 보복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풍조 확산으로 국민대공신고체 계의 막심한 차질 우려
- 수사당국의 공신력 실추로 앞으로의 간첩사건 보도에 대한 국민홍보효과 기대난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치 건의로 “우리나라의 특수안보 환경과 대공수사 요원들의 애국충정을 깊이 통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유죄판결 건의”를 들고 있다.

즉 안기부는 장기구금이나 증거 부재, 검찰 조서의 임의성 등을 들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단순히 이 송씨 일가

사건 하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간첩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 그 파급효과를 우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유죄판결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던 것으로 이러한 뜻을 몰라주는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송지섭 등 간첩단 사건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과 대책」(날짜 미상)이라는 문서는 당시 안기부의 법원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문서에서 안기부는 “대법원이 피고인측의 일방적 주장만 취신하고 검찰의 임의성 입증자료는 판단조차 없이 무시하는 등 검찰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부당한 배척”을 하며 “역용공작, 방대한 사건규모 등으로 수사 중 관련자의 상당기간 보호 불가피, 성격상 자백 외의 직접 증거 수집, 법정투쟁 전술의 일환으로 검찰 자백 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이 통례인 간첩 등 반국가사건의 특수성 무시”하여 “여타 간첩 등 반국가사범의 수사, 공소유지에 지대한 곤란 초래”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안기부의 불만은 주심 판사 이일규의 성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데 안기부는 이일규가 “공안 사건에도 엄격한 증명 요구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철기 사건(국가모독죄)에 무죄의견으로 소수의견 개진”했으며 “홍선길 사건(재미교포 간첩)에 무죄 취지로 원심파기”했다고 지적한데 이어 “안보사건에 대한 태도가 선명하지 못한 이일규 판사에 대하여는 배후와 동향을 내사, 인사에 반영”¹³²⁾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던 데다가 000 전 대법원장 등이 막아준 덕분인지 이후 이일규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지만 ‘배후와 동향’ 내사는 이루어졌다. 국정원 존안 자료 중 1983년 9월 날짜 미상 「문제 법관 이일규 신원 및 동향감시 결과보고」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선고 사흘 후인 1983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25일간 이일규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감시한 결과가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다. 매일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하는지, 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등을 일일이 미행, 보고한 데다가 부인

132)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 및 대책보고」(1983.8.24)

명의로 대전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해서 적어 놓았다.

이와 관련,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2007년 2월 6일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송씨 일가 사건 판결 즈음해서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안기부에서 나를 미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다¹³³⁾고 말했다.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법원 수석판사로 외국 수상들이나 약소국 원수들 영접을 많이 나갔는데 하루는 내외가 함께 영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누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해놓았더라고 했다. 딱히 없어진 귀중품도 없고 뒷집 사람에게 물어보니 예비군복 같은 얼룩덜룩한 옷을 입은 젊은이 둘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해서 “마포경찰서장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아는바 있냐 물어보니 없다고 하여 그렇다면 이런 짓을 할 만한 곳은 안기부밖에 없다고 판단한 일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제법관 이일규 신원 및 동향감시 결과보고」의 ‘미행기간 중 주요동향’ 중에는 “83.9.10 요르단국왕 훗세인 방한 환영식 참석”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달 가까이 이일규 판사를 미행했으나 별다른 꼬투리를 잡지 못한 데다가 이와 별개로 환송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유사 판결선고 미연방지’를 위해 “환송심에서 공소목적 관철토록 총력 경주, 과급영향의 극소화”를 해야했던 것이다.

이에 안기부는 “과기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4개월간 재심리 기간 중 법원, 검찰과 협조, 증거보강 등으로 필히 유죄토록 유도”한다는 전반적인 대책 하에 “송치된 사건이 기소된 이후의 공소유지, 형량,

133) 07.2.6 면담에서 이일규, “상수동에 살면서 당시 서대문에 있던 대법원으로 매일 출근하던 때였는데, 하루는 손녀가 감기에 걸려서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아침 출근길에 셋길로 빠져서 병원에 들러 병문안하고 법원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와서 ‘아버지 가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나를 전송하고 돌아서는 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다가와 나와 아들의 관계를 묻더니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면서 다녀간 용건을 물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렴풋이 ‘안기부에서 나를 미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다.”

선고 등은 전적으로 검찰 책임”이라면서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는 동시 법원의 협조를 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하게 되어 있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상 하급심인 재항소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데다가 상고심 등에서 쟁점이 된 공소사실 부인, 사법경찰관의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시비, 검찰자백의 임의성 시비 등은 ‘간첩의 대법정 투쟁전술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안기부는 ‘국가안보적’ 정책적 차원에서 유죄판결을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3년 9월 1일 작성된 「유OO 대법원장, 송지섭 등 간첩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처리방안 확정」 보고서를 보면 법원은 안기부의 이러한 요구와 필요에 맞춰 처리방안을 마련한 듯 싶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OO 대법원장은 “지난 8.23 이일규 판사에 의해 무죄판결, 파기환송된 바 있는 송지섭 등 간첩사건이 동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의 대공 수사 및 재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고 판단, 그동안 동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동 사건을 원심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2. 처리방안

법원조직법 제7조 2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는 기속을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 기속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판례가 없음. 따라서 본건 판결 이유에는 사실관계 판단이 전연 없이 장기구금 상태 및 부당 대우 등 환경 하에서 작성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장기구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가 없었고, 또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입증만 있으면 검사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

- 그러므로 본건 대책으로 항소심 재공판시 수사 당시의 담당 수사관, 공소 제기한 담당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항소심 검찰부), 이를 담당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진술토록 하여 검찰작성 심문조서가
임의성이 있다고 판결 후, 재상고하면 사건을 특별배당 기각판결토록 함.

즉 일종의 편법을 써서 재항소심으로 하여금 장기구금을 했다 해도
‘부당한 대우가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 검찰 작성 심문조서가 임의성이 있다고 판결하게 한 후
피고인이 여기에 불복, 재상고를 하면 사건을 (유죄판결을 내려줄
만한 재판부로) 특별배당해서 기각판결토록 하겠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법원이 세웠던 것이다.

실제로 재항소심까지는 법원이 안기부에 밝힌 계획대로 진행됐다.
“자수간첩 김용규 외 23명 증인신청, 변호인측 증인 김재철 위증으로
구속기소” 등의 대처로 83년 12월 23일 B판사를 주심으로 하는 서울
고등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하는 외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재항소심 재판부에 일정 정도 회유나 압력, 설득이
이루어졌을 정황은 충분하나 이에 관한 보고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B변호사의 면담 거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백형구 변호사는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B판사가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면서 “만약
B판사가 무죄판결을 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일규 전 대법원장도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고등법원
B판사가 안기부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유죄판결) 한 것이 아닌가 추측
했다”면서 그 이후 다시 만날 일이 없었는데 만났더라면 그때 그 사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는 간접적으로
B판사 주심의 재항소심 유죄판결과 관련, 안기부가 전하는 법원 동향에서도
읽을 수 있다.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 대책 자료」에는 1차 파기환송
후 2심 재판을 담당, 유죄판결을 내린 B 부장판사에 대한 고등법원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B부장판사는 자기의 소신대로 유죄판결했
다고 의연한 태도이나 일부 주변에서는 B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빈정거리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B 판사 주심의 재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떨어지고 피고인들이 상고함으로써 재상고심으로 국면이 넘어가게 된다. 재상고심의 주심판사는 김덕주 대법관으로 정해졌고 이에 대해 안기부는 「간첩 송지섭 사건 파기 환송 후 상고심 공판 예정보고」에서 주심 김덕주 대법관에 대해 “신원 특이점이 없고 과거 안보사건에 대하여는 대체로 원심판결을 인정하는 등 비교적 온건하다는 세평”이라고 적는 등 유죄판결이 나올 것을 낙관한 듯¹³⁴⁾ 재상고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나 동향 파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84년 4월 24일 믿었던 김덕주 대법관이 다시 서울고법에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결과가 나왔다. “83.8.23 상고심에서 이일규 대법관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장기 불법구속(75-116일)으로 인한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판결, 파기환송한 것은 옳은 판단이며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것이었다. 당황한 안기부는 바로 법원 및 검찰의 동향을 파악, 선고 다음날인 1984년 4월 25일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상황 보고」를 올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참고사항

- 대법원 동향

대법원측에서는 이일규 대법관의 체면유지 등 대내 사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사전 양해하에 정책적으로 파기한 것임으로 다음 상고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니 관계기관의 큰 오해없기를 바라고 있음

- 검찰 동향

대검 공안부는 담당 재판부인 주심 김덕주 대법관이 선임 이일규 대법관의 판결에 기속, 판결한 것으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공판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

즉 대법원 및 검찰측은 이 김덕주 주심판사의 재상고심 판결이 장기적으로 유죄 선고를 위한 ‘정책적’인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고 안기부도 이에

134) 「OOO 대법원장, 송지섭 등 간첩사건 파기환송에 따른 처리방안 확정」 보고서에 나온 대로 재상고심 재판부가 ‘특별배당’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수궁한 듯 “대법원의 의도를 면밀 파악 대처하면서 검찰로 하여금 공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하고 당부에서는 보강증거 제공(2심) 등 필요로 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김덕주 대법관의 재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설시’가 포함되어 있어 이후 재재상고심 유죄판결의 여지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라면서 “자백의 임의성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결과사이에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면 유죄로 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기부 역시 재상고심 판결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날짜 미상의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공판상황보고」에서 이 보충설시를 적은 후 “이후 2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판결문 설시)하면 상고심 유죄판결 가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실 전망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 대책 자료」(날짜 미상)는 공안부 동향으로 “유죄판결시 상고심 기속 판결내용을 정확히 분석, 형식상 하자없는 판결문의 설시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나 “상급심이 파기환송 이유로 설시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수집이 곤란하고” “고법 재판부(000 부장판사)에 당부 간첩지령 통신자료 등 정황증거를 제출, 간첩행위에 대한 실체를 인정받게 할 수는 있으나 하급심은 상급심의 판결에 기속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사실상 불가하다고 함”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고등법원 분위기도 안기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등법원 내부에 “(항소심) B부장판사는 자기의 소신대로 유죄판결했다고 의연한 태도이나 일부 주변에서는 B부장이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빈정거리는 여론”이 있어 “이러한 상황하에서 새로 담당하

000 부장판사가 어떠한 법적논리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장기 불법 구금 문제, 호출부호 및 통신지령카드 문제 등과 관련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담당 안기부 수사관 및 검거 간첩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 “검사의 피고인 구치소 신문시 입회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는 문답식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으며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폭행, 협박한 사실과 조사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보강 증거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 및 법원 공략에 나섰다.

위의 「간첩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 자료」에 보면 안기부는 “과기환송시 대법원 측에서 언급한 바 있는 차후 유죄 판결 보장설을 뒷받침하는 대법원과 고법의 ‘공작 차원’에서의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의 전망이 희박할 경우” “당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의 고위층에게 대법원장과 협조,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죄판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안기부는 우선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대해 회유와 설득에 나섰다. 안기부가 어떤 식으로 검찰과 법원의 협조를 구했는가는 「송지섭 사건 2차 과기환송 후 공판대책 진행상황 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검찰과 법원과 관계된 것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송지섭 사건 2차 과기환송 후 공판대책 진행상황 보고 >

- 6.19 000 과장, XXX 계장, 검찰측과 증식
 - 송지섭 등 간첩통신관계 입증자료 제시 설명, 공판대책협의
- 6.29 000 과장 등 담당재판부 방문
 - 송지섭 사건 배경 및 간첩수사의 애로점 등 설명, 유죄판결 유도

- 7. 13 000 과장 등 대법원장 비서실장 방문
 - 보강 증거 등 공판대책 협의, 유죄판결 유도
- 8. 1 △△△ 대법관 및 000 부장판사 등 보고용 송지섭 사건 공판상황 및 대책자료 작성
- 8. 3 00단장 등 △△△ 대법관 자택 방문
 -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자료 제출, 유죄판결 유도
- 8. 4 00단장, 000 부장판사 자택 방문
 -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자료 제출, 유죄판결 유도
- 8.12 00단장, 000 부장판사 접촉, 증식
- 8.13 00단장, 000 과장 등 검찰(공안부장, XXX 검사) 및 법원(김00 부장 판사 등) 측과 증식
- 8. 14 000 과장 등 검찰측과 증식, 증언요령 등 사전토의
- 8. 15 000 과장 등 검찰측과 증식, 증언요령 등 사전토의
- 00단장, 000과장, 검찰측 및 법원측 등과 골프

그런데 위 진행상황 보고에는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8. 1 △△△대법관 및 000 부장판사 등 보고용 송지섭 사건 공판상황 및 대책자료 작성”과 “8. 3 00단장 등 △△△ 대법관 자택 방문 :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자료 제출, 유죄판결 유도”라는 항목이다. 000 판사가 주심으로 재재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1984년 8월 24일로 8월 1일과 8월 3일이면 아직 재재항소심 선고가 나기도 전이다. 따라서 재재항소심 유죄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000 판사 등을 접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1984년 7월 20일 대법관에 임명된 △△△ 대법관을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뒤 이자 재재항소심 공판이 끝나기도 전인 8월 3일 자택으로 찾아가 ‘송지섭 사건 공판대책자료를 제출’하고 ‘유죄판결을 유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재재상고심 재판부가 주심 000판사로 결정되는 것은 1984년 9월 20일에 이르러서였다.

다시 말해 재재항소심 판결이 나기도 전 △△△ 대법관을 안기부가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안기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줄 재판부로 대법원 사건 배당이 ‘특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김덕주 판사 주심의 재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재재항소심과 재재상고심 과정이 실제로 안기부와 법원의 협력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⁵⁾

이렇게 1984년 11월 27일 000 판사 주심의 재재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송씨 일가 사건은 송치 후 ‘2년 4개월’ 만에 전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

135) △△△ 대법관이 1984년 7월 20일 임명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송씨 일가 사건에서 안기부가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내려줄 만한 인물을 대법관 자리에 앉힌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IV.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변호인 연행과 증인 구속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안기부의 개입과 압력은 검찰과 법원 뿐만 아니라 변호인 및 증인들에게도 향했다. 사실상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간첩 사건으로서는 드물게 당시 유명한 인권변호사 4인방(이돈명, 홍성우, 황인철, 조준희) 중 이돈명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이 결합, 장기 불법 구금 및 고문, 검찰 조서의 임의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비록 유죄판결로 끝나기는 했지만 7심까지 끌고 가는 공방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안기부의 시선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담당할 모든 변호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동향보고를 계속 올렸으며 변호인과 피고인의 접견 내용에 대한 첩보 보고 역시 서울구치소 영치과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놓고 있었다.

한 예로 1982년 10월 7일 박상기 변호사와 홍성우 변호사가 송기준을 접견한 내용을 보고한 접견 보고서는 참고사항으로 홍성우 변호사가 “과거 민청학련 사건, 명동사건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변호를 담당한 바 있다”고 적고 있으며 1983년 11월 24일 작성된 「간첩 송지섭 사건 관련 변호인 동향 보고」는 조준희 변호사에 대해 “76.4 세칭 명동사건 및 79.12 고 박대통령 시해사건 피고인 김재규 담당 변호인”이었던 ‘반정부 활동자’라면서 “본명에 대한 동향 내사, 비위사실 수집” 조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준희 변호사나 홍성우 변호사에게 안기부가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기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것은 송창섭의 처 한경희와 처가쪽 사돈이라는 인연으로 처음 시국사건 변호를 맡은 김성기 변호사였다. 이와 관련 홍성우 변호사는 위원회와의 면담(06.10.18)에서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등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공인’된 변호사들의 경우 정보부에서 사건 관련 압박이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처음 시국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에게는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정보부의 압박이 상당했다. 송씨 일가 사건을 담당할 김성기 변호사는 재판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보부 직원이 와서 못살게 군다고 하소연하곤 했다”고 전했다.

안기부는 김성기 변호사를 연행 조사하기까지 했다. 1982년 8월 28일 작성된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사건 간첩 송기섭, 송기복 등 담당변호인 김성기 조사결과」를 보면 김성기 변호사가 송기복 등을 접견해서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를 연행, 앞으로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방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³⁶⁾.

< 서울·충북 거점 간첩단 사건 간첩 송기섭, 송기복 등 담당변호인 김성기 조사결과> 82. 8. 28.

다. 간첩 송기복 등 피고인 접견상황

○ 82. 8. 증순 서울구치소에서 담당피고인 위 송기복 등 4명을 접견

-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정에서는 있는 사실만을 진술하라”고 언급한 사실은
- 그들에게 범죄사실 은폐 또는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등을 교사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로서 통상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상례라고 진술
- 차후 여사한 행위 등 앓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각서 징구

라. 앞으로 변호활동은

○ 금번 조사과정을 통해 간첩사건 변론 경험이 전무한 본명으로서는

136) 서중석은 당시 김성기 변호사가 겪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낮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분증을 제시했다. 모 기관원이었다. 그들은 상사의 지시라고 하면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 변호사가 따라간 곳은 동국대 입구에 있는 모 호텔이었다...호텔에 연행된 날부터 1주일간 그는 그곳 7층의 한 사무실에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해야 했다. 상부 지시라고 하였지만 상사는 없었고, 수사관 3-4명이 앉혀놓고 조사한다고 하고는 조금 있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진술서를 몇 줄 쓰게 하고는 거의 종일 혼자 놔두었다. 수사팀도 두세 번 바뀌었다. 모 기관 위력을 피부로 느껴보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법정에서 모 기관을 고문행위 등으로 ‘매도’하지 말 것을 김 변호사에게 요구하였다. 결국 김 변호사는 ‘구두’로는 매도하지 않겠으나, 단 변론요지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때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을 다짐받았다. 김성기 변호사는 지금의 풍토가 이승만 정권때보다도 훨씬 고약하다고 비판한다.”

- 담당수사관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구체적이고도 악랄한 간첩행위와 수법 등을 재인식한 이상
-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론을 하는데 그치고
- 재판부에는 관련 피고인들 모두가 혈연관계에 있음을 감안, 이를 참작해달라는 요지의 변론과 당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하였음.

5. 조치

본명에 대한 불순혐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방면처리하고 본 사건 공판관리에 적극 협조토록 순화, 활용하겠음.

안기부는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위증죄로 구속, 실형을 살게 하기도 했다. 1982년 12월 7일 1심 재판에서 홍성우 변호사측 증인으로 출두해서 송기준의 입북시기로 주장되는 68년 9월, 송기준이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증언한 증인 김재철이 12월 20일, 위증죄로 구속된 것이다. 「간첩 송기준에 대한 변호인(홍성우) 측 증인 김재철 출장수사결과보고」를 보면 이 증인 김재철에 대한 수사 및 신병인도가 모두 안기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82.12.14 군산출장, 친구 XXX의 여관 건축현장에 피신 중인 위 김재철의 신병 확보, 현지 조사 결과 82.12.5 군산에서 간첩 송기준의 처 이금수와 접촉, 그로부터 송기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10만원 수수, 82.12.6 상경, 12.7 법정에 출두, 변호인 홍성우의 유도신문에 따라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송기준 입북시기인 68.9 매일 회사에서 접촉하였다고 허위 증언 사실 자백”했다면서 12월 16일 김재철을 서울로 연행, 12월 17일 L검사에게 신병을 인계, 12월 20일 검찰에서 위증죄로 구속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송지섭 등 간첩단사건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과 대책」에도 1심 재판 이후 대처사항의 하나로 “변호인측 증인 김재철, 위증으로 구속기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결국 김재철은 위증죄로 실형 6개월을 살아야만 했다.

이렇게 변호인들에 대한 압박이 횡행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고¹³⁷⁾ 증인 및 참고인들도 안기부에서 가혹행위나 위압을 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변론권마저 박탈당했던 것이다.

4 문민정부 이후 안기부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

가 OO지법 부장판사의 ‘돌출판결’과 안기부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전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도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기부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영향력의 행사 방식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문민정부 출범(1993년)과 그에 따른 안기부법의 대폭 개정(1993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동향과 주요 시국사건에 대한 공판진행과 판결을 예의 주시하면서 첩보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이런 보고서는 주로 안기부가 평소에 거북하게 생각한 법관이 다른 사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때 작성되었다. 그 한 예로 1995년 3월의 보고서 하나를 보도록 한다.

대법원, P 부장판사 경고 문제로 고심(95. 3. 8)

1. 대법원은

- P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 25 강영주 양 유괴살해 사건 관련 원00(24세) 등 3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 「합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사진촬영 허용은 물론 “2:1로 합의가 어려웠다” 는 등 합의 과정을 공개하여 물의를 빚은데 대해

137) 김재철은 위원회와의 면담(2006.11.22)에서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 끝에 홍성우 변호사의 유도대로 거짓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합의의 비밀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어떠한 이유든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P 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검토 중인 바

2. 이에 대해 P부장판사는

- “합의 공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동 사건의 주심판사인 황00(00세, 사시 00회, 경남00)판사가 자신은 동인들에 대한 무죄선고에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 선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 주심판사 주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부득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고 변명하고 있어 고심 중이라 함¹³⁸⁾

보고서의 앞부분은 비교적 사실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는데,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 중 P판사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여 논란이 제기된 것은 판결 당시¹³⁹⁾에 보도되었고, 3월 8일자인 이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P 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3월 7일에 전국법원에 공문을 보내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의의 비밀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의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사실이 주요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¹⁴⁰⁾ 그런데 이 보고서의 더 큰 문제는 결론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3.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 그동안 지나친 돌출판결로 물의를 빚어왔던 P판사가 자신의 공명심을 충족 시키기 위해 판사로서의 존엄성을 실추시켰다고 P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함.

138) 안기부, 「대법원, P 부장판사 경고 문제로 고심」.

139) 『중앙일보』 1995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1995년 2월 26일자.

140) 『한겨레신문』 1995년 3월 7일자, 『한국일보』 1995년 3월 7일자.

그러나 안기부의 부정적인 결론과는 달리 법조계에서 합의공개에 대한 반응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민일보』는 P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법정촬영을 허용한 것”은 “사법사상 획기적인 조치”라며 이를 두고 대법원이 “발끈”한 것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법원의 구태의연함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¹⁴¹⁾ 『중앙일보』도 “유·무죄를 팽팽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합의과정을 공개한 것은 판결 결과가 최대한 신중한 합의를 거쳐 도달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¹⁴²⁾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판결 결과와 소수의견의 내용은 공개되고 있다.

안기부 보고서가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지나친 돌출판결로 물의를 빚어왔던 P 판사가 자신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판사로서의 존엄성을 실추시켰다고 P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결론지었는데, 과연 이 보고서가 말하는 “지나친 돌출판결”이 어떤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영주 양 유괴살해 사건>의 경우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뒤엎고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의 고문 주장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된 가운데 ‘신체검증’을 실시하여 고문의 상처를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부산구치소의 신체검사 결과는 고문상처가 확인된 “두 피고인에 대해 옷을 완전히 벗기고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상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재판부의 직접적인 검증으로 이를 뒤집고 피고인들이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진실임을 밝힌 것이다.¹⁴³⁾ 그는 사형이 구형된 서보원 피고인 사건에서도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밝혀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가족에 대한 성폭행 등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사보다 더 무서운”

141) 『국민일보』 1995년 3월 15일자.

142) 『중앙일보』 1995년 2월 25일자.

143) 『중앙일보』 1994년 11월 24일자.

“호랑이 판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이 같은 “소신편결”에 대해 언론은 “재판부의 추상같은 엄정성을 밝힌 것으로 오랫동안 재판부가 정권에 끌려 다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원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판결이 법정에서 검찰측엔 자존심 손상과 함께 엄청난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¹⁴⁴⁾ 그는 5공화국 시절에도 보도지침 사건에서 외교상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 3인을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석방하였고, 백기완 씨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¹⁴⁵⁾

그러나 안기부가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보고서를 쓴 이유는 5공화국 시절이나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돌출판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안기부가 진짜 주목한 P 판사의 ‘돌출판결’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채 두 달이 되기 전인 1995년 1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들(IS) 소속의 피고인 4명을 직권보석으로 풀어주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결일 것이다. P 부장판사는 보안법 제7조 1항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부분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라 행위자 내심의 의사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서구의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화를 향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⁴⁶⁾ 이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보수언론들조차 “문제의 조항 7조는 이미 90년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실상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합헌’ 판정을

144) 『세계일보』 1994년 5월 29일자, 『중앙일보』 1994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1995년 2월 26일자.

145) 『중앙일보』 1987년 5월 20일자, 6월 3일자.

146) 『한겨레신문』 1995년 1월 18일자, 『동아일보』 1995년 1월 19일자.

받은 규정”으로 “위헌심판제청 결정이유는 90년 현재의 한정합헌 결정 요지와 거의 같은 것”으로, “헌재에 의한 한정합헌이라는 사실상의 위헌 판결에 이은 법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여전히 문제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라며, “재판부의 위헌제청 결정에 대해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¹⁴⁷⁾

안기부로서는 1994년 1월 5일의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수사권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수사권의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논란이 재연된 것이다. P 부장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보고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

운동권 출신 법관의 임용 배제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일정한 민주화와 1989년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운동권 출신들이 극한적인 반체제 투쟁을 버리고, 체제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 양상에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일이 운동권 출신들이 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199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정우가 외무고시에 국가보안법 전력자로서는 처음으로 합격하고 이어 1991년 사법시험과 1993년 행정고시 등 3과에 모두 합격하여 화제가 되었고, 1990년에는 사법시험에 이른바 「깃발」 사건 관련자 L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격하였다. 운동권 출신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93년 대략 20명, 1996년에는 100명 선을 넘어서¹⁴⁸⁾ 더 이상 화젯거리가 되지 않았다.

147) 『동아일보』 1995년 1월 19일자, 『국민일보』 1995년 1월 18일자, 『한국일보』 1995년 1월 19일자.

148) 『중앙일보』 1996년 12월 14일, 『한겨레신문』 1996년 12월 21일자.

민주화의 초기, 운동권 출신들이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때만해도 여론은 이들의 새로운 선택을 반겼다. 한 신문의 사설은 L씨의 사법시험 합격을 두고 “아직 판·검사의 임용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려면 임용 때까지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날에는 필기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전력이 문제가 되어 불합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향간의 말들을 생각할 때 면접시험까지 거친 이번 최종합격이 사회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 사설은 “한편 이 일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경찰이 문교부의 요청에 따라 발령을 앞둔 예비교사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라면서 “공안당국도 아닌 문교부가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라고 주장했다.¹⁴⁹⁾

L 판사는 1993년 3월 1일자로 OO지법 남부지원판사로 임명되었다.¹⁵⁰⁾ 그리고 그의 이름은 2년 여 후 안기부의 보고서에 등장한다.

문제성향 판사의 형사부 보직배제 필요(1995.7.25)

3. 문제성향 판사의 형사부 보직배제 필요

- 최근 OO지법 L 판사의 김일성전기 판매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문제성향 판사의 좌익사범 관용조치가 빈발함으로써
- * L 판사는 85년 00대 재학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 체제도전세력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곤란케 함은 물론 국민 대공경각심을 해이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운동권 출신 예비법조인(9명)의 법조계 진출 시 관용조치 증가가 명약관화하므로
- 법원과 협조, 문제성향의 현직 판사와 예비 법조인들에 대한 형사부 보직 배제를 유도해 나감이 바람직하겠음.¹⁵¹⁾

149) 『중앙일보』 1990년 10월 31일자.

15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4년판, p245

151) 안기부, 「문제성향 판사의 형사부 보직배제 필요」(1995.7.25)

위 보고서에서 L 판사가 학생 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는데, L 판사는 「깃발」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 정지 3년,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¹⁵²⁾ 위 보고서가 문제 삼은 사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서전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참된 봄을 부르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는데 이를 팔던 서점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OO지법 형사 항소6부 L판사가 기각한 것이다. L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의 범주를 확대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며, 표현물이 과격한 혁명 사상과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들이 우리의 사회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일성의 정통성을 인정하거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책에 대해 국민들은 오히려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¹⁵³⁾ 안기부의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은 L 판사에 의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였는데, 국가보안법 전력자가 아닌 OO지법 형사 22부 P판사는 그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¹⁵⁴⁾

안기부는 운동권 출신 예비법조인이 9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법관이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에 대한 “관용조치 증가가 명약관화”하다며,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사법시험 합격자 9명이 “형사부 보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판·검사 지망 연수원생 안기부 과잉 신원조사」라는 기사에서 안기부가 임용예정자의 취미, 애인, 차종, 재산상황, 서울에 사는 고교동창 이름, 결혼계획 등 것까지 묻는 전화를

152) 『중앙일보』 1990년 10월 30일자.

153) 『중앙일보』 1995년 7월 22일자 ; 『한겨레신문』 1995년 7월 22일자.

154) 『한겨레신문』 1995년 7월 26일자.

여기저기 걸었고, “그 사람이 판(검)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느냐”고 탐문하는 등 “관례를 벗어나는 질문”을 했다고 보도했다. 안기부의 질문내용에 항의하는 지망자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런 태도도 보고서에 그대로 써서 올리겠다”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¹⁵⁵⁾ 다음 날짜 신문에는 “당국은 과거에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임용한 선례가 없다며 임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운동권 출신 전과자들에게 불길한 예측 기사를 내보냈다.¹⁵⁶⁾

1996년 2월 23일 법무부는 검사직을 지망한 사법연수원 25기 수료자 가운데 5공화국 시절 시국사건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A, B씨와, 면접 때 “그동안 검찰은 권력에 아부하는 등 정치지향성이 많았다고 지적한 C씨 등 3명을 임용에서 떨어뜨렸다. 이들은 “이번에 검사직을 지망한 수료자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할 뿐 아니라, 임용에서 제외될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¹⁵⁷⁾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검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1997년 6월 20일 서울고법 특별9부는 이들의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¹⁵⁸⁾ 1996년도 사법시험에서는 시위 전력자 D씨가 3차시험에서 탈락했다.¹⁵⁹⁾

1997년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학생운동 전력자들의 판사임용을 거부했다. 1998년 1월 5일 열린 대법관들의 간담회는 “우리 사회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급진적인 사상이 어울리지 않으며,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의 법관 임용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

155)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16일자.

156)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17일자.

157) 『중앙일보』 1996년 12월 14일자 ;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4일자.

158) 『중앙일보』 1997년 6월 21일자.

159) 『중앙일보』 1996년 12월 14일자.

27기생으로 법관을 지망하려는 학생운동 전력자 4명을 불러 “법원에 지원하더라도 임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통보했다.¹⁶⁰⁾ 이후 학생운동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사범연수원 성적과 관계없이 관검사 임용에서 탈락하는 것이 줄을 이었다. 사면과 복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물론 학생운동 전력자들의 관검사 임용 배제가 법원이나 검찰 수뇌부가 꼭 안기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들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 법원과 검찰의 보수적인 수뇌부로서도 운동권 출신이 달갑지 않던 차에 안기부가 1996년 임용 당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 때의 탈락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1997년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운동권 출신 복역자들의 탈락은 관례로 정착되었다. 본 위원회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법관 임용자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신원조사 회보 2개년도 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특이사항만을 기술했을 뿐 임용의 가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6년의 신원조사 회보에서는 이미 복권이 된 실형 전력 자체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주변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다른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 | 한총련 사건과 안기부

1996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범청학련의 제6차 8·15통일대축전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총련 사태는 5공화국 시절 최대규모의 공안사건이었던 건국대 사건의 연행자수 1,200여 명의 5배에 가까운 5,800여 명의 연행자를 내고 진압되었다. 범청학련의 8·15통일대축전 행사는 6년째 계속되어 온 연례행사였는데 유독 1996년의 행사에서 경찰은 공식행사가 끝난 뒤에도 봉쇄망을 풀지 않았다. 이에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한총련

160) 『한겨레신문』 1998년 1월 9일자.

주요 간부들을 포함한 참가학생 수천 명은 종합관, 과학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농성에 들어갔다. 본 위원회는 1986년의 건국대 사건이나 그 10년 후에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발생한 연세대학교에서의 한총련 사건에 대해 당국이 어떤 사전 계획을 갖고 학생들의 행사가 끝난 뒤에도 봉쇄망을 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1996년 한총련 사태 이후 연행된 학생들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몇 건의 보고서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보고서는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법관들의 형사부 배제를 주장한 위의 보고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안기부는 당시 연세대 사태로 연행된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거나, 구속기소된 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안기부가 보기에 최근의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극히 우려할만한 일이었다. 안기부 보고서의 앞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문제판결’을 열거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필요성 지적 (1996.8)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안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판사들에 대한 이념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 지난 7.12 00지법 A 판사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을 무죄로 석방하는 등 공안사범에 대한 관용판결이 빈발하고 있고
- 심지어 현직 판사가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에 위헌심판을 제청 하는가 하면 최근 연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 * 00지법 B 판사는 지난 3.5 국보법 19조(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위헌제청, C 판사는 8·15 한총련 000 영장 기각¹⁶¹⁾

161) 안기부,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필요성 지적」, 일자 미상(내용상 1996년 8월말 경으로 추정).

이 보고서에서 안기부가 문제 삼은 법원의 판결은 세 가지였다. 첫째, 1996년 7월 12일 OO지법 형사9단독 A 판사가 1996년 7월 12일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박충렬은 1995년 11월 부여간첩 사건 당시 생포된 남파공작원 김동식이 자신이 무전기를 전달하려한 386인사가 박충렬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안기부에 구속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논란을 크게 불러 일으켰고, 안기부와 검찰은 끝내 박충렬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1996년 1월 8일 박충렬이 검찰에 의해 기소될 때는 처음의 구속사유인 간첩 혐의 부분은 빠지고 재야단체 활동과 관련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만 적용돼, 안기부가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죄목을 변경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건이다. A판사는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¹⁶²⁾

안기부가 두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OO지법 B판사가 1996년 3월 6일 검찰의 사노맹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기간 2차 연장신청에 대해 영장 발부를 보류한 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3차례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한 결정이다.¹⁶³⁾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 동안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이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회, 검사가 2회 등 모두 3차례 최대 3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기부가 문제 삼은 세 번째 결정은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었다. 공안당국은 연대사태와 관련하여 8월 20일 진압

162) 『조선일보』 1996년 7월 13일자 ;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5일, 7월 13일, 12월 20일자.

163)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7일자.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6월 26일 국가보안법 제19조의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연장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26일자.

작전 당일 3,499명 등 총 5,848명을 연행하여 이 중 462명을 구속하고, 3,341명을 불구속입건, 373명을 즉심에 회부, 1,672명을 훈방조치했다. 구속자 462명은 진압 이전에 구속된 사람이 93명, 진압 당시 연행된 3,499명 중 구속자 369명이었다.¹⁶⁴⁾ 위의 보고서에 언급된 000은 한총련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공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00지법 C판사는 8월 15일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점이나 전경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안기부의 보고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은 S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00지법 D판사는 17일 “000씨가 붙잡힐 때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수사기관의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했다.¹⁶⁵⁾

그런데 안기부가 “최근 연대 사태 관련자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는데, 실상 당시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매우 높았다. 아직 한총련 학생들이 연대에서 농성을 계속 중이던 8월 17일 현재 경찰에 의해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학생은 모두 40명인데, 그 중 38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¹⁶⁶⁾ 그러나 안기부 뿐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격앙했다. 언론은 여당인 신한국당이 8월 17일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한 서울지법의 시위학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도 시야와 시각을 국가안위 차원에 맞춰야 한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문까지 한 것은 여권의 경직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면서, “80년대 공안정국을 연상시키는 여권의 이런 강성 기류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¹⁶⁷⁾ 이런 분위기 속에서 000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164)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23일자.

165) 『동아일보』 1996년 8월 16일, 8월 18일자 ;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18일자.

166) 『동아일보』 1996년 8월 18일자.

167)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17일자.

C 판사는 16일 하루 동안만 모두 13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집으로 영장 기각에 대한 협박성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¹⁶⁸⁾

안기부는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보고서

1. 한총련 구속자 집유판결 증가로 학원 안정 저해 우려

○ 최근 일부 지방법원에서 한총련사태 및 국보법 위반 등과 관련 구속된 학생들에게 초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관대히 판결, 석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00지법은 10.15 000(A대회장) 등 5명 석방

- 이들은 석방 후 학내외에서 한총련 조직 재건을 선동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들을 영웅시하면서 운동권 세력 재결집을 기도하고 있어 학원안정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 A대, B대 등에서 석방된 학생들이 총학선거에 직접 개입

- 지난 6월 한총련 사태 이후 당국이 적극 추진해온 한총련 외해에도 차질 초래가 우려되므로

○ 검, 경은 사법부가 좌익세력 척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지속 협조하고 출소 후 한총련 활동 재개 등 재범자는 엄정 사법조치 해야겠음.¹⁶⁹⁾

또 안기부는 1997년 6월의 보고서에서도 ‘법조계 일각’이라는 이름을 빌어 “법원이 지난해 연세대 난동사건관련 구속자 473명 중 430여명(9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들의 시국인식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원이 한총련 학생들 다수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비난했다. 위의 91%라는 통계는 아마도 항소심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법원은 정권과 안기부의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엄벌 주문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68)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18일자.

169) 안기부, 일자미상(1996년 11월초 경으로 추정).

첫째는 영장 발부율이다.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농성 중인 학생들이 연행되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더욱 높아졌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2명의 검사로 하여금 시위장면 등이 찍힌 사진 300여 장을 들고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당직판사를 찾아가 수사 결과를 설명토록했는데, “지난주 말 시위대학생 2명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기각 사례가 없도록 대비한 것 아니겠느냐”는 설명이 검찰주변에 돌았다. 이런 노력 탓에 검찰이 청구한 371명의 구속영장 중 단 2건 만이 기각되고 369건이 발부되었다. 한총련 사건의 영장기각률은 0.539%인데, 이는 1996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영장기각률 7.5%나 서울지법 관내 기각률 10.4%에 비하면 극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¹⁷⁰⁾ 아직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40명 중 2명의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지법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구만 하면 법원이 으레 영장을 발부하리라는 수사기관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며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검·경찰이 영성하게 수사해 영장을 올리면 기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⁷¹⁾ 그러나 학생들이 대거 연행되고 청와대의 초강경 방침이 천명되면서, 경찰이 총기사용을 공공연히 말하고, 공보처가 발행하는 국정신문에 공권력에 도전하면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는 등¹⁷²⁾ 분위기가 경색되는 가운데 법원 역시 태도를 바꾸어 전국 평균 영장기각률의 1/15에 불과할 정도로 검찰의 청구대로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다.

170) 『동아일보』 1996년 8월 23일자. 1996년 10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000 서울지방법원장은 한총련 관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470명이고 그 중 6명이 기각되고 464명이 발부되어 기각률은 1.28%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영장 기각률보다는 극히 낮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1996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96년 10월 1일, p.49.

171)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18일자.

172) 『한겨레신문』 1996년 8월 20일자.

법원의 협조적 태도를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한총련 사건의 배당에 관한 것이다. 서울지법은 9월 10일 “한총련 폭력시위 사태와 관련해 곧 기소될 시위관련 학생들을 모두 형사합의부에 배당해 심리하기로 결정” 했는데, “법원이 형사단독부로 배당될 사건을 형사합의부로 옮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된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시국사건(집시법 위반이나 폭력)의 경우 대부분 형사단독부에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 였는데, 이대로라면 서울지법 관할 240여 건 중 “200여 건은 형사단독에 배당되어야” 했으나 “서울지법은 사태 관련자 240명의 재판을 형사합의 3개부에 각 80여건 씩 배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각 재판부의 양형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법원 고위층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11명이나 되는 단독판사들보다는 3개 합의부가 의견조정을 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¹⁷³⁾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수뇌부가 일부 형사단독 판사들의 평소 경향을 우려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특히 몇몇 단독판사들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낼 경우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으리라는 분석”이 나돌았다고 한다.¹⁷⁴⁾

한총련 사건 처리에서 법원의 협조적 태도를 보여주는 세 번째 근거는 판결 내용 이었다. 10월 28일의 1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5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은 59명에 그치자 대부분의 언론은 한총련 사태 관련 학생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떨어졌으며, 이는 사법부가 “불법 폭력시위를 엄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판결을 두고 “그동안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해 온 관행을 깬 것”이라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재판부가 110명의 피고인 중 46%인 51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173)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양형의 균형’을 꾀하는 문제와 합의부에 대한 배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000 서울지법원장은 양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주된 이유라고 인정했다. 「1996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96년 10월 1일, p.49.

174) 『한겨레신문』 1996년 9월 11일, 9월 12일자.

것은 “86년 건국대 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00여명 중 90명(23%)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매우 높은 실형선고율”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59명은 미성년자이거나 구호만을 외친 단순가담자”였다고 보도했다.¹⁷⁵⁾

라 | 판사들에 대한 이념교육

사실 법원은 1996년 8월의 한총련 사태에 관한 한 5공화국 시절의 사법부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정치권력에 협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88년 이래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일련의 소신판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학시절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은 젊은 판사들의 진출 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와 같은 ‘조정’을 행사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안기부는 사법부를 매우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90년대에 들어와 각종 간첩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안기부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매우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월에는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가, 1996년 3월에는 서울지법 박시환 판사가 각각 직권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한총련 사태 관련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안기부는 “시국인식이 크게 미흡”한 법관들에 대해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이 바뀌어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조정이나 통제는 불가능했다.

그러던 차에 김영삼 대통령은 한총련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새로운 이념교육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폭력시위에 대해 강경한 진압이나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 아래 김영삼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기 위해

175) 『동아일보』 1996년 10월 30일자 ; 『중앙일보』 1996년 10월 30일자 ; 『경향신문』 1996년 10월 30일 ; 『서울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 『한겨레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새로운 이념교육의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언론은 대통령이 “새로운 이념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이제까지의 학교 교육이 원색적이고 획일적인 반공교육 위주로 흘러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¹⁷⁶⁾

1996년은 안기부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강제수술을 당하여 수사권의 상당부분을 박탈당했다가 이의 회복을 꾀하던 중이었는데, 한총련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종의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게다가 강릉잠수함 사건이 발생하여 안보의식이 높아지면서 안기부로서는 수사권 부활에 매우 유리한 국면이 형성된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념교육의 필요성이 대통령에 의해 직접 제기되자 안기부는 1996년 11월 14일과 19일 서울 시내 고교 교장 277명을 안기부로 모아 ‘민주시민 통일안보 교육’ 명목의 강좌를, 20-22일에는 윤리·사회과 교사 528명을 동원해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¹⁷⁷⁾ 정부조직법 상 일반국민에 대한 안보교육은 통일원과 교육부 등이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기부는 직접 이런 일에 나서는 것보다는 통일부나 교육부가 적절한 교재를 편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념교육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고무되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제작한 자료를 배포하여 예비군 등에서 활용토록 하다가 사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그에 따라 안기부장이 유례없이 대법원장에게 구두와 공문으로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념교육을 강조한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기부의 보고서는 판사들에 대한 이념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공안사건 발생 등을 계기로 판사들에 대한 이념교육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중략)

176) 『한국일보』 1996년 8월 21일 ; 『국민일보』 1996년 8월 21일.

177)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27일자.

- 예비 법조인들의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에 체제수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념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수시 이념교육을 받는데 비해 법관들은 별도 교육과정이 없어 안보관이 결여되기 쉬우므로
- 사법연수원에 이념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법관들에게 북한정세, 좌익운동권의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특강기회 등을 수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¹⁷⁸⁾

2년 과정인 사법연수원생들은 1년차 6월에 안기부 청사를 방문하여 안보교육을 받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기부의 이 보고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안기부를 방문하여 안보교육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는 이념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법관들에게는 “북한정세, 좌익운동권의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특강기회 등을 수시로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기부는 한총련 사태 발생 이전인 1996년 6월 24일 - 25일 사법연수원 1년차 연수생들을 신청사로 불러 안보교육을 실시하면서 “사회각계의 좌익세력”을 언급하는 가운데 “특정 시국사건의 무죄 선고나 영장 기각을 예로 든 슬라이드를 방영”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¹⁷⁹⁾ 위의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슬라이드 교육은 안기부 내에서 이루어진 탓인지 당시 바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 선고가 있고 난 뒤 안기부가 외곽단체 명의로 제작·배포한 비디오 교육자료가 큰 물의를 빚었다.

11월 9일부터 주요 언론은 “정보기관이나 예비군 훈련장에서 당국이 시국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한총련 비호세력’ ‘좌익 비호세력’ 등으로 표현한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¹⁸⁰⁾ 문제의 테이프는 “한총련 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한 텔레비전

178) 안기부,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필요성 지적」, 일자 미상(내용상 1996년 8월말 경으로 추정).

179)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9일, 1997년 4월 11일자.

180)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9일자 ; 『한국일보』 1996년 11월 9일자 ; 『중앙일보』 1996년

뉴스 화면을 빌리면서 ‘좌익동조자’라는 대사를 교묘하게 삽입”하였는데 “뉴스화면은 법복을 입은 판사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 기각 - 증거 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비디오”는 이 화면을 그대로 틀면서 “우리 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옹호하는 행동과 발언, 언론 보도 및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를 본 사람은 누구라도 영장기각 판사를 ‘좌익동조자’로 연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⁸¹⁾ 사법부, 특히 소장법관들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결과를 두고 ‘비호 세력’ 따위의 표현을 쓰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격앙했다. 안기부는 11월 11일까지만 해도 중간 간부가 나서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을 한 것 이상의 조치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태를 중시한 대법원장이 휴가를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등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결국 안기부장이 직접 전화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며 그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법원에 보내는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¹⁸²⁾

*** 안기부장의 사과문**

대법원장 귀하

항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법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부 외곽단체 명의로 제작배포된 <한총련의 실체> 제하 영상물 일부 내용과 지난 6월 24일~25일간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당부 초청 북한 정세 설명회시의 슬라이드 내용 중 일부 오해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자 ; 『동아일보』 1996년 11월 10일자 ; 『국민일보』 1996년 11월 13일자 ; 『경향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181)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182)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당초 <한총련의 실체> 제하 영상물은 한총련의 실체와 국내 좌익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관련 부분은 좌익문제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실무진의 판단에서 방송사의 “영장담당판사, 시위주도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언론매체의 뉴스보도 내용을 배경화면으로 인용한 것일 뿐 구속영장을 기각한 담당판사의 결정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25일간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당부 초청 북한 정세 설명회에서 사용한 브리핑 슬라이드 내용도 최근 좌익세력들의 준동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당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귀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삭제하였으며, 이미 배포된 것과 군부대에서 예비군 교육용으로 이를 인용·제작한 것까지 시정토록 하였음을 통보드리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영상물 제작과정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6년 11월 12일 국가안전기획부장

마

공안검사의 판사 상대 한총련 특강

정부 당국의 한총련에 대한 강성기류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 5월 30일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인 5기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긴장은 고조되었다. 경찰의 봉쇄로 출범식이 열리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연일 도심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며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그러던 중 6월 2일 밤 한양대 후문 부근에서 시위 진압 중이던 유지웅 상경이 경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6월 5일에는 한총련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한 20대 노동자 이석 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오인, 조사하는 중에 폭력을 행사하여 이석 씨가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총련 제5기 출범식 폭력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들의 숫자는 무려 195명에 달했다. 검찰은 1996년의 연세대 사태 때는 단순가담자 27명을 기소유예 했지만, 이번에는 폭력시위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구속자 전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⁸³⁾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 20여 명은 6월 14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부터 당시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던 「학생운동의 변질과 실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이 특강은 판사들의 요청으로 서울지법 회의실에서 별다른 토론이나 질문 없이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안기부는 이 특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강화 필요성 지적

- 법조계 일각에서는
 - 최근 경찰 등 공안기관에서 한총련 의장 강위원을 검거하는 등 좌익세력을 척결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 법원이 지난해 연세대 난동사건관련 구속자 473명 중 430여명(9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관들의 시국인식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 지난 6.14 서울지법의 서울지검 공안2부장 초청 강연 시 일부 언론이 한총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 강연에 참석했던 판사들은 좌익세력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호평했던 만큼
- 법원으로 하여금 북한전문가 또는 공안분야에 정통한 학자 등을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이념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차체에 사법연수원의 안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¹⁸⁴⁾

183)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26일자.

184) 안기부,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강화 필요성 지적」, 일자미상(내용상 1997.6. 18-20일 전후로 추정됨).

이 보고서는 법원이 공안2부장을 초빙하여 한총련에 관해 특강을 하게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한총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참석했던 판사들은 좌익세력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호평”하였다고 쓰고 있으나 사안은 보고서가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하는 예의 ‘법조계 일각’은 법원이 사건 수사의 실무책임자를 공판 개시 전에 초청해 강연을 들은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았지만, 재야 법조계는 안기부 보고서와는 정반대로 법원이 이런 강연을 마련한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는 변호사계의 진보적 입장을 대변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만이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변호사계 전체를 포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민변과 같은 취지로 법원과 검찰을 모두 비난했다. 그리고 재야법조계의 양대 산맥인 두 단체가 발표한 성명은 안기부의 일일동향보도에도 간략하나마 소개되어 있다.

□ 민변, 서울지검의 판사대상 한총련 설명회 비난

6.16 성명에서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 서울지법 형사담당 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총련사태 설명회(6.14)를 개최한 것은 공소제기 전 판사들에게 예단을 심어주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¹⁸⁵⁾

□ 대한변협, 검찰의 판사대상 한총련설명회 관련 법원 해명 촉구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6.17 오후 성명에서 한총련의 친북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설명회(6.14)를 개최한 것은 재판의 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것을 촉구¹⁸⁶⁾

이런 재야법조계 양대 단체의 강력한 성명과, 안기부의 일일동향보고에 이런 성명내용이 요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보고서는 검찰의

185) 안기부, 「민변, 서울지검의 판사대상 한총련 설명회 비난」

186) 안기부, 「대한변협, 검찰의 판사대상 한총련 설명회 관련 법원 해명 촉구」

한총련 특강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언론의 비판이라 했지만, 그 비판은 ‘일부’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보수신문의 보도 역시 “판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¹⁸⁷⁾로 “이날 강연이 공안담당 검사가 판사들을 교육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안검사를 통한 판사들의 의식화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¹⁸⁸⁾도 있었으며 “법원 주변”에서는 “판사들이 학생운동 현황을 파악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한총련 사건 담당 검사로부터 강의를 받은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걱정하기도”¹⁸⁹⁾ 하였다는 등 비판적인 보도가 주를 이뤘다.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은 사실과 기자의 논평을 통해 한총련 사건 재판을 앞둔 판사들이 집단으로 재판의 한 쪽 당사자가 될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초청해서 ‘한총련 특강’을 받은 사실을 “해괴한 일”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의 표현은 다소 과격했지만, 그 비판의 근거만큼은 확실했다. 법원이 “판사들은 모든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지 않고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법원이 스스로 어겼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소장을 제외한 일체의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게 한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¹⁹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나 담당판사가 개별적으로 검사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금기시해온 것도 법관의 선입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이번 강의가 “법원의 요청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뤄져다는 점”은 “모든 법관은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187) 『중앙일보』 1997년 6월 15일자.

188) 『동아일보』 1997년 6월 15일자.

189) 『서울신문』 1997년 6월 15일자.

190)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의 규정을 말한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법관이 사건에 대한 예단(선입견)이 없는 백지의 심경으로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제8정판), 2001, 박영사, p468.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의 특강 과문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정찰제 판결’ ‘자판기 판결’ ‘앵무새 판결’ 등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데, “검찰의 특강을 받은 판사들이 집단적 예단을 한 나머지 한총련 관련 학생들에게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¹⁹¹⁾

공안검사의 판사들에 대한 한총련 특강과문은 국회로도 비화되었다. 1997년 7월 8일 열린 1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소관사항에 대한 현안보고가 끝난 뒤 검사 출신의 조찬형 의원은 “과연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형사담당 법관들이 특별강의를 받게 된 경위라도 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강연내용을 아울러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좀 더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사전에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번 특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법무부는 강연내용 가운데 한총련의 조직과 노선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이번 강연의 주제는 한총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서로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관이 공판정 밖에서도 검사로부터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강연을 듣는다면 재판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도리가 없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대법원장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아직도 이 문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이 문제로 법원이 비판을 받게 되자 변명에 급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개탄했다.¹⁹²⁾

191)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17일, 6월 18일자.

192) 「18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호, (1997.7.8) pp.38, 42-44.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해 온 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경우 당국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로부터, 때로는 청와대로부터 직접 대법원장 또는 서울형사지법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전달되는 당국의 의사는 법원 내의 관료조직을 타고 눈에 보이지 않게 관철되었다. 때로 이를 거슬러 소신판결을 한 판사들은 사표를 강요받거나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1970년대의 중앙정보부나 1980년대의 안기부가 사법부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문제를 관리해가는 방식은 일단 재임명을 통해 특정 판결에서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대법원판사라 해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사법부 전체를 평정하고 난 뒤, ‘돌출판결’을 한 법관을 옷을 벗기거나 좌천시켜 사표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988년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독립 요구로 세칭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난 이후, 안기부가 사법부의 인사나 판결에 개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겨레신문』도 1992년에 이미 재판에 대한 외부 압력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대표적인 5공비리 사건이 전 대통령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 씨 사건에 대한 원심파기나 보석허가,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유죄확정판결, 14대 총선 때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안기부 직원에 대한 집행유예 등에 대해 “일선법관들은 이들 사건의 판결이 정치적 압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일규 대법원장 이래 재판과 관련한 압력은 없어졌다”고 단언했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소신이 문제”라는 것이다.¹⁹³⁾ P부장 판사도 1994년에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이제는 외부압력이나 돈의 로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¹⁹⁴⁾

193) 『한겨레신문』 1992년 9월 30일자.

194) 『중앙일보』 1994년 12월 18일자.

1990년대에 들어와 정치권력과 안기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사법부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은 정치권력대로, 안기부는 안기부대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안기부는 “법원과 협조, 문제성향의 현직 판사와 예비 법조인들에 대한 형사부 보직 배제를 유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이런 안기부의 의지는 많은 경우 관철되었다. 1980년대와의 차이는 법원 수뇌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기부 단독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나, 1996년 8월의 한총련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만큼은 법원수뇌부가 정권적 차원의 요구나 안기부의 입장에 십분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총련 사태 당시는 이른바 “문제성향 판사”의 “형사부 보직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성향 판사들이 한총련 학생들에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돌출 판결을 막기 위해 서울형사지법은 사건을 단독판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3개의 합의부에 80건 씩 배당한 것이다. 이런 배당이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의 예규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했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향의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1996년 3월의 신규 법관 임용에서 시위전력 실형 전력자들이 탈락한데 이어 “공안검사 올리는 두 명의 판사” 또는 “공안검사들의 천적”이라고 신문에 소개되었던 A 판사가 1997년 2월 18일 갑자기 사표를 냈고, 이어 B 판사도 2월말의 정기인사에서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서울지법 형사단독에서 서울지법 민사단독으로 발령이 났다.¹⁹⁵⁾ 두 판사의 인사는 “소신 있는 판결과 관련된 편파적, 불공정 인사”로 국회에서도 조순형 의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었다.¹⁹⁶⁾

195) 『한겨레신문』 1996년 7월 15일, 1997년 2월 19일, 3월 4일자.

196) 「제18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호, 1997.3.6, pp27-28, 42-43.

A 판사의 경우는 부여간첩 김동식이 접선하려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박충렬 전국연합 사무차장에게 1996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안기부 보고서에 오른데 이어¹⁹⁷⁾ 역시 김동식과 만났다가 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죄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또다시 안기부 보고서에 올랐다.¹⁹⁸⁾ A 판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안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고¹⁹⁹⁾, 국회에서도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이 “순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했다고 답변²⁰⁰⁾했으나 언론은 그의 사직을 “석연치 않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²⁰¹⁾

1996년 8월의 한총련 사태와 1997년 6월의 5기 한총련 출범식 당시의 대규모 구속 사태의 사법처리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서울지법이 1996년의 사건은 법원의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를 어겨가며 11명의 단독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3개의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반면, 1997년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사이에 “공안검사의 천적”이라 불리던 ‘문제성향’의 판사 2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명은 사직하고 한명은 보직이 변동되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A 판사를 두 번째로 거론한 안기부 보고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197) 안기부, 「법조계 일각, 판사 이념교육 필요성 지적」, 일자 미상(내용상 1996.8 경으로 추정).

198) 안기부, 「법원의 공안판사제 신설 검토 필요」, 일자미상(내용상 1997.2.15 이후로 추정됨).

199) 『국민일보』 1997년 2월 19일자 ; 『한국일보』 1997년 2월 19일자 ; 『한겨레신문』 1997년 2월 19일자.

200) 「제18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호, 1997.3.6, pp42-43.

201) 『국민일보』 1997년 3월 4일자 ; 『서울신문』 1998년 7월 13일자.

법원의 공안판사제 신설 검토 필요

- 최근 황장엽 비서 망명, 이한영 피격사건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간첩 및 좌익세력 발본색원을 위한 범국가적 안보태세 확립이 긴요한 실정이나
- 체제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경우
 - 소장판사들 간 신세대적 자유주의 사고 유입, 운동권출신 판사 임용, 사법부의 연소화 등으로 체제수호 의지가 약화되고 있고
 - * 학생운동 전성기인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20-30대 판사가 70%
 - 좌익사범에 대한 관용판결을 소신판결로 오인하거나 영장실질심사제 시행과 관련 피의자 인권보호를 앞세워 체제도전세력들에게 수시 불구속, 무죄선고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 * 00지법 A 판사, 96.11 부여침투간첩 김동식을 접촉하고도 불고지한 전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에 무죄 선고
 - 특히 형사부가 일반 형사사건과 함께 공안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북한은 물론 좌익세력들의 조직, 투쟁전략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한 바
- 법원에 기존 민사, 형사, 가사부와 별도 공안부를 신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사들로 하여금 공안사건을 전담케 하는 등 사법부의 대공역량 강화방안 검토가 필요함.²⁰²⁾

위의 보고서에서 최근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1997년 2월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의 피격은 2월 15일에 일어났다. 이 보고서는 일부 ‘문제성향’의 판사들이 형사부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안기부가 여전히 안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기부는 이미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20-30대 판사가 70%”가 되고 영장실질심사 등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에서 도입된 상태에서 “북한은 물론 좌익세력들의 조직, 투쟁전략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형사부에 사건을 맡겼다가는 “체제도전세력들에게 수시 불구속, 무죄선고 등 관대한 처분”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대안

202) 안기부, 「법원의 공안판사제 신설 검토 필요」, 일자미상(내용상 1997.2.15 이후로 추정됨).

으로 안기부는 “법원에 기존 민사, 형사, 가사부와 별도 공안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사들로 하여금 공안사건을 전담”케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판사나 재판부를 두자는 발상은 안기부의 이 보고서에서 처음 선보인 것은 아니다. 1996년 10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XXX 의원은 “특허, 교통, 선거 등 전문화 시대에 맞춰 법원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의료사고,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해상사건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뗀 뒤, “공안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으로 어느 사건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나 현재 법원은 국보법에 대한 인식도가 다소 미흡한 소장법관들이 판결하고 있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어 좌익사범 척결에 어려움이 대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그 해소방안으로 공안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물었다.²⁰³⁾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7년 9월 한총련 학생들이 기소되었을 때 서울지법은 편법으로 사건을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만 배당하였다. XXX 의원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최소한 합의부에만 배당하도록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검찰처럼 법원에도 아예 공안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은 “중요사무분담의 배분원칙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이 “공안사건 전담재판부의 설치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었고, 또 전체 판사회의에 올려서 토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²⁰⁴⁾

203) 「1996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피감사기관 : 서울고등법원 · 서울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1996.10.1), pp13-14.

204) 「1996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피감사기관 : 서울고등법원 · 서울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1996.10.1), pp48, 56.

과거 5공화국 시절 사법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안기부는 1988년 제2차 사법과동 이후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 갔다. 그러나 1996년 한총련 사태를 거치면서 청와대-안기부의 의중은 다시 사법부에서 관철되었다. 사실 1986년 10월의 건국대 사건과 비교할 때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사건배당, 구속학생에 대한 ‘무더기 실형’ 등, 종래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을 좌익동조 세력으로 비판하는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여 큰 물의를 빚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사법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소장법관들을 불신해 온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안기부의 그런 태도는 1997년 2월에 법원에 공안전담 판사를 두어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사들로 하여금 공안사건을 전담케 하자는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이런 희망은 그 해 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선택함으로써 실현될 수 없었다.

Ⅲ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1 임기 만료 시의 재임명

사법부의 독립성은 3권 분립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법관의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유지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3공 헌법: 98조; 유신헌법 102조; 5공 헌법: 104조; 현행 헌법: 103조)고 규정했다.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3공화국 헌법은 101조 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신헌법(102조 1항)에 와서는 “법관은 탄핵·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바뀌었다. 법관이 징계처분으로 파면되는 것이 가능해져 신분보장 자체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5공화국 시절에는 사법부에 대한 외압이 더 심해졌고, 법관의 신분보장은 더 열악해졌지만 헌법조항(104조 1항)만큼은 3공화국 시절의 조항이 다시 살아나 징계에 의한 파면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파면이 가능한 형의 범위를 금고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다.

아무리 군사독재정권이라 하여도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독재정권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법관 재임명 규정을 활용하여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걸끄러운 법관들을 걸러냈다.

정치적 격변과 그에 따른 헌법개정으로 법관의 재임명이 단행되면서 많은 법관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복을 벗게 되었다. 1972년 말 유신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에 따른 법관 재임명이 1973년 3월 31일자로 있었는데,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 등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물러났다. 이들 9명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헌 의견을 내어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²⁰⁵⁾ 일반판사로서는 356명이 재임명되었는데 41명은 재임명을 받지 못해 법원을 떠났다.²⁰⁶⁾ 이 중 상당수의 판사들은 1971년 사법과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민감한 시국사건에서 청와대나 중앙정보부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었다. 현재 이 당시의 법관 재임명에 관한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와 재임명 이전 해당 법관의 주요 판결을 검토해 볼 때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사는 20명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 및 직위	사 유
000	00고법부장	○71년 법관정풍운동 주도자 4명 중 1인 ○사법과동 당시 대구고법수석부장으로 극한투쟁 불사 선언 채택
000	00고법부장	○71년 법관정풍운동 주도자 4명 중 1인
000	00고법부장	○사법과동 당시 및 해직시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 판사
000	00민사부장	○71.3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국가 2억 배상 판결
000	00민사지법 부장판사	○1964년 무장군인 법원난입사건 촉발한 무더기 영장기각 ○1971년 신민당사농성사건 대학생 10명 무죄 외 무죄판결 다수

205) 『법원사』, 1995, p690.

206) 재임명을 받지 못한 판사 41명의 명단은 『조선일보』 1973년 3월 28일자를 참조할 것.

000	00형사부장	○71년 10월 22일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에서 피고 2명은 사형, 5명은 무죄
000	000지원장	○66, 67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당시 과월장병 사망자에 국가배상 판결 / 68.1.24 국가배상법 위헌 판시 ○1971 김대중 후보 자택 폭발물 사건 범인으로 구속된 김대중 후보 조카 김홍준(15)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서울형사지법부장)
000	00지법부장	○72년 10월 13일 국가상대 손해배상 ○71년 대선·총선 선거법 위반 공화당원 유죄
김인중	00고등법원	○사법과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대표로 민복기 대법원장 면담 ○71.12.22 재북 가족과의 안부편지 반공법위반 무죄
A	00고등법원	○70.11.26 재북 가족과의 안부편지 반공법위반 무죄 ○부친 자진월북·납북설 신원조회
000	00민사지법	○사법과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대표로 민복기 대법원장 면담
000	00민사지법	○신민당사 농성사건 무죄 판결 배석판사
목요상	00형사지법	○오적 사건 / 다리지 사건 등 무죄판결 ○사법과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대표로 민복기 대법원장 면담
000	00형사지법	○사법과동 당시 서울형사지법 판사대표로 민복기 대법원장 면담
김00	00형사지법	○신민당사 농성사건 무죄 판결 배석판사
000	00형사지법	○양헌 부장 배석판사 / 복직
B	00형사지법	○부친 신원사항
강인애	000지원	○형 강근호가 야당의원으로 반정부 / 형에게 정치 자금 제공
000	00지법	○뒤에 민변 부회장 / 대법관
000	00민사지법	○사법과동 때 민사지법 판사 중 가나다순으로 이름 맨 앞에/복직

한편 유신헌법 발효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법관의 정년이 고등법원장은 65세에서 63세로, 그 이하의 법관은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됨에 따라 자동퇴직해야 할 법관들이 이재옥 광주고등법원장 등 모두 11명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 중 왜 전원이 아니라 일부만이 재임명 탈락자로 분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7명은 재임명탈락자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외에 1-2년 사이에 정년을 맞게 될 법관 2명도 아마도 고령을 이유로 재임명 탈락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0여 명의 법관은 탈락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 중 고덕으로 표시한 김인중, A, B, 강인애 등 4인에 대한 자료가 국정원에 남아 있어 당시 중앙정보부가 ‘문제법관’을 어떻게 주시했는지를 알게 해 준다.

1980년 5월 20일 열린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사건 재판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것을 단순 살인으로 보느냐, 내란목적 살인으로 보느냐는 신군부의 입장에서는 12·12에서 5·17로 이어지는 군사쿠데타의 명분과 관련하여 사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사살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것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다면, 비록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 유고를 가져오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단순살인사건에 군대를 동원하여 정상적인 헌법절차를 짓밟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김재규의 박정희 사살에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낸 6인의 대법원 판사는 모두 타의로 대법원을 떠나야 했다. 가장 강경하게 소수의견을 주장한 양병호 대법원 판사는 모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수일간 말 못할 고초를 겪었고, 5공화국 헌법 공포(1980년 10월 27일) 발효 훨씬 전인 1980년 8월 9일자로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유흥 등 같이 소수의견을 낸 4명의 판사와 ‘의원면직’되었다. 소수의견을 낸 다른 한 사람인 정태원 대법원판사는 1981년 4월 17일 “임기만료”를 이유로 법관직을 떠나야 했다.²⁰⁷⁾ 이어 4월 21일자로 장순룡 광주고등법원장

207) 정태원은 1977년 1월 4일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정상적인 대법원 판사의 임기 10년의 만료가 아니라 구헌법에 의해 임명된 법관의 임기가 신헌법에 의해 자동만료를 이유로 법관직을 떠나야 했다.

등 법관 37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²⁰⁸⁾

이 당시 대법원은 재임명 탈락자 37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사』 p.853에도 명단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발전위는 『법원사(자료집)』 pp. 594-646에 실린 1천 여 명의 <정부수립 이후 퇴직법관 명단>에서 1981년 4월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여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를 직급 별로 분류하면

- 고법원장 포함 법원장 급 이상 6명
- 고법 부장 10명
- 지법 부장 및 지원장 15명
- 고법 판사 2명
- 지법 판사 4명

으로 되어 있다. 당시 언론 보도로는 법원장급 7명, 고법부장 10명, 지법부장 14명으로 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직이 대거 탈락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법관들도 새 시대를 맞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탈락시켰다”면서 “70% 가량이 품위손상 또는 공·사생활에서의 잡음 때문에 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기사는 “일반법관 중 두 명의 K씨가 소위 정치판사로 분류되어 탈락”했다고 보도했다.²⁰⁹⁾ ‘정치판사’라는 말이 정권에 협력하여 정치적 판결을 일삼은 이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법과는 달리, 정권의 비위를 거스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가리키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 때 재임명에서 탈락한 4명의 법관은 모두 K씨인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정리·분석한 긴급조치 판결에서 이들의 이름을 검토하였으나 특이사항을 찾지는 못했다.²¹⁰⁾

208) 『중앙일보』 1981년 4월 21일자.

209) 『중앙일보』 1981년 4월 21일자.

210)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7.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pp279-442.

1973년과 1981년의 대법원판사의 무더기 재임명 탈락, 1973년 소신과 소장법관들의 탈락, 그리고 긴급조치 시대에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권력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온 중견-고위법관의 신분이 정치권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1981년의 법관 재임명 등이 8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사이에 두 번이나 벌어진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와 판사 개개인을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두 차례의 대법원판사 무더기 탈락의 기준은 당국의 심기를 거스른 특정판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느냐는 것이었기에 그 기준 자체는 정보기관이 복잡하게 조사할 성질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신 후인 1973년의 법관 재임명은 아마도 1963년의 재임명에 따른 법관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신에 대한 계획과 후속조치가 아직 입안되지 않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법관들의 성향을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1971년 사법과동 이후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사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책의 일환으로 개별 법관들, 특히 사법과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시국사건이나 반공법 위반 등 공안사건에서 청와대나 중앙정보부를 자극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뒷조사를 하였다.

가 |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와 재임명 탈락

김인중 판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60년 고시 12회에 합격하여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1964년 대전지법 판사로 부임하여, 1968년부터 197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서울지법 수원지원 판사를 거쳐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1972년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1973년 변호사를 개업했다.²¹¹⁾ 그는 1971년 여름의 사법과동 당시 제일 먼저 집단 사표를 낸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대표로 최영도, 김공식, 목요상, 금병훈, 홍성우 판사 등과 함께 모두 6인이 민복기 대법원장을 만나 소장판사들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때 언론이 김인중의 이름을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가 평판사의 대표자로 알려졌다. 6인의 대표 중 홍성우와 김공식은 사법과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뒤 깊은 좌절감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 같이 합동사무실을 차리고 변호사 개업²¹²⁾을 했기 때문에 재임명 당시에는 6인의 대표 중 김인중 등 4인 만이 현직에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김인중 판사는 사법과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후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밖에도 김인중 판사가 내린 판결 중 중앙정보부가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을 판결을 하나 찾아 볼 수 있다. 사법과동이 마무리되고 얼마 후인 1971년 12월 22일 서울형사지법 단독판사로 재직 중이던 김인중 판사는 1971년 12월 22일 “이북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안부편지를 받았다 하여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OO 피고인 (의사)에 대해 ‘가족들로부터의 단순한 안부편지는 반공법 제4조 1항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올림픽 관람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 사람인 지인을 통해 이북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1970년 초 관광차 내한한 일본인 선배를 통해 이북으로부터 안부편지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었다.²¹³⁾ 재임명에서 탈락한 A 판사의 경우, 김인중 판사에 앞서 같은 유형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여 중앙정보부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11) 조선닷컴 인물자료.

212) 2006년 10월 18일, 강남구 서초동 법무법인 서초에서 행한 홍성우 변호사와의 면담.

213) 『중앙일보』 1971년 12월 22일자.

김인중 판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보고서 제목은 『판사비위관계철』 이고 그 아래 괄호 안에 ‘김인중’이라 쓰여져 있다. 동 자료에는 『판사비위관계철』 이라 쓰여 있는데 그 아래 ‘⑦’이라 번호가 붙어 있어 중앙정보부가 여러 명의 판사들에 대해 ‘비위’를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²¹⁴⁾

이 자료철에는 누가 비위에 관해 제보나 투서를 하였는지,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김인중을 조사하라는 ‘하명’을 받았는지 등 어떤 경위로 중앙정보부가 김인중 판사에 관한 ‘비위’를 조사하게 되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김인중 판사의 ‘비위’를 조사해 간 방식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비위 첩보에 기초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김인중이라는 인물을 정해 놓고 그가 근무했던 지역에 수사관을 출장보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또 그의 동창들을 중앙정보부로 소환하여 사건을 청탁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즉 1972년 9월에 중앙정보부가 김인중 판사의 ‘비위’를 조사한 것은 어떤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인중의 주변을 “조사하면 다 나온다” 식의 “표적 사찰”이었던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 내사’는 김인중의 근무지에 따라 대전 및 홍성·보령 시절, 수원 시절, 서울 시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중앙정보부는 1972년 9월 3일 김인중 판사가 근무했던 충남 대전 및 홍성·보령군 일대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9월 10일까지 김인중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김인중은 1964년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그의 초임판사시절부터 “사건 판결을 위요하고 피고 또는 그의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사실을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사에 들어간 것이다. 내사 방법은 김인중이 대전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 입회서기였던 000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말한 ‘비위’ 혐의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었다.²¹⁵⁾

214) 『판사비위관계철』

215) 중앙정보부, 「김인중에 대한 비위 내사 결과 보고」 (1972.9.12)

『판사비위관계철』에는 000의 진술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는데, <진술서(1)>이라 제목이 붙은 것은 “본인은 1972.9.5 중앙정보부 대전 대공분실에 출두하여 김인중 판사 수뢰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날짜가 처음에 9월 4일자로 작성되었다가 다른 필기구로 5일로 고쳐 쓴 것이고, <진술서(2)>는 처음부터 9월 5일로 되어 있다. 한편 서울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000의 진술을 토대로 이미 9월 3일에 대전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중앙정보부는 9월 3일 이전부터 000을 조사하고 있었다.

<진술서(1)>과 <진술서(2)>를 비교해 본다면 <진술서(1)>은 너무 허술하고 <진술서(2)>는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진술서(1)>에서는 연도도 부정확하게 00년 경 예컨대 교통사고 사건으로 피고 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집행유예나 보석을 해 주었다는 식인데, <진술서(2)>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 피고인의 이름 뿐 아니라 주소와 생년월일, 판결문 주문까지 다 기재되어 있다. 사건의 내용도 연도도 정확하지 않았던 <진술서(1)>과는 달리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까지 다 기술하였고, 해당 사건이 교통사고일 경우는 차량 번호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심지어는 집 주소를 통·반까지 기재하고 있다.²¹⁶⁾ 이런 내용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사건을 취급할 때도 기억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진술서(2)>에 기록된 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진술서(1)>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기록을 찾아서 그 기록을 보고 조00로 하여금 <진술서(2)>를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9월 5일자로 작성된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 중간보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조치’ 사항으로 “가. 본 건 판사의 수뢰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000의 신병은 대전분실에 확보하고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나. 본 진술내용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형사과에 보관중인 본건 관련기록을 확인 증거 보장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있다.²¹⁷⁾

216) <(000) 진술서(1)>, <(000) 진술서(2)>, 『판사비위관계철』 (1972.7)

217)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 중간보고』, 『판사비위관계철』 (1972.7)

그러나 대전 및 홍성지방에서의 내사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김인중 판사의 입회서기였던 000를 중앙정보부 대전분실로 연행하여 전후 사정을 볼 때 최소 1주일 정도를 조사하여 김인중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상기 판사 김인중은 대전지법 형사단독판사로 재직 시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었음”이라며 모두 8건, “도합 28만원을 수뢰한 사실이 있는 자임”이라고 중간보고를 올렸다.²¹⁸⁾ 그러나 1주일 뒤인 9월 12일자 <결과보고서>에서는 000의 진술을 토대로 김인중 판사에게 금품을 주고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10여건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피고 또는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녔으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없거나 여행 중으로 만나지 못해 결국 아무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건 중 두 건에 대해서 “계속 조사 증뢰사실 유무에 대하여 규명함이 가하겠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²¹⁹⁾

중앙정보부는 김인중 판사의 대전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김인중이 대전지법 판사로 재직 중 “월 평균 2회 정도 만나 다방,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음주”도 하는 등 가깝게 지낸 약사 L를 중앙정보부(아마도 대전분실)로 연행하여 조사했다. 그는 1965년 11월 경 대전지법 검찰청에서 강력한 매독주사약을 팔다가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 구속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앞의 000의 진술에 김인중 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풀려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L은 김인중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가족, 친지, 친구들이 면회 왔을 때 이들을 통하여” 김인중 판사를 찾아가서 “부탁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²²⁰⁾

218)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 중간보고』, 『판사비위관계철』 (1972.7)

219)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 내사 보고』, (1972.9.12) 『판사비위관계철』 (1972.7)

220) <L진술서> (1972.9.6) 『판사비위관계철』 (1972.7)

L과 같은 날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B는 L의 외숙으로 L과 같이 약국을 경영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인중의 ‘비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보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채초[최초]에는 사건 할당[할당]이 법원 김인중 판사에게 할당대였다가[할당되었다가] 김판사 자신이 동기동창이기 때문에 사건심리를 기피하여 결국 박봉규 판사에게 [에게] 넘어가게 됐[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충남 일원에서는 같은 혐의로 약국 일곱 곳이 적발되어 모두 7명이 구속되었는데, 6명은 즉시 석방되어 영업정지 정도의 처분을 받았지만, 자신의 조카인 L만 1개월가량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L이 “남달리 중형을 받은 것은 동창생인 김인중이 현직 판사로 있었고 또한 L이 김인중을 믿고 검사 앞이나 판사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중형을 받은” 것이라며, “김인중 판사가 당시 대전지법에 근무하고 있음으로서 오히려 내 조카인 L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돈은 아니지만, 박봉규 판사의 입회서기였던 앞의 000에게 L의 석방 이후 돈은 아니지만 “인사선물로 소고기 두 근, 정종 1병”을 주었다고 말했다.²²¹⁾

수원지방으로 출장을 나간 수사관은 대전지방으로 나간 수사관에 비해 보다 신중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역시 같은 방법으로 김인중 판사가 수원지원에 재직할 당시의 입회서기를 조사했고, 김인중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3건의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했다. 그 중 한 건은 확인해 보니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은 것이었고, 다른 12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으나 비난점 미발견”이라고 결론지었다.²²²⁾ 김인중이 10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을 받았다는 첩보는 김인중 판사가 어떤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그 사건의 고소인이 틀림없이 판사가 돈을 받고 풀어준 것이고 어떤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얘기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221) <B진술서>, (1972.9.6), 『판사비위관계철』 (1972.7)

222) 「김인중에 대한 비위내사 보고」, (1972.9.11), 『판사비위관계철』 (1972.7)

수원지원 시절 김인중의 입회서기 중의 한 사람인 L씨는 다른 법원에서 입회서기로 있다가 1972년 7월 뇌물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나 현재 공판에 계류 중인 불안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중앙정보부는 김인중 판사가 1970년 추석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1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씨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새로 수원지원에 가서 “업무에 익숙치 못하여 사건기록 처리에 기일지정 및 소환에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한다는 조건”으로 김인중에게 1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²²³⁾ 입회서기가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와 상관없이 자기를 잘 봐 달라고 판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진술은 아마도 공판에 계류 중인 불안한 상태의 L씨에게 중앙정보부가 김인중 판사의 수뢰 사실을 끈질기게 추궁하자, L씨가 김인중 판사에게 없는 일을 뒤집어씌울 수는 없어도 고육책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의 진술서는 모두에는 1972년 9월 9일 중앙정보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 날인 난에는 날짜가 9월 11일로 기재되어 있다.

중앙정보부는 김인중 판사의 ‘비위’를 캐기 위해 입회서기 뿐 아니라 김인중 판사의 대전고등학교 또는 서울법대 동창생 4명(3명은 고교와 대학 모두 동창)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그 중 두 사람은 고시에 합격하여 중앙부처의 과장으로 있는 엘리트 관료였다. 동창생들에게는 주로 사건 관계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는가를 캐물었다. 이들 동창생에 대해서도 중앙정보부는 인쇄된 조서 용지에 자술서 형식으로 진술을 받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찌고 매 장마다 간인을 찍어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다.

중앙정보부는 구체적 비위첩보도 없는 상태에서 사범과동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이며, 반공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김인중 판사를 표적으로 삼아 그와 같이 근무했던 입회서기들, 그가 집행유예나 보석을 내린 모든 사건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부처 과장 2명을 포함한 동창생들을 소환 또는 연행하여 조사하는 등 김인중 판사의 주변을 조사

223) <(이00)진술서> (1972.9.6) 『판사비위관계철』(1972.7)

했다. 그러나 김인중 판사의 ‘비위’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의 동창생인 약사 L 사건의 처리에서 보듯이 김인중 판사는 공사의 구분이 분명한 모범적인 법관임이 밝혀지면서 김인중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후에 김인중 판사는 재임명에 탈락했다.

나

A 판사에 대한 신원조사와 재임명 탈락

A 판사는 1937년 생으로 1960년 고시 12회로 합격하여 해군에서 법무관을 마치고 1964년 춘천지원 원주지원에서 판사로 출발하여 1969년 서울형사지법, 1970년 서울민사지법을 거쳐 1972년 서울고법 판사가 되었다가 1973년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A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0년 11월 26일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문이다.

그런데 A 판사의 부친은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해방 후 광주지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지검 검사가 되었는데, 1950년 세칭 법조프락치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²²⁴⁾ 그러나 항소심 재판 진행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그 후 북으로 갔는데, 그가 자진월북한 것이냐 납북된 것이냐는 A의 신원조회와 판사 임용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였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3월 23일 아래와 같은 사실조사 지시를 내렸다.²²⁵⁾

224) 법조프락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조야사』 상, 2002, 법률신문사, pp123-140을 참조할 것.

225) 중앙정보부, 「사실조사지시」 (1971. 3. 23)

중앙정보부(71.3.23)

제목: 사실조사지시

1. 별첨에 의한 배후 불온한 자 신원척보가 있어 사실조사 지시하니 4.15까지 조사결과 보고할 것

가. 인적사항

..A00

2. 첩보내용

본명은 전남 강진군 출신으로 공안업무 담당 판사인 바

1) 본명의 부, B 검사는 6.25전 전남 광주지법 근무 당시부터 남로당에 비밀입당한 자이고 6.25전 국회 뿌락치 사건에 관련 입건되어 부역 중 6.25사변으로 탈옥 9.28 수복시 자진 월북하여 ... 현재 부역 중에 있다 함

2) 본명은 일자불상경 판사 임용시 배후 불온관계로 임용에 지장이 있자 본명의 장인 측근 예비역 대령 명불상자가 당부 인사에게 부탁하여 신원이 이상없는 양 통과되어 현직에 있는 자임

3) 본명은 1970.11.27 (한국일보 참조) 국가보안법 등의 재판에 함에 있어 일본을 통해 북괴 지역에 안부를 주고받아 기소된 정정규를 북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북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안부 편지가 반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자임

3. 조사사항

가. 본명의 가족 특이자의 신원성분 및 행적

나. 본명의 판사임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적 및 신원성분

다. 본명의 임용 당시 신원보증 관련내용

라. 본명의 최근 동향 및 중요 접촉 인물

마. 기타 참고사항

첩보내용 3항을 보면 중앙정보부가 왜 A 판사에 주목하는지가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본 보고서가 인용한 『한국일보』보다는 같은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좀더 뚜렷이 나타난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단순한 서신연락에 대해 앞서 반공법 5조 1항 (회합·통신)을 적용,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반공법 4조 1항 (찬양·고무·동조)으로 적용법조를 바꿔 기소했었다”는 것이다.²²⁶⁾ A의 판결이 만약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중앙정보부 등 공안당국은 앞으로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서신왕래를 해도 이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중앙정보부의 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명약관화했다.

바로 이 때문에 중앙정보부는 A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마침 검사였던 그의 부친이 남로당원으로 투옥되었다가 자진월북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하여 판사가 되었는가에 의문을 품고 A의 신원보증 경위와 최근동향, 접촉인물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971년 5월 7일자 「신원특이판사 내사보고」는 그 결과이다.²²⁷⁾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부 담당관이 A 판사의 아버지인 B 전 검사와 서울지검에 같이 근무하면서 그를 구속시킨 바 있는 J변호사를 찾아가 B 검사의 행적과 성향에 대해 문의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J변호사는 B 검사 검사들을 의용군에 입대시키는 등 부역을 하다가 “9.28 괴뢰군 패퇴시 자진월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년전 모인사가 당시 B검사 사건을 취급하는 본인을 찾아와 A판사의 신원보증을 부탁하여 즉석에서 거절한 바 있다”고 진술했다.

A 판사의 신원조회와 관련해서는 “치안국 기록을 열람한 바 요시찰에 편입된 바 없고 관할 성북서에서도 요시찰인으로 사찰한 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964년 6월 29일 중앙정보부에서 대법원장 앞으로 발송한 신원회보 내용의 ‘사상관계’란에는 “부 B 검사는 1949, 국회 뿌락치 사건으로 검거 복역 중 6·25당시 탈옥 괴뢰치하에서 검사협회 부위원장으로 부역 후 자진월북한 자임”이라고 기록되었고 “소견란에는

226) 『동아일보』 1970년 11월 27일자.

227) 「신원특이판사 내사보고」, (1971.5.7)

온건이나 불온 등의 판정 없이 회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64년 10월 14일 “당부에서 대법원에 통보한 신원회보 내용”을 보면 “본명 부 B검사는 범조계 뿌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제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 후 6.25당시 신병으로 신당동 327 자가에 요양 중 1950.7.15 오후 2시 북괴 정치보위부 명불상 청년 2명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됨”이라고 기록하여 앞의 신원회보에서 ‘자진월북’이라 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기록을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담당관은 이런 사실을 대법원 총무과에 보관 중인 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왜 중앙정보부가 1964년에 서로 다른 내용의 신원회보를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 보고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첩보에 의하면”이란 단서 하에 “해군본부 오OO 대령이 본명 임용 시 신원문제로 당부 모인에게 부탁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치 못하였음”이라고 덧붙였다. 한 편 이 보고서는 “본명에 대하여 해군방첩부대에서는 본명의 부 B검사는 6·25당시 납치 행불되었고 본명의 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 병류에서 삭제하였음”이라는 사실을 ‘기타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조치의견’으로는 “본명 계속 내사 특이사항 입수하여 추보하겠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그러나 발전위는 이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A판사는 1973년 3월의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 사안은 연좌제와 관련된 것인데, 연좌제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해군방첩부대가 이 사안에 대해 아버지의 좌익연루 의혹에 대해 “본명의 부역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사찰블랙리스트에서 이 사안을 삭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 사실 연좌제는 슬하계 폐지가 공약된 제도였다.

* 정부·여당 요인의 연좌제 폐지 주요 발언

발언자	일 시	장 소	내 용
박정희	1963	대통령선거 공약	연좌제 폐지
박정희	1963	대통령 지시각서	연좌제 폐지
길재호 공화당사무총장	1966.5		신원조회에서 친족관계 기재 않도록
엄민영 내무장관	1966.5		연좌제 이미 폐지
공화당	1966.10		국회에 연좌제 폐지법안 내기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1967.1	정부여당연석회의	24만명 중 5만명 이미 폐지, 연차적 철폐 예정
백두진 국무총리	1971.2	취임 기자회견	실질적 폐지
박경원 내무장관	1971.3		연좌제 폐지, 신원조사 대폭 완화

그러나 당시 중앙정보부는 연좌제와 신원조회를 걸끄러운 인물을 공직에서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특히 A판사에 대한 조사는 중앙정보부장의 폐지 보고가 있고 4년 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이 다시 연좌제 폐지를 공언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에 연좌제 문제로 인하여 재임명에서 탈락한 케이스로는 이건호 판사 이외에 P판사의 사례가 있다.

다

P 판사에 대한 신원조사 재검토와 재임명 탈락

이 시기에 연좌제 문제로 인하여 재임명에서 탈락한 사례로는 A판사 이외에 P판사의 사례가 있다. P판사는 1973년 3월 재임명 탈락 당시에는 OO형사지법에 근무하고 있었다. 유신 직후인 1972년 11월 2일 중앙정보부는 “다음 군 출신 장교의 군복무 당시 신원을 조회”한다면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바 있는 P판사의 신원조회를 지시하였다. 이어

11월 27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본명의 부 XXX은 사상불온자로 부역 사실이 있다는 미확인정보가 있는 자임으로 6·25 전후 및 1·4 후퇴 전후 행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부역사실 여부를 규명할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²²⁸⁾ 중앙정보부가 P판사의 신원조회를 다시 지시하게 된 것은 “본명의 생부가 과거 남로당 남제주군 대정면 간부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 P가 신원상 흠결로 판사 임용이 불가함에도 신원조사 착오로 부당하게 임명되었다 함”이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²²⁹⁾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은 OO 서부경찰서는 “CIA 업무 협조 의뢰에 의하여 아래 사람을 임의동행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합니다”라면서 P판사의 아버지 XXX를 연행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XXX는 한국전쟁 당시 잠시 무등산에 입산하였다가 자진 하산하던 중국군에 체포되어 전남경찰국에 이첩되었다가 20일 간 심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가, 1955년 2월 뒤늦게 이 사실과 관련하여 부역혐의로 전남경찰국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을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죄질이 경하고 전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복역 중 행장이 모범이 된다하여 61.8.15 특사로 석방”된 바 있었다.²³⁰⁾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시에는 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어찌된 이유인지 P판사의 경우 연좌제를 적용하여 이를 문제삼았다. 중앙정보부 실무자는 서부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접수한 직후인 1월 8일 “본건 상기명은 공산주의 활동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바 있는 사람의 친자임으로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판사 재임명시 배제토록 함이 가하겠읍니다”라는 보고를 올렸다.²³¹⁾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담당부서는 “본건 상기명은 극렬 좌익 활동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바 있는 자의 친자로서 신원조사 착오로 인하여 판사 임명이

228) 중앙정보부, 「신원조사 지시」, 1972년 11월 27일.

229) 중앙정보부, 「중요보고-신원특이판사에 대한 내사결과보고」, 1973년 1월 12일.

230) 서부경찰서, 「사실조사보고」.

231) 중앙정보부, 「신원특이판사 내사보고」, 1973년 1월 8일.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법원에 신원자료로서 통보하여 판사 재임명시 배제토록 함이 가하겠습니다"라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²³²⁾

이 이후 중앙정보부가 대법원에 보낸 ‘신원자료 통보’ 등에 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P판사는 1973년 3월 31일자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중앙정보부의 방침대로 탈락하고 말았다. 한 가지 의문은 당시 P판사가 OO형사지법에 배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탈락 이유가 된 연좌제가 근대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이고, 부친의 부역혐의란 것도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아주 높은 것이라 할 수도 없는데 유독 그가 신원조회 ‘착오’를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이다. 법관 신원조사 기록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아버지나 할아버지, 삼촌 등이 부역 혐의로 “아군에 의해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요 공안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000 판사에 관해 안기부의 ‘신원특이사항보고’에 따르면 “부친 000는 해방 후 남로당 입당, 보도연맹원으로 활동타 6·25 당시 아군에 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1973년 3월 31일의 법관 재임명을 무사히 통과했다.

라

강인에 판사에 대한 비위조사와 재임명 탈락

유신헌정은 야당정치인의 동생인 현직 판사를 “반정부적이며 악덕 법관의 표본적 인물”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비리를 캐내어 의법처리하려 하였는데, 이렇다할 비리가 나오지 않아 공소제기가 불가능해지자 그를 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강인에 판사는 신민당 국회의원 강근호의 동생이었다. 강근호 의원은 문공위 소속이었음에도 실미도 사건, 중앙경리단 부정사건, 공군의 금괴밀수 사건, 해군 함정 월북 사건 등 국방 분야의

232) 중앙정보부, 「중요보고-신원특이판사에 대한 내사결과보고」, 1973년 1월 12일.

민감한 사항을 국회에서 많이 질의하였다. 그는 1972년 10월 17일 유신 이후 보안사로 연행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는 유신 후 군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은 야당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당한 편이었는데, 머리를 맞아 17시간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대퇴부 골절신경통으로 다리를 절게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²³³⁾

강인애 판사는 형인 강근호 의원이 군수사기관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나오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토지를 급히 처분하고자 했다. 이 토지는 과거 그가 군법무관 제대 직후 판사로 임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장인의 토지 관련 소송의 법률자문을 하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였다. 이 토지에는 80여 세대의 주민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살고 있었는데, 강인애 판사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대지명도 가처분 신청을 토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이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법원인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돈이 급한 강인애 판사는 세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강권을 동원하여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이 “동절기이며 유신과업 수행과정에 시한의 여유를 두고 타협할 것을 제의” 하자 강인애 판사는 “10월유신과 내 재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내 형이 지금 매를 많이 맞아 병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절하였다고 한다.

중앙정보부는 강인애 판사가 문제의 토지를 입수한 경위부터 파악하면서 강인애 판사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이 토지는 원래 양녕대군의 위토 20만평의 일부인데, 일제시기에 일본인에게 저당잡혔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일본인에게 넘어가게 되자 문중의 유력인사 130인이 돈을 각출하여 찾아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종종 소유냐, 130인 측 소유냐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온 토지의 일부분이었다. 강인애 판사의 장인이 토지 분쟁의 한 쪽 대표였고, 강인애 판사는 그에게 법률자문을 해 주고 승소케한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내사에 착수한

233) 이경제, 『유신쿠데타』, 1986, 일월서각, pp40-41.

이후인 1972년 12월 23일 양녕대군 후손의 문중인 지덕사 이사 이OO는 강인애 판사가 양녕대군 위토의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장인의 “변호인으로 위장선임되어 동 소송 수행에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변호료조로 지덕사 토지 6,030평, 시가 189,6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근거로 중앙정보부는 정식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혹시 강인애 판사가 판사 임명 이후에 변호인 자격으로 소송에 간여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명의 이전이 된 이 토지를 변호사 수입료로 볼 것인지,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증여라면 증여세를 탈세한 것은 아닌지 여부, 세금 부과가 누락되었다면 강인애 판사가 세무공무원들과 결탁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비리를 포착하려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강인애 판사가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그를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소유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자체 조사에서도 당시 증여세 미부과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강인애 판사 간에 청탁과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폭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일 뿐 강인애가 판사라는 사실도 중앙정보부의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본건 강인애 판사는 법률 단속법 위반 및 증여세 등 포탈혐의가 농후함은 물론, 평소 반정부적이며 악덕법관의 표본적 인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보강 차제 본명을 검찰로 하여금 의법처리케 함이 가하겠습시다.” 라고 결론지었으나,²³⁴⁾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현직 판사를 검찰이 기소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야당 의원의 동생으로 형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일이 있는 강인애 판사는 다행히 기소되는 일은 면했으나, 1973년 3월 31일의 재임명과정에서 탈락했다.

234) 중앙정보부, 「법관비위첩보보고」, 1972년 11월 25일.

2 문제 사건과 문제 판결

김근태에 관한 재정신청을 처리, 고문경관들을 재판에 회부한 이후 지방좌천에 강제사직이라는 불이익을 당했던 조열래 판사 사례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가 한달 동안 안기부의 미행을 당하기도 한 이일규 대법원 판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안기부에서 수사한 주요 시국사건·공안사건 판결과 관련된 압력은 담당 판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일단 사건이 기소되고 담당 재판부가 구성되면 우선 공판상황보고를 통해 재판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춰 공판 대책을 세웠다. 중앙정보부·안기부에서 의도하는, 혹은 요구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공판 대책은 재판부에 문의하거나 공판을 방청하는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압력을 넣는 차원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다리』지 사건 무죄판결과 관련 많은 압박을 받았던 목요상 변호사는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이에 대해 “그 사람들(중앙정보부 직원)은 수시로 판사실에 찾아와서 ‘그 재판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혹은 ‘이게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외압을 준다.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압력이다”²³⁵⁾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렇게 재판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²³⁶⁾ 당국의 뜻과 다르게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담당 판사에게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한다. 이때

235) 2006년 11월 9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236)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 행사하는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압력과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송씨 일가 사건 사례 및 안기부와 변호권 침해 사례 참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담당 판사의 비위 조사이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담당 판사의 비위를 조사해 이를 약점으로 삼아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보부·안기부에서 비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담당 판사에게는 충분한 압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이러한 비위 조사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는 많은 경우 직접 전면에서 나서기보다는 주로 검찰 혹은 경찰이나 보안사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심을 표명하고 비위 조사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중앙정보부·안기부는 담당 판사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압력을 행사한다. 이는 무죄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다른 판사들에게 “당국의 뜻에 어긋난 판결을 할 경우 누구나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 | 예방으로서의 압력과 비위 조사

판결이 나오기 전, 담당 판사나 재판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당연히 중앙정보부·안기부 혹은 정권의 뜻대로 판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기부 직원이 직접 찾아오거나 법원장 등 상층부를 통해 전달되어 오는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소장에 적용된 법조항 등만 봐도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도 등으로 지나치게 무리한 법적용이 이루어진 경우나 판사의 합리적 판단과 양심상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판사나 재판부가 고민하는 기색이 보일 경우,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담당 판사나 재판부 입장에서 가장 강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비위 조사다.

“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는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몸 조심했다”²³⁷⁾는 목요상 변호사의 말처럼 어느 방향에서 어떤 꼬투리가 잡혀서 비위 조사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큰 압력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을 지라도 자신에 대한 비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무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혐의로 종결되기는 했지만 KNCC 선교자금 횡령사건 재판 도중 금품 수수 등과 관련, 비위 조사를 당했던 K판사의 사례가 이러한 예방으로서의 압력과 비위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1) 선교자금 횡령사건 담당 판사 비위 조사

유신시대에 중앙정보부가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법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75년의 이른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선교자금 횡령사건이 있다. 1975년 4월 3일 서울 시경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관석 목사,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목사, 동 실무자 권호경 목사,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조승혁 목사 등을 연행했고, 박목사와 조목사는 7일, 김목사와 권목사는 9일 각각 구속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관련하여 농성 중이던 기자들이 회사 측에 의해 강제해산(3월 17일)된 직후였으며,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해 고려대학교에 군대를 주둔시키고(4월 7일), 이어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4월 8일)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 사형을 집행한 바로 그 당시였다. 경찰에 의해 구속된 네 목사가 개신교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당시 “김관석 목사는 한국교회 인권운동의 대표적 기구인 NCC를 대표하며,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목사는 기독교의 사회선교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특별히 도시빈민을 선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주요인물이며, 조승혁 목사는 기독교 사회행동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의 주요인물인 동시에 그 자신은 산업선교의 선구적 인물의

237) 2006.11.9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한 사람”이었다.²³⁸⁾ 이들 중 박형규 목사와 권호경 목사는 1973년 4월 이른바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예비음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75년 2월 15일 풀려났다가 채 두 달이 안 되어 다시 구속된 것이다.²³⁹⁾

당시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에서 보듯이 반유신, 반독재운동에 나선 청년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갔지만, 종교인들의 반유신운동도 좌경용공으로 모는 것이 곤란했다. 유신정권은 부활절 예배에서 유인물 돌린 것을 내란예비음모라는 거창한 죄목으로 기소하여 박형규, 권호경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김형기 부장판사)하였지만²⁴⁰⁾, 이 엄청난 죄명과 그런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은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때문에 유신정권은 종교인들의 반정부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횡령죄를 적용하여 이들 종교인들에게 파렴치범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실제 수사는 서울시경 지능계에서 담당하였지만, 사건을 담당한 K판사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보이자 중앙정보부가 적극 개입했다.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관석 목사의 명의로 독일의 기독교 원호단체인 세계급식선교회(BFW: Bread for the World)로부터 청계천 등 빈민지역 선교를 위한 자금으로 2,700여 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BFW로부터 받은 원조자금 중 4백여 만원을 순수한 선교목적을 떠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생계비로 지출한 것은 배임행위”라며 기소한 것이다.²⁴¹⁾ 그러나 변호인들은 “검사의 공소장에도 피해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횡령과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마땅하다”는 논지의 변론을 폈다.²⁴²⁾

2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 1987, p587.

239) 박형규 목사,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실무자들, 그리고 조승혁 목사는 이른바 선교비 횡령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만기출옥한지 수개월이 안 된 1976년 6월 「반공법위반」 혐의로 다시 남산으로 연행되어 한 달 여 동안 구금되었다고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폭력을 이기는 자유의 행진』, 1987, 민중사, p87.

240) 『중앙일보』 1973년 9월 26일자.

241) 『중앙일보』 1975년 8월 2일자.

242) 『중앙일보』 1975년 8월 30일자.

특히 7월 5일에 열린 3회 공판에는 BFW의 사무총장 슈미트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교위원회가 인권운동 등 스스로 결정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이나 사람 등에게 돈을 주었을 경우 그것은 그 자금의 목적에 부합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말했다.²⁴³⁾ 그에 의하면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위해 선교비를 사용한 것은 자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된 이들 - 특히 박형규 목사나 권호경 목사처럼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일을 하다가 구속된 이들이 빨리 석방되도록 돈을 사용한 것은 원래의 돈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도 아니라고 증인신문에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WCC의 진상조사단으로 방한한 폰 바이제커 목사(독일기독교총회 위원)는 “어린애라도 30분이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논평했다.²⁴⁴⁾

그러나 재판은 자꾸 지연되었다. 이 사건은 첫 공판부터 예정된 날짜에 열리지 못하는 등 유신 이후 법원이 다룬 시국사건 중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다음으로 중앙정보부가 많이 간여한 사건이 되었다. 조승혁 목사에 따르면 사건의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공안부 A검사는 수사 초기에 “오늘 조사는 다 끝내고 오늘밤 석방될 것입니다”라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 때 “KCIA M검사”가 이 검사의 방에 왔다가 이 말을 듣고 이 검사에게 “당신이 뭐냐, 당신이 정치하는 것이냐, NCC 횡령사건을 석방시킨다고 누가 석방시키라고 그래”라고 거세게 항의하여 분위기가 역전되고 징역까지 살게 되었다고 한다.²⁴⁵⁾

이 사건 재판이 지연된 사정에 대해서는 「NCC 구호금 횡령사건 담당 판사 K동향보고」라는 1975년 5월 22일자 중앙정보부의 보고서가 남아

243) 이석태 외,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 인권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 문학과 지성사, 1998.

24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 1987, pp604-605, 622.

245) 조승혁,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 정암문화사, 2005, p.158. M은 서울지검 검사로 1974년부터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앙정보부에 상주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수사했다.

있다.²⁴⁶⁾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4월 16일 서울지검 A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5월 6일 “서울형사지법 13부 단독 재판장 K판사가 지정”되었고, 첫 공판은 “5.30 10:00 공판이 개정(당초 6.3)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공판기일이 6월 3일에서 4일 앞당겨진 것은 “75.5.28-75.6.2간 동 사건 진상조사차 WCC 대표 바이체커 등 4명이 내한”하기 때문에 아마도 담당 변호인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체재하는 기간에 동 사건 공판 개정(5.30)이 우연히 일치되므로써 담당 변호인 등의 작용으로 동 조사단이 공판상황을 방청하여 사건 전모를 파악케 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담당 검사 A씨는 5월 21일 14:00경 서울형사지법 청사 복도에서 “우연히 K판사를 만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때 K판사는 A검사에게 “NCC 사건 담당이냐”고 하면서 “피의자들을 보석시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결(공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소장을 보니 무죄가 되기 쉽겠더라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전시 담당 K판사의 언동내용을 분석컨대 동 사건을 무죄선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무죄가 될 경우

- 동 사건 관련자 등은 의기양양하여 동 사건처리에 대한 사항을 국제기구를 통해 악선전하하므로써 국위손상이 우려되고
- 동 사건과 관련 NCC 실행위원 등의 왜곡된 선전이 교계에 진실로 받아들여 종교탄압의 인상을 질게 하며
- 반체제 위해분자(교계) 등의 대정부 비난구호로 삼을 계기가 조성될 우려가 예상됨

K판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또 다른 보고서가 남아 있어 당시의 사정을 유추하게 해 준다. 「K판사 비위 첩보에 대한 관련자조사 결과보고」라는 1975년 8월 27일자 보고서는 중앙정보부가 처음 K판사가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할지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후 선고 공판 직전까지 석 달이 넘게 그의 ‘비리’를 캐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K판사는

246) 중앙정보부, 「NCC 구호금 횡령사건 담당판사 K동향보고」, (1975.5.22)

선교비 횡령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던 7월 28일 위증교사 및 무고죄로 구속기소된 조OO라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였는데, 중앙정보부는 K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가족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고 석방된 조OO와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그의 매제 뿐 아니라 2년 여 전에 자갈 채취 허가 관계로 조OO와 접촉하였던 인물까지 잡아 들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K판사와 이들 사이에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금품 부정거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들을 훈방하였다는 것이다.²⁴⁷⁾

발전위원회는 K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K변호사는 그 당시의 일은 “생각만해도 괴롭다”면서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였던 조승혁 목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K판사는 “KCIA에 의해서 두 번 가택수사를 당하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²⁴⁸⁾ 이 사건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홍성우 변호사는 “K판사의 시골 처가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력을 가해서 K판사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대요. 그때 K 판사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후에 저에게 말하더군요”라고 회고했다.²⁴⁹⁾ 홍성우 변호사는 발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K판사 당시 외부 압력이 하도 심해 “대법원 앞에 가서 목을 매고 죽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그가 나중에 변호사가 된 뒤에 들었다고 진술했다.²⁵⁰⁾

6월 3일에서 5월 30일로 앞당겨졌던 첫 공판은 바이제커 목사 등 WCC 진상조사단이 한국을 떠난 뒤인 6월 10일에야 열렸지만 장내가 소란하다는 이유로 5분 만에 폐정되었다. 기독교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재판관을 보기 위해 200명 정원의 법정엔 350명 가량이 몰렸기 때문이다.²⁵¹⁾ 7월 25일에 열린 5회 공판 때는 피고인과 증인을 호명만 하고

247) 중앙정보부, 「K판사 비위 첩보에 대한 관련자조사 결과보고」 (1975.8.27)

248) 조승혁,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 정암문화사, 2005, pp160-161.

249) 이석태 외,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 인권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 문학과 지성사, 1998.

250) 홍성우 변호사와의 면담, K판사는 1980년 11월 15일 수원지법 판사로 있다가 의원면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원사(자료집)』, 법원행정처, 1995, p596.

251) 이석태 외,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 인권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 문학과 지성사, 1998.

차기공판으로 연기하였는데, “이 공판연기는 판결공판을 연기하기 위한 재판부의 저의에서 나온 처사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²⁵²⁾ 8월 2일에 열린 6회 공판에서 검찰은 김관석 목사에게 징역 3년, 박형규 목사에게 징역 5년, 조승혁 목사에게 징역 4년, 권호경 목사에게 징역 5년의 형을 구형했다.²⁵³⁾ 8월 16일에 열린 7회 공판은 당연히 선고공판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갑자기 직권으로 증인 2명을 채택하면서 변론재개를 선언했다.²⁵⁴⁾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변호인의 요청도 없이 재판장의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선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음날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준하도 이날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법정에 나왔었다. 네 명의 성직자들을 배임·횡령의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해서는 선교자금의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했는데, 당시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의 회계실무자가 장부를 갖고 도망쳤기 때문에 검찰은 배임·횡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오락가락하여 변호인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시경을 제쳐두고 중앙정보부가 나서게 되었다. KNCC측 자료에 의하면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실무자 김동완 목사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허병섭 목사가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검찰측이 참고인으로 찾고 있던 수도권 회계실무자의 행방을 추궁당하였다”는데, 이 때 “이들 성직자들은 수차에 걸쳐 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며, 허병섭 목사의 경우는 2주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고 한다.²⁵⁵⁾

8월 30일 열린 8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6회 공판과 똑같은 구형이 되풀이되었다.

선고공판은 구속 5개월이 거의 된 9월 6일에야 열렸다. K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부분에 있어 인정할

25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 1987, p617.

253) 『중앙일보』 1975년 8월 2일자.

254) 『중앙일보』 1975년 8월 16일자.

25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 1987, p639.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빈민구호를 구실로 받은 외국 원조자금을 국가보위를 해친 긴급조치 위반자들의 뒷바라지로 사용해 긴급조치 위반자를 도운 것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박형규 목사에게 징역 10월(구형 5년), 권호경 목사에게 징역 8월(구형 5년), 김관석 목사(구형 3년)와 조승혁 목사(구형 4년)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이 선고 형량이라 ‘정찰제 재판’이라는 비아냥이 횡행하던 당시의 사정을 본다면, 구형량의 1/5도 안되는 파격적으로 낮은 형량이었지만, 무죄와 유죄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돈을 보낸 BFW의 사무총장이 한국의 법정에까지 와서 원래 그런 인권운동에 쓰라고 준 돈이며, 가장 만족스럽게 쓰여졌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홍성우 변호사의 지적처럼 희극적인 일이었다.

이미 질질 끄는 공판진행으로 인해 이미 형기를 거의 다 마친 김관석 목사는 더 이상의 재판이 무의미하다고 항소를 포기하여 9월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속될 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 조승혁 목사²⁵⁶⁾는 항소하였는데, 유신정권은 “원심의 실행만기가 훨씬 지난 조승혁 목사가 ‘실행 만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재판부 형성을 지연”시켰고²⁵⁷⁾, 뒤늦게 사건을 할당받은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목사를 계속 구금하고 있다가 12월 23일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이 때문에 조승혁 목사는 원심 형량 징역 6월형보다 2개월 이상 더 감옥생활을 하였다.

사건 변호인 박세경 변호사는 최후변론인 줄 알고 행한 6회공판에서의 변론에서 “9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3·1운동 시기, 신사참배 강요 시기 등에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던 적은 있으나 4명의 성직자가 파렴치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56) 『중앙일보』 1975년 4월 8일자.

25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III)』, 1987, p639.

무죄판결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압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담당 판사나 재판부에 대한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도 많았다. 법원 상층부를 통해 무죄판결 등을 내린 담당 판사나 재판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거나 차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추가 비위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때 법원 상층부 선에서 문책이나 인사 불이익과 같은 외부의 요구를 무마시키거나 절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일종의 보복성·경고성 조치로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1) 『다리』지 무죄판결과 목요상 판사

국정원 내 존안 자료 중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중앙정보부 및 정권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사건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71년 『다리』지 무죄판결과 목요상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목요상 판사는 몰래 숨어서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로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무죄판결을 내린 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압력을 받았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을 치른 직후 터진 당시 대표적 시사지였던 월간 『다리』지 필화사건은 당시의 정치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 그 전해인 1970년 11월호 『다리』지에 사회평론가 임중빈 씨가 기고한 「사회 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이라는 글이 반공법에 위반된다면서 1971년 2월 12일 뒤늦게 필자와 주간, 발행인이 구속된 것이다. 그런데 임중빈 씨는 당시 김대중 씨의 회고록을 집필 중이었던 데다가 『다리』지의 고문이자 자금지원자는 김대중계 국회의원인 김상현 씨였으며 『다리』지의 주간 윤형두 씨가 운영하는

범우사에서는 김대중 씨의 선거용 책자를 간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다리』지의 발행인인 윤재식 씨는 김대중 씨의 공보비서라는 사실 등은 이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말해주기에 충분했다.²⁵⁸⁾ 다시 말해 이 사건은 단순한 필화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 수단 중의 하나였고 따라서 그 판결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 사건에 유죄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펜클럽 대회에 각국 문인들이 참가할 것이므로 임중빈 씨가 무죄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목요상 변호사는 이를 “박 정권의 치부를 공격한 글을 반공법으로 옴아 넣었기 때문에 임씨가 무죄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망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목요상 변호사의 생각은 당국의 입장과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법관의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을 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목요상 판사가 담당 판사로 배정된 직후 가장 먼저 당한 압력은 바로 수시로 찾아와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중앙정보부 조정관의 방문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목요상 판사는 김지하의 「오적」시 관련 재판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안당국은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던 터였다. 당시 서울형사지법에 출입하던 조정관은 4명이었는데 그 중 000팀장이 판사실에 수시로 찾아와 “고위층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그런 나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잘못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요상 판사가 위협도 유혹도 거부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목요상 판사의 입회서기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소환 조사했다. 목요상 판사는 입회서기가 “무죄가 되는 방향으로” 조서를 허위로 꾸몄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는 검찰과 “사건 당사자가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일이지 왜 입회서기를 입건하느니 어찌느니

258)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 실록1』, 2006, 범우사, p283.

위협하느냐”면서 대판 싸웠고 그런 후에야 입회서기가 풀려나는 일도 있었다.

검찰측은 목요상 판사가 무죄 쪽으로 심증을 굳히고 있는 기색이 보이자 심리종결 뒤에도 집요하게 변론재개 신청과 판결선고 연기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선고기일이 두 번이나 연기되기도 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사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들어” 이 재판을 단독심에서 합의부로 옮겨 재판해줄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즉 임중빈 씨가 과거 반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아니라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당시 임중빈 씨는 집행유예 기간으로 이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핑계일 뿐 사실은 목요상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릴 것 같으니까 합의부로 옮기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목요상 판사는 이러한 위협에 굴하기는 커녕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이 자꾸 지연되자 아예 윤OO를 직권보석으로 풀어줬다. 이미 김지하의 「오적」시 담당 판사로 이러저러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단이 보석 신청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중정 조정관의 직간접적인 위협과 검찰측의 재판 지연작전 및 방해 외에도 목요상 판사에게는 다양한 압력이 가해졌다. 담당 000 검사는 정보요원들과 형사들을 데리고 목요상 판사 집앞에서 일주일간 잠복하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목 판사의 부인이 몸이 아파 을지병원에 입원하자 병원비를 누가 대신 내준 것 아닌가 뒷조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양주시 농협 지부장을 하던 목 판사의 큰형도 세무조사를 당했고 목요상 변호사가 1973년 재임용에 탈락한 직후 그의 큰형도 퇴직해야만 했다고 한다. 또 당시 목요상 판사가 공화당 당의장 서리 이효상 씨의 비서실장이던

친구의 호의로 그 친구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어느날 그 차의 봉인이 잘못 됐다면서 운전사와 차를 경찰이 끌어가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선고 전날, 목요상 판사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친구 집에 숨어서 무죄판결문을 작성해야 했다.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목요상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날이 판결 선고일인데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았다. 틀림없이 내일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만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까, 초저녁에 집에 있는데 검사 중 한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OOO 검사입니다’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친구 집으로 갔다. 사건 기록은 모두 집에 놔둔 상태에서 친구 집에서 머리 속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무죄 판결문을 작성했다. … 다음날 새벽에 법원 근처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판사실에 출근하니 바로 검사가 쫓아와서 판결 선고할 것인지 묻기에 ‘당신이 어제 밤 늦게까지 우리 집에 있으면서 기록도 다 집에 있는 걸 봤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냐’고 둘러대고 법정에서 들어갔다. 그런데 막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니 검사도 쫓아들어와 변론재기 신청이며 증인 신청이며 재판부 이송 신청 등을 들어 판결을 막으려 했다. 나는 그 신청을 다 기각하고 무죄선고를 했다.”²⁵⁹⁾

1971년 7월 16일 목요상 판사는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중빈 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피고인이 논문에서 프랑스의 5월 혁명, 미국의 뉴레프트 등 서구 학생운동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활동, 주의, 사상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독자적인 청년문화 운동으로 역사적인 난관을 타개해보자는 일종의 청년문화론을 시도한 것이지, 현 정권 타도를 위한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1심 무죄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무런 변론도 거치지 않고 ‘무변론 기각’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인이었던 한승현 변호사는 “항소심 첫

259)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기일에 법정에 들어갔더니 이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뒤여서 나는 변호인석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나왔다”면서 “유별난 ‘부전승’”이었다고 표현했다.²⁶⁰⁾

그러나 무장군인 법원 난입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양헌 판사가 1971년 6월 29일 신민당 당사에서 총선 거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 구속기소된 학생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7월 16일에는 목요상 판사가 『다리』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점점 깊어진 사법부와 공안당국과 검찰의 갈등은 결국 제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졌다. 그 얼마 뒤인 7월 28일 검찰이 L부장 등 재판부가 제주 출장시 사건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에 반발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중 37명이 즉각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전국에서 수백명의 법관들이 집단 사퇴를 결의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관해 목요상 변호사는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양헌 판사와 목요상 판사에 대한 뒷조사가 계속 이어졌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불통이 L판사에게 튼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다리』지 판결과 관련한 압박으로 고민하다가 서울형사지법의 6개 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찾아가 상의를 했던 일 때문에 L판사가 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다고도 했다. 당시 다른 부장판사들은 모두 “하라는 대로 해주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고 한 반면 L판사만 “소신껏 재판하라”고 기를 북돋워줬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1971년 양헌 판사와 목요상 판사 등은 공안당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1973년 재임용 탈락이라는 결과였다. 게다가 1973년 재임용 직전 바뀐 변호사법이 또한 이들의 발목을 묶어놓았다. “경력 15년 미만의 판사가 개업할 경우, 퇴직

260) 한승헌, 앞책.

직전 2년 동안 근무한 법원의 본원 관할구역에서는 퇴직 뒤 3년 동안 사건을 맡지 못한다”는 개정 변호사법은 명목상으로는 ‘전관 예우 방지’였지만 그보다는 “법관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된다”면서 자신의 직을 걸고 소신껏 판결을 하던 판사들이 일자리에 연연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컸다. 이 때문에 목요상 판사도 재임명 탈락 후 대구에서 개업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소신있는 판결이나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다 옷을 벗은 판사들 중 많은 이들이 변호사 개업 후에도 상당 기간 중앙정보부 등 공안당국의 감시와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 예로 제1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권 침해 7가지 사례’ 등을 작성했으며 대법원장 면담에 나섰던 6명의 판사들 중 한 명인 최영도 변호사가 겪은 사례를 소개한다.

“1973년 재임명 탈락 후 천안에 내려간 지 한 두어달쯤 지났을 때였다. 천안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발신인은 나, 최영도 변호사에, 수신인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다. 그 편지는 개봉되어 있었는데 내 글씨도 아니었고 그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 욕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했더니 누가 장난한 것 같으면서 ‘얼마 전에 정보부에서 와서 샅샅이 조사하고 갔다. 무서운 놈들이니 몸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다. 딴 생각 하지 말고 양전히 변호사 생활이나 하라고 경찰과 정보부가 서로 짜고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후에 함께 쫓겨난 다른 판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에 춘천에서 개업했던 이건호 변호사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다.”²⁶¹⁾

2) 고영근 목사 무죄판결과 이일규 대법원 판사

주요 시국사건·공안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해 판사들이 압박을 받은 것은 1심이나 2심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중앙정보부·안기부 및 공안당국의 위협이 가해졌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유신 정권 말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대법원

261) 최영도 변호사 2006.10.24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고영근 목사 사건을 들 수 있다. 1976년 3월 단양에서 벌어진 어느 부흥회에서 고영근 목사는 “수많은 사람과 차량을 동원하여 대통령 부인의 무덤에 참배케 하니 개인 숭배가 아니냐, 정부가 반공을 내세워 통일교 문선명에게 협조하고 있다, 총화유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싼 양주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 외채가 80억 \$인데 빚덩어리를 후손에게 어떻게 물려주라는 말이나, 비동맹회의 가입이 안되고 UN 표결에서 한국 지지표가 줄어드는 등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고립당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다.²⁶²⁾ 고영근 목사는 1심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과 자격정지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1977년 2월 22일 이일규 판사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영근 목사의 발언이 대개 공지의 사실이거나 지도층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사실왜곡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²⁶³⁾ 이 판결은 4일 후인 1977년 2월 2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정부 비판 세력을 부추길 수 있음을 염려했음인지 국내에선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는 주석과 함께 ‘한국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처음 유죄판결파기’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다.²⁶⁴⁾ 당시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그렇게 세상이 시끄러울 줄 몰랐다”며 “그저 법대로 한 판결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이 판결이 가져온 파장은 엄청났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된 최초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발각 뒤집혀 관계 고위관리들이 구수회의까지 벌였다고 한다.²⁶⁵⁾ 이후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지 않도록 공소사실을 고쳐 재상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대법원에서는 그에게 정치적 공안 사건을 배당하지 않을 만큼 반골로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되었다.

262) <대법원 판결문> 참조.

26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I, p967.

264) 이혁주·김창수, 『법조기자가 본 법관과 재판』, 1986, 고시계

265) 이혁주·김창수 앞책.

당시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도 자신이 “안기부에서 처음 미움 받은 게 아마 고영근 목사 사건 때”일 것이라며, 자신과 보통학교 동기로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자 당시 유정회 의원이었던 한옥신이 찾아와 “이 사람아, 고목사 사건 적당히 좀 하지 왜 건드려서 지금 정보부에서 난리 났다”고 말했으며, 자신도 민복기 대법원장을 찾아가 한옥신 의원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한 일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때 정보부 계통에서 입건 해서 온 사건은 나에게 주심으로 주지 말라고 이런 말을 대법원장에게 했다가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고영근 목사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외에도 이일규 대법원 판사의 판결은 그 후에도 종종 중앙정보부·안기부 및 정권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곤 했다. 국가모독죄가 적용됐던 김철기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놓았고 박세경 변호사 계엄포고령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안기부에서 송치한 간첩사건에서는 홍선길 사건과 송씨 일가 사건 등 여러 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일규 판사는 수시로 안기부의 신원조사 대상에 올랐고 송씨 일가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는 한달간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 자신의 평가처럼 “OOO 당시 대법원장이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것”일 수도 있고, ‘대법원 판사’라는 그의 지위가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쉽지 않은 위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안기부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사회적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이른바 ‘공인된 인권변호사 4인방’에게는 상대적으로 압력을 덜 행사했듯이 이회창 전 대법원 판사와 더불어 ‘공인된 대쪽 판사’였던 그의 명성 자체가 그 자신의 보호막 기능을 했을 수도 있다.

3) 국가모독죄 무죄판결과 신진근·B 판사

5공화국 시절, 안기부가 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철기 씨의 국가모독죄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이 외신을 대상으로 반정부 유인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유신 시절에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바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국가모독죄를 처음 적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옷을 벗었고, 주심인 배석판사는 지방 좌천 예정자가 되었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철기의 국가모독죄 위반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흘 후 김영삼 전 신민당총재의 비서실장 김덕룡이 국가모독죄로 구속되는 등 국가모독죄는 5공화국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힘든 정치권 인사, 종교계 인사들을 옥죄는 새로운 무기로 사용되었다. 1988년 13대 국회 개원 이후 국가모독죄는 대표적인 5공 악법으로 지목되어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가) 국가모독죄의 신설

1953년 9월 18일 제정된 형법은 1995년 12월 29일 대폭 개정될 때까지 39년 동안 딱 2번 수정되었는데, 1975년 3월 25일의 국가모독죄 신설과 1988년 12월 31일의 국가모독죄 폐지가 그 사례였다. 국가모독죄의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1975년 3월 19일인데, 이 때는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에 대한 전격적인 사형집행을 불과 20일 가량 남겨 놓은 때였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틀 전인 3월 18일에는 『동아일보』가 편집국에서 농성 중이던 기자 130 여명을 폭력으로 축출하는 등 1974년말부터 시작된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등 자유언론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정권의 의도대로 철저히 분쇄되던 시점이었다. 여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의 기자들의 대량

강제해직이 뒤따랐다. 이제 남은 문제는 외신이였다. 그런데 유신정권이나 중앙정보부는 외신 기자들이 기사를 써 보내고, 외국신문이 이를 보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신정권이 고안해 낸 방안은 외신기자들이 취재를 못하도록 국내의 취재원이 외신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국가모독죄의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이 준비되자 한 형법학자는 ‘비정상적’인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단언할 정도였다.²⁶⁶⁾

1975년 3월 19일 야당의원들이 의사당을 점거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는 의원열람실에서, 본회의는 의원휴게실에서 각각 1분 만에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날치기 통과였다. 법사위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되었는데, 공화당 정책위의장 박OO 의원 등은 그 제안이유로

“작금 일부 국민의 국내외에서의 언동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지녀온 역사적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대적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비방 모욕하는가 하면 사실을 왜곡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사대적 행위를 서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우방과의 이간을 획책하고 심지어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의 독립과 안전마저도 위태롭게 할 우려있는 언행을 자행하는 등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임에 비추어, 차제에 형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국가모독 등 사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일부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 뽑고 자주독립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드높여 국민윤리와 도의를 앙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위신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²⁶⁷⁾

이라고 주장했다. 박OO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의 취지는 “주체사상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⁶⁸⁾ 이날 통과된 국가모독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266) 「법률로서 비정상적」, 이진호 이대 법정대학장 (형법학전공), 『중앙일보』 1975년 3월 19일자.

267) 「제9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1975년 3월 19일, p1.

268) 『중앙일보』 1975년 3월 19일자.

형법 제104조의 2(국가모독 등)=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독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동일하다.

③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²⁶⁹⁾

이 법이 통과된 다음날 『동아일보』는 「해외의 충고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 평지풍파의 형법개정안 이렇게 본다」라는 전면 기사를 통해 “이 법을 낸 자야말로 진짜 사대주의자”라는 야당의원의 주장과 “헌법기관 비관은 국민의 기본권리”라는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²⁷⁰⁾ 반면 “국회 법사위 여당 소속 율사들과 법무부 관계자”들은 국가모독죄의 신설에 따른 “구체적 저촉사례”와 “적용대상”을 마련했다.

저촉사례

- ▲ 북한은 자유는 없지만 빵은 있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도 빵도 없다.
- ▲ 박정권은 통일의 열의나 실력이 없는 정권이다.
- ▲ 한국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조야는 10·17조치(유신)에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 한국 언론인은 영장 없이 구금·고문을 당하고 있다.
- ▲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미국은 대한 군원을 중지하라 등

적용대상

- ▲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키 위해 국가체제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언동
- ▲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
- ▲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사법부 독립도 침해받고 있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모독발언
- ▲ 국가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진실이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 위신에 해가 되는 비방행위
- ▲ 악의적으로 날조하는 왜곡 행위 등²⁷¹⁾

269) 『동아일보』 1975년 3월 20일자.

270) 『동아일보』 1975년 3월 20일자.

271) 『중앙일보』 1975년 3월 29일자.

이 신문은 “외국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할 때는 보도될 것을 알면서 얘기할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되나 개인끼리의 사담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 유신정권과 국가모독죄 적용 시도

국가모독죄는 이렇게 요란하게 형법에 삽입되었으나 정작 유신정권 때는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1976년의 이른바 ‘명동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모독죄로 재야민주인사들을 단죄하려 하였으나,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중앙정보부 내부분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문서는 명동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조사해서 송치한 내용이 검찰의 조사 후 기소단계에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1976년 3·1절에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 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문익환 등 이들 사건의 관련자들은 다음날인 3월 2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3월 10일 검찰로 이송되어 3월 26일 서울형사지법에 기소되었다. 이 보고서는 ‘개인별 범죄사실’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개인별 범죄사실은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동일하고 차이점이 없으나 검찰에서는

- 범행 모의 과정 등 경과 사실은 포괄적으로 적시하였고
- 외국인(외신기자 및 선교사 등)과 관련된 범행 사실은

형법 제104조 2의 국가 모독죄 등에 해당되나 이를 공소하였을 시는 공판 과정에서 외국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므로 물의 야기가 예상되어 우선 해당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고²⁷²⁾

검찰은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받은 명동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 중, 외신기자 및 선교사 등과 관련된 범행사실, 즉 1975년에 신설된 국가

272) 중앙정보부, 「명동사건 이첩내용과 공소내용 대비보고」 (1976.3.29)

모독죄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려면 외신기자나 선교사 등을 공판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데, 그들이 중앙정보부나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줄 리도 없고 괜히 시끄러워질 뿐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법의 제안자인 박OO 공화당 정책위의장이 법안 통과 후 “사대언동을 처벌하려는 것보다 예방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유신정권은 이 문제 많은 법안을 만들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실제사용은 자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5공화국과 국가모독죄의 적용

유신정권 때 엄포용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 사용된 바 없는 국가모독죄는 1980년대 들어와 5공화국 정권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했다. 5공화국 정권은 유신정권에 비해서도 감춰야 할 것이 더 많았고, 1980년에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1천여 명을 대량 해직하는 폭압적인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유신 시절보다 국내언론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외신의 비판적 보도만 차단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981년 9월 30일 IOC총회가 1988년 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정함에 따라 전두환 정권은 외신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의 언론통제의 강력한 수단은 계엄령 하에서의 검열이었으나, 1981년 1월 24일의 계엄해제로 공식적인 검열은 불가능했다. 유신정권 시절에는 긴급조치와 같은 특별법을 통해 국내언론을 통제해왔으나, 올림픽 유치 이후에는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비상대권을 발동하였다가는 올림픽 유치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언론의 일상적인 통제에 비상조치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또한 동구 공산 국가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공법의 철폐가 불가피했다. 긴급조치나 계엄령같은 비상조치도 사용할 수 없고, 반공법도 폐지하게 되자 5공화국 정권은 자연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데 국가

보안법을 빈번히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급진성향의 학생들이나 재야인사 일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규제가 가능했지만, 보수야당이나 종교인들의 단순 반정부 민주화요구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

국가모독죄의 첫 대상이 된 것은 기독교청년연합회(EYC) 상임총무 김철기였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콘트롤데이타는 1982년 1월 30일 일방적으로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였고, 6개월 간의 진통 끝에 회사는 7월 20일 공장철수를 선언하였다.²⁷³⁾ 이에 EYC 상임총무 김철기 등 8명은 콘트롤데이타 노사분규 및 철수와 관련 현정권의 퇴진을 권고하는 등을 골자로 한 「콘트롤데이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800매를 제작하여 1982년 7월 23일 기독교회관에서 일본 교도통신 한국 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등 국내외 기자 10여 명과 교계에 배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김철기 등은 다국적 기업을 비판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한국정부에 대해 “정부가 콘트롤데이타 사태의 폭력에 대하여 수수방관, 동조, 지원하면서도 다국적기업에는 나약 비굴하며 민중의 지지가 아닌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종로 5가 기독교회관의 기독교계 운동단체를 관할하는 동대문경찰서는 김철기 등 EYC 간부들이 성명서를 배포하자 7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관련자 전원을 연행조사하여 7월 29일 밤 11시 30분 사건의 주모자이자 성명서 작성자인 김철기를 형법 104조의 2항(국가모독죄)을 적용하여, 그의 성명서 배포가 “외국인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정부 당국을 비방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향후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밤 10시 경 석방했다. 김철기는 8월 5일 서울지검 공안부에 구속 송치되어 L검사에 의해 국가모독죄 위반으로 구속기소

2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402.

되었다. 1975년 3월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삽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²⁷⁴⁾

1982년 10월 21일 서울형사지법 제3단독은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김철기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유신 시절 검찰은 외신기자나 선교사를 참고인으로 공판정에 불러내면 물의를 빚게 될 것이라 우려하였는데, 김철기의 재판에서는 구로다 가쓰히로가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²⁷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스스로 현 정부가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방하면서 국내문제에 관해 외국기자들을 불러들여 정부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²⁷⁶⁾ 김철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라) 항소심 무죄 판결과 안기부의 개입

1983년 2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형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신진근 부장판사)는 예상을 깨고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가모독죄가 성립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비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김 피고인이 유인물을 외국인에게 배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유인물을 배부 받은 외국인이 이에 이용돼 국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여 국가의 안전이익이나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있는 지 얼마 안 되어 신진근 부장판사는 1983년 5월 27일자로

274) 안기부, 「EYC 총무, 김철기 국가모독사건 처리상황」 (1982.12.2)

275) 안기부, 「EYC 총무, 김철기 국가모독사건 처리상황」 (1982.12.2)

276) 『중앙일보』 1982년 10월 22일자.

의원면직되었다.²⁷⁷⁾ 신진근 부장판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원면직이라는 형태로 법원을 떠나게 되었으며, 안기부는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였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신진근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인 B판사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보고서가 남아 있다.

무죄판결이 있고 난 뒤 약 한달 열흘 정도가 지난 뒤 안기부는 「EYC, 김철기 국가모독사건 무죄선고 판사 B 해외유학 유보 경위 확인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1982년 11월 16일 1983년도 해외유학 대상 법관 7명을 선정하였는데 미국에는 B판사 등 3명, 영국 2명, 독일 2명이 해외연수 대상자였다. 그런데 B판사의 해외유학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다. B판사의 해외유학이 취소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이 “서울형사지법(원장 김형기)으로부터 동 지법 강OO 판사가 고법 판사 직무대리로 발령됨에 따라 서울형사지법 9개 형사 단독이 8개 단독으로 감축되어 업무량 과중 등 법관 부족 이유로 B판사의 해외유학 유보 건의”를 받고, 당시 미국 지역 해외유학 대상으로 선발된 B 등 3명 중 다른 두 판사는 “해당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가 접수되었으나 B판사는 미국 하바드 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오지 않은 상태로서 동 B판사를 유보토록” 2월 18일에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참고사항’으로 “위 해외유학 유보조치에 대하여는 서울형사지법 원장이 직접 본인에게 판사 부족 사유로 유보되었음을 공식 해명, 본인도 이해했다 함”이라고 적고 있다.²⁷⁸⁾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현황보고」에도 법관 해외 연수 항목에서 장기연수 인원이 미국 2명, 영국 2명, 독일 2명으로 되어 있어²⁷⁹⁾ 원래 미국 3명이던 것이 2명으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7) 안기부, 「김철기에 대한 국가모독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예정보고」(1983.6.13) 『법원사(자료집)』, 1995, 법원행정처, p619.

278) 안기부, 「EYC, 김철기 국가모독사건 무죄선고 판사 B 해외유학 유보 경위 확인 보고」(1983.3.24)

279) 「제11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호, pp46-47.

그런데 위의 안기부 보고서는 B판사의 유학취소가 단순히 법원의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 동 결정에 있어 고려한 사유로서 동 B판사가

- 김철기 국가모독 사건 무죄선고에 따른 간접적인 응징
- 82. 11. 13 서울 00교회 담임 000 목사(41세, 사기전과 3범)에 대한 사기, 횡령(7억여원) 등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 * 82. 11. 15 재청구, XXX 판사에 의해 영장 발부 구속, 공판 계속 중 등 법관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위를 자행한 자로 법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
- * 차기 인사 시 지방 좌천 예정자²⁸⁰⁾

국가모독사건 항소심에서 배석판사였던 B판사는 무죄선고에 대한 ‘간접적 응징’으로 예정된 해외연수의 기회를 빼앗겼다. 더구나 법관이 신청된 구속영장에서 범죄혐의의 증빙이 미약할 경우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보완·재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일은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도, 이를 이유로 안기부 직원은 B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위를 자행한 자”로 “법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차기 인사 시 지방 좌천 예정자”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안기부 직원의 자의적인 평가이지, 법원당국의 평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B판사는 다음 번 인사인 1983년 9월 1일의 정기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지 않고, 서울민사지법으로 발령 받았다.²⁸¹⁾ 그는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다음 기회에 해외연수도 다녀왔기 때문에 이 판결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²⁸²⁾

신진근 부장판사가 무죄선고를 내린 1983년 2월 11일이라는 시점은 법원이 K 대법원장비서관의 뇌물사건으로 비롯된 소용돌이에 휘말려 두 명의 부장판사에 대한 사임압력이 거세던 시점이었다. 신진근 부장

280) 안기부, 「EYC, 김철기 국가모독사건 무죄선고 판사 B 해외유학 유보 경위 확인 보고」, (1983.3.24)

28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4년판, p163

282) 2006년 11월 24일 이신섭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판사는 5월 27일자로 사임했는데, 2월과 3월에는 K비서관 사건의 여파로 법원에서 부장판사 2명이 옷을 벗었고, 검찰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하여 2명의 검사가 파면, 서울지검장과 남부지청장이 인책 사임했으며, 변호사 3명도 제명을 당했다. (후술) 이 때 옷을 벗은 판검사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업조차 할 수 없었다. 신진근 부장판사의 사임 이틀 전인 5월25일에는 재일동포 간첩사건의 변론에 주력해 온 태윤기 변호사가 변호사 징계 위원회에서 제명을 당하였다. B판사에 대한 보고서와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진근 부장판사의 갑작스런 사임에도 안기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B판사가 다행히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재판장인 신진근 부장판사가 옷을 벗었고, 1983년 봄의 안기부의 법조계에 대한 강경드라이브가 일단락된 뒤 “차기 인사 시 지방 좌천 예정자”라는 안기부의 요구가 유야무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과 소수의견

항소심에서 국가모독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신진근 부장판사가 갑자기 사직을 하고 약 2주일 뒤인 1983년 6월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유태홍 대법원장)는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 11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철기의 국가모독죄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당시 판결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주문만 낭독했다고 한다.²⁸³⁾ 이 때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이일규 대법원판사와 이회창 대법원판사였다. 이들은 이 사건의 무죄취지 소수의견으로 대쪽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외국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외국인의 행위를 이용해 국가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확장 해석이며 국내에서의 국가모독행위의 규제는 자칫 헌법이 보장한 표현·

283) 『중앙일보』 1983년 6월 14일자.

비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외국인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을 “외국인에 대하여” 성명서를 배포한 행위까지 확장해석한 것이고, “내국인이 국내에서 한 국가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²⁸⁴⁾

1983년 12월 5일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는 김철기 피고인에 대한 국가모독죄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철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는 1982년 7월에 구속되어 이미 1년 6개월 가까이 구금되었기 때문에,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곧 석방될 몸이었다.

*** 김철기의 국가모독죄 사건 관련 일지**

일 시	주요인물	내 용
82.7.30	동대문경찰서	김철기의 7.23 유인물 배포에 국가모독죄 적용 구속
82.8.16	서울지검 000 검사	최초로 국가모독죄 적용하여 김철기 기소
82.10.21	서울형사지법 000판사	김철기 1심: 징역1년6월 선고
83.2.11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신진근 부장판사	김철기 항소심: 무죄
83.2.21	대법원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B판사(주심)	김철기 항소심 주심판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B판사가 1983년 7월부터 1년간 하버드대학 연수 예정되어 있었으나 2.18 김형기 서울형사지법원장건의 받고 연수대상 선정 취소: 무죄선고 간접 응징
83.5.27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신진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김철기에 무죄를 선고한 신진근 부장판사 ‘의원면직’ 형식으로 법원을 떠남
83.6.14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 13명 중 11명 다수의견으로 김철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회창, 이일규 소수의견으로 무죄 주장

284) 『중앙일보』 2002년 5월 11일자. 소수의견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은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을 볼 것.

83.6.17	김덕룡(김영삼 비서실장)	내외신 기자에 반정부 유인물 나눠준 혐의로 국가모독죄로 대법원 판결 사흘 후 구속
83.12.5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	재항소심: 김철기 유죄 확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바) 국가모독죄의 적용

대법원에서 국가모독죄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과기환송된 사흘 뒤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의 비서실장 김덕룡이 외신 기자에 반정부 유인물 나눠준 혐의로 국가모독죄로 구속되었다. 이를 시발로 국가모독죄는 5공화국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기 힘든 야당정치인, 종교인 등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도 학생들이 외신과 기자회견을 하였을 때 규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안기부는 1985년의 2·12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바람이 일 기세가 보이자, 국가모독죄를 동원하여 민주협 등 재야의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의 모임인 민주협(민주화추진협의회)²⁸⁵에 대하여 국가모독죄를 동원하여 이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1984년 12월 28일자 「민주협에 대한 법률적 규제 대책 보고」라는 안기부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민주협을 규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 개요

- 김영삼 등 정치활동 피규제자들이 정치활동 목적으로 불법조직한 ‘민주협’은 그간 재야 정치세력을 규합, 조직을 확대 소위 ‘민주화’를 빙자한 극렬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오다가
-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주도
 - 현역 국회의원을 집단 탈당 유도, 조직 영입
 - 가칭 ‘신한민주당’ 창당 조직에 핵심적 참여

285)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과거 신민당 시절 유신정권에 강경히 맞서거나 김대중을 추종하여 재야에 있던 야당 정치인들을 대거 정치활동 피규제자로 발을 묶어 정당활동이나 선거출마를 제한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집권여당이 허용한 제도권 정당 밖에 1983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를 결성하여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활동을 준비했다.

- 지역구 조직책을 선정, 공천 추천

등 신당 창당의 실질적 배후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언론권에서도 사실상의 정치단체로 부상되고 있음

○ 민주협외 이와같은 불법행위 자행은

정치질서 문란과 총선에 지대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정국안정과 법질서 보호 차원에서 불법단체인 민주협에 대한 법적 규제 대책보고임²⁸⁶⁾

이 보고서는 조직의 실제 대표인 “김영삼, 김상현은 상습적인 범법 행위자”로 이들은 “현재 검찰에 정치풍토 쇄신법, 형법상 국가모독, 집시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입건 계류 중(김영삼 32건, 김상현 8건)”이라며 “민주협 관련자의 범법행위는 적기 입건, 소환, 조사 등으로 활동 견제”하고 “향후 민주협에 대한 예상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부는 “민주협의 성명발표는 상임운영위(위원 25명)의 결의를 거치므로 상임 운영위원 전원에 대해서 국가모독 등 공범으로 필요시 입건 조사처리 가능”하다고 보았다.

안기부가 김철기 사건 재판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했다. 만약 국가모독죄 도입 이후 첫 번째 적용인 김철기 사건이 무죄로 끝난다면, 더 이상 국가모독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안기부 또는 5공정권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의 숙정과 1981년의 법관 재임명, 1983년의 K비서관 사건을 둘러싼 인사파문, 1983년의 학생시위에 대한 양형 상향조정 등이다. 이들 사례들에서 안기부(1980-1981년의 경우는 안기부보다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 전두환 정권)가 개입한 것은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과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모독 사건은 특정 판결 자체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법관들이 느끼는 압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975년 일종의 ‘엄포용’으로 도입된 국가모독죄는 1980년대에 들어와 5공 정권에 의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민주인사들이나 학생들이 외신과 회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

286) 안기부, 「민주협에 대한 법률적 규제 대책 보고」 (1984.12.28)

불 C판사에 대한 압력도 국가모독죄가 적용된 이철의원의 원내발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출판사 사장을 즉심에서 무죄로 풀어준 것을 안기부가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모독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공정권의 국가모독죄 운영은 점점 더 경색되어 1987년 6월항쟁 직전에는 “기자회견 장소에 외신기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국가기관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면 해당되며, 외신 보도여부에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²⁸⁷⁾ 아래의 표는 군사정권이 국가모독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모독죄는 1988년 13대 국회에 들어와 대표적인 5공악법으로 꼽혀 1988년 12월 31일자로 국가모독죄를 담은 104조 2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국가모독죄 관련 주요 사건**

일시	사건 및 인물	내 용
75.3.25	공화당·유정희	형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로 국가모독죄 신설
76.3.26	서울지검	중앙정보부에서 명동사건 관련자에 국가모독죄 적용하여 송치하였으나 기소할 때 검찰에서 이를 삭제
82.7.23	김철기	외신기자에 유인물 배포로 국가모독죄 첫 적용, 항소심에서 무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정
83.6.17	김덕룡(김영삼 비서실장)	내외신 기자에 반정부 유인물 나눠준 혐의로 국가모독죄로 대법원 판결 사흘 후 구속
	EYC 황인하 총무	삼민투 사건으로 국가모독죄 구속
	김병곤 민청련 상임위원장	삼민투 사건으로 국가모독죄 구속: 징역 2년
86.1.	국회의원 이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유인물 만들어 30여개 외국공관과 20여개 외국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소환
86.4.14	전학련 의장 오숙진	85.4.30 등 외신기자회견에서 정부비방한 혐의로 서울지검 공안부에 의해 국가모독죄 위반으로 구속기소
86.11.5	민추협 대변인 한광옥	건국대 사건을 용공좌경 아니라고 옹호했다가 구속,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87) 『중앙일보』 1987년 5월 11일자.

87.5	김영삼 민주당 총재	취임사에서 전두환 정권 하의 서울 올림픽을 나치하의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고 한국선거제도를 흑백함 선거에 비유한 혐의로 상이군경회에 의해 고발됨
87.8.3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	뉴욕타임즈에 나치에 대한 저항은 합법적이라 비유했다가 87.12.3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8.7	국회	대표적인 5공악법으로 형법에서 삭제

3 임용 시의 신원 조회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인에 대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신원조회는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나 재임용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대한 신원 카드를 가지고 있던 것 같다. 양현 변호사는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판사 시절 중앙정보부에 시찰을 나간 적이 있는데 ‘딱 5분’만에 자신의 신원카드를 찾아서 가지고 오더라고 진술했다.

법조인에 대한 신원조회는 사법시험 합격 직후부터 이루어진다. 물론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회 고위인사로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의거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고유권한이었다.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의 ‘제5조 조정업무의 범위’에는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 행정자치부 항목에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보부·안기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신원조사’가 요구되는 모든 경우에 이 업무가 중앙정보부·안기부에 주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사범연수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물론 판사나 검사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를 행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 두 건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1979년 8월 13일자로 작성된 「신원조사 결과회보」이다.

이 보고서는 1979년 7월 12일 의뢰받아 대법원 사범연수대상 114명 중 108명에 대한 신원조사를 행한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108명에 대한 신원조회기록과 함께 ‘신원특이자 및 특이내용’을²⁸⁸⁾ 별도로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2명의 신원특이자에 대한 간단한 특이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본인’에 관한 것도 있고 ‘연고자’에 관한 것도 있다. 이 중 본인 신원특이자가 69.6.3 3선 개헌반대 데모 주동으로 정확처분을 받았던 000등 8명이며 연고 신원특이자는 조부 및 3촌이 남로당으로 활동하다 처형당한 000 등 14명이다. 또 XXX는 그 자신 71.6.2 집회 및 시위로 청량리서에 입건된 적이 있는 본인 신원특이자인 동시에 3촌이 49.3 한청에 가입, 좌익활동타가 수복후 자수한 연고 신원특이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렇게 사범연수대상 108명에 대한 상세한 신원조회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중앙정보부에 보고한 신원특이자 중 사범연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안기부의 신원조사 결과는 ‘임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2 법관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결과보고」라는 보고서²⁸⁹⁾에는 전직 변호사 1명, 전직 검사 1명, 군 법무관 전역자 26명, 사범연수원 수료자 46명 등 총 74명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보면 ‘본인 특이자’가 3명, ‘연고 특이자’가 7명으로 분석되어 있다.

288) 안기부, 「신원특이자 및 특이내용」 (1979.8.13)

289) 안기부, 「‘82 법관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결과보고」 (82.8.5)

이 중 본인 신원특이자 3명은 “73.10.6 서울대 재학시 교내에서 반정부 데모타 즉심에서 구류처분 25일” 받은 A, “69.11 서울대 재학시 반정부 데모에 가담, 서울지검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B “75.6.18 경희대 재학시 반정부 데모에 가담, 서울지법 성북지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C 등이다.

연고 신원특이자 8명은 “50.8 남로당에 협조타 부산지법에서 이적죄로 징역 20년형을 수하고 복역 중, 51.5.24 출소, 요시편입 시찰 중 77.1.28 사망”한 아버지를 둔 D 등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법연수대상’에 관한 신원조회 결과보고서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보고서에는 ‘조치’ 의견이 담겨 있다. “신원조사 결과를 법원 행정처에 통보, 임용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기부 보고서에서 본인 신원특이자로 적시된 C씨는 그해 법관 임용에서 탈락했다.

법조인 임용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는 위 두 건의 보고서뿐이지만 1973년 재임용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의견이 상당히 작용했으며 1988년 제2차 사법과동 이후 직접적인 인사 개입은 줄어들었지만 이른바 ‘운동권 출신’을 판·검사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안기부가 촉구했던 1990년대 중반에도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또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총무처가 사법시험을 관장하던 사법시험 면접에 중앙정보부/안기부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1988년 10월 5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자신 법조인이었던 조승형 위원은 대법원에서 사법시험을 관장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3차 시험위원 중 한 위원이라도 F점을 주었다 하면 그 사람은 불합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중앙정보부 출신이 위원이 되어서 시국사범에…한번이라도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한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F점을 주어서 시험에 불합격시키는 예가 현재까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이야기는 5공화국에서만 있을 수 있게끔 이제부터는 대법원에서 공정한 시험선을 기록해서 합격자를 낼 수 있도록 시험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90)

당시 질의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역시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을 뿐 조승형 위원이 제기한 ‘중앙정보부 출신의 사법시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강력 부정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사법시험 단계에서부터 판·검사 임명, 재임명이나 인사이동 등에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조사·작성한 신원조회 기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개별 법조인에 대한 신원기록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법조인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도대체 그 카드에 나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자세하게 어디까지 담겨있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일종의 자기검열을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조사해본 결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작성한 신원조회 기록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학력과 가족관계, 경력, 재산 정도 등의 내용은 현재 주요 언론사 등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의 수준이거나 그보다 허술한 경우도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상·비위·성향’ 등의 항목이 신원조회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도 대부분의 판사들의 성향은 한결같이 ‘온순 단정’이라 적혀 있었다. 심지어 송씨 일가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한달 간 미행감시를 당하기도 한 이일규 전 대법원 판사의 신원조회 기록에도 ‘성품’은 ‘냉정(고집쟁이)’, ‘참고사항’으로는 ‘김재규 사건 이의 제기’ 등만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다. 물론 주요 시국사건·공안사건 담당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 신원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임명시 등에 중앙정보부·안기부의

290) 1988년 10월 5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p87.

신원조회 기록이 사용되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판사·검사 등은 ‘신원조회 기록’ 자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4 일상적인 관리

사법시험 및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부터 신원조회 업무를 통해 법조인들을 관리하고 특별히 주요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이 발생할 때 담당 재판부나 검찰을 밀접하게 조정하는 외에 법원 및 검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이른바 ‘조정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봤듯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보유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에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반면, 개별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조정관이 올리는 보고서는 훨씬 더 상세한 동시에 즉시 대처방안이 모색,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위력이 강했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조정관이 법원이나 검찰에 상주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기자들이 출입처를 드나들 듯 법원이나 검찰을 드나들면서 주위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시국사건·공안사건 공판을 참관하고 ‘법조계 동향’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다. 이 ‘법조계 동향’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라도 몇 건의 보고서를 입수,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법원, 검찰은 물론이고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 쪽 동향도 빠짐없이 수집했다.

본 보고서의 다른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자료 중에도 법원출입 직원이 법조계의 어떤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보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상당수 있다. 제목만 일부 살펴보면 먼저 법원 동향과 관련해서는 1983년 2월 13일자 「전 중앙대생 000 집시법 위반 무죄확정 보도에 따른 확인보고」, 1987년 2월 「간첩 XXX에 대한 항소심, 간첩혐의 무죄선고 경위 등 확인보고」 등 이른바 ‘무죄판결 확인보고’가 있다. 또 1968년 1월 17일자 「서울형사지법 즉결과 동향보고」, 1988년

「법조계, 소장판사들의 개혁촉구성명 과문확산 우려」, 1988년 7월 27일자 「이OO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일반법관 인사내용 설명」, 1992년 9월 4일자 「당부 간첩사건 수사관련 법원, 검찰 반응」, 1993년 12월 28일자 「일부 판사들, ‘판사평가서’ 관련 불만」, 「각계, 대법원의 간첩죄 엄격적용 판결에 안도」(황석영 사건) 등 주요 사안 등에 대한 법원 분위기를 전하는 보고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선소사건 담당판사, 협박편지 수신」, 1971년 「현직 판사 비위 투서사건 내사결과보고」, 1974년 OOO 판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실에 관한 「판사 비위사실 통보」, 「OOO 판사 부정 혐의 수사」, 「OOO 남부지원장, 소장판사에 시국관 고취로 호평」, 1997년 1월 17일자 「대전지검, OOO 판사의 성향관련 문제제기」 등 판사 개인에 대한 내사나 동향 보고가 있다.

검찰 동향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보고되었는데 1983년 3월 16일자 「사회정화위원회, OOO 검사 비위고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보고」와 같은 검사 개인에 관한 보고에서부터 1984년 7월 9일자 「공안검사격려 대책 필요」, 1994년 11월 2일자 「공안검사, 정실보직으로 자질 저하 우려」, 「OOO 서울고검장, 공안검사 인사우대 풍조 시정요구」 등 검찰 분위기에 관한 보고들이 올라갔다.

변호사협회 동향 보고도 몇 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 1975년 「재경변호사회 집행부 연석회의 개최」에서부터 1994년, 1월 22일자 「대한변협, XXX 변호사 품위손상으로 조사 중」, 1994년 8월 2일자 「변협, 대구변호사회 △△△ 변호사 비리 조사」 등이 있었다.

사실상 정보사범 등의 기소여부나 재판결과 등을 중앙정보부·안기부장이 파악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업무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연락관’ 형태로 중앙정보부·안기부 직원이 법원·검찰 등을 드나드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이나 법원의 업무에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이 매일같이 올린 ‘공판상황보고’와

같은 범조계 동향이 관련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안기부 직원이 공판상황 및 범조계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이에 맞추어 안기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 구성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안기부의 개입이 작용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기부의 대처는 예정된 증인 신문 등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연세대생 용공조직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1981년 9월 28일 안기부 상부로 이 사건 1심 4차 공판에 관한 「연세대내 불손 용공조직 사건 공판상황보고(4회)」가 올라갔다. 이 보고서는 9월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4회 공판이 열렸으며 이 공판에서 A, B, C 등이 증인으로 출석, 어떠한 증언을 했는지를 보고한 후 마지막으로 ‘차기공판’ 일정을 보고했다. 1981년 10월 6일 10시에 대법정에서 차기공판이 열리는데 차기공판시 증인으로 D, E, F를 세우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 마지막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첨부되어 있다.

“D, E, F 공판 전 소재 파악 조정 위계임”²⁹¹⁾이라는 메모다.

그리고 실제로 증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차기공판 전날인 1981년 10월 5일, F는 안기부로 소환되어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다.

상기 본인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불순씨클에 가담하고, 동 씨클을 통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을 터득하고 이에 지향하는 행동을 하여온 사실이 있는 바, 지금에 와서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은 물론, 주변에서 이러한 행위자를 발견시에는 즉시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또한 저를 수사기관에서 출두 요구시에는 하시라도 응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위배시에는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에도 감수하겠습니다.²⁹²⁾

291) 안기부, 「연세대내 불손용공조직 사건 공판상황보고(4회)」 (1981.9.28)

292) 안기부, F, 「각서」, 1981년 10월 5일자.

각서에 무인까지 찍고 나온 F가 다음날인 10월 6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본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는 F에 관한 한 건 뿐이었지만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법한 증인에 대해 유사한 조정이 행사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주요 사건에서 무죄판결 등이 예상될 경우 공판상황보고나 법조계 동향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기부가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정관’은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담당 재판부에 드나들며 “그런 나쁜 놈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거나 “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잘못하면 신상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곤 했다. 하지만 “안기부가 모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데다가²⁹³⁾ 당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시국사건·공안사건 등에 당국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익히 보아온 판사들에게 이러한 몇 마디 언급은 단순한 ‘업포’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법조 출입기자를 오래 했던 이상우 기자는 시국사건·공안사건 등의 담당판사의 방에 자주 권력층의 ‘외부인’이 출입했다면서 “판결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외부인의 출입은 더욱 빨라졌다. 이들 외부인이 다녀간 후 판결내용이 바뀌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고 회고했다.²⁹⁴⁾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무죄선고가 나왔다거나 주요 공안관련 법규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된다든가 하면 앞서 살펴보았듯 인사 불이익 등 조치가 떨어지거나 최소한 조정관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도 했다.

293) 최영도 변호사는 2006년 10월 24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1971년부터 2년간 형사지법에 근무할 때 부장판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중앙정보부 요원이 재판장에게 찾아가 ‘판결 주문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재판장이 웃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더니 중앙정보부 요원이 ‘어차피 합의내용을 알 수 있으니 순순히 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사무실 여직원까지도 중앙정보부의 협조자가 아닐까 의심스러워 밖에 나가서 판결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294) 이상우,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1986년.

1988년 통영지원에 근무했던 문홍수 변호사도 “당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일이 있는데 안기부 지역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불쾌하다’는 뜻을 표했다”면서 “이때의 좌절감과 분노가 사법부 개혁을 외치게 된 개인적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²⁹⁵⁾

한편 공판상황보고는 법원에 출입하는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들어가 직접 공판상황을 지켜보고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렇게 사건을 담당·송치했던 수사관들이 공판정에 나와있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들에게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가족을 비롯한 방청객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재판에서 법정의 대부분을 이룬바 기관원들이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간접 사건 재판 등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조정관’이 단순히 송치 이후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전달해주는 ‘연락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담당 검찰이나 재판부에 영향을 행사하는 역할까지 맡았기 때문에 조정관은 연륜이 상당히 있는 이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의정부 지검에 근무하는 동안, 검찰 출입 조정관과 자주 만났다는 백형구 변호사는 2006년 11월 6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의정부 지검에 조정관이 2명 드나들었는데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했다.²⁹⁶⁾

한편 법원의 경우 공개자료나 여러 증언에 의하면 조정관이 일선 판사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조정관은 주로 수석부장실이나 법원장실을 드나들며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했고, 재판 진행이나 선고 결과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도 담당 판사에게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상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했다. 때문에 일선 판사들의 경우 판결에 대한 압력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수석부장이나 법원장 선에서

295) 『한겨레』 2005년 3월 7일자.

296) 이창민 뉴시스 편집국장은 2006년 10월 12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1980년대 법원담당 직원 여러명이 법원과 검찰에 나누어 출입했다고 진술했다.

조정관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적당히 처리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태홍 판사로, 본 위원회에서 면담한 여러 전직 판사들이 유태홍 판사가 바람막이 역할을 잘 해줘서 자신들이 특별히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2006년 10월 24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제1차 사법과동 당시 유태홍 판사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이었는데 유태홍 부장은 어쩔 수 없어서 당국에 협조하고는 있었지만 판사들을 어떻게든 감싸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조정관을 만나는 역할 역시 유태홍 부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바람막이라고, 자신이 막지 않으면 사법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유태홍 부장은 일반으로 돌리면 기각당할 것 같은 시국사건이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의 비밀영장 처리를 자신이 직접 맡아 하곤 했다”고 전했다.

또 송씨 일가 사건 등과 관련 안기부에서 한달 동안 미행을 한다든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 같은 보고서가 여러 차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2007년 2월 6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정작 자신은 판결과 관련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 역시 아마도 유태홍 당시 대법원장이 중간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다만 대법원에도 안기부 주재원이 있었으며 유태홍 대법원장 시절 안기부 조정관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안기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된다”고 호통쳐서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조정관이 법원이나 검찰에 드나들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사건 처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제2차 사법과동 이후 사법부 개혁과 쇄신의 분위기가 높았던 1988년 국정감사에서조차 조정관 관련 질의가 제기됐는데 이에 관해 당시 서동권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 조정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 강신옥 : 그럼 그 검찰청에 수시로 상주하는 안기부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서동권 : 검찰청에 상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강신옥 : 매일 왔다갔다하는 사람 조정관…
- 서동권 : 그때 법원에는 무슨 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엔 안기부 관계하고 연락하기 위해서 한 사람 왔다갔다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대검공안부하고 연락차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 강신옥 : 매일 오다시피한 것 아닙니까?
- 서동권 : 매일 온 것인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 강신옥 : 제가 알고 있는 보안사 조정관 매일 거의 법정 갈 때마다 만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 서동권 : 총장은 매일 볼 수는 없지요.
- 강신옥 :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법원으로 매일 나와가지고 간섭한다…남들이 보기에는 간섭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 서동권 : 그것은 저보고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하라는 질의 같은데 저 개인 이야 확인을 할 수 없지요. 그런 일들이 들리기도 들렸고 한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 어떻게 출입한다는 것은 모릅니다.²⁹⁷⁾

이처럼 중앙정보부·안기부는 법원 및 검찰 출입 조정관을 통해 법조계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고 상부에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인사 조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도 일상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법원 및 검찰을 견제할 수 있었다.

297) 1988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앙정보부·안기부의 법관 신상이나 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꼭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만은 아니다.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재임용 때 탈락시켜야 한다거나 또는 법관의 자질이 없는 자, 지방좌천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안기부의 요구에 협력한 경우에는 안기부가 그의 승진이나 발탁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사 문제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흔적이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이익을 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보고서는 안기부가 안기부의 ‘조정’에 적극 협력한 판사들에게 인사철을 맞이하여 어떻게 ‘보고서’로 보답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런 보고서가 꼭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를 보면 안기부는 여전히 법관들의 신상이나 성향, 판결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안기부의 이런 보고서가 법관 인사에 미치는 힘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대법원 판사(1987년 헌법 개정 이후는 대법관) 인사에서 안기부의 보고서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와, 안기부의 적극적인 밀어주기에 불구하고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한 경우 등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안기부가 가장 선호한 사람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사례는 5공화국 시기의 일이고, 안기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자 하였던 고위 법관이 대법관 임명에서 과거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문제가 되어 탈락한 사례는 문민정부 시기의 일이다.

법관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3공화국 시절에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 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99조 2항)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만, 내용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법관추천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은 유신 이전 사법부가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은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이란 표현으로 대법원 판사와 일반 법관 모두를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3조 2항)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고, 이는 5공화국 헌법으로도 이어져 “대법원판사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05조 2항)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고 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였다.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되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안기부의 보고서가 대법관 인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법원 판사의 임명에는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라 할만큼 작용했다. 1973년 유신 이후 법관 재임명 당시 행정부의 의견에 반하여 국가배상법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 9명이 무더기로 재임명에 탈락한 사실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김재규의 재판에서 소수의견으로 내란목적 살인죄의 적용을 반대한 판사 6명이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대법원을 떠나야 했던 일은 권력에 의해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이 휘둘린 대표적인 사례였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과 1981년에 걸쳐 대법원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대법원판사 중 10·26사건 이전부터 재임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전두환 집권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이었다. 얼마 후 1명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그 자리를 채운 뒤 1984년 6월말 김종서 대법원판사가 정년퇴임하여 대법원판사 한 자리가 비게 되었다. 5공화국 출범 당시 대법원 개편 이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대법원 판사 인사가 있게 된 것이다. 5공화국 치하에서 지난 3년간의 행적이 대법원 판사 선임의 판단기준이 됨은 당연한 일이었다.

새로운 대법원 판사의 선임이 약 석 달 정도 남아있던 1984년 4월 9일 안기부는 「김종서 대법원판사 정년퇴직 예정에 따른 후임판사 경합설 등 관련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법원 내에서는 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임자로 등장되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후 영향력자들을 수시 접촉, 지원해줄 것을 은밀히 당부하고 있다는 바, 후임 거론자 별 법원 내 여론 다음과 같음”이라고 한 뒤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우동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기 서울형사지법원장, 정기승 서울민사지법원장 등 세 사람에 대한 인물평과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²⁹⁸⁾

1984년 7월의 대법원 판사 인선은 안기부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절박한 이해관계가 걸렸던 인선이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른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1983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이일규 대법원 판사의 주심으로 유죄 부분 전체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었고,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1983년 12월 23일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원칙을 깨고 대법원 판결을 치받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1984년 4월 24일 김덕주 대법원 판사의 주심으로 다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어 고등법원에서 재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²⁹⁹⁾ 당시 공안당국은

298) 안기부, 「김종서 대법원판사 정년퇴직 예정에 따른 후임판사 경합설 등 관련동향보고」, (1984.4.9)

299) 송씨 일가 사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간첩죄 확대적용 편의 송씨 일가 사건 항목 및 본 보고서 사법 편의 간첩 사건과 사법부의 송씨 일가 사건 재판에 대한 안기부의 개입 항목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일규 판사의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수사기관의 간첩수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간첩사건 재판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며 이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면 앞으로 간첩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전전공공할 때였다.³⁰⁰⁾ 대법원에서의 재판은 13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4명 씩 1개의 부(部)를 형성하여 진행되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두 번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의 두 번의 무죄 판단을 뒤엎고 과감히 유죄 판결을 확정해 줄 새로운 대법원 판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어디까지나 안기부의 사정이었고, 법원 사회 내에서는 대법원 판사 0순위라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있는 박우동 판사가 가장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박우동 판사는 퇴임후 간행한 회고록에서 간첩 사건(강희철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강력히 비판³⁰¹⁾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어려운 인물이었다. 박우동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안기부 보고서는 “본명은 학구적(민사법)이고 우수하나 다소 비판성향의 소유자로 대법원판사로 임명될 시 이일규 판사와 유사한 야적 성격으로 정책적 사건에 다소 비협조할 것이라는 평”이라고 쓰고 있다. 안기부 보고서는 게다가 그가 “독선적이고 껌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 일가 사건이 안기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일규 대법원 판사를 거론하며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 판사가 중요하게 간여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사건”, 즉 송씨 일가 사건의 처리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는 평가는 안기부 지도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비토 사유가 되고도 남았다. 당시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를 제청할 때 대법원장이 1명을 선정하여 제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 안기부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거론된 박우동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연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원 판사 후보 복수 추천에서 배제되었다.³⁰²⁾

300) 안기부, 「간첩 송지섭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및 대책보고」 (1983.8.24)

301) 박우동,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1995, 한국사법행정학회, pp151-160.

302) 안기부, 「유태홍 대법원장, 각하 알현 예정 동향보고」 (1984.7.13)

안기부가 1984년 4월 9일자 보고서에서 두 번째로 거론한 인물은 안기부가 가장 선호하고 또 실제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김형기 서울형사지법원장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유태홍 대법원장의 후광으로 차기 대법원판사 보임에 가장 유리하다는 평”이라면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정책적인 사건 처리에 무난할 것으로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민사법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며, 성향에 대한 ‘세평’은 “온건, 대인관계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자 정기승 서울민사지법원장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경력 면에서 서열1위로서 차기 대법원판사에는 최적임자이나 충남 공주 출신으로써 JP 계열이라는 오해가 다소 불이익하다는 평”이며 “그 이외에도 유태홍 대법원장의 후광으로 좋은 자리인 민사지법원장 직에 너무 오래(3년간) 있었다는 것이 감점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민사법에는 정통하나 형사소송에 다소 실력 부족이라는 것이 흠”이고, ‘세평’으로는 “온건, 업무에 치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언론에 신임 대법원 판사의 내정 보도³⁰³⁾가 나오기 3일 전인 7월 13일 자의 「유태홍 대법원장, 각하 알현 예정 동향보고」 보고서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유태홍 대법원장이 정년퇴임한 김중서 대법원 판사의 “후임자 임명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각하를 알현할 예정”이라며 김형기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정기승 서울민사지법원장이 추천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법원 내 여론”으로 “후임 대법원판사 적격자는 김형기, 정기승 2명으로 이들은 다같이 국가관에 투철하고 직무에 성실하여 능력이 있는 자들로 누가 되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2명 중 정기승은 김형기보다 지법원장을 먼저 지냈고 고법부장 판사도 먼저 되었기 때문에 서열상 1위로 당연히 정기승이 먼저 대법원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라며 “정기승은 80.6 사법연수원장 임명”

303) 『중앙일보』 1984년 7월 16일자.

이고 “김형기는 81.4 서울지법원장 임명”이라고 쓰고 있다.³⁰⁴⁾ 이 보고서는 개별여론이라는 이름 하에 김형기에 대해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정책적인 사건 또는 안보사건 처리를 누구보다도 잘 해낼 것”이라고 안기부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별여론 항목에서 김형기에 대해서는 “민사법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고, 정기승에 대해서는 “민사법에는 정통하나 형사소송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국가관 투철, 친여적(親與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세평에서는 김형기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대인관계 원만, 사교적”이고, 정기승은 “치밀한 성격”으로 “대인관계 원만하나 소심한 편”이라는 평을 받았다.

7월 13일자 보고서에서는 4월 9일자 보고서에 비해 김형기를 미는 정도가 다소 약화된 듯 보이지만, 사실 이 때는 이미 권력핵심에서는 법원 내부의 일반 여론과는 달리 김형기로 기울어진 다음이 아닐까 한다. 김중서 대법원 판사의 정년퇴임이 6월 29일이었고 후임 논의가 이미 4월 초에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중서 대법원 판사의 퇴임 이후 보름 동안 후임자의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법원 내에서 대법원 판사 0순위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인 박우동 판사와 서열과 경력이 앞서는 정기승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제치고 안기부 입장에서 볼 때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정책적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처리”할 김형기가 복수추천에서 1순위로 올라가도록 유태홍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인물에 대한 안기부의 평가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송씨 일가 사건의 처리가 초미의

304) 1980년도에 정기승이 임명된 것은 사법연수원장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 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에서 서열 1위이나, 대법원 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고등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다. 연수원 부원장은 법원장 급이다. 고시 기수는 김형기가 7회, 정기승이 8회로 김형기가 1년 앞서지만, 나이는 정기승이 1928년 생으로 1929년 생인 김형기보다 1살 많다. 법원에서 고위 법관의 서열을 따질 때 중요시 여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용연도는 정기승이 1974년, 김형기가 1979년으로 정기승이 5년 빠르다. 『조선일보』 인물정보.

과제로 제기된 당시의 상황이나 유태홍 대법원장의 성향에서 볼 때, 송씨 일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 버린 이일규 대법원 판사처럼 협조가 잘 안 될 우려가 있는 박우동 법원행정처 차장은 비교적 일찍 후보에서 탈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기부가 선호하는 김형기 원장에 비해 서열과 경력이 앞서는 정기승 원장을 2순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왜곡이 필요했다.

안기부의 4월 9일자 보고서는 정기승 원장이 “유태홍 대법원장의 후광으로 좋은 자리인 민사지법원장직에 너무 오래(3년간) 있었다는 것이 감점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기승은 현직 서울민사지법원장이었고, 김형기도 현직 서울형사지법원장이었는데, 두 사람이 현직에 임명된 날짜는 1981년 4월 21일로 같은 날 임명된 것이다. 정기승만 좋은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1980년 이후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그 규모가 훨씬 큰 서울민사지방법원장보다 상서열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³⁰⁵⁾

또 정기승 원장에 대해 “차기 대법원판사에는 최적임자이나 충남 공주 출신으로써 J.P 계열이라는 오해가 다소 불이익”이라고 그가 김종필과 가까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기승이 공주 출신으로 김종필과 동향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승이 JP계열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럽다. 정기승은 1986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고, 1988년 6월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한 뒤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295명 출석에 가 141, 부 6, 기권 134, 무효 14표로 과반수 148표에 7표가 모자라 부결되었다.³⁰⁶⁾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13대 국회 당시 의석분포는 민정당 125석, 평민당 70석, 민주당 59석, 공화당 35석, 한겨레당 1석, 무소속 9석³⁰⁷⁾으로 김종필의 공화당이 정기승의 임명을

305) 김종훈,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 회고』,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II, 2005년 6월, p356.

306) 『중앙일보』 1988년 7월 2일자.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면 임명동의안이 부결될리는 만무한 것이었다. 즉 김종필은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JP계열이라고 보았던 정기승의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기부가 보고서에서 김형기에 대해서는 “민사법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고, 정기승에 대해서는 “민사법에는 정통하나 형사소송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흠”이라고 기술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형사소송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정기승은 김형기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공석이 된 서울형사지법원장에 임명되었는데, 형사소송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서울형사지방법원장과 같은 요직에 임명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민사법에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김형기는 일찍이 1959년 『민법총칙』을 저술한 바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도 1975년부터 2년 간 부장판사로 재직했다.³⁰⁸⁾ 안기부 조정관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여 대법원 판사로 거론되는 사람들이고, 또 세 명 모두 대법원 판사가 되었고, 대법원장 선임 때 모두 물망에 오른 법조계의 최고 실력가들이었다.³⁰⁹⁾ 안기부 조정관에게 “다소 실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정기승 역시 충분히 여당에 협조적인 사람이었고, 또 대법원장에 지명되었다가 야당의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일을 겪은 이유도 서울형사지법원장 재직 시에 시국사건을 정권과 공안당국의 요구대로 처리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안기부는 왜 1984년 당시에 정기승을 배제하고 김형기를 적극 밀었던 것일까? 김형기는 1977년 이후

307) 『중앙일보』 1988년 4월 28일자.

308)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309) 정기승은 1988년에 비록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된 바 있고, 김형기는 1988년과 1990년에 대법원장 물망에 올랐고, 박우동은 1993년과 1999년에 유력한 후보로 부각된 바 있다. 김형기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1988년 6월 17일, 1990년 12월 6일자, 박우동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1993년 9월 11일, 20일, 1999년 9월 3일, 6일자를 참조할 것.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형사3부 부장판사 - 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판사 -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다.³¹⁰⁾ 서울형사지법원장 시절, 김형기는 안기부의 학생시위 주동자를 엄벌하라는 방침에 호응하였다. 그 결과 1983년 4월부터 교내시위에 대한 형량이 징역 1년에서 2-3배 쯤 징역 2-3년으로 늘어났다.³¹¹⁾

김형기는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직후인 8월 3일, 아직 고등법원에서 재과기환송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안기부의 OO단장으로부터 송씨 일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동 사건의 재재상고심(대법원에서 세 번째 열린 재판)의 주심을 맡아 1984년 11월 27일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시켰다.

310) 수석부장판사에서 서울형사지법원장으로 수직 상승한 것은 김형기가 유일하다. 1993년 서울 서부지원 판사 시절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글을 통해 정치판사 논쟁 등 사법개혁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김종훈 변호사(당시 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원장과 더불어 소위 공안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각종 정치권력유지의 기반이 되는 사건의 비밀영장발부 및 재판을 담당하는가 하면, 사법행정권을 분담하여 그러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통제하여 왔다. 따라서 서울형사지방법원이나 그 수석부장은 정치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었으며, 사법부 내에서 남다른 특혜 및 영화를 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종훈,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 회고」,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II, 2005년 6월, p.356. 유신시대에 판사로 있었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더욱 신랄하게 “특히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은 중앙정보부나 검찰에서 보기에 유신관이 투철하거나 박정희 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적어도 검찰이나 중앙정보부에 협조를 잘해줄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판사나 변호사들로부터 ‘중앙정보부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소위 비밀구속영장은 형사법원 수석부장이 도맡아 발부했다. 비밀구속영장은 속칭 ‘비밀영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 접수창구에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직접 형사수석부장에게 제출하여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말한다. 즉 정정당당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라 뒷구멍으로 발부받은 것이다. 밖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었다”라면서, “형사법원 수석부장을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하여금 직무대리케 하여 검찰이나 중앙정보부 등 수사기관의 앞잡이 노릇이나 시켰던 것이다. 그런 짓을 말썽없이 잘 해내면 유능한 판사, 인품이 원만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발탁하곤 했으니 법원이 정의수호기관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도 거리가 멀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을 지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판사까지 승진했다”라고 비판했다.

311) 본 보고서 학생시위에 대한 엄벌주의 항목 참조.

안기부의 보고서 또는 후원이 대법원 판사의 임명에서 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또 그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고되면서, 법관 인사에 대한 안기부의 보고서는 힘이 아주 빠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힘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아래에 소개하는 사례는 안기부 입장에서 사법부에 대해 개별사건 차원의 ‘조정’이 아니라 정책적인 협조를 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때 창구가 되었던 한 고위법관이 대법관 임명 물망에 올랐을 무렵에 작성된 일련의 보고서에 관한 것이다.

안기부는 1994년 5월 12일자로 「K 민사지법원장, 당부 업무 중요성 강조」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1. K 민사지법원장(54세)은 최근 조계종 사태 수습 혼선 및 농안법 파동 혼란 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 예전에 안기부가 국가의 정책 및 조정에 적극적이었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았으며 당부의 기능약화를 아쉬워하고 있음
2. 이와 관련, K 원장은
 - 선진국일수록 국가정책의 종합적 기능 조정능력이 더욱 요구되는데도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백안시하는 풍조에 의해 안기부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 자신의 오랜 공직 경험과 시각으로 볼 때 국민들의 감상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무질서는 오히려 더욱 큰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부 업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함³¹²⁾

312) 안기부, 「K 민사지법원장, 당부 업무 중요성 강조」(1994.5.12)

이 때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기부의 수사권과 보안감사권의 폐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문민정부의 개혁의 상징으로 199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후였다. 이 보고서는 안기부로서는 반색을 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특이한 점은 K 서울민사지법원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도 빠진 채 민사지방법원장이 민사지법의 업무와도 특별한 관련이 없는 안기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기부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다고 우려”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뜬금없는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명해진다.

3. 한편, K 원장은

- 민사지법원장으로 국가관이 확고하고 특히, 당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금번 대법관 인선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 소장 법관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 등 과거 경력을 내세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이 보고서는 K 원장이 “국가관이 확고하고 특히, 당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가 “81년부터 5년 동안 유태홍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부와 권력핵심부를 잇는 창구 구실”을 했다고 보도³¹³⁾하고 있다.

K 원장은 1983년 8월 23일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일규 대법원판사에 의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유태홍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일규 판사의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의 간첩조사가 불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첩사건 재판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안기부 입장을 대변했다.³¹⁴⁾ 안기부가 교내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선고하라는 엄벌주의

313) 『한겨레신문』 1994년 7월 3일자.

314) 자세한 것은 본 보고서의 송씨 일가 사건 항목을 참조할 것.

방침을 정한 뒤 이를 대법원을 통해 각급 법원에 지침으로 하달할 때나 안기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반영”토록 하던 시기에 대법원장 비서 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나오기에 앞서 1993년 10월 11일자로 대법관 3인이 새로이 선임되었다.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여파로 물러나고 새로이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그보다 고시 기수가 앞선 대법관 2명이 관례에 따라 사임함에 따라 모두 3석의 공석이 생긴 것이다. 이 때 재판능력은 물론 행정능력도 겸비하여 “일찌감치 대법관 재목으로 지목”되어 온 K는 대법관 0순위라는 법원행정처 차장직에 있었고, 고시 15회 동기생 중 확실한 선두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생 두 명이 대법관으로 선임되었으나 그는 탈락했다. 언론은 그의 탈락이 “법원 내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산문제와 정치관사 배제 논란이 거뒀던 이 당시 새로이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재산공개에서도 재산 쫓겨 법관들이며 정치관사 시비를 불러일으킨 서울형사지법 부장 근무를 한번도 하지 않았던” 법관들이었다.³¹⁵⁾

1993년 10월의 대법관 인사가 예상치 못한 대법원장의 사퇴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1994년 7월에는 대법관 6명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9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등 사법부 최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안기부의 「K 민사지법원장, 당부 업무 중요성 강조」라는 1994년 5월 12일자 보고서는 이런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안기부의 상층부가 안기부의 업무에 협조했던 K의 대법관 선임을 위해 힘을 좀 써달라는 실무차원의 보고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선임이 임박한 7월 2일 안기부는 「법원, 대법관 인사에 소장파 영향력 우려」라는 또 다른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³¹⁶⁾

315) 『경향신문』 1993년 10월 7일자; 『서울신문』 1993년 10월 13일자.

316) 안기부, 「법원, 대법관 인사에 소장파 영향력 우려 (1994.7.2)」

< 법원, 대법관 인사에 소장파 영향력 우려(94. 7. 2) >

1. 법원에서는 최근 대법관 인사와 관련 소장법관들이 과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법원간부들을 탈락시키기 위한 음해여론을 유포시키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바
2. 소장법관들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 안우만, 윤영철 대법관 연임 여부 및 고시15회인 가재환 민사원장, 이용훈 행정처차장, 사시1회인 이임수 전주지법원장, 서성 춘천지법원장 등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 안우만 대법관은 경남고 출신으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 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요직을 거친 실력자임에도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고
 - 고시15회의 가재환 서울민사원장은 유대홍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재직시 정부시책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반대투서를 받고 있고
 - 사시1회의 이임수 전주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을 거치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다며 매도하고 있다함
3. 이에 대해, 법원 간부들은 소장법관들이 음해하고 있는 안우만, 가재환, 이임수 등은 확고한 국가관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 경쟁자로 거론되는 윤영철, 이용훈, 서성 등 3명은 모두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해온 이기적인 성품인데도
 - 소장파들이 음해하고 있어 능력있는 법관들이 희생되고 보신주의적 인사들만 중용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함

이 보고서는 1984년 김형기 대법원 판사의 임명 당시의 안기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안기부(또는 안기부 조정관)가 선호하는 인물을 확실히 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은 모두 6명인데 안기부 보고서는 그 중 세 자리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현직 대법관으로 연임 가능성을 놓고 고시 11회 동기인 안우만, 윤영철 두 대법관의 연임 경쟁인데, 만약 연임이 된다면 수석 대법원 판사가 되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언론에서도 안우만과 윤영철이 “재산문제에 흠이 없고 재판과 행정능력이 두루 뛰어나기” 때문에 연임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도했다.³¹⁷⁾ 둘째, 고시 15회에서 K 서울민사지법원장과 K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 이용훈의 경쟁인데, 고시 15회는 이미 대법관이 2명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번에 탈락하면 대법관이 될 기회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발탁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시 1회에서 언론에 ‘영원한 맞수’라 소개된 이임수 전주지법원장과 서성 춘천지법원장의 각축이었다.

안우만 대법관에 대해 안기부는 “경남고 출신으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 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요직을 거친 실력자임에도 정치판사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썼다. 안우만은 최초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철기 사건의 재항소심 재판장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안기부가 교내시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형량을 과거에 비해 2-3배 높여 선고하던 19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5공 말기인 1986년 4월부터 1988년 7월까지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냈다.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이 벌어져 서울민사지법에서 촉발된 판사들의 서명운동이 서울형사지법으로 확산되려 하자 그는 소속 법관 전원을 집무실로 불러 “여러 시국사건 처리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구속영장 한번 처리해 보지 않은 법관들은 우리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우만 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게 될 테니 더 이상 시체에 칼을 꽂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며 설득하다가 “여러분들의 서명할 수 있는 자유마저 박탈하려고 해 미안하다”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³¹⁸⁾

안우만은 1988년 7월 이일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되고, 김덕주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1991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는 등 계속 중용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재산공개 파동으로 사법부에도 개혁바람이 불면서 5공화국 시절의 ‘정치판사’에 대한 사퇴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대한변협이 법원수뇌부의 퇴진과 사법부 전면개편을 요구하자, 안우만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판사는

317) 『한국일보』 1994년 6월 6일자.

318) 『중앙일보』 1988년 6월 17일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여론재판 식으로 특정법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진퇴를 논하는 것”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맞섰다.³¹⁹⁾ 한편 당시 한 일간지는 5공화국 시절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형사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모두 거친데다가, 건국대 사태 당시 1,265명의 구속영장이 서울형사지법에서 발부된 일, 과거 대표적인 5공비리로 꼽힌 전두환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의 보석허가 등을 들어 안우만을 정치판사라로 평가했다³²⁰⁾ 이 일로 그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우동 대법관에게 물려주고 대법관으로만 재직해 왔다.

안기부는 윤영철의 대법관 연임을 견제하고, 안우만의 연임을 바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두 사람 다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안우만의 경우는 연임 탈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이나 당시의 PK인맥에서 안우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법관 연임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우만은 거의 모든 신문에서 제2기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³²¹⁾되었는데, 이 때문에 민변은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서명운동을 벌였고, 대한변협은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을 긴급 소집해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대상자로 언론에 거명되는 안우만 전 대법관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결의문은 “안우만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전체 재야법조계에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안 전 대법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다는 의혹을 사, 이른바 정치판사로 지목된 인사이므로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319) 『중앙일보』 1993년 7월 2일자.

320) 『중앙일보』 1993년 7월 23일자.

321) 『국민일보』 1994년 6월 7일, 9월 3일자 ; 『서울신문』 1994년 8월 22일자 ; 『세계일보』 1994년 9월 2일자 ; 『국민일보』 1994년 9월 3일자 ; 『한국일보』 1994년 9월 4일자 ; 『한겨레신문』 1994년 9월 8일자 ; 『세계일보』 1994년 9월 8일자 ; 『동아일보』 1994년 9월 8일자 ; 『경향신문』 1994년 9월 14일자.

매우 격한 어조를 띠고 있었다.³²²⁾ 이 때 안우만 이외에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재야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반대를 받은 사람으로는 J대구고검장과 S변호사 등이 있다.³²³⁾ 결국 재야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안우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 임명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는 1994년 12월 23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고시 15회 출신으로 대법관 임명 경합을 벌이는 K와 이용훈에 대하여, 안기부는 K에 대해 “확고한 국가관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유태홍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재직시 정부시책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소장법관들로부터 “반대투서” 등 “음해”를 받고 있으며, 그와 경합을 벌이는 이용훈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해온 이기적인 성품”의 “보신주의적 인사”로 폄하하고 있다. 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하마평을 보면 이용훈은 “법조계 안에서 이른바 ‘물먹던’ 사람 가운데 한명”으로 꼽혀왔는데, “유신 초기인 1972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 중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라는 ‘주문’을 어기고 선고기간까지의 구속기간인 징역 6월을 선고해 석방한 전력” 때문에 형사사건을 거의 맡지 못하고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런 과거가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³²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소장법관들이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라는 문건 등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의 반성에 기초한 강력한 사법개혁을 요구할 당시, 이용훈은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있으면서 소장파와 법원 수뇌부 사이의 창구 역할을 했다.³²⁵⁾ 이용훈은 1993년 10월

322) 『한겨레신문』 1994년 9월 8일자 ; 『대한변협 50년사』.

323) 『세계일보』 1994년 9월 8일자. J대구고검장은 국보위를 거쳐 전두환 정권 말기와 노태우 정권 초기에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다. S씨는 청와대와 안기부에 많이 근무하였고, 건대 사건 당시에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정치판사로 물러사임한 뒤 안기부에서 제2특보와 제1차장을 지냈다. 정치판사 논란의 안기부 차장 출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거론되었다.

324) 『한겨레신문』 1994년 7월 3일, 7월 6일자.

325) 김종훈, 「1993년 사법민주화운동 회고」,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II, 2005년 6월, p356.

14일 사법개혁의 실무책임자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³²⁶⁾되었다. 그 전임자는 사법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던 K이었는데, 소장과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 속에서 K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된 지 6개월이 채 안되어 중도하차한 것이다. K는 1993년 10월에 이어 1994년 7월의 대법관 선임에서 연거푸 탈락했다. 9월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서도 그는 물망에 올랐으나³²⁷⁾ 역시 과거 전력에 발목이 잡혀 선임되지 않았다.

K는 이 해 11월 15일자로 작성된 안기부 보고서에 다시 한 번 등장한다.³²⁸⁾ 이 보고서는 “타고난 기획력과 행정력으로 사법연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일조해 오던” 사법연수원장 K가 법무사교육원의 요청으로 휴가도 취소하고 법무사들에 대한 강연에 나서, 「법무사 윤리」라는 제목으로 “각조 540명씩 5개조로 나누어 1시간 30분씩 실시”하였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K가 “시종 유쾌한 언변과 유모어”로 “명강의”를 하였고, 수강생들도 “알찬 내용과 성실한 자세”에 호평을 보냈다고 쓰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특별한 정보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이런 보고가 올라가는 것은 정보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동향을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상적으로 무언가 한 줄이라도 좋은 내용이 쓰여 있는 경우와 한 줄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다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법관의 경우 앞서 이일규 대법원 판사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안기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확인해 보는 기본적인 인물조사서는 간단한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당시의 고위공직자 군에 대한 인물보고서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정관이 별 내용은 없지만 이런 내용의 우호적인

326) 『법원사(자료집)』, 법원행정처, 1995, p500.

327) 『동아일보』 1994년 9월 8일자.

328) 안기부, 「가제환 사법연수원장 관련 동향」(1994.11.15)

보고서를 자주 올리는 것과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자주 올리는 것은 안기부의 힘이 강했던 시절에는 다르게 작용했을 것이다.

위의 11월 15일자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가 이미 끝난 시점이다. 다만 한 가지, 연말의 개각 결과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교체되고 그 후임에 검찰 고위직 출신이 으레 임명되던 관행을 깨고 안우만 전 대법관이 임명되었는데, 만약 이 당시 정권 핵심에서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법원 출신을 찾기로 하고 후보군을 물색하는 분위기가 탐지되었다면 현직 법관 중에서는 사법행정에 밝은 가재환 사법연수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었을 것이다.

한편 최초의 사시 출신 대법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이임수 전주지법원장과 서성 춘천지법원장의 경우, 안기부는 이임수를 지원하면서, 서성을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해온 이기적인 성품”의 “보신주의적 인사”라고 폄하했다. 그리고 이임수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기조실장³²⁹⁾과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을 거치며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다며 매도”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의 언론에 실린 하마평을 보면 『한겨레신문』조차도 이임수가 “법원 안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 기획조정실장을 87년부터 3년이 넘게 지내면서 잡음이 거의 나지 않아 처신에 아주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면서 “약점이 너무 없는 것이 약점이라는 말도 떠돌 정도”라고 평가했다.³³⁰⁾ 이임수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던 김용철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추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과는 많이 달랐고, 또 그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시기도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4월부터 10월까지였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가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경력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안기부의 보고서와는 달리 언론에서는 이임수 전주지법원장이 아니라 서성 춘천지법원장을 정치판사로 지목하면서 그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았다.

329) 서성 역시 이임수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냈다.

330) 『한겨레신문』 1994년 7월 7일자.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부장판사 시절인 1985년 11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에 대해 첫 공판기일 전 까지 가족 및 친지들의 접견과 서류 등의 차입을 금하는 결정을 내렸다.³³¹⁾ 12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법원측은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하여 변호인단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등 휴정 소동을 빚었다. 이어 1986년 3월 6일 서성 부장판사는 김근태 피고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³³²⁾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작성한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 등 보고서가 남아 있다. 신체감정 증거보전 청구 기각, 접견금지, 방청객 제한 등에 이어 김근태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완전 격리”시킬 것을 요구한 ‘공판대책’대로 7년형이 선고되었다. 딱 한 가지 공판대책의 요구와 어긋난 것은 “공판일정 준수” 항목인데, “2월 중 1심 선고 완결”의 가이드라인보다 6일 늦은 3월 6일에 선고공판이 진행된 것이다.³³³⁾

그러나 사시 1회 수석 합격의 상징성을 지닌 ‘수재형 법관’ 서성이 동기생 중 처음으로 대법관 물망에 올랐을 때 안기부는 정작 서성에게 도움을 주거나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다른 자료의 부족으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안기부로 부터 “보신주의적 인물”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7월의 대법관 인사의 특징은 “정치판사 시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판사들을 배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성은 가재환과 더불어 대법관 선임에서 탈락했다. 언론은 윤관 대법원장이 “가재환, 서성 원장 등 출중한 능력으로 주목을 받아온 법관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나 결국 울면서 마속을 베는 심정으로 뜻을 꺾었다는 후문”이라고 보도

331) 『중앙일보』 1985년 11월 7일자.

332) 『중앙일보』 1986년 3월 6일자.

333) 안기부,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1986.1.6)

했다.³³⁴⁾ 법원 안팎에서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온 서성은 1997년 1월 김OO 대법관 후임 인선에서 한 번 더 탈락했지만, 1997년 9월 가장 외풍이 세던 시기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던 박OO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선임되었다.

사법부 고위직, 특히 대법관 인사에 대한 안기부의 영향력은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가재환 서울민사지법원장은 끝내 정치판사를 배척하는 여론의 파도를 넘지 못했다. 안기부가 대법관 연임을 위해 밀어주었던 안우만의 연임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 당시 정권핵심이나 안우만 본인이 더 바랐던 것은 대법관 연임보다는 헌법재판소 소장 선임이었는데, 적어도 7월 2일자 안기부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안기부가 후원한 이임수 전주지법원장은 대법관에 선임되었지만, 안기부 보고서의 덕을 보았다기 보다는 그와 경합을 벌인 서성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선임을 극력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 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묘사한 인물들인 윤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장, 이용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 서성 춘천지법원장은 대법관이 되었다.

334) 『경향신문』 1994년 7월 6일자.

IV 검찰과 중앙정보부 · 안기부

1 인혁당 사건과公安검사들의 항명파동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 안기부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외에 중앙정보부 · 안기부를 비롯한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은 많은 경우 중앙정보부 · 안기부와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으면서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에 따라 정보사범 등의 기소여부 등의 처분을 중앙정보부 · 안기부와 협의 혹은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과 중앙정보부 · 안기부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야 했다.

중앙정보부가 송치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公安부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다가 사표까지 썼으나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기소를 강행했던 1차 인혁당 사건은 그런 점에서 중앙정보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검찰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던 사건인 동시에 검찰 상부와 중앙정보부의 밀착관계에 의해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결말을 낳은 사건이기도 했다.

1964년의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64년 6·3 사태라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데모로 인하여 큰 위기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8월 14일 중앙정보부가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였다고 하면서,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데모는 이들 인혁당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으로 배후조종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서울지검 공안부에 이 사건이 송치된 것은 발표 사흘 뒤인 8월 17일. 구속 22명, 불구속 12명, 미체포자 13명으로 모두 47명이 연루된 대규모 사건이었다.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최대현 검사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12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어 나갈수록 이용훈 검사 등은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의 자백 외에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한 네 명의 수사 검사들은 핵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를 할 수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었다. 이용훈 검사는 후에 회고록에서 “이토록 중대한 사건을 증거도 없이, 또 검찰에 송치도 하기 전에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발표부터 해버린 중앙정보부가 원망스러웠다”고 그때의 심정을 회고했다.³³⁵⁾

이용훈 검사의 회고록에 의거 이후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자. 8월 29일, 이용훈 부장검사 등은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서울지검 검사장에게 보고한데 이어 8월 31일에는 검찰총장실에 올라가 대검찰청 검사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건의 전모와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9월 1일 법무부장관실에서 법무부차관, 주무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보고했을 때 법무부차관이 “빨갱이 사건에 일일이 증거 운운할 수 있겠소? 정보부에서 받아낸 피의자들의 자백을 검사들은 왜 못 받아내는 거요? 정보부에서 자백한 것이 있으니 그대로 공소제기를 해도 되지 않겠소?”라고 발언한데 이어 수사 검사들과 서울지검 차장검사, 서울지검 검사장과의 회의에서는 검사장으로부터 기소를 하지 않으려면 사표를 제출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빨갱이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절대적인 명령이므로 당신들은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옷을 벗고 물러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35) 이용훈,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법과 정치와 나의 인생』, 2000, (주)리틀웍스.

이용훈 부장검사 등이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있더라도 불기소 처분의견을 굽히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다음날부터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개별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제시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반공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꾸는 문제도 논의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이러한 토의 내용과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사장은 “상부의 명령은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부에서 넘어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대로 기소하라는 것인데 왜 탄소리들을 하고 있느냐”면서 일언지하에 배척해버린데 이어 구속 만기일 이틀 전인 9월 3일 무조건 기소하라는 최후통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검사는 “정 기소를 안 하겠다면 검사장이나 차장 이름으로 기소하겠으니 기소장이라도 작성해 달라”는 검사장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용훈 부장검사 등의 기소 거부 및 사표 제출에 대해 사건을 송치한 중앙정보부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회고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구속 만기일인 9월 5일 오후 사건을 담당한 XXX 중앙정보부 과장으로부터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철야로 18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음에도 피의자들이 굳세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인혁당 관계자들이 기소되지 않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의 첫 반응은 조사를 너무 엉성하게 했다는데 대한 질책이었다. 그는 “심증은 뚜렷하나 물증이 약하다”는 XXX 과장의 말에 “그들이 빨갱이라는 심증은 나에게도 있단 말이야. 허나 물적 증거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 거라구! 어떻게 심증만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나. 당신은 증거 없이는 처벌하지 못하고, 심증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며, 사색은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도 모르고 있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³³⁶⁾ 그러나 지금까지 사건 경과가 어찌됐든, 중앙정보부가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했던 김형욱은 서울지검

336) 김형욱, 『김형욱 회고록 제2부』, 아침, 1985, p132.

공안부에서 자신의 심복처럼 움직이던 C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결과야 어떻게 나던 간에 단 한명이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서울지검 검사장에게 전하게 했다.

김형욱의 의사는 즉각 검찰 상층부에 전달됐고, 또 집행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차장검사 이름으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유상원 차장검사도 기소장 서명을 거부하자 이에 당황한 검찰 고위층은 서울지검의 다른 검사들에게 위촉했으나 그들도 역시 거부했다. 결국 서울지검 검사장은 그날 저녁 공안검사도 아닌 그날의 숙직검사인 형사3부 A 검사를 시켜 전원 공소제기를 하도록 했다. 이용훈 부장검사 등이 기소장 작성도 거부하고 사표를 낸 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던 A 검사는 중앙정보부의 송치 의견서를 부랴부랴 그대로 베껴서 공소장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속 만기일 저녁에 간신히 기소를 하긴 했으나 이용훈, 장원찬, 김병리 검사가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며 기소를 거부, 사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다. 1964년 9월 9일 국회에서는 민복기 법무부장관을 소환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는데 “인혁당 사건은 6.3 계엄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면서 기소경위를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민복기 법무부장관은 “사건이 중대하고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과장이 커지자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김형욱 밑에서 일하기도 했던 한옥신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중앙정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합동회의를 하기도 했지만 한옥신 차장검사마저 중앙정보부가 요구한 대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결국 사건이 기소된 지 1개월 11일 만인 1964년 10월 16일, 검찰은 26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 석방하고 12명은 당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 반공법 제4조1항(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 위반혐의로 재기소하기에 이른다.³³⁷⁾

그러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흘 후인 10월 19일 민복기 법무부장관의 설득으로 검찰청으로 제출근한 이용훈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좌천 인사 방침이었다. 이용훈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시키고 서울고등검찰청 한옥신 검사를 서울지검 차장검사로 보하는 검찰 인사이동안이 총무처에 제출된 것이었다. 결국 1964년 10월 23일, 이용훈 검사는 다시 사표를 냈고 11월 14일 여운상 차장검사와 이용훈 검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형식은 두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이었지만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의 말처럼 “사실상 압력을 받아 강제로 물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간신히 공소를 유지한 13명에 대한 재판도 중앙정보부에서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1965년 1월 20일 1심에서 피고 13명 중 도예종은 징역 3년, 양춘우는 징역 2년을,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다시 뒤집혀 도예종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은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전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데 이어 10년 뒤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맞물리면서 결국 중앙정보부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규정되었다. 1975년 2월 24일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인혁당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62년 1월 조직한 지하당으로 김상한은 그후 62년 5월 사업보고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월북, 당시 재정책이었던 김배영이 새로운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기 위해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전원 사형 집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과 달리 1차 인혁당 사건은 분명 “검사가 바로 서면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337) 김형욱, 앞 책, p134.

‘교훈’을 입증한”³³⁸⁾ 사건이었다.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까지도 회고록에서 “사표를 내던져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는 했으나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와 여운상 검사의 정의감과 용기를 나는 내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 두 명으로 대표되는 아직은 살아있던 검찰의 양심에 판정패를 당한 셈이었다”고 인정했을 정도였다. 물론 그렇다고 이용훈 검사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견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표를 내고 나온 후 변호사 생활을 하던 이용훈 변호사는 1979년 김치열 법무부장관 하에서 법무부차관에 임명되는데 당시 김치열 법무부장관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에 비치된 이 변호사의 신원 조사서를 보니 검사 시절 인혁당 사건에 항명하여 사표를 제출했었던 일로 반정부주의자라고 적혀 있었어요.”³³⁹⁾

인혁당 사건 기소를 거부했던 이용훈 검사가 ‘반정부주의자’로 낙인 찍힌 반면 구속 만기일에 당직검사로 공소제기를 떠맡은 A검사는 후에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에 의해 중앙정보부 부국장으로 기용됐다.³⁴⁰⁾

또한 인혁당 사건 검사 항명 파동이 검찰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신직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상층부가 중앙정보부의 의사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던 이 사건은 더욱 검찰을 중앙정보부와 정부 당국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38)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겨레』 2005년 10월 18일자.

339) 이용훈, 앞 책, p234.

340) 김형욱, 앞 책, p136.

법원과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관계가 주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의 관계는 주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 역시 공안검사들이 당시 중앙정보부가 송치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항명했던 경우였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의 문제이고 따라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완화된 형태로 계속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이다.

이 규정은 1963. 12. 14 중앙정보부법 전문 개정 당시 직무조항이 신설되어 중앙정보부의 직무에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이 부여되었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자체의 부령제정권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내부 업무,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

위 규정 중 대공수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 등 조정, 舊 제5조)

- 1)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검거한 때와 관할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안기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관할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안기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 결과를 국정원장(안기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舊 제6조)

- 1)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안기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 2)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정보사범 등·귀순자·불온문건 투입자·납북귀환자·망명자 및 피난사민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정원장(안기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소보류 등, 舊 제7조)

- 1) 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안기부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2)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안기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舊 제8조)

- 1) 정보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불온문건 기타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안기부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 및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의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정업무는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통합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고(규정 제3조), 각 부문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사범 내수사 착수·검거·송치 통보(규정 제7조), 신병처리에 대한 조정(제8조), 공소보류(제9조), 적성압수금품 처리(제10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공수사조정권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각부에서 각각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 및 보안업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분산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권의 필요성은 국가업무의 총괄과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 업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부분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조정권 내용 중 1) 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검거·송치하는 경우 이를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건 또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각 정보수집 또는 수사기관들이 기관 간 경쟁을 하거나 중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한 소모적 업무를 줄여서 안보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2) 신병처리·공소보류 조항은 직파간첩·조직사건 등의 경우, 주범에 대한 선처를 조건으로 수사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연계망을 소탕하는 단서 확보 등 안보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며, 3) 압수금품처리 조항은 북한 공작조의 비합법적 침투 등 발생시 합신조 및 정보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국정원의 각 부문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안보수사조정권은 정보 및 안보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와 대공수사업무는 그 업무의 밀행성, 고도의 정보수집 기술의 필요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남용되기 쉽고, 특정 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각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조직의 업무 등은 정부조직법 등 각 근거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강력한 업무조정권이 자칫 관련 법률의 규정과 입법취지를 훼손시킬 위험도 있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은 삼권분립 원칙, 기본권 보장의무 등 헌법상의 기본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각각 그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이유로 인해 국정원의 대공수사조정권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범위 내에서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회피하고 다른 정부조직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규정상 대공수사조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위 대공수사조정권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과 상충되어 위헌 또는 위법한 규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있고, 수사를 함에 있어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 제16조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수사업무가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속성을 갖는 것이고, 강력한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정통한 자로서 고도의 법률적 훈련을 받았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인권 수호기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위 규정의 대공수사조정권은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흔히 국정원의 대공수사조정권에 대해 언급할 때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각 부문 정보기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사례로 들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한국처럼 검사에게 모든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대공수사조정권을 합리화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우선, 대공수사조정권 중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위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제7조), 검사의 처분과 재판결과를 검찰기관의 장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는 행위만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는 최소한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조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정보사범의 신병처리를 할 때(제8조), 검사에게 공소보류 의견을 불일 때(제9조),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제10조)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앞의 ‘통보’보다 훨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더 나아가 위 규정 제9조는 검사가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해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불기소 처분을 할 때 국정원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검사의 수사지휘권 침해를 넘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원리에도 반할 수 있다.

물론 위 통보와 조정의무에 대해 정보기관 간의 행정협조를 위한 것이고,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대공수사조정권 중 ‘통보’에 대해서는 행정협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정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문리해석만으로도 단순히 행정협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더구나 국정원은 국내·국외의 각종 고급정보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를 통한 권한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정과 협의의무는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와 기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의 이러한 대공수사조정권이 실제로 검찰과 직접적으로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인혁당 사건과 안기부 하에서 1981년 내란죄 등이 적용돼 안기부에 의해 구속·송치된 연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자 안기부와 협의했다가 갈등을 빚어 결국 사표를 내고 만 구상진 검사 사례다.

당시 문제가 된 이른바 ‘연세대생 용공불순 조직 사건’은 장신환·이성하·정신화·김치걸 등 연세대학교 재·졸업생 네 명의 학생시위 예비 및 서클활동, 후배교양 등의 활동을 안기부가 ‘내란선전, 선동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적용 여부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쟁점 모두가 사실상 안기부의 안보수사조정권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먼저 내란죄 적용 여부를 보면 안기부는 장신환, 이성하 등이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들어 이들의 남민전 가입과 활동이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본 반면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구상진 검사는 장신환, 이성하 등의 남민전 가입 및 활동을 구시대의 유물로 보아 아예 기소유예하고자

했기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끝에 결국 기소 만료일 구상진 검사가 사표를 내고 사라지자 공소장 작성 및 기소 임무가 000 검사에게 떨어졌고 시간에 쫓긴 000 검사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밤 12시가 다 되어서 겨우 공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에 구상진 검사가 피의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000 검사는 공소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소 후 장신환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000 검사가 작성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³⁴¹⁾.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의 제9조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기부가 갈등한 끝에 안기부의 승리로 끝난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1981년에는 서울지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안부에서 정보 및 공안사범에 대한 처리를 안기부와 협의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절차에 속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그 자신 안기부와 참여한 갈등을 겪었던 고 김경희 검사는 저서 『나 이제 자유인 되어』에서 1981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진출된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안부장

341) 000 검사가 장신환 등을 기소한 것은 81년 5월 29일이며 81년 7월 3일 1심 공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000 검사는 공판 시작 직전인 6월 29일에서 7월 1일간 사흘에 걸쳐 장신환, 이성하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장신환은 이와 관련 상고이유서에서 “구속된 지 3개월이나 지나 작성된 000 검사의 소위 진술조서의 경우 이미 구상진 검사로부터 공소장을 받고 일개월여나 지난 뒤 81년 7월 1일 재판통지를 받고 대기 중 갑자기 검찰로 소환하여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000 검사 단독으로 약 30분만에 조서작성을 한 뒤 ‘이미 공소장이 발부된 후이므로 이 서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학원 관련사범의 정보보고를 위한 개인적 참고자료일 뿐이며 본인의 지장이 필요한 것은 모든 서류에는 그러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란 지시를 하였는데 그후 이를 진술조서라는 명목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의자 심문조서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이런 서류까지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의 경우 안기부에서 한달 가까운 불법구금 기간 동안 고문과 협박을 받는데다 검찰에서 부인하면 다시 안기부로 끌려올 것이라는 등의 위협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검찰조서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으로 부임하기에 앞서 전임 공안부장인 김기춘 씨로부터 부 운영과 외부 공안기관과의 관계 등 비밀업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우선 들었다. 이어 수석 검사인 고 변진우 검사가 서울지검의 공안부 현황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을 하였다. 여러 가지 현안과 공안부 부원들의 신상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이 있었다. 변 검사는 또 추가적으로 기타 민감한 일들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보이며 보고하였다. 이렇듯 공안부 업무의 인수인계는 다른 부서의 그것과 사뭇 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부 공안기관과의 관계 등 비밀업무’가 바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한 안기부와의 협의·조정을 가리키는 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김경희 검사의 회고를 보면 이러한 ‘비밀업무’에 대해 그는 다른 부서와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이나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구상진 검사에게는 장신환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안기부에 제출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협의를 하기는커녕 가타부타 답변도 없다가 기소 만료일에 이르러 “안기부 의견대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다 안기부 입장에서는 안기부대로 장신환 등 네 명에 관한 이 사건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 사건 피의자 중 장신환, 이성하는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었고 김치걸, 정신화는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등 “최근 대학생들의 좌경화 의식성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사건”³⁴²⁾으로 이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연대학생 용공불순사건 항소심 관련 검사 접촉 상황보고」에 보면 안기부 수사관이 항소심 관여 검사에게 이 사건의 공소유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건이며 “당시 대통령 각하께서 동사건 내용을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에게 전파하여 대학생 좌경 의식화 성향을 주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 사건이고 동 사건으로 일부 대학생의 공산주의 의식화 과정과 사상성향 등을 폭로함과

342) 안기부, 「연대학생 용공불순사건 항소심 관련 검사 접촉 상황보고」(1982.2.3)

동시에 대학 반공교육의 문제점 등을 제기한 바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고 김경희 검사도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 “그 당시 우리는 그러한 현상(학생들이 북한 방송을 몰래 듣고 이를 노트에 기록하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습과 토론을 하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을 대학가에서 불온한 좌익 성향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는 자생적 공산주의 확산 운동으로 보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1980년 ‘광주사건’로 인한 사회불안이 높아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강력한 사회안정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을 느낀 안기부 및 공안당국에 장신환 등 ‘연세대 용공불순조직 사건’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상진 검사의 생각은 이와 달랐고 이것이 안기부와 갈등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 피의자 장신환 등 4명 담당 검사 관련상황」이라는 문서는 당시 안기부와 구상진 검사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 “81. 5. 3. 서울구치소에서 검사 구상진은 피의자 김치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김치걸에게 ‘너의 조사를 받고나니 너의 행위를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못했다고 해야할지 의문이다’ 고 언동” 했으며
- “81. 5. 13경 피의자 장신환이 남민전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밝혀진 범죄사실을 광주교도소에서 동 사건으로 복역중인 재소자 차성환, 노재창 등을 소환, 동인들과 장신환과의 범죄관련사실을 재심문하는 등 피의자 장신환에 대해 유리한 증인조사를 한바” 있으며
- “81. 5. 15경 검사 구상진은 동사건 취급진행사항을 파악키 위해 방문한 당부 수사관 등과 접촉, 중식석상에서 ‘피의자 이성하는 구 정치세대에 발생한 범죄임으로 석방하였으면 좋겠다’ ‘구 정치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언동 득문코 동석한 00과장 등은, 동 사건은 확신했으며 용공관련범죄 임으로 구속기소하여야 된다고 극구 주장” 한 바 있고
- “81. 5. 18. 검사 구상진은 511호 검사실에서 담당수사관에게 ‘제1피의자 장신환은 구시대 범죄행위로서 공안부장 등 공안부 검사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키로 의견이 합의되었다. 부장검사의 결심이 되었다. 청와대 의견도 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기소유예 결심을 하는데 객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새시대에서는 구시대의 많은 오류를 범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소유예키로 하였다' 라는 언동 특문코 반대의견 제시" 했으며

- “동일 13:00경 당부 00과장은 위 구상진 검사에게 전화를 통해 장신환을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함으로 구속기소토록 조종하였으나 위 구상진은 이에 불응코 동일 17:00 서면으로 기소유예 처분 의견문의 공문을 발송, 당부에서 접수코 구속기소 의견으로 회신” 한 바 있고
- “81. 5. 19. 당부 00과장 등이 대검공안부장 검사를 접촉, 동 사건 당부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구상진 검사가 피의자 장신환 기소유예 처분 의견이 당부 의견인 양 허위보고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에는 구상진 검사가 81년 5월 16일자로 안기부장 앞으로 제출한 「공안사범 처분 협의」라는 문서가 존안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상진 검사는 “당청 31형제22363호 피의자 장신환 등 3명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 장신환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코져 협의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상진 변호사는 2007년 2월 14일 위원회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장신환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 출입 안기부 조정관이 ‘안기부에서 송치한 사건의 죄목을 변경하거나 기소를 취하하거나 할 경우 안기부장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당시 김OO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동의요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기에 김 검사장의 결재를 받아 안기부장에게 공안사범 처분 협의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의거 공문을 발송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진 검사는 이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규정에 의한 협의가 말 그대로 동등한 수준에서 의견을 교환, 조율하는 ‘협의’라고 이해해서 이 공문을 발송한 후

“기소 만료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이에 분노”하여 사표를 제출하게 됐던 반면, 안기부 및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는 비록 법적으로는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기부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공안상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 ‘엄한 형벌’을 기대하고 있는 안기부에 기소유예 처분 의견문을 발송하고 ‘협의를’ 요구한 구상진 검사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다. 구상진 검사는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고 “서울지검에 빨갱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증언한다³⁴³⁾. 서울지검 공안부 내에서조차도 구상진 검사를 이해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커녕 “명백한 공안사범의 처리에 있어 어떻게 이리도 감상적이 될 수 있는지” 어이없어 했다³⁴⁴⁾.

구상진 검사는 결국 자신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결과를 맞게 되었고 안기부는 구상진 검사의 사례를 적극 홍보했다. 신평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 내란음모 사건 관련 구상진 검사와 안기부의 갈등은 검찰 내부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서울지검 초임 검사였던 XXX 판사에 따르면 신입 판·검사들의 안기부 견학시 안기부 고위관계자가 구상진 검사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안기부는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고 한다.³⁴⁵⁾

안기부는 또한 구상진 검사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유예 하거나 내란죄 적용에 항의하는 것이 어떤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미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비위 조사를 계속했으며 그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듯 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1981년 6월 22일자로 작성된 「전 서울지검 구상진 비위내사 상황보고」에는 구상진의 신원배경 및 동향, 이 사건 관련 청탁 개입 여부 내사 사실을 밝힌 후 향후 계속 내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343) 『한겨레신문』 2005년 3월 7일자.

344) 김경희, 『나 이제 자유인 되어』, 2002, 중앙M&B, p129.

345) 07.1.31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구상진 검사의 신원배경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P대검차장과 군장성 출신 P국회의원을 이종사촌으로 둔 화려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신원성분도 안기부의 내사에서 그를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이 보고서에는 구상진 검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와 동향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명은 81.5 증순경 동 사건 수사시 검사실로 찾아온 40대 미상남에게 동 사건 구속자 1명에 대한 신원보증 각서를 제출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본명이 동 미상남 내방시 의자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우 친숙한 사이로 보였다는 바 동 미상남의 신원 및 사건 개입 사실 등 내사 중
- 정신화(신학3) 숙부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인 바 동 사건 개입 가능성 농후
- 민정당 의원 김00는 동 사건 구속자
이성하의 누이 이00의 청탁에 따라 81.6.9 동 이00와 함께 담당검사를 방문. 검사실에서 이성하와 이00 면회 주선한 사실은 있으나 구상진에게 청탁한 사실 없음³⁴⁶⁾

즉 정신화나 이성하의 주변 인물이 구상진 검사에게 무언가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내사를 벌였으나 민정당 의원 김00의 경우 청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경우는 계속 내사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상진 검사에 대한 내사 착수의 계기가 된 사건, 즉 ‘40대 미상남의 내방’ 보고는 너무나도 상세해서 의혹을 낳는다. ‘신원보증’ 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사실은 그렇다 쳐도 “본명이 동 미상남 내방시 의자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는 것은 바로 옆에서 지켜 보았거나 지켜본 누군가에게서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내용이다. 즉 검찰에 출입하던 안기부 직원이 구상진 검사를 근거리에서 계속 주시하다 우연히 이 만남을 목격했거나 구상진 검사 측근의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이다.

346) 안기부, 「전 서울지검 구상진 비위내사 상황보고」 (1981.6.22)

이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1981년 6월 22일, 즉 구상진 검사가 안기부의 ‘조정’에 반발, 사표를 내고 나간지 3주 이상 지난 뒤로 다른 검사가 안기부의견서를 그대로 베껴쓰다시피 해서 장신환 등 4명을 기소했고 10여일 후면 1심 공판이 시작될 터였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보고서는 구상진 전 검사에 대해 계속 내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세대생 사건 처리와 관련 해서 이성하의 형이나 김치걸의 형 등의 외부 청탁 및 압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채직시 취급사건 위요한 비위사실 또는 이권개입 및 청탁 등 직권 남용 사실”에다가 “기타 여자관계 등 취약자료 수집”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상진 전 검사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그가 “81.6.15 대구지검 검사 000에게 사표는 자의에 따라 낸 것이며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지난 뒤 하겠다” “검사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어쩔 수 없다”고 언동한데 이어 미국 유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간 지 3주 정도 지난 1981년 7월 15일자 보고서는 안기부가 구상진 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구상진 신원처리조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구상진에 관해 내무부에 “해외여행 및 이주 신원조사시 당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외무부에 “여권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신청”, 1981년 7월 9일자로 구상진의 해외여행 통제를 의뢰했다고 적고 있다.³⁴⁷⁾ 즉 비위조사를 통해 취약자료를 수집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놓은 셈이다.

한편 검찰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배운 바가 많았다. 구상진 검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지자 김경희 공안부장과 함께 구상진 검사를 찾아나섰던 L검사는 그 1년 후 송씨 일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안기부에 한영희,

347) 안기부, 「구상진 신원처리조정」(1981.7.15)

송광섭, 김춘순 등에 관한 불기소 처분을 건의했다가 안기부에서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을 밝히자 안기부 의견대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중앙정보부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안보수사조정권을 부여 받고 있었지만 이 규정이 정보와 보안업무를 넘어서 기소단계에 적용될 때 검사의 기소독점권과 충돌할 가능성은 컸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는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가 대공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서 더욱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3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과 검사 파면 사태

1983년 1월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구속 중인 형사피고인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들로부터 2,750만원을 받은 대법원장 전 비서관 K씨(56·별정직이사관)와 사건브로커 오○○ 씨(41)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³⁴⁸⁾ 이 사건은 전 철도청장 A씨의 구속과 같이 발표되었고, 언론은 이를 7년 만의 차관급 구속이라 정치면 또는 사회면 톱으로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철도청장 구속 사건에 묻혀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되었지만, 사실 한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독직사건”이었다.³⁴⁹⁾

그런데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뇌물액수가 크다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 비서관의 뇌물 사건은 그 후 안기부와 검찰의 대립으로 번져가며 일파만파를 일으켜 검사 2명의 파면, 서울지검장과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의 인책사임, 부장판사 2명의 사임, 변호사 3명의

348) 『동아일보』 1983년 1월 14일자 ; 『중앙일보』 1983년 1월 14일자 ; 『경향신문』 1983년 1월 14일자 ; 『조선일보』 1983년 1월 15일자.

349) 『경향신문』 1983년 1월 14일자.

제명 등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과문을 낳았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군사정권 시절 검찰과 법원 구성원 일부의 비리를 포착한 안기부가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사건의 발단 : 27만\$ 외화밀반출 사건

현재 남아 있는 안기부의 보고서와 당시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면 그 발단은 1982년 6월 10일 김포공항 검색장에서 미화 34만\$가 든 가방이 적발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돈은 밀수자금이었는데, 검찰은 밀수주범인 일본인 하야마(羽山), 중국인(화교) 이서승 등 주범 4명은 검거하지 못했고, 국내의 암달러상과 금괴 판매책 등 16명을 검거하였다. 안기부에 따르면 “34만불 사건 조사 시 암불[암달러] 환전자금 중 이OO(여, 42세, 대원각 주인) 명의 자기앞 수표 1매 발견”하였고, “82.6.26 안OO(여, 38세, 이OO 고종동생의 처), 이OO 등 3명이 미화 27만불을 굴비 뱃속에 넣어 미국으로 밀반출(5.11)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모부처 공무원 부인 여OO씨와 일명 청과동 아줌마라 불리는 김OO 씨 등의 거물급 암달러상의 계보와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이OO씨 등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을 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³⁵⁰⁾

K 대법원장비서관의 뇌물 사건은 위의 외화밀반출 사건 중 27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요정으로 꼽히던 대원각의 여주인이 사건의 주범이고, 대원각과 쌍벽을 이루는 삼청각의 여주인이 대원각 여주인의 언니이며 이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호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OO가 구속 한 달여 만인 8월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A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고, 이OO의

350) 『중앙일보』 1982년 7월 20일자.

사촌 동생인 이OO도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A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재판장이 된 B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으로 9월 13일 풀려났다. 1982년 10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OO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OO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나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요정 여주인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 되었는데, 얼마 후 보석으로 풀려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외형상 무언가 냄새가 나는 듯한 이야기였다. 이OO 등은 보석 석방을 위해 당시 대법원장 비서관이던 K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 청탁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경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와대 사정팀에 제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

K 대법원장 비서관의 구속

청와대 사정팀은 이 정보를 어찌된 일인지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지 않고 안기부에 주었다. 안기부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의 ‘통보자료’를 단서로, 1월 5일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안기부는 1월 5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K비서관과 사건 관계자 9명을 연행 조사하여, K가 이OO 보석 청탁 건을 포함하여 사건개입 8건에 4,45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2건의 인사청탁에 개입하여 2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660만원을 받았으며, 34,000불(한화 2,720만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아래의 표는 안기부 보고서에 나오는 K의 사건 및 인사청탁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안기부 보고서 상의 K대법원장 비서관의 사건 및 인사청탁

유형	일시	금액	중개자·청탁자	피청탁 법관	내 용
사 건 청 탁	78.9	50만원	서울민사지법 상업 등기과 5급 000	유태홍 대법원판사	경매사건 지연 부탁 ---> 3개월 간 보류조치
	78.10	200만원	유00(유태홍 대법원 판사 원척)	000 대법원판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기각 ---> 기각
	80.4	200만원 500만원	00콜택시 사장 김00	유태홍 대법원판사	조카의 부동산전매 및 건축법위반 사건 선처 부탁 ---> 파기환송
	81.9	100만원	동부지원 집달사 전00	△△△ 서울형사지법원장	친우의 형사사건 선처를 부탁 ---> 선처
	82.7 하순	1천만원	전 법률공론사 총무 부장 오○○	A 부장판사	외화밀반출 사건 이경자 보석 ---> 보석
	82.9 초순	2천만원	전 법률공론사 총무 부장 오○○	B 부장판사	외화밀반출 사건 이재완 보석 ---> 보석
	82.10	200만원	00철강사장 손00	XXX 대구고법원장	세금 감면 행정소송 신속 종결 청탁
	82.10	100만원	00철강사장 손00	*** 대법원판사	횡령사건에 대한 선처 청탁 ---> 파기환송
인 사 청 탁	82.7	110만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6급 000	□□□ 수원지법원장	집달사로 전보부탁
	82.8	100만원	인천등기소장 5급 000	◇◇◇ 서울민사지법원장	좋은 보직으로 전보---> 상업등 기과 계장으로 전보

안기부가 K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행조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인적사항	조사결과	비고
1	무직 오OO(41)	○ 외화도피사건 구속자 이OO 보석 허가 주선 ○ 사례금 3,000만원 전달	1.9. 23:00연행 조사 중
2	대법원 행정처5급 OOO	○ 82.7 K에게 이OO 보석허가 주선 청탁 ○ 82.8 이OO 형부로 부터 500만원 수수	1.8. 08:30연행 1.8. 19:30방면(고혈압 으로 자가조사)
3	대원각 상무 김OO(53)	○ 이OO 등 보석허가 위요 금품 제공 등 개입사실 없음	1.7. 12:25연행 1.9. 14:20방면
4	이OO 남편 이OO(49)	○ 이OO 변호사비용 1,000만원 제공, 본건 관련 혐의 없음	1.8.18:30 연행 1.9.12:20 방면
5	OO콜택시 사장 김OO(53)	○ K에게 사건청탁 700만원 제공	1.7.11:45 연행 1.8.18:30 방면
6	대법원장 원척 유OO(40)	○ K에게 사건청탁, 금품제공 - K : 200만원	1.10.14:00 연행 1.11.16:30 방면
7	한국원예기술협 회장 OOO	○ 82.4 이○○ 탈세사건 상고심 선고일자 확인 등 사실은 있으나 금품거래 사실 없음	1.7.14:20 연행 1.8.20:15 방면
8	수원지법 성남지원 6급 OOO	○ 82.7 집달리로 근무케 해달라고 인사청탁 ○ 110만원 제공	1.8.18:30 연행 1.9.14:20 방면
9	서울형사지법원장 비서관 XXX(46)	○ 복직관련 500만원 제공혐의 미발견	1.8.19:00 연행 1.9.22:00 방면

안기부는 당시 K와 사건을 청탁하였다는 사람들 중 일부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사건 및 인사청탁과 관련한 위의 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K가 청탁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상사로 모시던 유태홍 대법원 판사(당시)를 비롯하여 대법원 판사 3인, 고법원장 1인, 지법원장 3인, 지법 부장판사 2인 등인데, 자신은 사건과 인사청탁을 할 때 금품을 받았지만, 청탁내용에 금품전달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고서의 끝 부분에도 “본명이 수수한 금품의 행방을 조사, 사건관련자 금품제공 여부 규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청탁을 할 때 고위급 법관들에게 금품을 제공

하지 않았냐는 안기부의 추궁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청탁 1건, 인사청탁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K의 청탁이 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결과가 K의 청탁이 통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럴만한 결정을 내릴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까지 안기부가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K사건의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안기부 수사결과의 수뢰액수 4,660만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4,654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공소사실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재판부에 의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K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고위 법관들에게 손쉽게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K는 유태홍 대법원장이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1957년 XXX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유태홍 대법원장과 군법회의 변론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사교 춤 실력이 탁월했던 K는 유태홍 대법원장에게 춤을 가르쳐 주며 친해졌다고 한다. K는 “유대법원장 부인 사망후 스스로 집안일을 돌봐주는 등 개인비서격으로 계속 추종”하였다고 한다. 그는 유태홍이 1973년 “서울형사지법원장에 취임하여 비서(6급상당)로 특채한 이래 서울고등법원장,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비서관 근무”를 해 왔다. K가 안기부에 잡혀 와서 쓴 진술서에 따르면 유태홍의 자녀들은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고, 아이들의 졸업식에도 유태홍을 대신해서 자신이 참석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한다. 대법원장과의 이런 각별한 인간관계가 최고의 정보망을 동원할 수 있는 요정 경영자인 이OO 측에 포착되어 보석청탁을 위해 합계 3천만원이란 거금이 전달된 것이다.

안기부는 K 및 그의 내연의 처의 명의로 된 11개 예금구좌 거래상황(9,910만원) 등의 자금 출처 규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한국은행, 감사원에서 입금수표 추적 중”이라는 점, “본명이 수수한 금품의 행방을 조사, 사건관련자 금품제공 여부 규명” 등과 K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OO원

양 사장 이00에 대한 탈세사건 파기 환송 청탁과 관련한 교제비 거액 수수설”과 “00형사지법원장 비서관(5급) 000 복직과 관련한 500만원 수수혐의” 등을 앞으로 “수사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아래와 같이 조치했다.

6. 조치

- 본명의 비위사실 중 외화 34만불 밀반출사건 관련자 보석과 관련한 3,000만원 금품수수 및 재산 해외도피 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83.1.12. 16:00 대검 중앙수사부에 신병 및 증거품 공히 이첩
- 여타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록 첨부 청와대 사정실에 통보 종결처리

안기부는 1월 12일 K의 신병과 외화밀반출 사건 보석 관련 금품수수 및 재산해외도피 관련 증거품을 대검 중앙수사부에 이첩하고, 다른 비위 사실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다

안기부와 검찰의 갈등과 안기부의 K 비서관 폭행 인정

그러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K비서관이 남산의 안기부에서 서소문의 대검찰청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12층 중앙수사부 사무실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모 신문 법조출입기자와 같이 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대법원장실을 출입하였기 때문에 K비서관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당시 K비서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즈음에야 겨우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기자의 목격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검찰 수뇌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며” 당연히 K비서관이 안기부에서 아주 심한 대접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퍼져 갔다. “명색이 대법원장의 비서관인데 설령 비리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은 법원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반응이었다.³⁵¹⁾

법원과 검찰은 때로 1971년의 사법과동과 같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기도 하지만, 늘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동질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법관은 아니고 비리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이사관이라는 고위공무원 신분의 비서관이 안기부에서 험한 꼴을 당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검찰이 K사건을 발표한 방식을 보면 나름대로 법원을 배려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82년말부터 현직 철도청장인 안창화가 업자로부터는 뇌물을 받고 부하로부터는 상납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가 1983년 1월 6일 안창화를 소환 수사하여 11일 사표를 받고 14일 사건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K사건을 안기부로부터 12일에 이첩 받자마자 자체조사를 거칠 시간을 거의 두지 않고 14일 안창화 철도청장의 구속사건과 같이 발표해 버린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검은 이 사건으로 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법조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판단, 두 사건이 함께 보도될 수 있도록 K씨에 관한 수사를 서둘러 구속 하루 다음날로 예정된 안창화 사건 발표시점에 맞추었다는 후문”이 있었다고 한다.³⁵²⁾ 검찰의 예측대로 두 사람이 받은 뇌물의 액수는 K비서관이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언론은 당연히 직급이 높은 안창화 철도청장의 구속을 7년 만의 차관급 구속이라며 정치면, 또는 사회면의 톱기사로 배치했고, K비서관 사건은 사이드로 다뤘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민심 수습을 위해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김종필, 이후락, 김진만 등 유신 시대의 실력자들을 백억 대의 축재를 한 부정부패자로 모는 등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을 정권차원의 구호로 내걸었다. 그런데 1982년 5월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수천 억 원 대의 사기

351)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1993, 한국일보, p41.

352) 『조선일보』 1983년 1월 16일자.

어음 사건이 발생하여, 신군부가 집권 2년 만에 박정희 정권 18년의 부정 부패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부정부패 사건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자, 민심은 신군부로부터 견잡을 수 없이 이반하였다. 당시의 한 신문은 A철도청장과 K대법원장 비서실장의 구속에 대해 “최근 공직자 사회를 비롯한 일부 사회인사들은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해 가지 않는가 보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특히 구시대의 폐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부 인사들은 현실안주를 넘어 부조리에 눈을 돌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전두환이 “이런 사회분위기를 인지하고 새해벽두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주변을 포함한 일련의 부조리척결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³⁵³⁾

안기부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의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K대법원장 비서관을 잡아다가 험하게 다룬 것은 이런 분위기에서였다. 그런데 K비서관이 검찰로 이첩되는 과정을 모 신문 기자가 목격하였고, 일부 신문에서 K비서관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써서 안기부가 조사하였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였다.³⁵⁴⁾ 그런 상황에서 법조계 주변에서 안기부가 대법원장 비서관을 잡아다가 심하게 다루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안기부로서는 소문의 진원을 캐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53) 「정화 박차... 예외 없다 -대통령친척·고위공직자 구속의 의미」, 『경향신문』 1983년 1월 15일자. 한편 정부는 이들의 사표를 처리하고 구속하여 언론에는 이들이 마치 전직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들은 조사 시점까지 현직에 있었다.

354) 『조선일보』 1983년 1월 15일자; 『중앙일보』 1983년 1월 14일자; 『한국일보』 1983년 1월 15일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단순히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았다고 썼는데 『조선일보』의 해설기사는 “대법원장의 전 비서관 강씨는 검찰이 그를 직접 수사할 경우 자칫 오해가 생길 우려도 있어 검찰과 법원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 다른 수사기관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름대로 배경을 설명했다.

한 중앙일간지의 법조출입기자는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서술했다.

안기부는 이 같은 법조계의 반응을 접하고는 K비서관에 대한 조사상황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하고 반안기부 여론을 조성한 사람이 검찰 내부 인사라고 판단, 대상자로 꼽은 당시 중앙수사부의 S과장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우관계, 재산관계 등에 대한 안기부의 집중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챈 S과장은 김석휘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김총장은 며칠 뒤 안기부장을 만나 안기부원에 의한 검찰간부 뒷조사 사실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³⁵⁵⁾

당시 중앙수사부는 모두 4개 과로 구성되었는데, 1과장은 이진개, 2과장은 성민경, 3과장은 김도연, 4과장은 신건이었다.³⁵⁶⁾ 이 때의 S과장은 위 글의 필자에게 확인한 바 성민경 과장이었다.³⁵⁷⁾ 김석휘 총장이 노신영 안기부장을 만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였는지가 안기부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무엇을 문제삼아 안기부장에게 항의하여 성민경 과장에 대한 뒷조사를 중단시켰는지를 짐작케 하는 매우 흥미로운 보고서가 남아 있다.

1983년 2월 일자미상에 작성된 「전 대법원장 비서관 K조사경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1. 개요” 항목에서 “당부에서 지난 1.5- 1.13간 전 대법원장 비서관 K의 사건개입 등 금품수수 혐의사실을 조사·처리하였는바” K의 범죄사실로 “1) 금품수수-사건개입(8건) : 4,450만원, 인사청탁(2건) : 210만원 계 : 4,660만원, 2) 재산해외도피 : 미화 34,000불(한화 2,720만원 상당)”을 확인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이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K의 범죄사실 다음에 나오는데, “동건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K를 ○침상목으로 둔부: 3회, ○손바닥으로 따귀: 5회 등 구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경위 및 관계관 처리보고”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⁵⁸⁾ 본 위원회는 1961년 중앙정보부 창립

355)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1993, 한국일보, p41.

356) 『중앙일보』 1981년 4월 28일자 기사인사발령 참조.

357) 사법분야 담당 위원 한홍구와 이창민 뉴시스 편집국장과의 전화 보충 인터뷰, 2007년 8월 10일.

358) 안기부, 「전 대법원장 비서관 K 조사경과보고」 (1983.2)

이후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왔는데, 본 위원회가 확인한 중앙정보부·안기부 자료 중 내부보고서 형태로나마 연행되어 온 피의자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 보고서가 유일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조사경위” 항목을 수사착수, 피의자 연행, 신문 세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어떤 경위로 K 비서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사경위

가. 수사착수

- 83.1.5 당부 지휘 하에 수사착수
- * 단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통보자료

나. 피의자 연행

- 83.1.5 20:00 K주소지 자가를 급습, 수색 실시하자
- 본명은 안방 장통 속에 은신하고 처 김00(39세)는 부재중 강변, 들어 누워서 심장병 발작을 위장하는 등으로 수색을 방해하였으나 수사관들의 집요한 설득으로 동일 23:30 검거 연행

다. 신문

- 83.1.5 23:30 본명을 연행조사와 동시 관계자 9명에 대하여 연행조사를 진행하였는바
- 본명은 연행 당초부터 조사를 기피코자 허위로 저혈압(90/60)을 호소하면서 신병위장 조사에 비협조
- * 의사 검진결과 건강상태 정상
- 수사관 신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결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뿐, 범죄사실에 대해 “악의에 찬 중상모략” 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교활한 행동으로 범죄 사실 은폐 기도로 일관타가
- 계속하여 1.6 20:30경 진술내용의 모순점과 혐의사실 등을 집중 추궁하였으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 조사 거부
- * 83.1.5 사표 제출 후 자신의 혐의사실을 지득하고 공범 오○○(구속)과 범행일체를 부인키로 사전 모의

- 이에 담당수사관들은 범죄사실 규명에만 집착한 나머지
 - 침상위에 엎드려뺨쳐 시킨 후 침상목으로 둔부를 1회 때리자 진술하겠다고 하여 일으켜 세워 추궁하였으나 다시 모략이라고 강변하여
 -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치면서 위압감을 주자 비로소 미화 34만불 밀반출 사건 관련 구속자인 대원각여주인 이00 42세의 보석허가 주선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사실 등 인사 및 사건개입사실 일부 시인하면서도
 - 자신의 행위는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위에 비하면 “이 정도면 깨끗한 편” 이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계속하고 여죄에 대하여는 일체 부인
- 1.9 23:00(연행3일후) 하수인인 공범 오00이 체포되어 전시 이00의 공범 이00 36세 보석과 관련 2,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동 오00 진술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추궁하였으나 역시 “하늘에 맹세코 알지 못하는 중상모략이며 오00이가 착각하고 허위 진술한 것” 이라고 강변하므로

수사관은 재차

- 침상에 엎드려뺨쳐 시킨 다음 침상목으로 둔부를 1회 때렸으나 계속 부인하여 다시 1회를 때린바 진술하겠다고 하여
- 일으켜 세웠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므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자 비로소 범죄사실 일체를 시인하였음

“침상목으로 둔부 3회, 손바닥으로 따귀 5회 등 구타”하였다는 사실은 안기부가 부내에서 조사 중에 구타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안기부는 ‘조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치

- 본건 수사과정에서
 - 담당 수사관들은 사실규명에 집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피의자를 구타한 것으로 계획적인 고문행위는 없었으며
 - 사건내용을 조작 또는 과장하려는 저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진실규명에 국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이유 불문코 모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행위는 엄금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안으로
- 동건 수사책임자인 담당 과장 000에 대하여 그 지휘책임을 물어 부 고등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안기부는 폭행을 가한 수사관은 불문에 부치고, 과장 급 간부 1인만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1983년 2월 1일자로 000 검사를 안기부에 파견했다. 안기부의 고문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검사를 파견해 준법수사를 하게끔 한 것이라 한다. 안기부는 K대법원장 비서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구타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고, 그로 인해 검찰로부터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안기부의 반격은 이미 1월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반격의 주된 방향은 검찰이었지만, 27만\$ 사건의 이00, 이00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법원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안기부가 작용한 조짐은 법원 쪽에서 먼저 감지되었고, 곧 법원은 인사파동에 휩싸이게 된다.

라

보석 허가 결정과 인사파동 : 두 부장판사의 ‘의원’ 면직

K비서관이 비리를 이유로 구속된 것은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 20여 년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크게 의존해 온 최측근 인물이 비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유태홍 대법원장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K이 구속된 1월 14일 대법원장 비서실 비서실(비서실장), 김00 비서관(별정직 서기관), 이00 비서관(별정직 사무관) 등 3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유태홍 대법원장은 “2명밖에 없는 비서관을 ‘주변부터 정리한다’며 모두 면직” 시켜 “법조계에는 온갖 소문이 나돌았”고, 이어 며칠간은 유 대법원장이 신병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³⁵⁹⁾

359) 『중앙일보』 1983년 1월 15일, 2월 2일자.

1월 26일 출근한 유태홍 대법원장은 A, B 두 부장판사를 불러 사표를 종용했다. 『중앙일보』는 1월 28일 「부장판사 2명 돌연 사표」라는 제하에 두 부장판사가 “26일 각각 유태홍 대법원장을 방문, 사의를 표했으며 유대법원장은 이들의 사표를 금명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은 K비서관의 조사과정에서 K비서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물의가 일자 자진해서 사의를 표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고 덧붙였다.³⁶⁰⁾ 조선일보도 1월 29일 이들의 사의표명 소식을 보도한 뒤 1월 30일에는 그 뒷얘기로 이들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법관들은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사태가 진전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두 법관의 사의표명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자 상부의 ‘결단’이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³⁶¹⁾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두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의 두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보도는 대법원이 이들의 사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데, 당사자들은 보석 결정이 “전혀 청탁이 없던 상태에서의 공정한 업무처리”로 아무 잘못이 없다며 사표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26일의 면담을 두고 『중앙일보』가 “이 날의 면담에서 대법원 관계자들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사표종용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다’는 정도로 답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보도한 것은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해준다.³⁶²⁾

그러자 대법원은 1월 31일 오후 전격적으로 A부장판사는 강경지원장으로, B부장판사는 장흥지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2월 3일자로 법관 3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언론은 “예년에는 보통 3월 1일자로 단행되던 인사가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앞당겨졌다”고 보도했다.³⁶³⁾ 인사

360) 『중앙일보』 1983년 1월 28일자.

361) 『조선일보』 1983년 1월 29일, 30일자.

362) 『중앙일보』 1983년 2월 2일자.

시기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A부장판사와 B부장판사는 모두 1982년 9월에 현직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사대상이 될 수 없었다.

사실 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사표 중용이나 좌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A부장판사의 경우 이OO 피고가 이미 예상 추징금 1억 9,197만원을 예납하였고, 검찰도 보석 결정 전에 담당검사가 재판부에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피고인의 보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보석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A부장판사가 이보다 앞서 1981년 6월 24일 미화 15만\$를 밀반출하려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LA교민회장 이OO 씨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초범에 추징금을 예납한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취지대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하기 어려웠다.³⁶⁴⁾ A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사건의 공범인 이OO 피고에게 보석 결정을 내린 B부장판사의 경우도 문제삼을만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안기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A부장판사나 B부장판사는 K비서관으로부터 보석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이OO와 이OO의 보석이 이들로부터 함께 3천만원의 거액을 받은 K이 두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쓰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K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두 부장판사는 K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고, 대법원도 이들이 사건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예정에도 없는 좌천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이들 둘만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다른

363) 『동아일보』 1983년 2월 1일자.

364) 『조선일보』에 따르면 1981년과 1982년 10월까지 전국법원에서 15,926건의 보석이 청구되었으나 이 중 39%인 6,229건만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을 경우 법원은 ‘당연히’ 보석을 허가해 주어야” 옳으나 “그럼에도 그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석과 적부심 - <법관과 재판> 23회」, 『조선일보』 1983년 6월 14일자.

37명의 법관 인사가 앞당겨졌다. 언론은 이 인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장법관들은 대법원이 끝까지 이들의 무고함을 인정하면서도 서둘러 벽지로 발령해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³⁶⁵⁾

인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2월 1일, 결국 A부장판사가 사표를 썼다. 언론은 이를 문책에 불복하여 사표를 낸 것으로 박스기사나 사설을 통해 대서특필했다. A부장판사의 인터뷰를 실은 『한국일보』에 따르면 그는 “K비서관이 청탁을 받은 22만 달러 밀반출 사건의 관련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외부청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허가해줄 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며,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았으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고 버텨 왔으나 3일자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시킴으로써 결국 사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법관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좌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로 했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그를 인터뷰한 기자는 다음 날 다시 기사를 써 A부장판사는 “유태홍 대법원장이 대법원판사로 재직할 때 2년 가까이 재판연구관으로 가까이서 모셨던” 사이라며, “엉뚱하게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대법원에서 흘러나와 일부 신문에 보도됐을 때까지만 해도 함구로 일관”했었지만, 좌천발령이 나자 사표를 던지며 말문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³⁶⁶⁾

『동아일보』는 「법관 인사의 파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두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대로 무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근거로 대법원은 그들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고 지방전출의 인사발령을 내렸던 것인지도 이해할 길이 없다”면서 “두 부장판사의 경우는 대법원이 스스로 문제와 의혹의 씨를 더욱 키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365) 『중앙일보』 1983년 2월 2일자.

366) 『한국일보』 1983년 2월 2일, 2월 3일자.

같은 날 「기자의 눈」 난을 통해 A부장판사가 사표를 쓰는 광경을 생생하게 전했다. 1월 31일 오후 늦게 A부장판사 등의 좌천 인사가 발표되고 “A부장은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동료 및 후배법관들이 사표만류 검 위로 검 몰려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A부장판사의 방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억울한 파면을 재판하면서 ‘무슨 무슨 장관의 아무개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파면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자신은 부당하게 사표제출을 종용당하고 결국 지방으로 쫓겨가다니…” 등등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장님! 지금 그만두시면 더욱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동안 지방에 내려가 바람이나 쐬고 오시지요”라는 동료 판사들의 만류에도 “A부장은 결국 사표를 썼다”는 것이다.³⁶⁷⁾

A부장판사가 2월 1일 사표를 낸 데 이어 B부장판사도 2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전출법관 또 사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인사에 승복할 수 없어 사표를 낸 것”이며 “관련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은 외부의 청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안을 면밀히 검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해준 것 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신문은 “한편 사표를 낼 뜻을 밝혔던 서울지법 남부지원 B부장판사는 사표를 내지 않고 장흥지원장으로 3일 부임했다”라고 짤막하게 보도했다.³⁶⁸⁾ 우여곡절 끝에 장흥지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 달 반가량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3월 18일 사표를 제출하여 21일자로 수리되었다.³⁶⁹⁾

그런데 B부장판사가 사표를 낸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그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 사표가 수리된 A ‘전’ 부장판사가 안기부로 연행된 것이다. 본 위원회가 확보한 안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는 이 사건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은 뒤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자

367) 『동아일보』 1983년 2월 3일자.

368) 『동아일보』 1983년 2월 2일, 2월 3일자.

369) 『중앙일보』 1983년 3월 19일자; 『조선일보』 1983년 3월 19일자.

수사”에 대하여 “검사, 판사 등 현직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변호사, 중요 피의자 및 그 가족 등 총 21명 조사”하였는데, A부장판사는 1983년 2월 2일자로 사직³⁷⁰⁾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법관으로 간주되지 않고, “현 변호사 개업”이란 이유로 연행자에 포함되어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까지 “연행 조사 중”에 있었다.³⁷¹⁾ A ‘전’ 부장판사가 연행된 시점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가 사무실을 얻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요 일간 신문에 석간은 2월 16일자, 조간은 2월 17일자로 1면에 2단 박스 광고로 “변호사개업인사”를 하고 있는 것³⁷²⁾으로 보아 2월 17일 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B부장판사는 사표를 내지 않은 까닭에 이 보고서가 작성될 시점까지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안기부는 이 보고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 K(대법원장 비서관)이 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재판부 작용(기확인)”이라고 하여, 두 부장판사가 K비서관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을 기정사실화하였으나, 안기부는 6하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두 부장판사와 K비서관 사이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안기부는 두 부장판사가 변호인들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20~30만원을 받았고, 12만원 상당의 골프 대접을 받았으며, 마작 밀천으로 1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런 휴가비 제공이나 접대가 이루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이 시점이 두 재판장이 각각 보석을 허락한 이후였다면 변호인들의 금품 제공과 보석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특히 상당한 재력가인 이OO, 이OO 피고의 보석을 위해 가족들이 K비서관에게만 3천만 원을 주었고, 안기부에

370) 안기부 보고서에는 2월 2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 언론에도 2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법원행정처 발행의 『사법연감』 1984년판에는 A부장판사의 퇴직일자 2월 1일로 되어 있다.

371)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 중 가장 늦은 시기가 2월 19일 특별세무 조사를 언급한 내용이고, 이재완, 이태희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다시 구속된 것이 2월 26일인 것으로 보아 이 보고서는 2월 20일에서 2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72) 『동아일보』 1983년 2월 16일자; 『중앙일보』 1983년 2월 16일자; 『조선일보』 1983년 2월 16일자; 『한국일보』 1983년 2월 17일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사 선임료로 만 가족들이 3,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담당검사의 입회서기 2인과 남부지청 수사관 1인에게 제공한 금액의 평균이 이들 두 재판장에게 각각 준 금액보다 많았다. 이들 두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사후에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법관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금품을 받고 보석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던 것이며, 학연과 고시 선후배로 얽혀 있는 법조계의 당시 관행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었다 할 것이다.

수 수 자	제 공 자	금 품	향 응
A(46) (담당부장판사) * 2.2 사직: 현 변호사 42만원	변호사 (나○○ 등)	30만원 -휴가비: 20만원(나○○) -마작밋천:10만원(나○○, 변○○	12만원 -골프: 변○○
B(41) (담당부장판사) 30만원	변호사 (윤○○)	30만원 (현금) (휴가비 명목)	
* 000 (대법원 송무국장)		10만원 마작 밋천 변○○ 지불	변○○ 초청골프
* 000 (대법원 연구관)		10만원 마작 밋천 변○○ 지불	변○○ 초청골프

A 변호사는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일신상의 이유”로 3월 8일 “변호사 휴업계를 소속 변호사회인 서울통합변호사회에 제출했고, A변호사의 휴업계는 이날자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 처리됐다”고 한다.³⁷³⁾ 한편 3월 20일자로 퇴직한 B부장판사는 “28일 현재 (변호사) 개업등록조차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조선닷컴 인물정보에 의하면 두 부장판사가 각각

373) 『중앙일보』 1983년 3월 12일자.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1984년으로 되어 있다.³⁷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검찰의 경우도 담당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 파면되고 L서울지검장과 J남부지청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의원면직’되었는데, L서울지검장은 농장을 경영하다가 1990년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J남부지청장도 1983년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지 못하고 1984년에야 사무실을 열 수 있었다.

마 안기부와 ‘검찰 비리 척결’

1983년 1월 12일 K비서관을 검찰에 이첩할 당시의 보고서의 분위기로 보아, 안기부가 처음부터 두 부장판사의 사표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기부에 대한 검찰의 비판이 제기되고, 안기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기부가 검찰에 강하게 반격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쪽의 희생양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안기부가 “83.2.12(토) 명예 의거 외화 34만\$, 27만\$ 밀반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처리 과정에서의 부당사항 유무,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전제하였지만, 그 내용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판결의 문제점보다도 검찰수사 전반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수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다.

○ 수사개요

가. 관련자 수사

- 검사, 판사 등 현직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 변호사, 중요 피의자 및 그 가족 등 총 21명 조사

나. 관련 반사회적 인물 경영기업 특별세무조사 및 가택수색

- 대원각 등 업체 11개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정예요원 112명 투입)
- 중요관련자 가택 9개소 수색

374) 『중앙일보』 1983년 3월 28일자.

이어 이 보고서는 연행대상자 21명 중 주요인물을 소개했다. 이 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만, 외화 34만\$, 27만\$ 밀반출 사건에서 34만\$ 사건은 안기부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안기부에게 34만\$ 사건이 필요한 경우는 27만\$ 사건 관련자들이 34만\$ 사건 관련자들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 뿐이었다.

순번	성명	직업	관련내용
1	이00(여, 42)	대원각 주인	27만불 환전, 밀반출(보석, 집유1년)
2	이00(49)	00개발(주) 고문(이00 남편)	사건 수습책
3	안00(여, 38)	이00 고종질	27만불 밀반출주범(불입건)
4	이00(37)	미투리양화점 주인(안00 남편)	27만불 밀반출 주범(보석, 집유3년)
5	이00(여, 43)	삼청각 주인	외화 밀반출시 동행
6	한00(45)	00관광 사장(이00 남편)	변호사 선임
7	변00(44)	변호사	서울통합변호사회 소속 00합동법률 사무소, 사건공동수임
8	윤00(42)	변호사	"
9	나00(43)	변호사	"
10	A(46)	서울지법부장판사(83.2.2 사직)	이00 보석허가
11	이00(47)	九老稅關 關稅 담당(주사보, 이태희 동생)	사건수습가담
12	송00(28)	'대월' 싸롱 마담	변호사 단골 향응제공 접대
13-21	김00 등 압불상 기타관련자 9명		

위 표의 13~21번은 보고서에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개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압달리상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2명 중 1번~6번과 11번 등 7명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고, 7번~9번은 변호사, 11번은 변호사들이 판검사들을 접대한 술집 마담이고, 10번은 이OO 피고의 보석을 결정한 재판장이다. 이들 중 이OO와 이OO의 부인 안OO은 K가 안기부에 연행될 무렵인 1월 7일과 1월 4일 각각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OO의 남편인 이OO는 K구속 이후 사건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자 1월 23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안기부에 따르면 이들 ‘미국 도피자 3명’ 중 이OO, 이OO 부부는 2월 16일, 안OO은 2월 17일 각각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기부 보고서는 이어 ‘본 사건 처리담당 관련자(미조사)’란 항목 아래 안기부가 조사하지 않은 판검사와 검찰, 경찰 공무원 등 현직 공무원 11명의 명단도 기술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는 담당검사-부장검사-남부지청 차장검사-남부지청장-서울지검장 등 수사상의 지휘계선에 있는 5명과 직접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 및 입회서기 3인의 이름이 나와 있다.

0 본 사건 처리담당 관련자(未調査)

- 검찰(6명)

<검사>

- . 남부지청 담당검사 Y
- . 남부지청 담당부장검사 P
- * 차장검사
- * 지청장 J
- . 00지검 검사장 L

<수사관 및 입회서기>

- . 김00(Y검사 입회서기)
- . 임00(당시 P부장검사 입회서기)
- . 전00(00지청 수사과 계장)

- 법원(2명)

- . 담당부장판사 A
- * 2.2 사직, 현 변호사개업(연행 조사 중)
- . 담당부장판사 B

- 관련경찰(1명)

경위 권00(56, 00시경 대공분실, 김00 조사편의)

안기부에 따르면 검사 등 사건 담당 공무원들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총액은 1,015만원인데, 법원 관련자 4명이 받았다는 92만원을 제외한 검찰, 경찰 관련자들이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품 923만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수자	제공자	금 품	향 응
Y(42) (담당검사) 625만원	변호사 (윤○○ 등)	100만원(현금)	45만원 -酒宴 2회: 변○○, 윤○○
	피의자가족	406만원 -소파: 90만원 -비디오, 카메라셀: 230만원 -갈비 등: 26만원	44만원 -식사1회 : Y -주연 2회 : Y
	변호사 (나○○)		주연 30만원: 나○○, 검사 시보 2명
P(43) (담당부장 검사) 133만원	변호사 (변○○)	100만원(현금)	33만원 -주연 2회: 변○○
L(49) (서울지검장) 45만원	피의자가족	20만원 -제주그랜드호텔 숙박티켓	25만원 -골프: Y, L○○
김○○(37) (Y검사입회 서기) 20만원	暗弗商 (김○○)	20만원(현금)	
임○○(43) (P검사입회 서기) 60만원	피의자가족	25만원(현금)	15만원 -주연 1회: 이○○, 임○○
	암불상 (김○○)	20만원(현금)	
전○○(42) (남부지청 수사관) 40만원	피의자가족	25만원(현금)	15만원 -주연 1회: 이○○, 전○○
권○○(56) (시경 경위) 20만원	암불상 (김○○)	20만원(현금)	

안기부에 따르면 이들은 위의 금품을 받고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사건처리상 부당·부정행위의 요점

가. 밀반출 주범 안00 불입건 불문처리

- 27만불 외화 밀반출의 주범 안00 입건 면제
- 남편 구속시라도 처는 최소 입건후 관용조치가 정상

나. 반사회적, 반국민적 사범의 輕薇처리로 엄단책무 망각

- 過輕구형 및 過輕판결

* 외국환관리법 위반사건의 최고형은 10년

- 34만불건(16명)(비교적 정상처리 노력)

- ^ 징역 2년-19월(7명)

- ^ 징역(7명)

- ^ 벌금(2명)

- 27만불건(6명)(과도한 경미처리)

- ^ 징역1년(1명) ^ 징역(5명) ^ 보석(3명)

- * 구형(징역3년: 1명, 2년: 1명, 1년: 4명)

- 보석에 대한 검찰 즉시 항고 포기

- 보석 3명(이00, 이00, 여00)

- 중요사건에 관하여는 즉시 항고함이 검찰의 상례

- 점유선고에 검찰항소 포기로 1심에서 형 확정

다. 임신 아닌 자를 임신으로 조작(조서 작성)

- 이00(여42세, 대원각주인) 조사시 수사관이 임신 아닌 자를 임신으로 유도 신문 조서 작성(82.7.10)

- * 검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 확인 없이 인정

- 한양대 내과과장 불임진단, 진단서 발부(7.27)

- 변호인이 불임인 사실 인지코 임신 등을 이유로 보석신청(7.28)

- 담당 A부장판사는 확인 없이 보석결정(8.16)

물론 안기부가 적발한 것처럼 27만\$ 사건의 주범인 이OO가 임신이 아닌데도, 이OO가 먼저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관이 유도 질문을 통해 임신인 것처럼 조서를 작성³⁷⁵⁾한 것 등 검찰의 수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검찰과 법원이 34만\$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상처리 노력”을 보인 반면 27만\$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미처리”라고 두 사건의 형량을 들어 단순 비교한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27만\$ 사건은 단순한 외화 밀반출 사건인 반면, 34만\$ 사건은 한국-일본-홍콩이 연결된 국제삼각밀수 사건으로 검찰은 관련 두 조직에 의해 금괴 52Kg이 밀수입된 사실을 같이 적발한 것이다. 당연히 단순 외화밀반출 사건과는 구형량도, 선고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검찰로서도 27만\$ 사건은 34만\$ 사건을 추적하다가 “거물급 암달러상의 계보”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이OO 씨, 이OO 씨 등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소득을 얻기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34만\$ 사건 관련자들을 1982년 7월 16일 기소한 데 이어, 7월 27일 이OO, 이OO 등 27만\$ 사건 관련자 7명을 기소하면서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³⁷⁶⁾

375) 안기부 보고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OO의 임신 사실에 대해

“문 : 신체는 건강한가요

답 : 현지 임신6개월로 몸이 불편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기부에서 이OO는 그런 조서가 작성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임신유도신문정황(이OO 진술)>

문 : 신체는 건강한가요?

답 : 아프지는 않고 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 : 임신했나 보군요(조사관이 힐끔 봄)

답 : 予定(月經)이 좀 지나서 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 : 뭐 아주머니 많이 된 것 같아요. 똑바로 대(큰소리)

답 : 많이 되긴 뭐가 많이 돼요.

문 : 5-6개월 된 것 같은데 똑바로 대(큰소리)

* 이OO는 창피해서 긍정적 首肯.“

376) 『중앙일보』 1982년 7월 20일, 1983년 2월 5일자.

안기부는 34만\$ 사건은 한 명도 보석이 없는 반면, 27만\$ 사건에서는 3명이나 보석을 받아 두 사건이 매우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안기부가 27만\$사건 관련자로 보석을 받은 3명에 포함시킨 여OO은 암달러상으로 원래 34만\$ 사건의 금괴 밀수 자금 추적과정에서 구속³⁷⁷⁾되었다. 여OO은 이OO와 같은 1982년 8월 16일 석방되었는데, 당시 『중앙일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자 「아리송...2개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란 해설 기사를 통해 “이OO 씨는 (구속) 35일만인 8월 16일 34만달러 사건의 여OO 피고인(49 · 암달러상)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었다”라고 확실하게 정리했다.³⁷⁸⁾

국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요정 주인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다른 외화밀반출 사건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았는데, 요정 주인 등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집행유예를 받았고, 게다가 대법원장 비서관에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법관의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27만\$ 사건과 34만\$ 사건은 단순 외화밀반출 사건과 국제3각밀수자금의 밀반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OO, 이OO 피고 등은 초범에 추정예상금을 완납하여 보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공했다. 상당한 재력가인 이들은 또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고 유능한 변호사 3인을 선임했다.³⁷⁹⁾ 또한 이OO는 한양대병원에서 임신이라는 진단서를, 이OO은 서울대병원에서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했다.

377) 『중앙일보』 1982년 7월 20일자.

378) 『중앙일보』 1983년 2월 5일자.

379) 이들이 선임한 변OO, 나OO, 윤OO 변호사는 이OO 등이 구속되기 직전인 7월 9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여대생 박모양 피살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정OO 군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었다. 『중앙일보』 1982년 7월 9일.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OO 군에 대한 무죄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주심인 이회창 판사가 쓴 판결문은 매우 유명하다.

안기부는 이 사건에서 담당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강조하고 난 뒤 L서울지검장 선까지 지휘책임을 물었다.

○ 지휘 책임자(L, 서울지검장)

- 사건의 업정처리 지휘책임자인 검사장이 말단 사건 담당검사를 초청 피의자 남편(이00)과 같이 골프(82.10.31 수원)
 - * 통상의 검찰윤리 및 위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됨
- 위 이00로부터 호텔 숙박 티켓 1매(20만원) 수수(82.10.20)
- 이00는 00상고 동창인 김00(46세, 00상고 서울동창회 총무)에게 자신의 자가용과 여비 20만원을 쥐 당시 보문단지내 코롱호텔에 투숙 휴가 중이던 L검사장(00상고 동문)을 접촉, 이00 기소유예 등을 청탁하며 동창회 기금 1,000만원을 내놓겠다고 제의(82.7.17)
 - * L검사장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하며 휴가 끝난 후 알아보겠다고 언동
- 이00는 00상고 동창인 김00(46세)와 동행 L검사장 방문, 이00 기소유예 청탁
 - * L은 기소유예는 어렵다며 출근하여 알아보겠다고 언동

우연한 일이지만, L서울지검장은 이00의 남편 이00와 00상고 동기동창이었다. 이00는 부인 이00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1982년 7월 17일, 00상고 재경동창회 총무를 내세워 휴가 중인 L검사장을 찾아가 동창회 기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청탁했으나 L검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00는 다시 00상고 재경동창회 총무와 다른 동창생과 함께 휴가를 마치고 귀경한 L검사장을 집으로 찾아가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청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안기부는 L검사장이 Y검사를 불러 이00와 같이 골프를 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런 골프모임이 잘 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골프모임을 가진 것은 1982년 10월 31일로 이00의 형이 확정된 10월 18일보다 뒤의 일이다. 안기부의 보고서는 L서울지검장이 이00에게 기소유예 청탁을 거절한 뒤 사건에 대해 “출근하여 알아보겠다고 언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쓰고 있으나, 그가 실제

담당검사 Y에게 이OO의 보석 이전에 어떤 압력을 넣거나, 사건진행상황을 알아보는 식의 ‘관심’을 표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위의 보고서에서 L서울지검장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경자의 형 확정 이틀 후인 1982년 10월 20일 이OO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티켓 1매를 받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안기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사한 논거를 들어가며 검찰이 “돈 없는 서민 학대, 가혹, 고문 및 돈 있는 범법자 우대”라고 검찰에서 일부 피의자들에게 물고문과 구타를 한 반면, 이OO 등에게는 특별대우를 해 주었다고 고발했다.

돈없는 서민 학대, 가혹, 고문 및 돈 있는 범법자 우대

* 過待遇, 면회, 보석, 집행유예, 항소포기 등

<가혹행위 실례>

○ 김OO(여, 54세, 암불상) 진술

- 런닝샤츠, 팬티만 입게 하고 나무 의자에 눕혀 2명이 팔을 잡고, 1명은 배 위에 올라앉아 물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의 물을 붓는 행위 2회 반복
- 무릎을 꿇리고 각목(1미터)으로 팔, 다리, 허리 등 10여회 구타

○ 오OO(53세, 농업, 암불상 차OO 남편) 진술

- 처 차OO의 은신처 자백을 요구하며 긴 의자에 눕혀 양손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채
- . 1명은 배 위에 올라앉고
- . 1명은 저자물을 묻힌 수건을 얼굴에 덮고 주전자(2ℓ) 물을 먹임
- . 1명은 전신과 양발바닥 수회 구타

* 2차에 걸쳐 실신하자 물 세례

- . 왼손을 유리창 창살에 수갑을 채워 밤을 새움
- 상처 치료차 여관 3곳을 14일간 전전 치료 후 방면

<우대행위 실례>

- 이00(대원각 주인) 이00 특별면회 허용
 - Y 검사실에서 이00와 이00 10분간 특별면회 허용
 - 수사중에 박00(대원각 고용사장)과 이00 3-4회 특별면회 허용
 - 이00은 안00(처), 이00(동생)과 각 1회 특별면회 허용
- 임신사실 유도조작, 집행유예(이00)
- 외화밀반출 주범 안00 불입건
- 이00 특별우대(담당검사)
 - 처음 이년 저년 하다가 염려 말라 위로
 - 사식 넣어달라고 해라
 - 대원각 놀러가면 만날 수 있느냐
 - 감방도 좋은 방으로 이감 등

안기부 보고서는 검찰이 밀반출 사건의 주범인 이00이 “세일관광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700만원을 제공 세일관광 직원으로 위장”하여 뉴욕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과 부인 안00의 동거여권을 부정발급 받는 등 여권법 위반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이 또한 눈감아 주었다고 하면서, 이00, 이00 및 주변인물들의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 응징을 위한 특별세무조사 및 가택 수색”을 실시한 사실에 대해 기술했다. 1983년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실시된 이 특별세무조사와 가택수색에는 국세청 요원 112명과 안기부의 채증반이 동원되었다.

반사회적, 반국민적 행위 응징을 위한 특별세무조사 및 가택 수색

- 시행 개요
 - 세무조사 대상업체(11개업체)
 - 가택수색 대상(9개가)
 - 시행일시 및 시행기관
- 시행일시: 83.2.19 10:30
- 시행기관: 국세청(서울지방청) 요원 112명

* 당부 채증반 지원

○ 세무조사 및 가택수색결과

- 결과요점 (탈세액 계산 중)

- 예상추징금: 약 10억원(진행 중)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에 의거 가중처벌 가능자 이00(42세, 대원각 주인)

* 이00, 이00 부부는 탈세에 의하지 않고도 뇌물공여 등으로 처벌가능상태

- 외화은닉 및 범칙물품 불발견

* 검찰의 1차 가택수색 등 장기간의 수사로 기 은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안기부는 세무조사 결과 예상추징금만 약 1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탈세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관련 피의자들을 중별로 다스리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문제는 이00, 이00 등 사건의 주역들이 이미 1982년 10월 20일에 1심 선고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었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외화밀반출 혐의만으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죄를 찾은 결과, 안기부는 이00와 이00에게서는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찾았고, 이00에게는 여권법 위반을, 1982년에 처벌받지 않은 안00에게는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의견을 달아 이들을 검찰로 이첩한 것이다. 이00와 이00의 변호인이었던 3인의 변호사들에게는 뇌물공여와 품위손상을 근거로 “입건 구속도 가능”하고 “징계에 의한 자격박탈”도 가능하다는 복수의견을 달았다. A부장판사는 이첩의견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치사항(의견)

○ 미국으로 밀반출한 27만불은 국내로 회수

- 안00, 이00 부부가 미국으로 밀반출한 27만불은 미국 뉴저지 ‘미드랜틱’ 은행에 정기예금 증입

* 27만불 중 45,000불 기사용(이00, 안00)

* 예금 미화는 규정에 따라 5,000불 정도 인출 송금 가능

- 검찰에서 본건 관련 총 1억9,179만원의 추징금을 기히 징수하였으나
- 밀반출한 외화는 이와는 별도의 국익차원에서 국내로 원상 회수시켜야 할 것임
- 국제청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포탈세금 추징
 - 특가법에 의한 형사입건 처리
- 검찰, 법원 및 경찰관련자는 검찰에서 엄히 조사후 처리
- 조사증인 자 신병처리 검토(검찰에 이첩)

순번	대 상 자	협 의	처 리 검 토
1	윤○○ 변호사	○ 뇌물공여 ○ 품위손상 (변호사법 위반)	○ 입건구속 가능 ○ 징계, 자격 박탈
2	나○○ 변호사		
3	변○○ 변호사		
4	안○○(주범)	외국환관리법(최초 불입건)	○ 입건구속 가능
5	이○○(주범)	여권법 위반(○○관광직원 위장)	○ 입건구속 가능
6	이○○	○ 뇌물공여 ○ 세금포탈(특가법 위반)	○ 입건구속 가능 ○ 세금추징 가능
7	이○○		
8	이○○	○ 세금포탈(특가법 위반) * 형사입건 자료 불발견	○ 거액 세금 ○ 추징 가능
9	한○○		
10	이○○	뇌물공여	○ 징계
11~ 21	김○○ 등 11명	추가범죄 행위무(일사부재리 원칙)	○ 경고 방면

본 위원회가 확보한 안기부의 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안기부가 정확히 언제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는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론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1983년 2월 26일 27만\$ 사건을 재수사하여 이OO, 안OO, 이OO 등과 돈을 받고 이OO에게 여권을 만들어준 2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대원각 주인 이OO, 대원각 고용사장 박OO, 이OO의 언니로 삼청각 주인인 이정자, 이정자의 남편 한태규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보도했다. 각 신문은 또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청 Y검사와 당시 부장검사인 동부지청 차장 P 검사가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날짜로 징계면직(파면)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OO, 나OO, 윤OO 등 변호사 3인은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Y검사와 P부장검사가 받은 금품은 안기부 보고서에서는 각각 625만원과 133만원이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는 Y검사가 155만원, P검사가 130만원이라고 안기부 보고서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발표했다.³⁸⁰⁾ 이OO는 이 날 구속을 면했지만 3월 16일 기소되었다.³⁸¹⁾ 27만\$ 사건의 재조사와 기소는 처음 중앙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맡아 안기부의 K 비서관에 대한 고문을 문제삼아 안기부와 검찰의 갈등을 초래한 성민경 2과장이 아니라 신건 4과장이 담당했다.

그러나 2월 19일 대규모 세무조사와 가택수색을 안기부가 주도하고, 그 이후 중간보고서를 올린 것을 감안할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월 26일 이들을 구속할 때 독자적인 수사를 할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저 안기부의 의견대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3인의 변호사를 제명하고,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2명의 검사를 파면하는 절차를 밟기에도

380) 『동아일보』 1983년 2월 26일자; 『중앙일보』 1983년 2월 26일자; 『한국일보』 1983년 2월 27일자; 『조선일보』 1983년 2월 27일자.

381) 『조선일보』 1983년 3월 17일자.

물리적 시간은 부족해 보였다.³⁸²⁾

그러나 안기부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사건 처리 관련 법조계 여론

- 제5공화국 출범이래 검찰의 부정은 상존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감안 이번 기회를 검찰의 비리척결 계기로 삼아야 한다(일반검사)
- 불똥이 어느 정도 튀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검사비위에 대하여는 미온적으로 처리해왔음을 감안 이번 기회에 정신 못 차리는 검사들을 정확적 차원에서 과감히 썬해야 된다(검찰일부)
- 이번 수사로 검찰의 비리소지가 완전히 척결되기를 희망한다(변호사)

공개자료에 의하면 “안기부는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L검사장의 방을 조사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L검사장의 면직을 강력히 요구해 검찰은 결국 L검사장과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을 22만 달러 사건의 지휘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의원면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³⁸³⁾ 방을 조사했을 때 발견된 것은 공개자료에서 말하는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은 아니고, 이태희로부터 받은 2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티켓 1매였다. 물론 공직자의 신분으로 동창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동창생의 기소유예 청탁을 두 번이나 거절하고 호텔 숙박권도 형이 확정된 이후에 받은 것이라면, 면직이 적절한 징계수위였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L서울지검장과 J서울지검 남부지청장은 두 검사의 파면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3월 29일자로 지휘책임을 지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검찰을 떠났다. 언론은 서울지검장의 경질설은 27만\$ 밀반출사건의 “재수사가

382)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징계를 청구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법무부장관)은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청구서의 부분을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83)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1993, 한국일보, p41.

시작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 만 1개월 만에 이루어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기구개편이 곧 있을 예정인데 그 때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극소수의 문책인사를 앞당겨 하겠느냐는 의견”도 많았는데, 결국은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서울지검의 많은 검사들은 L검사장의 퇴임을 두고 ‘이검사장은 부하검사들이 일하기 쉽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줬다’면서 안스러워했다”고 전했다.³⁸⁴⁾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신평 전 판사는 자신이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검에 실습을 나갔을 때 L서울지검장이 그를 “유달리 잘 보셔서 수시로 검사장실로 불러 얘기를 나눴는데” 하루는 검사장실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청와대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파견을 나간 후배검사에게서 청탁전화가 왔는데 “뭐 이런 XX가 다 있어” 라고 호통을 치면서 전화기를 짱 놓아버렸고, 그 비서관이 다시 전화를 해 오자 “나 오늘 바쁘니까 시간 없다고 그래”라고 딱 물리치는 통에 자신이 “등골에 식은땀이 짹 흐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L검사장의 외압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전했다.³⁸⁵⁾

L검사장은 서울지검장이 되기 전 1981년 4월부터 1982년 6월까지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바 있는데, 그는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동백림 사건(67년 7월)을 처리했고,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정통 공안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대쪽같은 성격의 원칙론자”로 “전민학련 사건(81년 9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82년 3월) 등 시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경 일변도인 안기부 측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검 공안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검찰 내부에서 받고 있었는데, “서울지검장으로 옮긴 뒤 외화밀반출 사건 후유증으로 도중하차”했다고 한다.³⁸⁶⁾

384) 『중앙일보』 1983년 3월 29일자.

385) 신평 전 판사와의 면담, 2007년 1월 31일,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실.

386) 「대검 공안부장 - 체제수호 앞장서는 ‘검찰의 핵」, 『중앙일보』 1992년 12월 25일자.

한편 최초에 K비서관에 대한 안기부에서의 고문을 문제삼은 성민경 대검 중수부 2과장도 당장은 아니지만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중수부의 과장은 검찰 내에서 최고 유망주들이 배치되었는데, 1과장은 대전고검장까지 쾌속질주하다가 슬럼프를 겪었던 사건으로 낙마한 이진개, 3과장은 검찰총장에 오른 김도연, 4과장은 법무차관과 국정원장에 오른 신건이었다. 그러나 안기부와 맞선 성민경 2과장만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채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북부지청장을 끝으로 1987년 검찰을 떠났고, 1989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대법원장 비서관 구속사건을 공개자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다룬 이창민 기자는 본 위원회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기수별 선두주자들이 가는 코스인 중수부 과장이던 성민경 검사가 검사장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기부와는 갈등이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꼭 안기부에서 저 사람은 승진 안 된다고 방해를 했다기보다도 검찰 내부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흠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민경 검사 본인도 북부지청장으로 갈 때 그 자리가 마지막이란 걸 알고 있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당시 XXX 검사가 차장이었는데, 청장보다 차장이 실세라는 소문도 돌았다”고 덧붙였다.³⁸⁷⁾

사 | 법원과 검찰에 미친 영향

안기부가 K대법원장 비서관을 연행하면서 시작된 파문은 검찰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안기부로서도 고위공직자를 구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 전두환 대통령의 명으로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준법수사에 대한 지도를 받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안기부의 반격은 강력했다. 안기부는 먼저 법원에 대하여 이OO, 이OO 두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 준 A부장판사, B부장판사의 사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안기부는 K비서관의 조사에서나 피고인, 변호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청탁의 대가로 두 부장

387) 이창민 뉴시스 편집국장과의 전화 보충 인터뷰, 2007년 8월 10일.

판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도 두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은 청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거센 압력에 대법원은 속수무책이었다. 두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언론에 이들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것처럼 흘려 사임을 기정사실화하려 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좌천 발령을 내었고, A부장판사는 마침내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다가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B부장판사는 지방으로 부임했다가 사건의 전면 재수사 이후 3월 16일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직후에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두 부장판사와 서울지검 남부지청장으로 있다가 지휘책임을 지고 물러난 J검사의 변호사 개업은 이듬해로 미루어졌다. 특히 A부장판사는 사무실을 얻고 주요 일간 신문에 모두 ‘개업인사’ 광고를 한 직후 안기부에 끌려갔다 온 뒤 휴업계를 제출했다.

한편 징계면직(파면) 처분을 받은 두 검사와 뇌물공여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은 세 변호사는 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었다. 안기부는 2년이 지난 후 이들이 자숙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이들의 선처를 요망한다는 이유로 “금번 각하 취임 4주년을 계기로 ▽ 이들에게도 사회복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 또한 법조계 사기 진작을 위해 ▽ 전원 복권 은전 부여, 변호사 자격을 회복토록 함이 가하겠음”이란 방침을 세워 이들을 복권시켰다.³⁸⁸⁾

법관의 신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는 별도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이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법관이 다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973년과 1981년 법관재임명 과정에서의 탈락은 정치적 격변기에 헌법을 뜯어고치며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록 유신헌법과 5공헌법이라는 매우 나쁘지만 그래도

388) 안기부, 「미화27만불 밀반출사건 부당처리 관련 제명변호사 복권검토보고」(1985.2.25)

헌법이란 이름을 가진 악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5공 초기 두 부장판사가 외화 밀반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결정을 이유로 법복을 벗고, 약 3개월 후 국가모독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신진근 부장판사 역시 ‘의원면직’이라는 형태로 법원을 떠나게 된 사건은 법관들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더구나 이들 법관들이 소장법관이 아니라 유신의 암흑시대를 살아낸 20년 안팎의 중견법관이었다는 점에서 법원과 법관들이 받아들인 충격은 더욱 컸다. 세 명의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났고, K비서관이 유태홍 대법원장 등 법원수뇌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청탁을 관철시켰다는 것이 안기부에 의해 기정사실화되면서 법원은 안기부의 통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두 명이 파면당하고, 검사장과 지청장이 옷을 벗은 검찰이 입은 충격은 법원보다 더욱 컸을 것이다. 당장 대검찰청에는 기구개편이 단행되어 감찰부가 신설되었다. 검찰로서는 별로 달가울 것이 없는 대검 감찰부의 신설은 국회 법사위에서 외압의 작용을 암시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검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³⁸⁹⁾ 안기부가 때로 행사하는 안보수사조정권만 하여도 검찰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공안사건이나 시국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를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부서인 안기부에 의해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수모를 당했을 뿐 아니라 검사 두 명이 파면당하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서울지검장 등 간부 2명이 지휘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나야 했던 것은 1964년 인혁당 사건 당시의 검찰의 항명파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다란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검찰의 경우 “자체 비리가 있다는 약점”이 안기부에 잡혔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는 더 당당하지 못했다. 27만\$ 사건에서 검찰이 안기부에 완패한 것은 “이후 계속된 시국·공안사건에서 (검찰이) 안기부에 눌리는

389) 제 11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 1983년 4월 26일, p45.

단초를 제공”한 것이며 “안기부가 법조계를 견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한 검찰 고위관계자의 평가처럼 “그때까지 팽팽하게 맞서왔던 안기부와 검찰의 힘겨루기 게임에서 안기부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만든 분수령”이었으며, “5공 중반기 이후 안기부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재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사건의 여파”라 할 수 있다.³⁹⁰⁾

390) 이창민, 『서소문에서 서초동까지』, 1993, 한국일보, p42.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사법분야에 대한 개입은 법원·검찰 등 재조 법조계에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 등 재야 법조계에 대한 개입 및 통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들은 판사나 검사에 비해 신분상의 보장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재야 법조계에 대한 개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변호인의 접견권 거부,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압력 등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형태와 변호인 비리 조사, 징계 및 연행조사와 같이 변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것, 즉 변호인의 변론은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무색하고도 불편부당한 고유 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변론권은 종종 침해를 받았으며 “어떤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어 그를 변호하는 것이 그 피고인이 가진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³⁹¹⁾ 결국 변호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이 사회현실이었다. 시국사건·공안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에 나섰던 많은 변호인들이 비리 조사와 미행 및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정지나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연행, 구속되는 일까지도 있었다. 1980년대 말까지 중앙정보부/안기부에 연행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구속된 변호인은 이병린, 김종길, 조승각, 강신옥, 한승현, 홍성우, 이돈명 등이 있으며 그 외에 1973년 개정된 변호사법 제15조 “법무부장관이 기소당한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391)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실제로 유신체제 시기에는 변론활동 자체를 반정부활동으로 간주한 사례도 있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구속된 고 홍남순 변호사의 공소장 모두사실에는 “제1피고인 홍남순은…반정부인사들의 무료변론을 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해오다가…”라고 적혀있다.

명할 수 있다”는 조항³⁹²⁾을 들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변호사도 이상수, 노무현, 박찬중 등이 있다. 또한 태윤기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항쟁과 노태우 정권 이후 변호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은 사라졌지만 이들에 대한 공안기관 및 관계당국의 시선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92년 김낙중 간첩사건 발표와 관련된 000 당시 안기부 차장보의 발언이다. 1992년 8월 안기부는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을 간첩죄로 구속했는데, 1992년 9월 7일 당시 안기부 차장보가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김씨를 접견하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진정한 변호인이 아니고 ‘판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변호사들에게 간첩 용의자를 접견하고 구속적부심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변호인 접견 불허가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지만 크게 보면 정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안기부 차장보의 이런 발언에 민변은 물론 변협도 비난 성명서 발표와 고소 고발을 제기하며 강력 항의했다. 예상보다 문제가 커지자 안기부는 급하게 수습에 나섰다. 먼저 1992년 10월 5일 당시 안기부 기획조정실장이 OO국장 등 간부 몇 사람을 대동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찾아와 ‘부장의 명을 받들어 왔다’면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최영도 당시 변협 인권위원장은 회고록에서 그가 “안기부가 외부에 사과사절을 보내어 사과를 하는 것은 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협은 차장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이틀 후인 최종수사결과 발표일, 차장보는 공개 사과했다.³⁹³⁾

392) 이 조항은 1982년 재개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1990년 11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문제조항이 기소된 형사사건이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가리지 않고 판결확정 때까지 무기한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아닌 법무장관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변호사가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90헌가48호 사건 판결문.

393) 최영도, 『토기 사랑 한평생: 최영도 변호사의 즐거운 컬렉션 이야기』, 학고재, 2005.

이 일은 이렇게 안기부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차장보가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안기부는 변호사의 피의자/피고인 접견 거부 및 방해는 계속되었다

1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과 관련된 법률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대판 1990.8.4, 90도1285)는 “구속 중인 피의자와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그 기간 중에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낸 경우에는 그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자백의 임의성과 증거능력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간첩사건들에서도 볼 수 있듯 변호인 접견권은 많은 경우 보장되지 않았다. 정영 사건의 경우 정영 등은 1심 공판정에서 처음으로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고 이른바 인권변호사들이

결합했던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도 송기복 등은 검찰 수사가 끝난 15일 후에 비로소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었으며 이 접견기록은 또한 다 안기부로 보고되어 변호인을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³⁹⁴⁾

그러다가 변호인 접견권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1985년 김근태 사건 때³⁹⁵⁾였다. 민청련 사건으로 1985년 8월 24일 체포되어 9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된 후 9월 26일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김근태는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근태가 검찰로 송치된 후 김상철 등 김근태의 변호인단은 2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접견 신청을 했으나 출정 등의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어 1심 1회 공판 10일 전인 1985년 12월 9일에야 첫 접견을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심지어 1985년 10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김근태를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위한 출정을 이유로 변호인단의 접견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김근태는 1985년 12월 19일 1심 1회 공판에서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가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기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26일 기소가 된 후 10월 초순 내지 중순쯤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할 시기에 검찰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후 3시 30분 내지 5시에 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출정을 나갔을 때 검찰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상태가 네 차례나 있었고 또한 검찰청에도 도착했을 때 검찰관이 없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당시의 여러 사정을 미루어보아 이것은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흔적 그것을 은폐하려는 기도가 검찰과 정치권력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이루

394) 1992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변호인 등을 만날 때 수사관·교도관 등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등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던 전 전교조 간부 유OO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으며 “기결수의 가족·변호인 등 타인접견 때 교도관 등이 참여토록 한 행형법 제18조2항을 미결수에까지 준용토록 한 행형법 제62조 일부규정은 구금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헌법 제12조) 형 확정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2년 1월 28일자.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시 발언을 이유로 안기부에 연행조사를 받았던 김성기 변호사의 사례에 관해서는 본 위원회 간접 분야 「송씨 일가 사건 보고서」 참조.

395) 김근태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참조

어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줍니다”라고 진술했다. 안기부 보고서 「민청련 김근태 인권문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는 김근태 고문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공안당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1986년 1월 6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담당 변호인단이 “고문수사 논쟁으로 공판정을 정치선전장화” 할 것이 예상된다며 “재야 문제권의 김근태 등 고문시비 관련 불순행사 철저 와해” “변호인 등 고문수사 논쟁 저지” 등의 대책방안을 내놓는 등 김근태 고문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김근태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이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계속 거부됐던 데에 공안당국의 모종의 방침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김근태 사건을 계기로 변호인의 접견권 문제가 법정 및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변호인의 접견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990년 펴낸 『인권백서 1988~1989』에서 198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변호인 접견, 교통권 방해사례를 요약, 제시했다. 이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4월 19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평화문제연구소장 조성우 씨는 안기부에서 조사받던 중, 부인 홍연실 씨가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안기부로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치안본부 홍제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인천, 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의 피의자 최동 등을 그의 변호인인 정미화 변호사가 1989년 5월 15일 접견, 교통을 위해 치안본부에 변호인 접견을 하려 했으나 경비실에서 변호인이 들어오는 것조차 방해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경원 의원의 변호인단인 강철선, 이상수, 조승형 변호사 등이 1989년 7월 19일 서 의원의 구치장소인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선임계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검찰의 구류심문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접견을 거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과 간사인 문부식, 고현주의 변호인 김동현, 안영도 변호사는 1989년 8월 3일 10시 30분경 안기부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민미련 공동대표 홍성담 씨를

그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 등이 1989년 8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위해 안기부에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1988~1989년은 1988년 제2차 사법과동 이래 이일규 대법원장 체제가 새로 출범하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실제로 법원은 ‘공안 정국’이라 불릴 만큼 시국사건 구속자 수가 급증하던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 접견권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9년 7월 15일 김준기, 연성만, 8월 4일 문부식, 고현주, 8월 11일 서경원의 3명, 8월 24일 홍성담에 대한 공안기관의 접견금지와 관련한 준항고에 각각 인용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89년 9월 19일 국정감사 법제사법 위원회에서도 이 준항고 인용결정은 법원의 가장 긍정적인 변화 모습으로 꼽혔다. 박상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질의에서 불고지 문제, 구속영장 남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6공화국의 새로운 사법부가 4공화국 시대의 사법권 독립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한때 활기를 보였다면서 “최근에 있어서도 공안기관의 변호인 접견금지에 대해서 준항고제도를 통해서 제동을 걸어주었고 이런 인권과 민주화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변호인 접견금지에 대한 준항고 인용결정은 그 이듬해인 1990년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90년 1월 31일 형사지방법원은 홍성담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되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무시된 채 위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검찰에서 작성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이같은 법원의 판결취지는 징역7년·자격정지7년이란 홍성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선고량보다는 다른 사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홍성담 피고인이 1989년 7월 31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수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검찰 작성조서가 배척됨으로써 안기부 수사과정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³⁹⁶⁾ 홍성담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취지는 그해 8월 대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대판 1990.8.4, 90도1285) 홍성담 1심 판결이 내려진 한달여 뒤인 1990년 3월 9일에는 대법원 형사3부가 김경희 서울검사장이 서경원 의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낸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처럼 “변호인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면서 변호인 접견권의 제한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법원의 판결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어 1993년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3년 10월 15일 대검은 형사피의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고지, 변호사 접견의 24시간 이내 허용 등의 지침을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이와 관련 언론은 변호인 접견권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임에도 검찰·경찰·안기부 등 수사기관들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 당해 왔다면서 “법률지식이 적거나 경제력이 약한 사람, 공안사건 피의자 등에게는 그 침해의 정도가 특히 심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나돈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환영했다.³⁹⁷⁾ 대검은 이어 1995년 4월 10일에는 ‘변호인 접견·교통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 수사 도중 변호인이 피의자와 배석자 없이 만나고 대화하도록 전면 보장해주며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중이거나 현장 조사 중이어서 면회가 불가능할 경우 그 절차가 끝나는대로 즉시 면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396) 『중앙일보』 1990년 1월 31일자

397) 『중앙일보』 1993년 10월 16일자

이처럼 법원과 검찰이 변호인 접견권의 전면 보장 입장을 취했음에도 안기부 등 공안기관의 변호인에 대한 불신과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1992년 당시 안기부 차장보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들은 이후로도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1996년 8월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정수일 교수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간첩 혐의자에 대한 접견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됐다.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뀐 뒤에도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제한은 계속됐다. 2000년 민학련 사건과 관련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을 접견하려던 변호인들은 다양한 변호인 접견권 방해로 경험해야 했다. 2000년 9월 27일 국회의 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인권유린 문제 관련 공청회’에서 이상희 변호사의 「국가정보원의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문제」 발제에 따르면 민학련 사건 변호인들은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거나³⁹⁸⁾ ‘점심시간’이라거나 ‘가족이 면회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시간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대기하게 하거나 접견실에 들어가 접견을 시작하려는 찰나 국정원 직원이 어떤 설명이나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 장면을 촬영³⁹⁹⁾하거나 국정원에서 보고 들은 것을 외부에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 해서 2시간 이상 접견을 거부당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의 방해를 받았다고 한다.

398)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1992년 12월 3일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 뿐 아니라 변호인으로 선임되려는 자 역시 변호인 접견권이 있으며 접견권의 범위 역시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92초233결정)

399) 변호인과 피의자의 동의 없는 사진촬영은 초상권 침해일뿐 아니라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월 28일 “사진을 찍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91마111결정)

2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압력

변호인 선임 및 접견권 외에 피의자/피고인의 자기 변론권 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압력 행사 문제가 있다. 많은 시국사건·공안사건에서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특정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거나 심지어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연행, 구속되기도 했다.

한예로 송씨 일가 사건의 경우⁴⁰⁰⁾, 윤순자, 박종덕 등이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으로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재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구속, 실형을 살기까지 했다. 밀입북 혐의를 받은 송기준과 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증인 김재철은 1982년 12월 7일 1심 재판에서 홍성우 변호사측 증인으로 출두해서 송기준의 입북시기로 주장되는 68년 9월, 송기준이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증언했는데 그후 12월 20일, 위증죄로 구속됐다. 안기부 보고서 「간첩 송기준에 대한 변호인(홍성우)측 증인 김재철 출장수사결과 보고」는 “82.12.14 군산출장, 친구 장OO의 여관 건축현장에 피신 중인 위 김재철의 신병 확보, 현지 조사 결과 82.12.5 군산에서 간첩 송기준의 처 이금수와 접촉, 그로부터 송기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10만원 수수, 82.12.6 상경, 12.7 법정에서 출두, 변호인 홍성우의 유도신문에 따라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송기준 입북시기인 68.9 매일 회사에서 접촉하였다고 허위 증언 사실 자백”했다면서 12.16 김재철을 서울로 연행, 12.17 L검사에게 신병을 인계, 12.20 검찰에서 위증죄로 구속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김재철은 위증죄로 실형 6개월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김재철은 2006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안기부의 구타와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성우 변호사의 유도신문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400) 본 위원회 간첩 분야 「송씨 일가 사건」 보고서 참조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1983년 8월 23일 대법원은 관련 등기부 등본 내용 등과 함께 ‘위증죄로 구속된’ 김재철의 증언을 근거로 송기준의 “입북, 잠입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할 것”이라면서 송기준의 무죄를 선고했다. 즉 김재철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그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6개월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였다.

차풍길 사건⁴⁰¹⁾에서는 안기부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매우 중요한 증인을 ‘입국저지’시켜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을 펴기도 했다. 차풍길의 간첩 혐의 중에는 조총련 공작원 요시무라에게서 수건과 비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차풍길은 공판에서 자신에게 “수건과 비누를 준 것은 요시무라가 아니라 누나인 차OO”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차OO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안기부가 일본 주재 파견관에게 「간첩 차풍길 연고자 차OO 입국저지 지시」⁴⁰²⁾라는 제목의 전문을 보냈고 파견관은 차OO를 접촉해 “귀국시 파견관과 의논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후 차풍길의 변호인 임태선은 증인들이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변론기일변경을 신청, 안기부가 차OO의 법정 증언을 방해했음을 알 수 있다.

박동운 사건⁴⁰³⁾에서도 안기부는 증인을 연행,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1심 1회 공판에서 박동운의 변호인은 박동운이 1971년 10월 3일 월북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동운과 당시 풍국제지 대구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OO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월북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이OO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안기부는 바로 이OO를 안기부로 연행, “71.7 회사를 그만두고

401) 본 위원회 간첩 분야 ‘차풍길 사건’ 보고서 참조

402) 안기부, 「간첩차풍길 연고자 차OO 입국저지 지시」

403) 본 위원회 간첩 분야 ‘박동운 사건’ 보고서 참조

나서는 동운이를 만났다거나 소식조차 들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날짜도 없는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OO은 1981년 10월 5일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70.10~71.7경까지 풍국제지 대구출장소에서 박동운과 같이 근무했으나 71.10 초순 동운이와 같이 이리에 가서 숙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박동운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오히려 박동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OO은 후에 박동운의 재심청구 대리인에게 “본인은 그때(71년 추정) 10월 중순경 박동운이와 같이 익산(당시 이리) 역전 영풍호텔(실제 명칭은 영풍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군산 이모집에 갔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 안기부에서 모종의 압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보부·안기부 등 공안기관은 공소유지를 위해 혐의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을 미리 연행조사해 공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하거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혐의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몰아 증인을 구속하기도 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더 나아가 사회적 여론을 불리일으킨 중요 시국 사건의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뿐만 아니라 탄원서 및 청원서를 제출한 사회인사들까지도 안기부로 연행조사하고 서약서를 받기까지 했다. 1979년 탄원인 36명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탄원인 연행조사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1979년 4월 16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으로 아카데미 간사 중 농촌사회 담당 이우재, 황한식, 장상환 등 3명, 산업사회 담당 신인령, 김세균 등 2명, 여성사회 담당 한명숙 등 6명과 한양대학

사학과 교수 정창렬 등 모두 7명이 1979년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생 들인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자본주의 모순을 교육하고 계급의식을 조장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이들 교육생을 조직할 목적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들 중에서 뜻이 맞는 노동자, 농민, 여성담당 간사 6명이 비밀서클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재판에서는 비밀서클 결성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났으나 사회주의 서적과 이북방송 청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이우재 5년, 한명숙 2년 6월, 장상환 2년, 신인령 집행유예, 김세균 선고유예, 황한식 무죄, 정창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정보부에 유신정권 거의 막바지에 발생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배출한 이른바 ‘중간집단’그룹이 사회의식화되어 정부 혼란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중앙정보부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 국내외 교회와 재야로부터 쏟아진 항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사건이 비공개리에 장기화되자 4월 3일 NCC 회장단을 포함한 각 교단 대표로 아카데미 사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대책위원회는 8월 24일 구속자 가족과 함께 교계 및 재야인사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법무장관, 사건담당 재판장, 중앙정보부에 각각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청원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 되었다.

중앙정보부의 8.27자 내부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이 청원서명 작업을 ‘종교계를 위시한 반체제 분자들의 반정부 활동 책략’으로 규정하였다.⁴⁰⁴⁾ 그리고 외신기자들에게 청원서를 배포한 저의가 “정권타도를 위한 반정부

404) 중앙정보부, 「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

활동”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의 분석을 인용하면⁴⁰⁵⁾, 청원서 명자들을 NCC계 극렬 반체제 분자들로 규정하고 청원서 작성의 국내 요인으로 ‘이들이 현 사회정치구조의 변혁을 목적으로 현행 반공법규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선동, 아카데미 사건역시 고문에 의한 조작 물로 부각시켜 반정부 세력의 호응으로 단합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동 아카데미 사건을 왜곡, 전과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 현 정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는데 있다’고 분석보고 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가족들의 청원서명 작업도 정권타도를 위한 반정부, 반체제 선전활동으로 확대, 왜곡하였다.

이 문서의 ‘대책’ 부분을 보면 중앙정보부는 청원서에 대한 회신문제에 대해, ‘청원서 배포가 국내외적으로 대정부 투쟁방법의 수단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고자 하는 계략이므로 본 청원서에 대한 회신의 필요성이 없으며, 회신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의도에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가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는 청원자들을 8월 30일부터 연행하기 시작하였다.⁴⁰⁶⁾ 전직 대통령 윤보선, 천관우, 한승헌, 한완상, 김승훈, 백기완 등 36명은 차례로 끌려가 청원서명 경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에 대한 태도 등을 진술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취조 받았다. 아울러 이들 주요 인사의 수사보고서에는 주요인물 신상정보의 형태로 그간의 사생활 정보와 행위사실이 기록된 관리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⁴⁰⁷⁾ 이들에 대한 조치의견에는 한결같이 “엄중경고 조치 후 훈방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공판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405) 중앙정보부, 「아카데미 사건 청원서 배포자의 검토 및 대책」(1979.8.27) 중 2. 청원서 배포의 배경과 그 저의

406) 한국교회 인권운동30년사 재인용

407) 「C.A사건 청원서 작성서명 및 외신보도경위 조사결과보고」

가혹행위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 중앙정보부는 이와 관련,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한 홍보대책」에서 “현재 공판과정에서 문제되고 있는 고문여부는 사건 발표 당시 사실발표 된 적이 없어 일반 국민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고문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기독교단 지도급 인사들에 한해 공판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아카데미 사건관련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사건 실태를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건 관련자도 참고인도 아닌 청원인을 연행 조사하고 공판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덮기 위한 홍보대책을 세우는 등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3 변호인 비리 조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압력이 피의자/피고인의 변론권과 변호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라면 직접적으로 변호인의 신변과 관련된 압력도 있었다. 가장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인권변호사’ 혹은 ‘문제권 변호사’로 찍힌 변호인들에 대한 감시와 비리조사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이들 ‘문제성향’ 변호사들에 대한 신원기록을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보강하면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국사건·공안사건 변호를 맡거나 심지어 이른바 ‘문제권’을 접촉할 경우에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1984년 5월 3일 작성된 안기부 보고서 「민청련 김근태 접촉, B변호사 신원확인보고」는 그 전날인 5월 2일 민청련 김근태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B변호사에 대한 신원을 확인,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보고서는 B의 인적사항과 주요 학·경력을 열거한 후 “매사에 치밀하고 성실한 편이나 건방지다는 세평” “평소 대정부 비판성향자로 75.12.13 김대중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담당 배석판사로서 금고 1년

선고한 자임” “김근태와는 서울대 동문관계임” 등 ‘성향’과 ‘문제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근태 관련 자료로 존안하고 김근태 접촉 경위 등 내사하겠음”이라고 조치의견을 적고 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김근태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김근태의 주변인물로 우연히 B ‘변호사’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병린, 이돈명 등의 사례는 변호사에 대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일상적 감시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앙정보부에 세 번이나 연행된 이병린 변호사는 이른바 ‘기관원’들의 감시에 시달렸는데 민수협 활동 당시 이병린 변호사의 사무실 주변에는 기관원 5~6명이 상주하다시피 했고 소송관계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체크를 당해 수임수가 대폭 줄어들기도 했다.⁴⁰⁸⁾ 이병린 변호사는 기관원이 하도 가는 곳마다 따라붙기에 한번은 “내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밖에 없다. 지킬 테면 화장실 앞이나 가서 서 있어라”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감시에 시달리던 끝에 1975년 1월 17일 이병린 변호사는 결국 간통혐의로 구속되었고 고소취하로 23일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기관원의 감시는 계속 이어져 1975년 12월 지방에 내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지만 10·26 직후까지 기관원이 변호사 사무실 주변을 맴도는 바람에 사건의뢰인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⁴⁰⁹⁾

이병린 변호사가 간통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1975년 2월 19일자로 작성된 중앙정보부의 「XXX 변호사 비서에 대한 미행감시 종합, 결과보고」는 중앙정보부가 또다른 반정부 변호사인 XXX 변호사를 미행, 이병린 변호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공작을 하려 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보고서는 XXX 변호사에 대해 “반정부 발언 많이 하는 변호사” “반정부적인 극력 분자”라면서 그에 대한 미행감시가 “비서와 치정관계를 확인하고 동 사실을 이용, 앞으로 현실참여 및 반정부적 활동을 지양케

408)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409) 이상우,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동아일보사, 1986

하고 동인을 순화시키는데 목적을 둬”이라고 적고 있다.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당 기간 XXX 변호사를 미행감시했으나 “본건 치정 사실 증거를 포착치 못하여” 일단 미행감시를 중단했다. 이 보고서는 여기에 덧붙여 “본명이 귀가 후 일체 외출을 안하는 점으로 보아 이병린 변호사의 치정관계가 발표되자 모든 행동에 특별한 경계를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XXX 변호사 미행감시 결과보고서는 중앙정보부·안기부가 ‘반정부 성향’ 변호사들에 대해 미행감시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병린 변호사의 간통 구속사건 역시 “앞으로 현실참여 및 반정부적 활동을 지양케 하고 동인을 순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사례이다.

이른바 ‘인권변호사 4인방’의 이돈명·홍성우 변호사 역시 일상적으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미행감시를 당했는데, 1977~78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존안 보고서에는 조화순, 홍성우, 이돈명, 선교사 존 그린 등의 성향과 동향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돈명 변호사에 대한 미행감시 보고서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자리로 이어진 하루밤 동안 이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 한 이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물론 어디서 무엇을 먹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 소소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어 중앙정보부가 이 변호사를 근접 밀착 미행감시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상적인 미행감시 외에도 주요한 시국사건·공안사건 변호인들의 경우 이른바 ‘비위조사’ 조치의견을 담은 신원확인보고서가 작성되어 관련철에 첨부되곤 했다. 재판 관련 자료가 상세하게 남아있는 송씨 일가 사건 기록에는 담당 변호인들의 신원조회 및 동향보고가 첨부되어 있는데 1982년 10월 7일 박상기·홍성우 변호사가 송기준을 접견한 내용을 보고한 접견보고서에는 참고사항으로 홍성우 변호사가 “과거 민청학련 사건, 명동사건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변호를 담당한 바 있다”고 적고 있으며 1983년 11월 24일 작성된 「간첩 송지섭 사건 관련 변호인 동향

보고」에는 조준희 변호사에 대해 “76.4 세칭 명동사건 및 79.12 고 박대통령 시해사건 피고인 김재규 담당 변호인”이었던 ‘반정부 활동자’ 라면서 “본명에 대한 동향 내사, 비위사실 수집” 조치 의견을 담고 있다.

4 변호사에 대한 연행조사 및 업무정지

변호사들이 탄압을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의 변론으로 인한 것이었던 만큼 그 변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들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탄압이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를 비롯한 공안기관은 변호인들이 시국 사건·대공사건이 날 때마다 불법연행이며 장기구금, 고문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언론 등 사회적 주목을 끌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주창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변론활동이나 인권주창 활동 등을 이유로 변호인들을 연행조사, 협박하거나 때로는 구속하기도 했으며 형사처벌이 마땅치 않을 경우 변호사법 등을 들어 징계처분을 하기도 했다.

인권주창 활동과 변론 활동 때문에 중앙정보부·안기부에 연행, 구속된 변호사는 이병린, 강신옥,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김성기⁴¹⁰⁾ 등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연행, 구속된 이유는 필화사건에서부터 간통 사건까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공통적으로 인권변호사로서의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데 있었다.

1) 이병린 변호사 간통죄 구속 사건

변호사로서의 인권 옹호 활동과 더 나아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이병린 변호사는 무려 세 번이나 구속됐다. 그의 첫 번째 구속은 1964년 6월 27일이었다. 1964년 6월 3일 서울 시내에 비상계엄령이 선포

410) 김성기 변호사 연행조사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 ‘송씨 일가 사건 사례’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되면서 6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 각 신문사와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변협 회장이던 이병린 변호사가 6월 27일 서대문경찰서에 영장 없이 구속됐다. 구속 이유는 이병린 회장이 건의서를 만들기 위해 6월 20일 변협 상임이사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했고, 계엄당국의 사전검열 없이 건의서 100부를 등사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계엄사령관에게 등기 우송하는 한편,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이 비상계엄령 위반이라는 것이었다.⁴¹¹⁾ 그로부터 3일 뒤 이병린 회장은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로 송치되었다. 현직 변호사협회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국은 “변협이 건의한 내용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내면 이병린 회장을 풀어주겠다”는 조건 내걸었지만 이병린 회장은 타협을 거부했고 7월 28일 계엄이 해제되면서 공소취하와 함께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구속 31일 만에 석방됐다.

이병린 변호사는 1970년대부터는 법조계의 영역을 넘어 재야 지도자들과 손잡고 민주화운동을 벌였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병린 변호사는 1972년 8월 15일 장준하, 윤현 등 운영위원과 함께 대통령에게 제출할 청원서와 건의서 우송 위해 우체국으로 가던 중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으나 이병린 변호사만 중앙정보부로 넘겨져 3일 만인 18일에 석방됐는데 석방된지 이틀 뒤 민수협 대표위원직 사임원을 제출, 이병린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정원에는 72년 8월 17일자로 「이병린 조사결과보고」와 「이병린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가 남아있는데 이 조치상황에는 1972.8.16 20:40 엄중 보안조치하여 귀가조치했다고 적혀 있다.

이병린 변호사에 대한 공개자료와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1972년 이후 그가 다시 연행된 것은 1975년 1월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정원에 존안되어 있는 이병린 조사결과보고 중에는 74년 1월 20일자로 작성된 「이병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와 역시 74년 1월 20일자 자필 진술서가

411) 『법조50년 야사』, 법률신문사, 2002

있어 의혹을 낳는다. 1974년 1월은 정부가 개헌논의를 금지시키는 긴급 조치 제1호를 선포한 때로 긴급조치위반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구속이 잇달았고 이병린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도맡아 뛰어다닐 때였다.⁴¹²⁾ 따라서 안기부 보고서로 미루어볼 때 중앙정보부는 1964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병린 변호사를 연행 압력을 가했음에도 그가 여전히 인권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1974년 1월, 그를 한번 더 연행 조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수협 간사 정수일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무렵 이병린 변호사는 민수협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한동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74년 초여름 경에는 회의 결과를 알려주려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온 정수일 씨에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데 이어 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뒀던 민수협 관계 서류 문치들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으며 6개월 가량 재야인사들과 공개적인 접촉을 끊었다는 것이다.⁴¹³⁾

그러나 이병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선언문에 다시 이름을 올린데 이어 그날 발족이 결의된 민주회복국민회의 준비위원을 맡았으며 다음달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을 맡는 등 민주화운동의 장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1975년 1월 17일 당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이었던 이병린 변호사가 간통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의 청구로 서울 형사지법 비밀영장담당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종로2가 일식집 마담으로 있었던 이모 여인을 알게 돼 1974년 3월부터 1975년 1월 14일까지 10여회에 걸쳐 밀회를 한 혐의라는 것이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가 일식집 마담인 한 여인과 함께 간통죄로 구속된 것도 수수께끼이거니와 공안사건의 비밀영장을 담당하는 박 아무개 수석부장판사가 간통사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훨씬 더 이상한 일이었다. 비밀리에 한 간통이라 영장도 비밀리에 발부할 필요가

412) 『법조50년 야사』, 법률신문사, 2002

413)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두레, 2003

있었을까. 뿐인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단 하루만에 전격 연행, 전격 구속을 해버린 것도 범상치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⁴¹⁴⁾ 한승헌 변호사는 이병린 변호사가 구속된 바로 다음날 서울구치소로 그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이병린 변호사는 구속되기 전날(1월 16일) 오전 중앙정보부 과장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을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그 고소사건을 잘 무마해주겠지만, 만약 사퇴를 거부하면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물론 이 변호사는 결코 대표위원 사퇴는 있을 수 없으며 사표를 왜 정보부에 내느냐고 꾸짖어서 보냈고 바로 다음날 간통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민주회복국민회의 대표위원 사직서를 써 달라는 기관원을 이병린 변호사는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고 이돈명 변호사 등 동료들이 이모 여인의 친정아버지를 통해 고소인인 이모 여인의 남편을 설득,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구속된 지 23일만인 1975년 2월 8일 석방됐다. 이병린 변호사는 이후에도 계속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으나 기관원들의 끊임없는 감시 때문에 서울에서는 변호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1975년 12월 27일 아무 연고도 없는 경북 김천으로 낙향해 버렸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간 후에도 10·26 직후까지 기관원이 변호사 사무실 주위를 맴돌아 사건의뢰인이 없어 곤궁한 생활을 하다 1986년 8월 21일 위암으로 사망했다.

이병린 변호사가 고소 취하로 석방된 열흘 뒤인 75년 2월 19일자로 작성된 「XXX 변호사 비서에 대한 미행감시 종합, 결과보고」의 “반정부 활동을 지양케 하고 동인을 순화시키는데 목적을 둬”이라는 문구는 이병린 변호사에 대한 간통 고소 및 비밀영장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와 전격 구속이 이 변호사의 인권·민주화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414) 『한승헌 실록 3』

2) 한승헌 변호사 필화사건

이병린, 강신옥 변호사와 더불어 인권변호사의 원조로 알려진 한승헌 변호사는 1971년과 1975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으며 1975년에는 구속되기도 했다. 1971년에는 000 사건 관련자로 연행조사를 받았는데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5』에 따르면 그는 1971년 초봄 000가 민주수호청년협의회를 만든다기에 약간의 격려금을 건네주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관 책상에 놓여있는 수사보고서에 자신을 ‘불법 단체 구성자금 제공자’로 이미 단정해놓은 것을 보고 “이미 자금제공자로 단정했다면 조사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버티며 묵비권으로 맞섰다고 했다. 이렇게 1971년에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1975년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1972년 월간 『여성동아』 9월호에 「어떤 조사」라는 수필을 게재했다.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라는 부제를 단 이 수필은 “법이 사형을 규정한 조항이 너무도 많다는 입법의 과오, 생명형 아닌 다른 형법을 선택할 권한을 용기있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법의 과오, 이런 것이 어찌면 당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라며 사형제도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글을 발표한 지 3년 가까이 지난 1975년 1월 그는 갑자기 이 수필이 전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이 간첩혐의로 처형된 것에 대해 애도한 것이니 용공이며 복귀를 고무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해서 연행되기에 이르렀다.⁴¹⁵⁾ 1975년 1월 그가 갑자기 3년 전에 쓴 글 때문에 연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그해 1월 간통혐의로 구속된 이병린 변호사를 접견, 이병린 변호사가 중앙정보부로부터 민주회복국민회의 탈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한승헌 변호사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15) 한승헌, 『역사의 길목에서』, 나남출판, 2003 중 임현영 교수의 글 중에서.

당시 그는 곧 석방되었지만 2달 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석방된 김지하가 『동아일보』 1975년 2월 26일자 신문에 「고행... 1974」라는 글을 기고해서 재구속되자 한승헌 변호사는 서둘러 김지하 변호인단을 구성, 3월 19일 서울지방 검찰청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중앙정보부는 한승헌 변호사에게 “지난 1월에 취조 해둔 「어떤 조사」 건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 있다”며 김지하 변호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승헌 변호사가 변호인의 기본 자세인 권리와 의무를 들먹이며 냉정하게 거절하자 이튿날에도 중앙정보부는 전화를 걸어와 다시 한번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역시 사퇴를 거절했다. 그리고 3월 21일 밤 시내의 한 모임에 참석했던 한승헌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중앙정보부로 연행됐고, 이틀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수번 2111번으로 수감되었던 것이다.

중앙정보는 “간첩인 김규남을 애국인사로 보고 그가 마치 사회질서와 국가방어라는 전체 위주를 내건 남한에 잘못 태어나고 권력과 법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법적인 재판으로 살해당한 것같이 표현하여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그 구성원인 동인의 활동을 고무 찬양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며 한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⁴¹⁶⁾하여 반공법 위반으로 △△△ 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서울형사지방법원 L 판사가 재판을 담당했다.

무려 128명의 변호사들이 한승헌의 변호에 나섰고 1심 9차 공판에 이르러 검찰이 계속해서 재판과 무관한 증인을 신청하고 한 변호사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하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의의 표시로 일제히 퇴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했다가 오후에 다시 개정해서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하고 사실심리를 종결했다. 이어 9월 11일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416) 『법조50년 야사』, 법률신문사, 2002

열어 한 변호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반공법 제4조1항(고무, 찬양)을 적용,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4개월 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승헌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고 8년 뒤인 1984년에야 복권됐다.⁴¹⁷⁾

3) 강신옥 변호사 구속 사건

강신옥 변호사는 1974년 7월 15일 범정부모욕죄와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법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구속된 사건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⁴¹⁸⁾ 1974년 7월 9일 민청학련 사건 결심 공판일,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이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 행위이고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 해 피고인석에 앉아있겠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않은 법에 저항할 수도 있다. 그 악법을 적용하여 다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후일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펼쳤다. 군법회의 심판관이 몇 번씩이나 그의 말을 막았으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변론을 끝까지 계속했다. 심판관은 잠시 휴정 선언을 했고 곧바로 정보부원들이 법정에 몰려와서 홍성우 변호사와 강신옥 변호사를 옆 퀸셋 막사로 끌고 가서 조사했다. 그리고 그날 밤 홍성우 변호사와 강신옥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홍성우 변호사는 2006년 10월 18일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그날 변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가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는데 가보니 이미 강 변호사가 먼저 끌려와 있었으며 얻어맞았다며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청와대에 선가 때리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늦게 끌려간 홍성우 변호사는

417) 이석태 외,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인권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 문학과 지성사, 1998.

418) 『법조50년 야사』, 법률신문사, 2002

다행히 매를 맞지는 않았지만 홍성우 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강신옥 변호사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2박 3일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직후인 7월 15일 강신옥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정보부로 연행된 후 바로 서울구치소에 법정모욕죄와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법정 변론을 이유로 변호사를 구속한 것은 불문율인 ‘법정 면책권’에 대한 침해였으며 군법회의법 28조의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었지만 강신옥 변호사는 9월 4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0월 11일 항소심 기각판결을 받고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 판결은 10년 후인 1985년 1월 29일에야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이 확정되었다가 1988년 3월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1975년 2월 17일 강신옥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1976년 6월 법무부는 “긴급조치를 위반하여 변호사법 14조 소정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강신옥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다행히 “대법원판결까지는 징계절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988년 14년만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강신옥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4) 이돈명, 홍성우 변호사 휴업 강요 사건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돈명,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등 4명의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국사건·공안사건에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면서 ‘인권변호사 4인방’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이병린, 한승헌, 강신옥 등 초창기 인권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구속되기도 했지만 이들 인권변호사 4인방은 상대적으로 구속 등의 탄압은 별로 겪지 않았다. 이미 이병린, 한승헌, 강신옥 등의 사례에서 이들이 연행이나 구속 정도로 굴하지 않는 변호사들이라는 것을 공안기관들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

변호사들을 구속할 경우,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공안기관들로서는 이러한 여론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송씨 일가 사건의 김성기 변호사 연행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이들 ‘공인된’ 변호사들 외에 시국사건·공안사건에 처음 뛰어들어 변호사들에게는 초반부터 그 기세를 꺾기 위해 다양한 압력이 가해졌다.

또한 필화사건이나 간통사건 등 구실을 만들어 인권변호사들을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기보다 ‘자발적으로’ 휴업계를 쓰도록 강제하거나 변호사법 등에 의거한 ‘징계’처분으로 변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압력 수단을 사용했다.

인권변호사 4인방 중에서도 이돈명, 홍성우 변호사가 1980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휴업을 강요당했다. 광주항쟁 직전 인권변호사를 비롯한 사회인사들은 133인 지식인 성명서를 내기로 모의, 133인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5.17 이후 이들 인권변호사들은 ‘잡혀갈 것 같은 낄새’가 있어 집에도 잘 안 들어가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나 두달 뒤인 7월 어느날 이돈명, 홍성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휴업을 강요당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한사코 거부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휴업계를 쓰고 나왔다”고 한다.⁴¹⁹⁾ 한편 이돈명 변호사는 2006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휴업을 하든가 구속을 당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여 “구속을 당하든 휴업을 하든 변호사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겨 휴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이들을 압박해 받아낸 휴업계를 당시 발족된 서울통합변호사회에 우송해 거기서 법무부로 보내 최종적으로 휴업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 문인구 변호사가 끝까지 이 휴업계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버틴 덕분에 휴업계가 수리되지 않는 않았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휴업 상태가 아니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이 일을 잊을 만한

419)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역사비평사, 2006.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은 시국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두 변호사가 다시 인권변론을 재개한 것은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1981년 9월 이태복이 중심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과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였다.

한편 이렇게 인권변호사 4인방 중 이돈명, 홍성우 2명의 변호사가 휴업을 강제당하자 남은 두 명의 변호사 조준희, 황인철이 모든 시국사건을 떠맡게 되어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5.17후 구속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조준희, 황인철 변호사는 전보다 몇 배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다. 이 무렵 조준희, 황인철 변호사와 중앙정보부의 관계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980년 7월에 시작되고 조준희, 황인철 두 변호사가 김대중 변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앙정보부가 두 사람을 끌고 가 “변론을 맡게 되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김대중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돈명, 홍성우 두 변호사가 막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휴업을 강제당한 직후인 지라 당시 상황에서 달리 저항할 방도가 없었던 조준희, 황인철 변호사는 김대중 재판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야 풀려났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 초기, 김대중을 사형시키려는 태세가 분명하자 일본 등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재판의 전과정을 주시했던 것이다. 그러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된 데다 “광주항쟁 진압 후 반대파들의 제거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오히려 김대중 재판을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게”⁴²⁰⁾ 된 신군부는 두 변호사에게 찾아와 김대중 변론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의 부탁을 거절, 변호사 선임계를 받으러 왔던 중앙정보부 요원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420) 이석태 외,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인권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 문학과 지성사, 1998.

5 변호사 징계 처분

연행조사나 구속, 휴업 강요 등 외에 시국사건·공안사건 변호사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변호사 징계 처분이었다. 특히 1992년 변호사법 개정 이전까지 변호사 징계 요청권은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징계 결정은 법무부에 설치되어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안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1950년대부터 시국사건 변론을 꾸준히 맡아왔으며 1970년대부터는 제일동포 간첩 사건의 대부분을 맡는 등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983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태윤기 변호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 태윤기 변호사 제명 사건

태윤기 변호사는 시국사건과 공안사건을 넘나들며 인권변론을 펼쳤는데 『법조50년 야사』는 태윤기 변호사가 맡은 주요 시국사건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이승만 대통령 저격미수 사건(1955년 11월)
- 김창룡 살해 허태영 사건(1956년 1월)
- 마산 시민봉기 의거 사건(1960년 3월)
- 송요찬 장군 사건(1960년 8월)
- 김선태 의원 사건(1961년 7월)
- 최영오 일병사건(1962년 9월)
- 장면 국무총리 사건(1962년 10월)
- 김두한 사건(1962년 11월)
- 박창암·김동하 등 사건(1963년 6월)
- 통혁당 사건(1963년 8월)
- 원충연 등 반혁명 사건(1965년)
- 정태영·안두희 살인미수 사건(1966년)
- 부완혁 사건(1970년)
- 김철 사회민주당 사건(1971년 9월)
- 강신옥 변호사 긴급조치 위반사건(1974년 7월)
- 한승헌 변호사 필화사건(1975년 5월)
- 박대통령 살해사건 김재규·박흥주 등(1979년 12월)
- 한광옥 민주협대변인 국가모독사건(1986년 11월) 등

이 『법조50년 야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태윤기는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공안사건도 많이 맡았는데 1983년 안기부에서 작성한 「태윤기 수임 공안 사범 현황(14명)」 명단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태윤기 수임 공안사범 현황(14명)>

71-83.2간 재일교포 간첩 99명 검거

서O 71.3.10 보안사 무기

강OO 46.회사원 72.11.15 보안사 징자7년

최OO 41. 회사원 73.6.2 보안사 징자10년

김OO 55. 포철 이사 73.6.23 보안사 징자10년

고OO 46. 회사원/ 74.4.27 안기부 징자 10년

최OO 52. 상업./ 74.4.27 보안사 사형 /82.3.3 무기감형

진OO 55. 민단간부 74.9.30 사형 /82.3.3 무기 감형

백OO 35. 회사원 75.10.8 사형/ 82.3.3 무기감형

강OO 66. 회사원 77.2.8 사형 82.3.3 무기감형

김OO 26. 회사원 80.9.20 보안사 2심 무기

홍OO 52. 기계공 81.7.19 안기부

OOO 37 문필가 74.4.19 부 75.2.15 석방. 귀화일본인

OOO 74 75.4.7 무기 76.10.26 형 집행정지

81.1.30 일본 외무성 아세아 국장이 재일한국인 사형수 강OO 등 5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있다고 공식 표명

대부분의 인권변호사들조차 간첩 사건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던 때에 태윤기 변호사는 특히 재일동포 간첩 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수임하는 등 공안사건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그런 만큼 안기부가 태윤기 변호사의 활동에 주목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그 중 1981년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손유형 사건과 관련된 활동으로 태윤기 변호사는 1983년 2월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그해 4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

1981년 6월 손유형의 처 부신화의 전화로 사건을 수임하게 된 태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을 펼쳤고 1982년 7월 13일 대법원은 손유형에게 사형을 판결한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82년 11월 18일 재항소심에서 다시 사형판결이 내려졌지만 손유형의 가족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형선고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신화가 태윤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3심까지의 공판조서와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법원에서 그 사본을 복사해서 일본으로 보냈다. 또한 1982년 11월 초경 일본 대사관 일등 서기관 이시즈끼 히로시로부터 손유형의 여권 연장문제로 대사관으로 문의가 온다면서 “여권의 압수경로와 처리상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신화의 부탁에 태 변호사는 형사기록상의 여권 압수경로를 필사해 가지고 있다가 1983년 1월 24일 사무실로 찾아온 이시즈끼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형사기록상의 여권 압수경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그 내용이 태 변호사를 통해 이시즈끼에게 전달됨으로써 일본 국회에서 주권침해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형사기록상의 여권 압수경로는 다음과 같다.

손유형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81년 5월 1일 오후 1시 안기부에서 사법경찰관 XXX은 사법경찰관 OOO를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수경위

본 처분은 상동일시 및 장소에서 80.9 피의자가 5일 상부선 사이도로부터 공작 문건을 전달받아 大阪府 生野區 生野東 3-9-23 소재 피의자의 집 안방 장롱서랍에 은닉하였던 것으로서, 피의자가 일본 거주 처 부신화에게 동 공작문건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임의제출하라는 국제전화를 함에 따라 81.5. 동 부신화가 난수표 외 9종을 주일한국대사관에 임의 제출함으로써 외무부 정기 파우치 편으로 입수 하여 첨부목록과 같이 증거물로 압수하다.(목록은 생략함)

그러나 실제로는 “부신화가 난수표 등 7종을 주일한국대사관에 임의제출” 하여 “외무부 정기 파우치 편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돌아가 집에 있는 손유형의 옛 여권을 제출해야만 손유형의 간첩 혐의가 벗겨질 것이라는 안기부 직원의 말에 부신화가 일본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황모라는 직원을 근처 한 다방에서 만나 전달한 것이었고 이것이 간첩 활동의 증거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태 변호사가 전달한 형사기록 내용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이 일본 국회에 알려지자 1983년 2월과 3월의 일본 참의원 예산위에서 야다베 오사무 사회당 의원이 “한국의 안기부가 일본 국내에서 증거수집을 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물으며 주권침해를 주장하는 등 외교적 논란이 된 것이다. 안기부로서는 일본 내 공작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커다란 장애물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손유형에 대한 재재상고심이 진행중이던 1983년 2월 19일 오후 4시경 태윤기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기부 직원 두 명에 의해 엠배서더 호텔 1533호실로 연행되었다. 안기부 조사관들은 “현재 일본 국회에서 한국 관헌이 일본 영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주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문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라며 7일간에 걸쳐 그를 조사했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는지 태 변호사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풀려 나왔다. 그리고 3월 22일 대법원은 손유형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국정원에는 이와 관련 1983년 3월 24일자로 작성된 「간첩 손유형 사건 관련 일본 사회당 변호사협회의 아공관 수사활동 주장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및 대책보고」 문서가 존안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태윤기 변호사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뚜렷한 혐의를 찾을 수 없어 7일만에 그를 풀어줘놓고도 심각한 외교 문제를 빚을지도 모르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먼저 1983년 2월 9일 일본 사회당 와다 시즈오 의원이, 이어서 1983년 3월 17일에는 일본 변협 인권위원장 야마시다가 “일본 내 한국 공관의 수사활동을 조사하라”는 요구를 했으며 상황을 보고한 후 태윤기 변호사가 공판기록을 유출하고 “국제전화로 부신화에게 난수표 등 주요 증거물 7건이 수사기록상 부신화 자신이 주일 한국 공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고지”해서 “유출된 자료를 증거로 조총련 등 반한단체가 물의 야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태윤기 변호사에 대해 “서승/최00/진00/백00/김00 등 일본 거점 우회침투 간첩만 총 14건을 수입”했으며 “동 기간 중 재일교포 구속간첩 구원 목적으로 내한한 일본인 30여명을 접촉”했다고 동향을 보고한 후 “주한일본대사관 공안 담당직원이 교체시마다 후임자에게 태윤기를 소개(사무인계)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 공관의 협조자로 판단”된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나 태윤기 변호사가 손유형의 가족인 부신화에게 공판기록 등을 제공한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로 형사소송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안기부가 주목한 것이 바로 ‘법원의 구조적 부조리 및 폐습 잔존 실태’였다. 즉 변호인의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은 형사소송법 35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권리이나 수입인지 첨부 등 의무사항이 있는데 “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한 현 실태는 법원 직원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 조정 수입인지부 면제로 국고 손실-감시 소홀, 열람 등사부 불기재로 기록 등사 남발”한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이러한 ‘금품 제공 사례’로 1981년 10월 전후 태윤기 변호사가 이 사건 공판기록을 등사하면서 4차례에 걸쳐 65,000원을 제공한 것과 1982년 10월 XXX 변호사가 간첩 진00 사건 기록을

등사하면서 10,000원을 제공한 것을 들어 이것이 ‘일반화된 폐습’이라고 진단한다.

이제 안기부는 이러한 ‘법원의 구조적 부조리 및 폐습 잔존 실태’ 인식을 바탕으로 법무부, 주일공관, 법원에 각각 조치의견을 내놓는데 먼저 법무부에는 “태윤기 변호사의 공판자료 유출 행위를 제22조(비밀유지) 위반으로 징계 제명”할 것을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법무부 조치 의견 밑에 “형사처벌 법규 없음”을 명시, 안기부 스스로도 태윤기 변호사의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일공관에는 “최근 ‘아국 공관의 일본 내 수사활동’ 주장은 재일불순단체의 모략책동임을 주지”시키고 “말려들어 한일간 정치문제화 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고 “구속간첩 후원회 자처 내한하는 일본인에 대한 신원성분 내사”를 조치한 후 법원에는 “간첩 등 공소사건 공판기록의 철저한 관리 방안책 필요성 촉구”와 덧붙여 “공판기록 열람 등사와 관련된 법원 직원 부조리 실태 통보”를 조치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찾아낸 ‘변호사 제명 조치’라는 안기부의 조치 의견은 실제로 착착 진행됐다. 1983년 5월 26일자로 작성된 「태윤기 변호사 제명 조치 조정결과 보고」는 3월 24일 보고서 이후 진행된 태윤기 관련 징계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3. 조정내용

- 83.3.31 대검에 태윤기 변호사 공판기록 해외유출 조사결과 통보, 법무부에 징계 제명 요청토록 조정
- 83.4.1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태윤기 변호사에 대한 비위사실 자료 제공, 징계 제명 요청
- 83.3.31 법원행정처에 진상통보+관련법원직원 자체조사처리 대책 강구 협조(조정)

실제로 1983년 4월 15일부터 태윤기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000 검사에게 나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내사자는 서울 종로구 종로2가 5번지에서 변호사업을 하는 서울통합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인바, 1981년 6월 중순경, 재일교포 간첩 손유형(54세, 83.3.22. 사형 확정)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피고 사건에 대하여, 동인의 재일 처 부신화로부터 전화로 수임 의뢰를 받고, 동년 6월 23일 일본인 마쓰모도(松本)로부터 동 사건을 수임료 일화 100만엔에 변호 수임한 후

- ① 1981년 7월 14일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위 부신화가 보낸 일화 30만엔을, 동년 12월 말경 동소에서, 일화 40만엔을, 1982년 4월경 동소에서 일화 30만엔을 변호 수임료로 각 교부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의 지급을 영수하고,
- ② 1) 1981년 10월 초순경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과에서 동과 근무 법원사무관에게 위 손유형에 대한 1심 1회 공판조서를 등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같은 달 12월 동소에서 동인으로부터 위 공판조서의 등사본을 수교하면서, 동인에게 돈 30,000원을 교부하고
2) 1982년 4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서 동과 근무 법원서기보에게 위 손유형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항소심 공판조서 일부 등을 등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사례비 조로 돈 25,000원을 교부하고,
3) 1982년 8월 3일 대법원 형사과에서 동과 근무 법원사무관에게 위 손유형에 대한 대법원 파기판결문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후, 그 사례비 조로 동인에게 돈 5,000원을 교부하고
4) 1982년 11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과에서 동과 근무 법원사무관에게 위 손유형에 대한 환송심 판결문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인쇄된 판결문 1통을 교부받고 사례비 조로 돈 5,000원을 교부하여, 각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 ③ 1982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서 위 손유형의 간첩 피고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동 사건의 증거물의 압수 경위서를 필사한 후, 1983년 1월 24일경 이를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시즈끼(石附)에게 교지하여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1. 내사결과

가. 내사사실 ‘가’항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피내사자의 이건 내사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및 동인이 작성한 금전출납 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그 증거가 충분하나, 이 건은 일본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으면서, 동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본돈 도합 100만엔을 3회에 걸쳐 영수하고, 환전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시중 암달러상에게 이를 한화와 교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안 경미하므로 피내사자를 엄격한 후 입건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고,

나. 내사사실 ‘나’항의 뇌물공여의 점은,

피내사자의 자백 및 피내사자 작성의 금전출납 명세서의 기재, 수뢰자들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증거가 충분하나, 이 건은 피내사자가 법원공무원들에게 판결문 등을 등사해 달라고 부탁한 후, 수고비조로 1회 5,000원 내지 30,000원씩 4회에 걸쳐 4명에게 도합 65,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면보다는 情誼의 표시로 지급한 성질이 강함을 규지할 수 있고, 사안이 경미하므로 입건할 가치가 없다고 사료되고,

다. 내사사실 ‘다’항의 점은,

피내사자의 진술 및 피내사자가 필사한 압수 경위서에 의해 피내사자가 이건 압수 경위서를 필사하여,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시즈끼를 통해 이를 관계인들에게 교부 누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 손유형 가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동인들의 기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규지할 수 있고, 달리 동인들의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증거 없음으로 결국 혐의 없어, 이건 내사사실은 피내사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는 별문하고, 피내사자를 입건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혐의 없음으로 이건 내사를 종결함.

2. 피내사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여부

피내사자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며, 국가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변호사로서,

가. 변호 수임료로 일화의 지급을 영수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중 암달러상에서 교환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 나. 법원직원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형사사건 기록을 등사교부받아, 1심 1회 공판조서는 제일 손유형 구원회 회원인 일본인 노야마에게, 항소심 판결문, 항소심 공판조서 일부 등은 같은 회원인 닛다에게, 대법원 파기 판결문, 환송심(고법) 판결문 등은 같은 회원인 일본인 마쓰하라 이또오에게 각 교부하여, 위 판결문 등이 각 일본국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일본 내 반한 단체, 조총련계 등에게 한국의 공안사건 기록자료 등을 수집 폭로하여 반한 선전, 한일간의 이간책동 등에 이용되게 하는 등 국익손상의 우려를 초래케 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다. 수임한 위 피고인 손유형에 대한 간첩사건 형사기록을 열람하면서 동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압수품의 압수 경위서를 필사하여, 이를 외국 공관원인 일본대사관 일등 서기관 이시즈끼에게 교지함으로써, 일본 정계, 일본 변호사 협회 등에서 동 사건을 오도하고, 일본 내 한국 공관원이 수사활동을 한다고 우리나라를 비방하게 하는 등의 물의를 야기시킴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므로, 피내사자의 전시 소위는 변호사법 제20조(품위유지 의무) 및 동법 제22조(비밀엄수 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동법 제72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요약하자면 변호사 수임료를 암달러상에게서 환전한 것이나 법원 직원에게 등사 수고료를 제공하고 일본 대사관 이시즈끼 서기관에게 압수품 압수 경위서 내용을 전달한 것 등의 혐의가 “사안이 경미”하여 ‘입건’은 불가하지만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안기부의 조치의견에 들어맞는 내사보고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4월에 법무부는 법무부차관 정해창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총장 김양균, 한영석, 법원총장 정기승, 박우동, 변협총장 조규광, 이세중을 각각 위원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태윤기에게 징계 회부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태윤기 변호사가 5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사건 수임료는 변호인이 수임하는 순간 변호사의 사유재산화하여 그 처분은 그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고 변호사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수임료로 받은 100만엔 중 70만엔을 암달러상에서 환전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공적 생활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변호사법 본래의 입법 정신으로 볼 때 이를 동법 2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확장해석이다.

2. 변호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기록 등사를 하면서 관례대로 법원공무원에게 복사비와 수고비로 소액의 금전을 제공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일 수가 없다.
3. 공개가 원칙인 재판기록인 공판조서나 판결문은 공개된 문서인데 이러한 문서를 사건 의뢰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그 복사본을 보낸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활동이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아니다.
4. 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시즈끼에게 압수물 현황을 알려준 행위는 직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 아니다.

결국 1983년 5월 25일 징계위원회는 태윤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안기부는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26일 「태윤기 변호사 제명조치 조정결과 보고」를 작성해 안기부의 ‘조치 의견’대로 되었음을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태윤기 변호사가 “이 기회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마음을 편히 달래면서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었지만 많은 동료법조인들과 국민의 인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패배자로서,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가 없어 즉시항고를 한다”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태윤기 변호사의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 일본측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한일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기부는 1983년 6월 일자미상 「변호사 태윤기 제명 징계 관련 일본 외무성 우려 표명에 대한 대책보고」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83년 6월 20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주일대사관 000 정무과장을 면담하면서 “현재까지 제일 한국인 보안사범 문제는 태 변호사가 있음으로써 양국간 외교 문제로 발전되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동인의 활동이 불가하다면 일측으로서는 정부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태윤기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 일본 내 안기부의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더니 그를 제명조치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이 태윤기 변호사가 제명조치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다면 ‘재일한국인 보안사범 문제’를 정부간 문제로 삼겠다고 나오니 안기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안기부는 급히 「태윤기 변호사 징계 제명 처분 관련 한일간 외교 문제 발생 우려 예방 대책 보고」(1983.6 일자미상)를 작성하는데 이미 태 변호사의 징계 절차가 끝난 이상 안기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었다.

4. 태윤기 범법 행위에 대한 처리, 조정 사항

- 태윤기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 등 법조를 경합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하나
- 정상참작, 사회적 물의를 감안,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 법무부로 하여금 변호사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토록 관대히 조정처리하였음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안기부가 끝에 내놓은 대책은 태 변호사의 혐의를 과장, 징역 15년의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안기부가 ‘정상참작, 사회적 물의를 감안’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징계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변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보고서에서 ‘형사처벌 법규 없음’을 인정한 데 이어 안기부의 요청에 따라 1983년 4월 태윤기를 내사한 검찰이 “사안이 경미하여 입건할 가치가 없다”면서 형사처벌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에서 안기부의 이러한 변명은 균색한 것이었다.

이처럼 태윤기 변호사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기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었던 데다가 태윤기 변호사가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1983년 7월 10일 변호사법 제76조에 의거 대법원에 재항고했기 때문에 계속 판결 추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1984년 5월 26일자로

작성된 「공판기록 해외유출 사건 관련 제명 징계 처분자 태윤기 변호사 재상고 기각 처리 상황보고」에는 “1984년 5월 25일 정태균 대법판사가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했다면서 이에 덧붙여 “당부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기부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태윤기 변호사는 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 1988년 3월 22일 정해창(당시 징계위원장), 박우동, 정기승(이상 당시 징계위원), 000(당시 조사담당 검사), 김석휘(당시 검찰총장)을 허위공문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검사가 피고소인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증거없음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하자 태윤기 변호사는 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88년 12월 5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1990년 4월 2일 헌법재판소는 태윤기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2) 임광규 변호사 징계 사건

후에 불문처리되기는 했지만 태윤기 변호사 이전에도 인권변론 활동 때문에 연행조사를 받고 징계조치가 내려질 뻔한 변호사로 임광규 변호사가 있다. 1974년 7월 21일 임광규 변호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금지된 채 명동 성모병원에 구금되어 있던 지학순 주교를 변호사 신분으로 접견했다. 이때 지학순 주교는 임광규 변호사에게 민청학련 사건은 조작된 것이며 “앞으로 내가 구속된 후 이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양심선언서’를 건네 주었고 임광규 변호사는 곧바로 이 문서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날 밤 임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지학순 주교의 변론을 말지 말라는 종용을 받았지만 며칠 후 석방되어 나와서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명동성당 집회에 참석했다. 이어 9월 3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지학순 주교를 접견한 후

자신에게 적용된 내란선동의 죄목은 사실무근이며 대통령 긴급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는 내용의 ‘옥중메시지’를 유출시켜 다시 한번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임광규 변호사의 ‘수난’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연행조사를 받고 풀려난 임 변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징계 신청을 했던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밝힌 징계 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4년 7월 21일 성모병원에서 지학순 주교로부터 ‘양심선언’이라는 문서를 영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번역해주었으며, 같은해 9월 3일 서울구치소에서 위 지학순 주교를 접견할 때 자기에게 적용한 내란선동의 죄목은 사실무근이며 대통령 긴급조치는 부당한 조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 송부해줄 것을 의뢰받고, 천주교 원주교구 양모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 로마교황청 등 6개처에 발송, 발표하게 함으로써 서울제일변호사 회칙 42조와 변호사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어떻게 서울제일변호사 회칙 42조와 변호사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 그것이 검찰총장이 직접 징계 신청을 할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불문하고 재경 변호사회는 이를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탄압으로 인식, 특별변호사단을 구성해 징계 개시에 대처했다. 임광규 변호사도 답변서에서 “오늘 이 징계 요구에 대하여 본인 개인의 직업을 위한 관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제도와 운영의 양심과 진실, 민주주의 신념과 법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면서 긴급조치의 부당성과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 징계 사건은 이후 불문처리로 끝났다.

VI 결 론

1986년 2월 27일 서울형사지법 법정에서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85년 중반 이후 본인이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200여명 이상의 많은 수인들로 꽉 찼는데, 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 본 구치소에 구속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입니다. 며칠 전 면회 장소에서 나이 어린 학생을 만났길래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대학 1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 우리는 매우 슬프고, 이것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법원과 법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정치군부가 법관의 정치적, 물질적 독립성을 파괴하는 그 귀결점이 결국 나이 어린 학생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정치군부에 반대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오늘 또다시 낳았던 것입니다. 나는 본 사건을 이 시대의 불행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입장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동안 이 공판에 참여하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온 재판부, 변호인들, 검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서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갖고 통곡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이 공판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민주화를 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희망합니다.⁴²¹⁾

이 보고서는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갖고 통곡해야 마땅”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이다. 최후진술에서 김근태는 무죄 석방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근태는 이렇게 최후진술을 끝맺었다.

이제 본인은 징역을 삽니다. 높은 담과 부자유, 징역의 외로움과 슬픔을 뚫으며 살 것입니다. 쇠창살 너머 하늘의 별에서 운동주 시인의 눈물을 만나며 이 징역을 살 것입니다. 85년 9월 정치군부의 고문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징역을 살 것입니다. 80년 5월 부릅뜬 눈으로 정치군부의

421) 김근태, 『남영동 - 김근태 고문 및 옥중 기록』, 중원문화, 1987, pp165-166.

총칼에 의해 아스팔트에 쓰러졌던 망월동 시민들의 원혼의 통곡소리를 들으며 징역을 살 것입니다. 이 징역 속에서 민주화의 그 날을 꿈꾸며 징역을 깨면서 살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민주화의 승리가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징역을 살 것입니다.⁴²²⁾

그래도 김근태는 법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며 자신이 당한 고문의 실상을 폭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법정은 단지 고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문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제 아들은 재판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심문할 때에 고문에 의하여 강제 조작된 것을 상세히 말하려 하였으나 세 번이나 강제로 제지를 당해 신성한 재판정에서조차 오열을 토하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⁴²³⁾

한국의 사법부가 원망의 대상이 된 데에는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중앙정보부는 먼저 검찰부터 장악했다. 1964년 인혁당 사건에서 서울지검의 공안검사들은 중앙정보부의 송치의견과는 달리 사건의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기소를 거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차장에서 검찰총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직수 등 검찰 수뇌부는 기소를 명령하여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당직검사가 중앙정보부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공소장에 서명하여 기소를 단행했고, 이용훈 공안부장은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다.

한편 법원은 적어도 1960년대에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했고, 권력의 압력에 의해 판결이 왜곡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권 측은 법원이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의 처리에서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자, 1964년의 법원난입사건, 1967년의 괴벽보 사건 등을 통해 법관들을 협박하였다.

422) 앞책, pp170-171.

423) 이종숙, 「호소문」, 1979년 2월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사료 DB. 이종숙은 1975년 11월 발생한 이른바 한국신학대학 간첩단 사건(또는 제일동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으로도 불린다)으로 구속되어 당시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명수 전도사의 어머니이다.

이 당시는 사법부가 80년대와 같이 국민들이나 피의자들의 원망을 듣는 시기라기보다는 권력 측의 강한 불만의 대상이 된 시기였다.

사법부는 1970년대에도 여전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권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민당사 난입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반정부적인 글을 실은 「오적」 사건, 『다리』지 사건 등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시에 중양정보부 직원이 일부 주요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법관들의 판결은 권력의 입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소장법관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위헌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과 군속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매우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사법부의 잇단 판결은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과동이 발생하였다. 사법과동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양정보부의 작품이라 할 수도 없다. 다만 당시 정권 측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공안검사들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공세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소장법관들은 이를 사법권 독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대법원장의 대통령 면담조차 실현되지 않은 채 사법과동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이 이후 법원에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였고, 사법과동에 적극 가담했던 소장법관들 일부는 스스로 법원을 떠났다.

1972년 10월 17일의 유신은 법원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일반 법관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손을 떠나 대통령에게 귀속되었다. 1973년 3월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재임명으로 대법원 판사 9인을 포함한 48명의 법관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원을 떠나야 했다. 유신정권에 의해 재임명이 거부된 9명의 대법원판사는 모두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판사들이었고, 나머지 법관들도 정년이 다 된 1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개 학생시위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반공법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단순한 안부편지를 주고 받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나, 야당에서 정부비판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형으로 둔 판사 등에 대해 유신을 전후하여 뒷조사를 한 자료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 판사들은 1973년도의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유신정권은 법관 경력 15년 미만인 변호사들에게는 개업지 제한 규정을 두어 퇴임 2년 이내에 근무한 법원 소재지에서의 변호사 개업을 3년간 금지시켰다. 이런 조치는 소신 있는 판결을 하고 법복을 벗으면 그만이라는 소장판사들을 크게 위축시켰다.

10월 유신으로 사법부의 수난은 본격화되었다. 1974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는데,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건은 1심과 2심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48명의 판사를 잘라내고도 사법부를 여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군법회의에는 법관들이 심판관 자격으로 동원되었는데, 법관들은 군 장성인 재판관을 보조하는 법률기술자로 전락했다. 이 때부터 공소장의 오자조차 베껴 쓰고, 구형량이 곧 선고형량인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청학련 사건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법정 변론 때문에 구속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벌어졌다. 유신 정권 하에서 사법부 수난의 극치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판결이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 올라 온 이 사건에 대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8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처형되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사법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조작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수사와 비상군법회의의 운영 등은 중앙정보부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1975년 긴급조치 9호에서부터는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재판을 군법회의 대신 일반법원에 맡겼다. 그런데 1975년 여름의 이른바 선고

자금 횡령 사건의 경우, 중앙정보부는 담당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기미를 보인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그의 뒷조사를 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해 선교자금을 제공한 외국선교기관 측에서 자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잘 쓰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보부가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법관들이 긴급조치를 ‘실정법’으로 인정하여 유신정권에 저항한 청년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관대한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이영구 부장판사 등은 법원을 떠나야 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등장은 법원에는 대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1980년의 공무원 숙정과 1981년 5공화국 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으로 김재규 재판에서 신군부의 의도와는 달리 내란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6명의 대법원 판사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법관이 법원을 떠나야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명칭을 바꾼 안기부는 1980년과 1981년 법관 강제 퇴임에서는 별다른 악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기부는 1983년 1월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또는 27만\$ 외화밀반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리 척결을 내세워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 등을 제압했다. 27만\$ 외화밀반출 사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한 두 명의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고, 안기부의 대법원장 비서관에 대한 가혹 행위를 문제 삼은 검찰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역공을 가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당검사와 부장검사를 파면하고, 남부 지청장과 서울지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사표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사임한 I서울지검장은 대검 공안부장 시절 시국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안기부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또한 안기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변호사 3명을 뇌물 공여 등을 이유로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취했다. 파면당한 검사나 제명당한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었고, 사무실을 얻고 주요 일간지에 개업광고까지 게재한 전직 부장판사는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휴업계를 제출하는 등 관련자 전원이 1-2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안기부와 검찰과의 갈등은 이보다 앞서 1981년 5월에도 있었는데, 안기부가 학내에서 유인물을 돌린 연세대생들을 내란죄로 송치하자, 담당 공안검사가 내란죄를 삭제하고 국가보안법과 집시법만을 적용하기 위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안기부에 협의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을 내란죄 사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기부는 내란죄를 적용하지 말자는 검찰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하여 안보수사조정권을 발동해 내란죄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이후 안기부는 담당 공안검사의 여자관계, 금전관계 등의 뒷조사를 했고, 그가 사표를 낸 후 유학을 준비하자 출국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

한편 안기부는 1983년 3월 학생시위 주동자들에게 징역 1년 내지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시위를 주동해 형을 선고 받는 대신 군대를 가지 않아 별 부담없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학생 시위의 형량을 3년으로 올릴 것을 대법원과 학생 시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주문하였다. 안기부의 ‘조정’은 효력을 발휘했고, 대법원을 통해 각급 법원으로 전파되어 학생 시위 주동자들의 형량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안기부는 5공화국에 들어와 언론통폐합과 대량해직으로 국내언론은 완벽히 통제하게 되었으나 외신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자 외신으로 가는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모독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가모독죄는 원래 1975년 유신정권 당시 형법에 삽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유신정권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조항인데, 5공정권이 이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외신기자에게 유인물을 돌린 행위에 대해 1983년 2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안기부는 즉각 ‘조정’에 들어갔다.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판결 3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옷을 벗었고, 주심인 배석판사는 안기부 보고서에서 다음 인사에서 지방좌천 예정이며 법관 자격이 없는 자라는 언사를 들어야 했으며 예정된 해외연수를 제 때에 떠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안기부의 사법부에 대한 외압이 가장 철저하게 가해진 것은 세 차례나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를 오가 ‘핑퐁재판’이라는 별칭이 붙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서였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1982년 9월 안기부가 26년 간 암약한 고정간첩단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건인데, 무려 100일이 넘는 장기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사건 조작이 문제가 되어 원효로 윤경화 노파 피살사건에서 범인으로 검거된 고속종 씨와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 사건에서 범인으로 검거된 정재파 군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는데 이어, 장기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이일규 판사에 의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안기부는 만약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간첩수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사활을 걸고 공판대책을 마련하였다. 안기부는 대법원에 여러 경로로 압박을 가하여 상급심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비껴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치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담당재판부에 압박을 가했다. 안기부는 이 사건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무죄 취지로 환송된 뒤에는 다음 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하여 대법원 판사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는 대법원 판사 인사에서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려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내며 안기부와 협력해 온 인사가 대법원 판사로 선임되도록 하였다. 안기부는 고등법원의 재재파기환송심 판결이 나기 이전부터 신임 대법원판사와 공판대책을 논의했고, 그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세 번째 재판에서 앞의 두 번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확정했다.

안기부는 주요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의 공판 뿐 아니라, 학생 시위나 출판물 등으로 즉심에 회부된 사람들의 판결에까지 개입하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 1983년 3월 안기부는 학생시위에 대한 형량을 1년 내지 1년 6월에서 3년으로 올리도록 법원을 압박했고, 법원의 선고 형량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은 학원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안기부 스스로 시위에 대한 강경대처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5공정권은 1983년 12월 이른바 학원자율화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내 시위에 전투경찰을 투입하여 강경진압하는 방식은 지양되었고, 가두시위의 경우도 실형보다는 즉심에 넘겨 구류를 살리게 되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징역 2년 6월 내지 3년이 선고되던 가두시위 주동자에게도 구류가 선고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1984년 하반기부터 일부 소장판사들이 즉심에 회부된 학생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들 소장판사들은 80년대에 들어와 임용되었기 때문에 1973년과 1981년의 법관재임명 조치의 힘을 실감하지 못하는 젊은 법관들이었다. 안기부는 즉각 무죄 선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기부의 이런 관심은 법원 수뇌부에도 영향을 끼쳤다. 1985년 3월 판사로 임명되어 인천지법에 발령을 받은 P판사는 1985년 6월 6일 판사 임관 후 첫 즉결심판에서 즉심에 회부된 14명의 학생 중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3개월 뒤의 법관 정기 인사에서 아직 인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또 재야단체 간부에게 즉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 J판사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이런 좌천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법률신문』에 기고한 서태영 판사는 서울민사지법에 발령받은 지 사흘 만에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이와 같은 인사과동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단순한 비판 성명이 아니라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야당은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한편 안기부는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안기부가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에는

초기부터 개입하여 대책을 세웠다. 김근태 사건의 경우, 안기부는 미행 일지 등 각종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수사관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상주시키면서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강력수사”를 전개하여 학생과 재야단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려 하였다. 김근태 씨에 대한 고문은 경찰의 독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안기부의 방조하에 진행된 것이다. 안기부와 치안본부 등 공안당국은 급진화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야단체와의 연계를 만들어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근태 등을 고문하였다. 그런데 김근태가 고문의 상처로 생긴 딱지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등 구체성을 결여했던 일반적인 고문 폭로와는 달리 고문을 당한 날짜와 시간, 고문경찰들의 인상착의 등을 자세히 기억하며 반격해오자 공안당국이 오히려 수세에 빠지게 되었다. 안기부가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재야와 학생의 고문과 용공조작 폭로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면서, 김근태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재판부에 ‘강력조정’을 가해 이를 기각시키고, 본건 공판에 대해서도 방청객 제한, 개학 이전 공판 종결, 7년 이상 중형 선고 등 세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부천서성고문 사건의 경우도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이 사건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좌경극렬 여학생이 정권을 모함하는 행동이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리게 하는 등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안기부는 또 인천지법에 강력한 ‘조정’을 실시하여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였다.

민정당사 난입사건, 서울 미문화원 농성사건 등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면서 시국사건 재판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재판부에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최악의 법정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문 호소를 외면하고, 정찰제 판결을 일삼는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자성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1985년 10월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이후 유태홍 대법원장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어 1986년 4월 김용철 법원

행정처장이 신임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시위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1986년 하반기부터는 납북어부 김성학, 강종배 등 고문에 의해 간첩 등의 혐의를 쓰게 된 억울한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1985년의 김근태 사건, 1986년의 부천서 사건 등으로 고문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987년 1월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문 근절의 분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7년 2월 재일동포 심한식 간첩사건 항소심과 3월의 납북어부 강종배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장기 불법구금 과정에서 얻어진 자백의 임의성을 문제삼아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다. 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김현무 판사인데, 그는 1981년 원효로 윤노파 사건의 피의자인 고숙종 씨에 대해 장기불법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고법에서도 납북어부 간첩사건의 여덕현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 사건은 안기부가 수사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안기부로서는 연이은 무죄 판결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법원에 대한 안기부의 ‘조정’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사태가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것이다. 안기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임 대법원장이 조정에 손을 놔 버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안기부 조정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신임 대법원장을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주사급 대법원장이라고 혹평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한다.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사법부에도 1988년의 2차 사법파동과 1993년의 사법개혁 요구 등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1988년 이후 안기부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이 채택한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과거 판사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기도 했으며, 판결이란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라는 참회와 자성을 토대로 사법부의 강력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 문건은 이후 민변과 변협을 통해 과거 청와대 또는 중앙정보부·안기부에 적극 협력한 ‘정치판사’의 퇴진 논란을 낳았다. 이후 대법관 등 고위법관의 인사에서는 더 이상 안기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과거 안기부에 협력했던 법관들이 ‘정치판사’로 지목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안기부 보고서를 보면 안기부는 1980년대에 안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고위법관이 대법관에 선임되도록 보고서를 통해 간접 지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안기부는 사법부에 대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안기부의 보고서는 여전히 사법부를 주목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진출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안기부는 운동권 출신 법관이 불온출판물을 판매한 서점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문제성향 법관들의 형사부 배치를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뒤이어 운동권 출신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은 관검사 임용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안기부는 이어 1996년 한총련 사건 등에서 건국대 사건 당시에 비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훨씬 높은 비율로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문제삼았다. 또 언론에서는 한총련 학생들이 건국대 사건 당시에 비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안기부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안기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을 좌익 비호세력으로 비난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상영하다가 큰 물의를 빚어 안기부장이 대법원장에게 공식 사과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법원과 검찰 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유신 정권 하에서는 이병린, 한승헌, 강신욱

변호사 등이 변론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으며, 구속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민감한 시국사건의 변론을 맡은 경우 중앙정보부 신세를 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조작을 문제삼은 변호사들이 중앙정보부에 잡혀와 조사를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공판조서의 내용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사형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이었기에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1980년의 격변기에는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이돈명, 홍성우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휴업을 강요받았다. 1983년 봄 안기부는 재일동포 간첩사건을 많이 변호한 태윤기 변호사를 견제하기 위해 그를 사법처리하려 하였으나, 사법처리할만한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자 일본의 가족에게 공판조서와 판결문 등을 복사해 준 것을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아 그를 제명하였다. 또 안기부는 송씨 일가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입북혐의에 대해 입북하였다는 시기에 한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증인을 위증죄로 구속하여 실형을 살리기도 했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이와 같이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변호사와 증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 총론(Ⅰ)

●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 정치 · 사법편(Ⅳ)

● 언론 · 노동편(Ⅴ)

● 학원 · 간첩편(Ⅵ)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 정치 · 사법편 (Ⅳ) —

편 집 |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 국가정보원

발간일 | 2007년 10월 10일